【2025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결 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 세 입 세 출 결 산 】
일 반 회 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기 금 결 산 】
고 용 보 험 기 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임 금 채 권 보 장 기 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근 로 복 지 진 흥 기 금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일 반 회 계

2026. 8.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 문 위 원

【 목 차 】

Ⅰ. 결산 개요 ····· 1

1. 고용노동부 재정체계 개요 ····· 1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 6

가. 세입세출결산 총괄 ····· 6

나. 일반회계 ····· 8

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17

라.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 19

마.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 20

3. 기금결산 ····· 21

가. 수입 및 지출 결산 총괄 ····· 21

나. 고용보험기금 ····· 25

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 28

라. 임금채권보장기금 ····· 32

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 36

바. 근로복지진흥기금 ····· 39

Ⅱ. 결산 검토의견 ····· 42

1. 세입 결산 ····· 42

(1) 과징금(일반회계, 56-565) ····· 42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 42

나. 과징금 미수납액 비중 증가에 대한 개선 필요 ····· 44

(2) 기타재산이자외수입(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54-547),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85-853) · 47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 47
나. 여유자금 관련 세입 추계 신뢰도 제고 필요 ····· 48

2. 세출 결산 ····· 51
《 기획조정실 》 ····· 51
[정책기획관] ····· 51
(1) 고용노동행정(정보화)(일반회계, 7034-500) ····· 51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 51
나. 예비비 요건 해당 여부의 엄밀한 검토 필요 ····· 53
[국제협력관] ····· 57
(1) 고용노동 국제협력 및 통상협상 대응(일반회계, 3050-301) ····· 57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 57
나. APEC 고용노동장관회의의 성과 관리 미흡 ····· 59
(2)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개발협력(일반회계, 3050-302) ····· 62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 62
나. 반복되는 ODA 사업 출연금 이월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필요 ····· 64
(3) 외국인근로자고용관리(일반회계, 3051-308) ····· 69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 69
나. 사업수행 방식에 맞는 예산과목 편성 필요 ····· 71
다. 사업 추진상황 및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필요 74
《 고용정책실 》 ····· 80
[노동시장정책관] ····· 80
(1) 일자리안정자금지원(일반회계, 1233-300) ····· 80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 80
나. 일자리안정자금지원 사업의 사후관리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81
(2) 고용유지지원금(고용보험기금, 1045-350) ····· 85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 85
나. 추경 증액 수요 예측의 정확성 제고 및 집행 저조 개선 필요 ·· 89
다. 고용유지자금융자 채권관리 업무의 근로복지공단 위탁에 대한 계약 미체결 부적정 ····· 92
[고용서비스정책관] ····· 97
(1)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일반회계, 1234-300) ····· 97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 97
나. 제도개선을 통한 집행성과 제고 필요 ····· 100
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취업률 관리 및 제고 노력 필요 ·· 105
(2) 고용보험기금 총괄 ····· 108
가. 고용보험기금 결산 개요 ····· 108
나. 모성보호 육아지원 사업 시행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 등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검토 필요 ····· 111
[고용지원정책관] ····· 117
(1) 고용안정장려금(고용보험기금, 1345-350) ····· 117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 117
나. 고용안정장려금 지원금별 수요 분석 강화 필요 ····· 120
《 통합고용정책국·청년고용정책관 》 ····· 133
[통합고용정책국] ····· 133
(1) 중장년 인턴제(일반회계, 1336-305) ····· 133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 133
나. 중장년층 경력전환 및 일경험지원 사업의 차별화 필요 ····· 136
(2) 고령자고용안정지원금(고용보험기금, 1347-350) ····· 142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 142
나. 연례적 기금운용계획 변경 지양 필요 ····· 144
(3)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1453-304) ·· 147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 147
나. 사후관리를 통한 표준사업장 인증취소 방지 노력 필요 ····· 150
다. 국가기관 우선구매 비율 제고 노력 필요 ····· 154
[청년고용정책관] ····· 158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일반회계, 1043-301) ····· 158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 158
나. 예산 추계 및 집행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한 적정 규모의 예산 편성 필요 ····· 159
(2) 한국잡월드운영지원(일반회계, 1049-301) ····· 165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 165
나. 사업 추진 단계를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 166
다. 한국잡월드 자체수입 추계 현실화 필요 ····· 169
(3) 청년미래플러스(일반회계, 1051-308) ····· 174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 174
나. 추진방식 재검토를 통한 사업성과 제고 필요 등 ····· 177
《 직업능력정책국 》 ····· 187
[직업능력정책국] ····· 187
(1) 내일배움카드(일반) (일반회계, 1131-300) ····· 187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 187
나. 일반고 특화훈련 사업의 취업률 등 제고 필요 ····· 189
다. 내일배움카드(일반, 고보) 내 고용센터 시설비를 고용센터 자체 청사관리비로 이관할 필요 ····· 192
(2) 숙련기술장려사업(일반회계, 1134-317) ····· 196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 196
나.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주체별 예산 부담 기준 마련 필요 ····· 198
다.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숙련기술진흥원 추가건립 사업

계획 수립 필요 ····· 203
(3)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135-308) 208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 208
나. 서천캠퍼스 신설 사업: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출연금 교부 필요 ·· 209
(4)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고용보험기금, 1152-350) ····· 217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 217
나. 빈일자리 재직 청년 기술연수 사업: 현장 수요 사전 파악 후 면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할 필요 ····· 218
다. 탄력운영제: 사업추진 방식과 부합하지 않는 관련 법령 정비 필요 ····· 224
(5)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고용보험기금, 1153-350) ····· 230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 230
나. 대중소상생아카데미 사업: 기금운용계획 변경 증액분의 집행부진 ····· 233
다. 산업맞춤형: 보조금 중 인건비와 운영비 비중이 과다하므로 제도개선 필요 ····· 237
라. 산업맞춤형과 하이테크형 사업의 보조금 중요재산 미공시 문제 개선 등 보조사업 관리·감독 강화 필요 ····· 240
(6)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 사업(고용보험기금, 1154-356) ····· 245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 245
나.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 사업: 연말 보조금 불용예상액의 자체변경 부적정 및 연내 집행 가능한 규모의 기금운용계획 편성 필요 ····· 246
(7)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폴리텍)(고용보험기금, 1155-350) ····· 252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 252
나. 소규모 사업장 훈련: 고용보험기금 내 동 사업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계획 변경 및 외국인 근로자 훈련 추진 문제 ····· 253
다. 홍보물품 구매 연말 집중 부적정 ····· 261

《 노동정책실 》 ····· 265
[노동정책관] ····· 265
(1) 노동약자지원(일반회계, 2031-303) ····· 265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 265
나. 노동약자 일터개선 지원 사업의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집행 부진 개선 필요 ····· 267
다. 노동약자 상생 복지지원 사업 등: 신규·증액 시 실수요를 반영한 사업 설계 필요 ····· 273
[노사협력정책관] ····· 279
(1)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운영지원(일반회계, 2031-305) ····· 279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 279
나. 청년 고용노동교육의 수혜자 편중 개선 필요 등 ····· 280
(2) 노사발전재단지원(일반회계, 2036-311) ····· 289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 289
나. 해외진출기업 대상 국가별 노무관리 지원자료의 활용도 제고 필요 ····· 290
[근로기준정책관] ····· 297
(1) 대지급금 지급(임금채권보장기금, 3051-300) ····· 297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 297
나. 대지급금 회수율 개선을 통한 기금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 필요 299
《 산업안전보건정책실 》 ····· 302
[산업안전예방정책관] ····· 302
(1)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4151-350) ·· 302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 302
나. 재해예방 효과, 지원비용 등을 고려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품목 선정 필요 ····· 305
다.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관련 사후관리 강화 필요 ····· 308
(2) 업종별 재해예방(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4152-350) ····· 313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 313
나.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 참여 감소에 대한 개선 필요 ····· 316
다. 건설현장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민간 기술지도 방식의 문제 ····· 321
[산업보건보상정책관] ····· 326
(1) 산재보험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4051-350) ····· 326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 326
나. 산재 장기심사사건 업무처리기준 마련 등 산재 심사기간 단축 노력 필요 ····· 330
《 고객상담센터 》 ····· 333
[고객상담센터] ····· 333
(1) 고객상담센터운영(일반회계, 7931-301) ····· 333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 333
나. 공공요금 및 제세 비목의 연례적 조정 최소화 필요 ····· 334
《 중앙노동위원회 》 ····· 339
[중앙노동위원회] ····· 339
(1) 노동위원회청사관리(일반회계, 7036-306) ····· 339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 339
나. 연례적인 관사 임차보증금 과다 편성 및 전용 재원 활용 개선 필요 ····· 340
(2) 노동위원회전문성강화(일반회계, 7039-309) ····· 343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 343
나. 회의수당 등 미지급금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반 집행 시정

필요 ····· 344
(3) 노동위원회정보화운영(정보화)(일반회계, 7039-502) ····· 349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 349
나. 영상회의 활용 실적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350
다. 디지털노동위원회 구축 예산 이월 과다 ····· 355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 360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360
(1) 경제사회노동위원회운영(일반회계, 7040-307) ····· 360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 360
나. 공식 회의체 운영실적 저조에 따른 예산 집행의 적정성 미흡 재발 방지 필요 ····· 362
다. 회계연도 종료 직전 정부광고의 집행 편중 개선 필요 ····· 366

Ⅰ. 결산 개요

1. 고용노동부 재정체계 개요

2025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은 일반회계,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4개 회계와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의 5개 기금으로 구성됨.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 현황]

구 분	설 치 목 적	설 치 근 거
고용보험기금	실직자 생활안정과 고용 촉진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근로자 업무상 재해보상 및 산업재해예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기금	체불임금 대지급	임금채권보장법
근로복지진흥기금	근로자 복지진흥	근로복지기본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사업수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025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총수입은 예산액 대비 총 1조 7,380억 6,800만원(5.0%)이 감소한 33조 1억 2,5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1조 2,578억 4,300만원(3.9%) 증가하였음.

[2025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 결산액(A)	2025			전년 대비 (C-A)
		예산액 (B)	총수입 결산액(C)	예산액 대비 (C-B)	
예 산	212,561	347,219	149,090	△198,129	△63,471
기 금	31,529,721	34,390,974	32,851,035	△1,539,939	1,321,314
합계(총수입)	31,742,282	34,738,193	33,000,125	△1,738,068	1,257,843

2025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총지출은 예산액 대비 6,971억 8,100만원(1.8%)이 감소한 37조 3,548억 7,4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2조 8,080억 1,400만원(8.1%)이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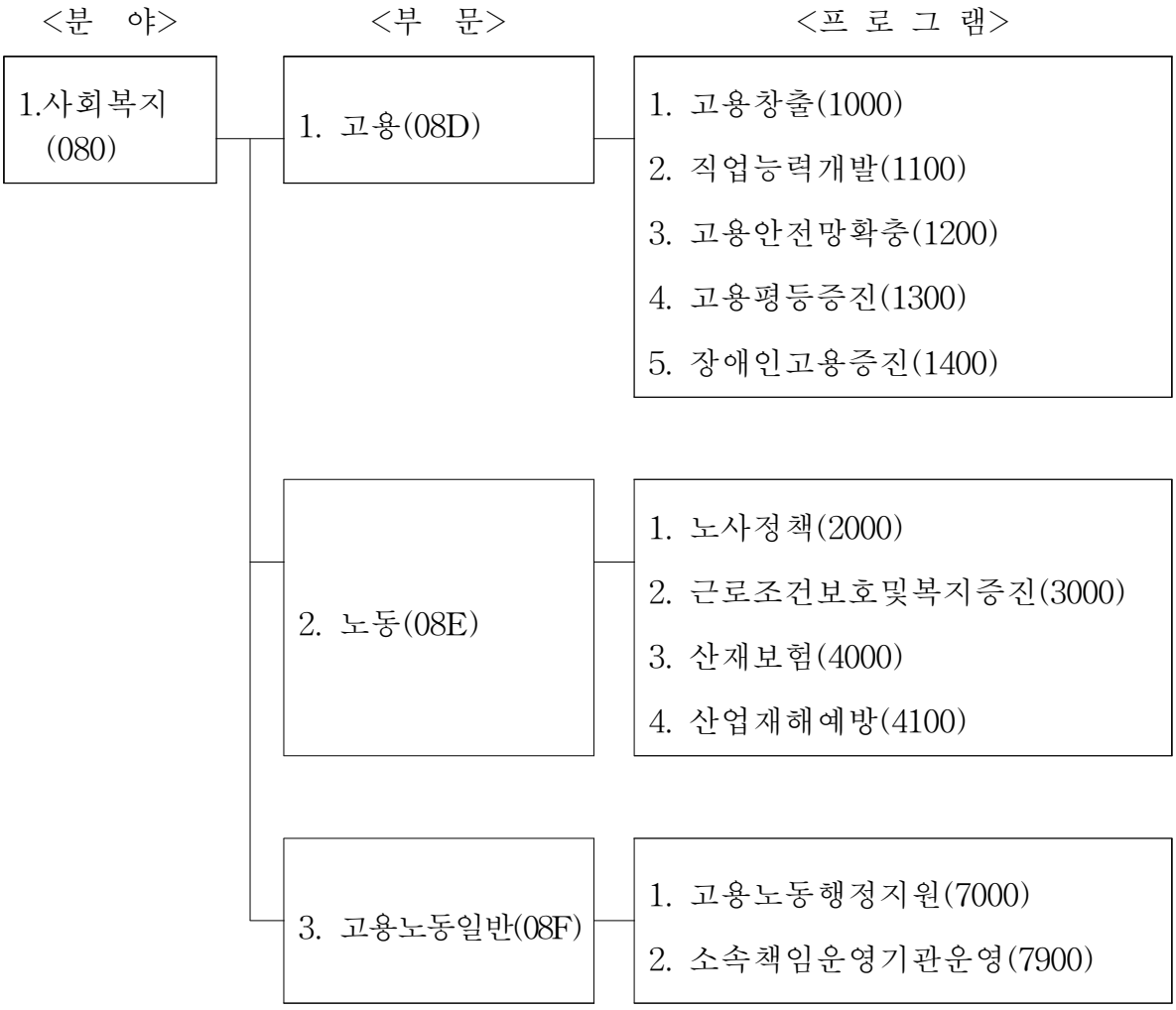
[2025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 결산액 (A)	2025			전년 대비 (C-A)
		예산액(B)	결산액 (C)	예산액 대비 (C-B)	
예 산	5,712,100	6,072,168	5,862,492	△209,676	150,392
기 금	28,834,760	31,979,887	31,492,382	△487,505	2,657,622
합계(총지출)	34,546,860	38,052,055	37,354,874	△697,181	2,808,014

고용노동부 예산은 사회복지(080)분야에 속한 고용(08D), 노동(08E), 고용노동일반(08F) 부문에 해당되며, 고용창출(1000)프로그램 등 11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1 분야, 3 부문, 11 프로그램의 체계를 갖추고 있음.

[고용노동부 예산 프로그램 체계도]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고용보험기금으로 5,500억원이 전출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으로 213억원,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8,200만원이 전출되었음.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고용보험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수원금 1조 3,842억원, 예수이자 1,375억원을 상환함.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탁원금

4조 8,501억원, 예탁이자수입 1,670억원을 받고, 공공자금관리기금에 4조 8,500억원을 예탁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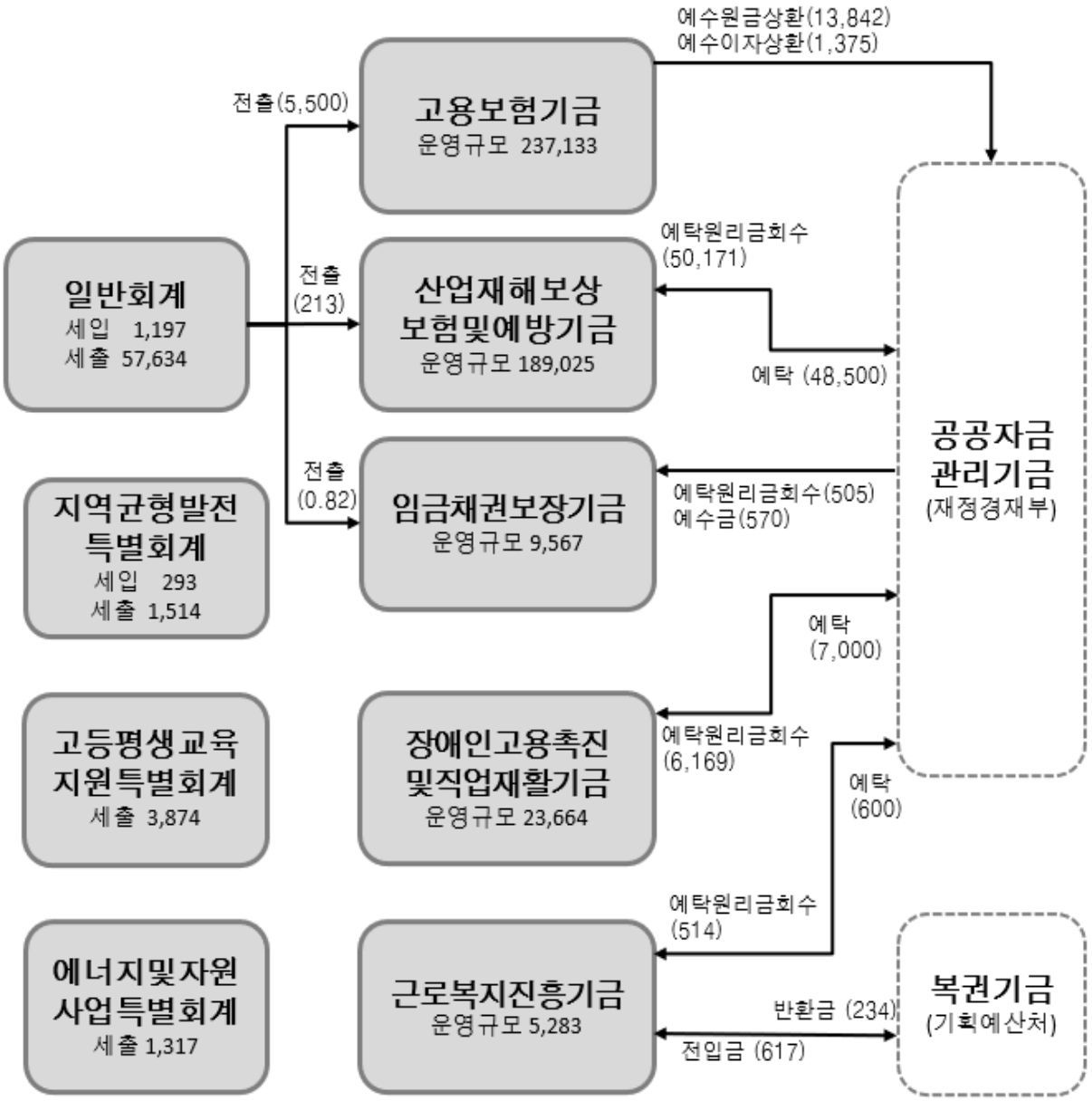
임금채권보장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탁원금 500억원, 예탁이자수입 5억원, 예수금 570억원을 받았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탁원금 6,000억원, 예탁이자수입 169억원을 받고, 공공자금관리기금에 7,000억원을 예탁하였음.

근로복지진흥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탁원금 500억원, 예탁이자수입 14억원을 받고, 공공자금관리기금에 600억원을 예탁하였으며, 복권기금으로부터 617억원을 전입받았고, 집행잔액 등 234억원을 반환하였음.

[2025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회계 · 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가. 세입세출결산 총괄

(1) 세입결산 총괄

2025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입예산액은 3,472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565억원이며, 징수결정액 중 수납액은 1,491억원임.

미수납액은 2,052억원, 불납결손액은 22억원이며, 수납률(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41.8%로 전년 대비 8.8%p 하락하였음.

[2025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입결산 총괄]

(단위: 억원, %)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합 계	3,472	3,565	1,491	22	2,052	41.8
	(3,423)	(4,198)	(2,126)	(23)	(2,050)	(50.6)
일반회계	3,254	3,154	1,197	22	1,936	37.9
	(3,235)	(3,582)	(1,694)	(23)	(1,866)	(47.3)
특별회계	218	411	294	0	117	71.6
	(187)	(616)	(432)	(0)	(184)	(70.1)

주: 괄호는 2024회계연도 결산

(2) 세출결산 총괄

2025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6조 6,436억원이고, 예비비 5,5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6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조 6,457억원임.[1)]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6.8%인 6조 4,339억원으로 전년 대비 3,004억원 증가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0억원으로 전년보다 14억원 증가하였으며, 불용액은 2,078억원으로 전년보다 111억원 감소하였음.

[2025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출결산 총괄]

(단위: 억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합 계	66,436	26	1	66,457	64,339	40	2,078	96.8
	(62,365)	(171)	(1,014)	(63,550)	(61,335)	(26)	(2,189)	(96.5)
일반회계	59,605	26	1	59,626	57,634	40	1,952	96.7
	(55,520)	(171)	(1,014)	(56,705)	(54,632)	(26)	(2,047)	(96.3)
에특회계	1,317	0	0	1,317	1,317	0	0	100.0
	(896)	(0)	(0)	(896)	(896)	(0)	(0)	(100.0)
지특회계	1,529	0	0	1,529	1,514	0	15	99.0
	(1,839)	(0)	(0)	(1,839)	(1,791)	(0)	(47)	(97.4)
고특회계	3,985	0	0	3,985	3,874	0	111	97.2
	(4,111)	(0)	(0)	(4,111)	(4,016)	(0)	(94)	(97.7)

주 1. 괄호는 2024회계연도 결산
2.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이체액 △6억원이 반영된 금액
3. 총계 기준

1) 내부거래를 포함한 총계 기준

나. 일반회계

(1) 세입결산

2025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3,253억 9,7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154억 800만원임. 이 중 37.9%인 1,196억 6,6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불납결손액은 21억 6,800만원, 미수납액은 1,935억 7,300만원임.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합계	325,397	315,408	119,666	2,168	193,573	37.9
	(323,517)	(358,221)	(169,369)	(2,289)	(186,564)	(47.3)
○재산수입	3,366	6,649	5,945	0	703	89.4
	(1,866)	(5,313)	(4,548)	(1)	(765)	85.6
-관유물대여료	0	1.8	0.2	0	1.7	9.2
	(0)	(2)	(0)	(0)	(2)	(0.0)
-기타재산이자수입	3,366	6,647	5,945	0	702	89.4
	(1,866)	(5,312)	(4,548)	(1)	(763)	(85.6)
○경상이전수입	321,881	308,630	113,602	2,168	192,860	36.8
	(321,501)	(352,674)	(164,594)	(2,288)	(185,792)	(46.7)
-벌금,몰수금및과태료	54,013	184,696	49,202	1,823	133,671	26.6
	(49,948)	(171,922)	(49,087)	(1,800)	(121,035)	(28.6)
-변상금및위약금	10	46	8	2	35	16.6
	(10)	(58)	(1)	(0)	(57)	(1.3)
-가산금	264	7,954	266	168	7,520	3.3
	(264)	(7,631)	(350)	(342)	(6,939)	(4.6)
-기타경상이전수입	267,594	115,935	64,127	174	51,634	55.3
	(271,279)	(173,062)	(115,157)	(146)	(57,759)	(66.5)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50	128	118	0	10	92.4
	(150)	(234)	(227)	(0)	(7)	(97.1)

주: 괄호는 2024회계연도 결산

2025회계연도 징수결정액은 3,154억 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28억 1,300만원(12.0%) 감소하였고, 2025회계연도 수납액은 1,196억 6,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97억 300만원(29.3%) 감소하였으며, 수납률은 37.9%로 전년 대비 9.4%p 하락하였음.

미수납액 주요내역은 기타경상이전수입 516억원,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과태료 및 노동위원회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미수납액 730억원 등임.

[연도별 세입결산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입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세입대비 수납률 (C/A)	징수대비 수납률 (C/B)	미수납액
2021년	85,961	470,681	339,545	395.0	72.1	128,572
2022년	131,061	644,753	501,529	382.7	77.8	141,392
2023년	233,946	469,927	315,754	135.0	67.2	151,682
2024년	323,517	358,221	169,369	52.4	47.3	186,564
2025년	325,397	315,408	119,666	36.8	37.9	193,573

(2) 세출결산

(가) 총 괄

2025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024년도 예산액보다 4,085억원(7.4%) 증가한 5조 9,605억원이며, 예비비 5,5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6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조 9,626억원임.[2)]

지출액은 5조 7,634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7%를 지출하였고,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안전망확충에 32.4%, 청년일자리창출지원 등 고용창출에 26.0%를 각각 집행함.

[2025회계연도 주요지출 내역]

주요 지출 항목	지출액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등 고용창출(26.0%)	1조 4,962억원
- 내일배움카드 등 직업능력개발(16.0%)	9,235억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안전망확충(32.4%)	1조 8,659억원
- 노동시장 법제도 현장 안착 지원 등 고용평등증진(1.1%)	614억원
- 상생협력 확산지원 등 노사정책(1.8%)	1,017억원
- ILO분담금 등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1.1%)	623억원
- 산업안전감독역량강화 등 산업재해예방(0.1%)	37억원
- 지방고용노동관서인건비 등 고용노동행정지원(11.3%)	6,496억원
- 고객상담센터운영 등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0.5%)	278억원
- 고용보험기금 전출 등 회계기금간거래(9.9%)	5,714억원

2) 내부거래를 포함한 총계 기준

다음연도 이월액은 40억원으로 전년대비 14억원 증가하였으며, 불용액은 1,952억원으로 전년대비 95억원 감소하였음.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예산액	예산변경 내역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이용	전용					
합 계	59,605	26	1	±112	±92	59,626	57,634	40	1,952	96.7
	(55,520)	(171)	(1,014)	(±54)	(±151)	(56,705)	(54,632)	(26)	(2,047)	(96.3)
고용창출	15,992	25	-	-112	±8	15,902	14,962	11	930	94.1
	(15,316)	(93)	(0)	(△51)	(±54)	(15,358)	(13,568)	(25)	(1,765)	(88.3)
직업능력 개발	9,282	-	-	-	-	9,282	9,235	0	46	99.5
	(9,324)	(64)	(0)	(0)	(0)	(9,388)	(9,171)	(0)	(217)	(97.7)
고용안전 망확충	19,558	-	-	-	-	19,558	18,659	-	899	95.4
	(18,162)	(0)	(1,014)	(0)	(±41)	(19,176)	(19,164)	(0)	(13)	(99.9)
고용평등 증 진	628	-	-	-	-	625	614	-	12	98.1
	(835)	(0)	(0)	(0)	(0)	(835)	(833)	(0)	(2)	(99.8)
노사정책	1,046	-	-	-	±1	1,046	1,017	0	29	97.2
	(608)	(1)	(0)	(0)	(±1)	(609)	(603)	(0)	(6)	(99.0)
근로조건 보호및복 지증진	631	0	-	-	±8	631	623	0	8	98.8
	(623)	(1)	(0)	(0)	(±12)	(624)	(606)	(0)	(18)	(97.1)
산업재해 예방	39	-	-	-	±1	39	37	-	2	95.4
	(23)	(0)	(0)	(0)	(0)	(23)	(23)	(0)	(0)	(100.0)
고용노동 행정지원	6,438	1	1	112	±71	6,550	6,496	28	27	99.2
	(6,139)	(11)	(0)	(54)	(±38)	(6,204)	(6,178)	(1)	(26)	(99.6)
소속책임 운영기관 운영	278	-	-	-	±3	278	278	-	0	99.9
	(275)	(0)	(0)	(△2)	(±5)	(273)	(273)	(0)	(0)	(100.0)
전출금등	5,714	-	-	-	-	5,714	5,714	-	-	100.0
	(4,214)	(0)	(0)	(0)	(0)	(4,214)	(4,214)	(0)	(0)	(100.0)

주 1. 괄호는 2024회계연도 결산
2. 예산현액은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이체액 △6억원이 반영된 금액

(나) 이용 내역

2025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이용액은 111억 7,100만원임. 주요 이용내역을 보면, 공무원 인건비 부족액 충당을 위해 111억 7,100만원을 이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주요 이용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이용액	주요 이용내역
합 계	**△11,171**	
고용창출	△11,171	○ 공무원 인건비 부족액 충당을 위한 이용
고용노동행정지원	11,171	

(다) 전용 내역

2025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전용액은 92억 4,100만원임. 주요 전용내역을 보면,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부족분 충당을 위해 74억 4,000만원, 공무직 등 근로자 퇴직연금 부담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 7억 7,100만원 등을 전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주요 전용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전용액	주요 전용내역	
합 계	9,241		
고용창출	771	○ (고용노동통계조사 등) 공무직 등 근로자 퇴직연금 부담금 부족액 자체전용	771
근로조건 보호 및 복지증진	806	○ (근로조건개선지원 등) 취약계층 보호 지도·감독 출장여비 부족액 전용 등	806
산업재해예방	120	○ (산업안전감독역량강화) 산업안전감독관 증원에 따른 근무 여건 마련 비용 및 사업장 지도·감독 출장여비 부족액 전용	120
인건비 등	7,440	○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각 지방관서 및 본부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부족액 자체전용	7,440

(라)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

2025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이월액은 총 39억 5,300만원으로, 주요 이월내역은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11억 1,000만원, 노동위원회정보화운영(정보화) 26억 4,800만원 등임.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이월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이월액	주요 이월내역	
합 계	3,953		
고용창출	1,120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1,110
		고용노동통계조사	10
직업능력개발	38	내일배움카드(일반)	38
노사정책	23	노동약자지원	6
		상생협력확산지원	17
근로조건보호 및 복지증진	11	퇴직급여제도정착지원	11
고용노동행정지원	2,761	노동위원회전문성강화	40
		고용노동행정(정보화)	17
		노동위원회기본경비(비총액)	18
		노동위원회정보화운영(정보화)	2,648
		사회복무요원운영(노동위,비총액)	1
		부산지방관서기본경비(비총액)	13
		정책연구개발	24

(마) 불용액 내역

2025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총 1,952억 4,100만원임. 주요 불용내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726억 70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 898억 9,000만원 등임.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주요 불용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불용액	주요 불용내역	
합 계	195,241		
고용창출	92,962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집행잔액	72,607
		청년내일채움공제(일반) 집행잔액	12,985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집행잔액 등	3,338
직업능력개발	4,626	내일배움카드(일반) 집행잔액	2,290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 집행잔액 등	2,000
고용안전망확충	89,918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 집행잔액 등	89,890
고용평등증진	1,164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집행잔액	1,121
		중장년인턴제 집행잔액 등	23
노사정책	2,920	노동약자지원 집행잔액	2,554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집행잔액 등	358
근로조건보호 및 복지증진	775	근로조건개선지원 집행잔액	236
		외국인근로자고용관리 집행잔액	207
		근로감독역량강화 집행잔액 등	212
고용노동일반	2,655	고용노동행정 혁신역량강화 집행잔액 등	2,655

(바) 예비비

2025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의 배정액은 5,500만원이며 지출액은 5,500만원으로, 불용액은 없음.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배정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일반회계	55	55	0	0
고용노동행정정보화	55	55	0	0

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1) 세입결산

2025회계연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5억 6,200만원임. 이 중 9,400만원을 수납하여 수납률은 16.8%이며, 미수납액은 4억 6,700만원으로, 대부분 진폐위로금 등 부당이득 미회수 금액임.

[2025회계연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

(단위: 백만원, %)

과 목	예산액	징 수 결정액(A)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합 계	-	562	94	0	467	16.8
기타재산이자수입	-	5	5	0	0	100.0
기타경상이전수입	-	556	89	0	467	15.9

(2) 세출결산

2025회계연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316억 6,900만원으로, 이 중 1,316억 6,000만원을 지출하였음.

[2025회계연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예산액	예산변경 내역			예 산 현 액 (A)	지출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이·전용등					
합 계	131,669	0	0	0	131,669	131,660	0	9	100.0
진폐위로금	128,774	0	0	128	128,902	128,893	0	9	100.0
진폐건강진단	1,776	0	0	△30	1,746	1,746	0	0	100.0
진폐근로자지원	1,119	0	0	△98	1,021	1,021	0	0	100.0

라.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1) 세입결산

2025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405억 3,400만원임. 이 중 293억 1,900만원을 수납하여 수납률은 72.3%이며, 미수납액은 112억 1,600만원으로 대부분 보조금 집행잔액 미반납 금액임.

[2025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결산]

(단위: 백만원, %)

과 목	예산액	징수결정액(A)	수납액(B)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B/A)
합 계	21,822	40,534	29,319	0	11,216	72.3
지역지원계정	19,293	39,581	28,366	0	11,216	71.7
제주특별자치도계정	2,529	953	953	0	0	100.0

(2) 세출결산

2025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529억 200만원으로, 이 중 1,514억 3,200만원을 지출하여 14억 7,0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결산]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예산액	예산현액(A)	지출액(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B/A)
합 계	152,902	152,902	151,432	0	1,470	99.0
지역지원계정	137,864	137,864	136,394	0	1,470	98.9
제주특별자치도계정	15,038	15,038	15,038	0	0	100.0

마. 고등 · 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1) 세출결산

2025회계연도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984억 9,100만원으로, 이 중 3,873억 8,500만원을 지출하여 111억 5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고등 · 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예산액	예산현액(A)	지출액(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B/A)
합 계	398,491	398,491	387,386	0	11,105	97.2
한국폴리텍대학출연	349,414	349,414	338,435	0	10,978	96.9
한국기술교육대학교출연	49,077	49,077	48,950	0	127	99.7

3. 기금결산

가. 수입 및 지출 결산 총괄

(1) 수입결산 총괄

2025년 기금 수입계획현액은 고용보험기금 27조 6,955억원,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23조 4,181억원, 임금채권보장기금 9,142억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2조 1,829억원, 근로복지진흥기금 5,928억원 등 총 54조 8,036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7조 6,163억원(16.1%)이 증가하였음.

[2025회계연도 기금 수입결산 총괄]

(단위: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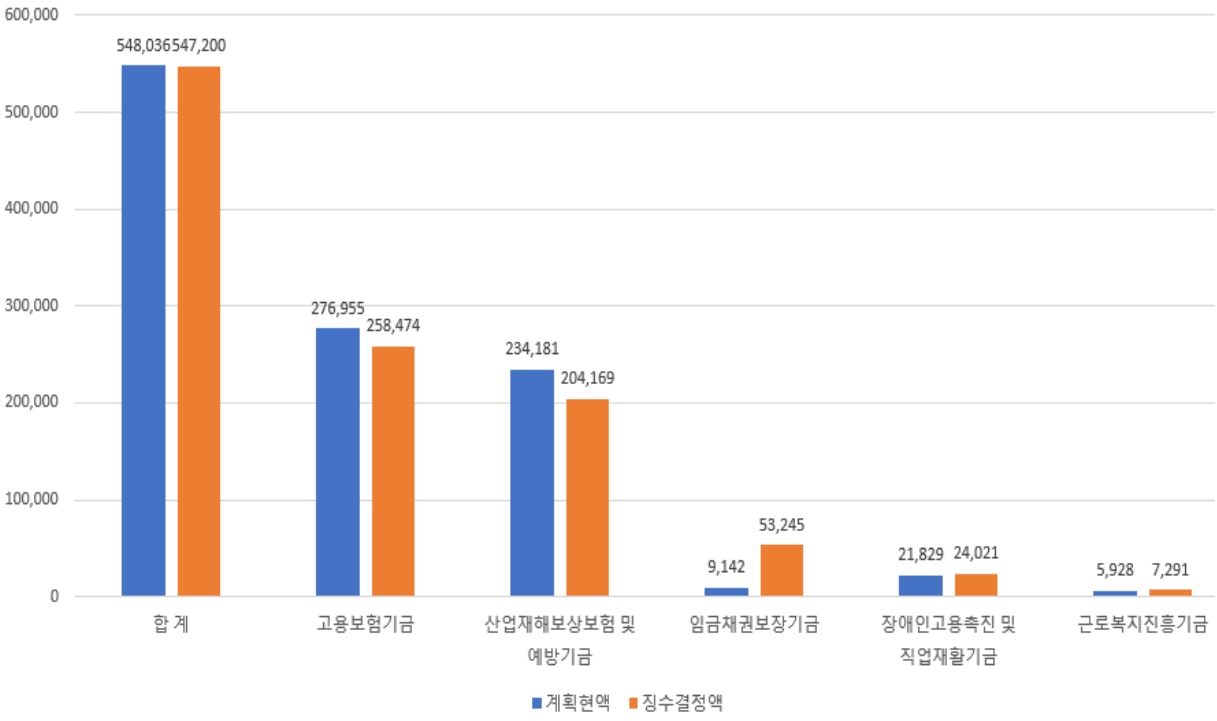
구 분	계획액	계획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합 계	548,036	548,036	547,200	464,671	3,605	78,921	84.9
	(471,873)	(471,873)	(492,678)	(414,311)	(3,765)	(74,602)	(84.1)
고용보험기금	276,955	276,955	258,474	237,133	776	20,565	91.7
	(234,136)	(234,136)	(241,774)	(220,679)	(680)	(20,415)	(91.3)
산업재해보상 보험및예방기금	234,181	234,181	204,169	189,025	1,036	14,108	92.6
	(202,950)	(202,950)	(171,273)	(155,923)	(991)	(14,359)	(91.0)
임 금 채 권 보 장 기 금	9,142	9,142	53,245	9,567	1,700	41,977	18.0
	(9,728)	(9,728)	(50,356)	(10,062)	(1,992)	(38,302)	(20.0)
장애인고용촉진 및직업재활기금	21,829	21,829	24,021	23,664	29	328	98.5
	(20,048)	(20,048)	(23,348)	(23,044)	(27)	(278)	(98.7)
근 로 복 지 진 흥 기 금	5,928	5,928	7,291	5,283	63	1,945	72.5
	(5,011)	(5,011)	(5,927)	(4,604)	(76)	(1,247)	(77.7)

주: 괄호는 2024회계연도 결산

수납액 기준으로는 고용보험기금 23조 7,133억원,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18조 9,025억원, 임금채권보장기금 9,567억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2조 3,664억원, 근로복지진흥기금 5,283억원 등 총 46조 4,671억원이고, 수납률은 84.9%임.

[기금별 계획현액 및 징수결정액 비교]

(단위: 억원)



각 기금별 계획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을 비교해 보면, 계획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이 임금채권보장기금은 582.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은 110.0%, 근로복지진흥기금은 123.0%로 나타나나, 고용보험기금은 93.3%,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은 87.2%로 나타남.

한편, 기금별 수납액 대비 미수납액의 규모를 비교해보면, 고용보험기금은 수납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이 8.6%,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은 7.5%, 임금채권보장기금은 438.8%,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은 1.4%, 근로복지진흥기금은 36.8%로 나타나고 있음.

(2) 지출결산 총괄(사업비)

기금 전체의 사업비 지출계획액은 29조 5,902억원, 계획현액은 31조 9,799억원으로 2조 3,897억원(계획액 대비 8.1%) 증가함.

기금 전체의 사업비 지출 실적을 보면, 계획액인 29조 5,902억원 보다 6.4%(1조 9,022억원)가 많은 31조 4,924원(계획현액 대비 98.5%)을 집행하였음.

[2025회계연도 기금 사업비 지출결산 총괄]

(단위: 억원)

구 분	계획액	계획현액 (A)	지출액(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합 계	295,902	319,799	314,924	3	4,872	98.5
	(278,674)	(294,099)	(288,348)	(0)	(5,751)	(98.0)
고용보험기금	178,066	198,309	194,189	1	4,119	97.9
	(164,058)	(175,908)	(172,837)	(0)	(3,072)	(98.3)
산업재해보상 보험및예방기금	100,176	100,899	100,662	2	235	99.8
	(98,222)	(98,232)	(95,668)	(0)	(2,564)	(97.4)
임금채권 보장기금	6,285	8,383	8,072	0	310	96.3
	(5,431)	(8,351)	(8,348)	(0)	(3)	(100.0)
장애인고용촉진 및직업재활기금	9,372	9,473	9,472	0	1	100.0
	(9,053)	(9,380)	(9,358)	(0)	(22)	(99.8)
근로복지 진흥기금	2,004	2,736	2,529	0	206	92.5
	(1,908)	(2,227)	(2,137)	(0)	(90)	(96.0)

주: 1. 괄호는 2024회계연도 결산
2. 사업비 지출 결산[여유자금운용, 기금·계정간 거래 미포함]

나. 고용보험기금

(1) 수입결산

2025회계연도 고용보험기금 수입결산 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 25조 8,474억원 대비 91.7%인 23조 7,133억원이 수납되었고, 2조 565억원이 미수납되었으며, 776억원이 불납결손 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고용보험기금 수입결산]

(단위: 억원, %)

구 분	계획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합 계	276,955	258,474	237,133	776	20,565	91.7
○사회보장기여금	206,073	207,746	189,177	663	17,906	91.1
- 고용주 부담금	124,947	126,399	115,276	385	10,738	91.2
- 피고용자 분담금	81,126	81,347	73,900	278	7,168	90.8
○재산수입	3,604	5,880	5,878	0	2	100.0
- 관유물대여료	3	4	4	0	0	100.0
-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3,601	5,876	5,874	0	2	100.0
○경상이전수입	2,347	4,677	1,907	113	2,657	40.8
- 과징금	-	15	0	0	15	0.0
- 가산금	52	112	48	8	56	43.3
- 기타경상이전수입	2,295	4,550	1,859	105	2,586	40.9
○잡수입	1	4	4	0	0.3	91.6
○융자원금회수	1,043	1,019	1,019	0	0	100.0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58,387	33,648	33,648	0	0	100.0
- 한국은행예치금 회수	1,000	1,333	1,333	0	0	100.0
-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57,387	32,315	32,315	0	0	100.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5,500	5,500	5,500	0	0	100.0
- 일반회계 전입금	5,500	5,500	5,500	0	0	100.0

(2) 지출결산

2025회계연도 고용보험기금 사업비 지출결산 내역을 보면, 계획현액 19조 8,309억원 중 97.9%인 19조 4,189억원이 지출되었고, 4,119억원이 불용처리되었음. 그 외 기금 간 거래 및 여유자금 운용 등으로 4조 2,944억원이 지출되었음.

고용보험기금 사업은 ①고용유지지원금, 고용창출장려금 등의 '고용창출', ②실업자 및 근로자능력개발지원 등의 '직업능력개발', ③실업급여 등의 '고용안전망확충', ④일·가정양립지원 등의 '고용평등증진', ⑤'고용노동행정지원' 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전체 집행액 중 그 비율이 가장 큰 사업은 '고용안전망확충' 사업으로, 사업비 기준 전체 집행액 19조 4,189억원 중 66.5%인 12조 9,047억원을 집행함. 그 외 '고용평등증진' 사업은 전체 집행액 중 25.0%인 4조 8,613억원,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전체 집행액 중 6.8%인 1조 3,261억원을 집행함.

한편, 2025년 고용보험기금 사업은 당초 계획액(17조 8,066억원)의 약 11.4% 규모의 금액인 2조 243억원을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증액하였는데, 주된 내역을 보면, ① '고용안전망확충'에서 실업급여 1조 6,900억원 등 총 1조 6,931억원, ② '고용평등증진'에서 일·가정양립지원 2,971억원 등 총 3,051억원, ③ '직업능력개발'에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지원 101억원 등 총 144억원을 증액하였음

[2025회계연도 고용보험기금 지출결산]

(단위: 억원)

사 업 명	계획액	전년 이월	계획 변경액	계획 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합 계	276,955	0	0	276,955	237,133	1	4,121
【 사업비 + 운영비 】	178,066	0	20,243	198,309	194,189	1	4,119
○ 고용창출	2,259	0	111	2,370	2,093	0	277
- 고용유지지원금	703	0	111	814	717	0	97
- 고용창출장려금	277	0	0	277	214	0	64
- 직업정보지원	41	0	0	41	41	0	0
- 고용전산망관리(정보화)	392	0	0	392	392	0	0
- 지역고용촉진지원	59	0	0	59	22	0	37
- 청년내일채움공제(고보)	95	0	0	95	37	0	58
- 고용보험징수관리	692	0	0	692	669	0	22
○ 직업능력개발	13,922	0	144	14,066	13,261	0	804
- 실업자및근로자능력개발지원	6,032	0	0	6,032	5,435	0	597
-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	3,007	0	0	3,007	2,918	0	89
- 중소기업능력개발지원	1,192	0	101	1,293	1,293	0	1
- 한국산업인력공단능력개발사업지원	2,766	0	±61	2,766	2,755	0	11
- 한국폴리텍대학능력개발사업지원	577	0	43	620	616	0	4
- 능력개발융자지원(융자)	348	0	0	348	245	0	103
○ 고용안전망확충	114,927	0	16,931	131,859	129,047	0	2,812
- 실업급여	114,426	0	16,900	131,325	128,524	0	2,801
- 자영업자실업급여	184	0	32	216	205	0	11
- 실업크레딧지원	317	0	0	317	317	0	0
○ 고용평등증진	45,780	0	3,051	48,831	48,613	0	218
- 일 · 가정양립지원	45,212	0	2,971	48,183	47,982	0	210
- 고령자고용촉진지원	567	0	81	648	631	0	17
○ 고용노동행정지원	1,178	0	6	1,084	1,175	1	8
【기금간 거래, 여유자금 운용】	98,890	0	△20,243	78,646	42,944	0	2

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1) 수입결산

2025회계연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수입결산 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 20조 4,169억원 대비 92.6%인 18조 9,025억원이 수납되었고, 1조 4,108억원이 미수납되었으며, 1,036억원이 불납결손 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수입결산]

(단위: 억원, %)

구 분	계획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미수 납액	수납률 (B/A)
합 계	234,181	204,169	189,025	1,036	14,108	92.6
○사회보장기여금	98,350	105,541	93,601	839	11,100	88.6
- 고용주부담금	95,869	102,681	91,011	838	10,832	88.6
- 피고용자분담금	2,481	2,860	2,590	1	268	90.6
○재산수입	9,887	14,055	14,055	-	-	100.0
- 관유물대여료	9	9	9	-	-	100.0
-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9,878	14,046	14,046	-	-	100.0
○경상이전수입	1,231	4,449	1,245	197	3,007	28.0
- 과징금	-	-	-	-	-	-
- 가산금	69	197	78	15	104	39.4
- 기타경상이전수입	1,162	4,252	1,167	182	2,903	27.4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33	108	108	-	1	100.0
○융자원금회수	2,257	2,084	2,084	-	-	100.0

○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71,487	27,548	27,548	-	-	100.0
- 한국은행예치금회수	240	421	421	-	-	100.0
-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71,247	27,127	27,127	-	-	100.0
○ 정부내부수입및기타	50,836	50,384	50,384	-	-	100.0
- 일반회계전입금	213	213	213	-	-	100.0
- 기금예탁원금회수	48,501	48,501	48,501	-	-	100.0
- 기금예탁이자수입	2,122	1,670	1,670	-	-	100.0

(2) 지출결산

2025회계연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사업비 지출결산 내역을 보면, 계획현액 10조 899억원 중 99.8%인 10조 662억원이 지출되었고, 235억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그 외 공자기금예탁금 4조 8,500억원 및 여유자금 운용으로 3조 9,863억원이 지출되었음.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사업은 ①산재보험급여, 산재근로자 재활복지 등의 '산재보험', ②안전보건재정지원 등의 '산업재해예방', ③ '고용노동행정지원' 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전체 집행액 중 그 비율이 가장 큰 사업은 '산재보험' 사업으로서, 사업비 기준 전체 집행액 10조 662억원 중 82.6%인 8조 3,192억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외에 '산업재해예방' 사업은 전체 집행액 중 12.8%인 1조 2,891억원을, '고용노동행정지원' 사업은 4.6%인 4,579억원을 집행하였음.

한편, 2025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사업은 당초 계획액(10조 176억원)의 약 0.7% 규모의 금액인 723억원을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증액하였는데, ‘산재보험’에서 산재근로자 재활복지지원 385억원, 산재근로자 요양관리 18억원,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66억원을 증액하였고, ‘산재예방’에서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안전보건재정지원) 15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금운영비’(고용노동행정지원)에서 근로복지공단 인건비 7억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인건비 96억원, 산재예방운영기타경비 1억원을 증액하였음.

[2025회계연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지출결산]

(단위: 억원)

구 분	계획액	전년 이월	계획 변경액	계획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합 계	234,181	-	-	234,181	189,025	2	235
【 사업비 + 운영비 】	100,176	-	723	100,899	100,662	2	235
○산재보험	82,764	-	468	83,232	83,192	-	40
- 산재보험급여	80,043	-	-	80,043	80,043	-	-
- 산재근로자재활복지	906	-	385	1,291	1,291	-	-
- 산재근로자 요양관리	97	-	18	115	115	-	-
- 산재의료사업지원	797	-	-	797	797	-	-
- 산재보험시설	74	-	-	73	65	-	8
- 산재보험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191	-	-	191	191	-	-
- 산재보험료징수관리	513	-	-	513	484	-	29
- 산재근로자복지(융자)	143	-	66	209	205	-	4

○ 산업재해예방	12,932	-	150	13,082	12,891	-	191
- 안전보건재정지원	9,406	-	150	9,556	9,463	-	93
- 안전보건기술지원	2,901	-	-	2,907	2,818	-	89
- 안전보건문화확산	399	-	-	399	394	-	5
- 안전보건기반조성	220	-	-	220	216	-	3
○ 고용노동행정지원	4,481	-	104	4,585	4,579	2	4
【기금간거래】 공자기금 예탁금	48,500	-	-	48,500	48,500	-	-
【 여유자금운용 】	85,505	-	△723	84,783	39,863	-	-

라. 임금채권보장기금

(1) 수입결산

2025회계연도 임금채권보장기금 수입결산 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 5조 3,245억원 대비 18.0%인 9,567억원이 수납되었고, 4조 1,977억원이 미수납되었으며, 1,700억원이 불납결손 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임금채권보장기금 수입결산]

(단위: 억원, %)

구 분	계획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합 계	9,142	53,245	9,567	1,700	41,977	18.0
○ 재산수입	223	328	284	1	42	86.6
- 기타민간이자수입	25	38	21	1	16	55.3
- 기타재산이자수입	47	61	35	0	26	57.4
- 기타재산이자외수입	151	228	228	0	0	100.0
○ 경상이전수입	6,296	49,075	6,161	1,673	41,241	12.6
- 가산금	1	3	1	0	2	33.3
- 법정부담금	4,307	4,789	4,321	24	444	90.2
- 기타경상이전수입	1,988	44,283	1,839	1,649	40,795	4.2
○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737	1,067	347	26	694	32.5
-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737	1,067	347	26	694	32.5
○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810	1,699	1,699	0	0	100.0
- 한국은행 예치금회수	47	46	46	0	0	100.0
-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763	1,653	1,653	0	0	100.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1,076	1,076	1,076	0	0	100.0
- 일반회계전입금	1	1	1	0	0	100.0
- 기금예탁원금회수	500	500	500	0	0	100.0
- 기금예수금	570	570	570	0	0	100.0
- 기금예탁이자수입	5	5	5	0	0	100.0

(2) 지출결산

2025회계연도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비 지출결산 내역을 보면, 계획현액 8,383억원 중 96.3%인 8,072억원이 지출되었고, 310억원이 불용처리되었음. 그 외 공자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10억원이 불용 및 여유자금 운용으로 1,495억원이 지출되었음.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은 ①대지급금 지급 등의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및 ②'고용노동행정지원' 사업으로 구분되는데,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사업은 사업비 기준 전체 집행액 8,209억원 중 96.2%인 7,898억원을 집행하였으며, '고용노동행정지원' 사업은 100.0%인 174억원을 집행하였음.

한편, 2025년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은 당초 계획액(6,285억원)의 약 33.4% 규모의 금액인 2,098억원을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증액하였는데, 주된 내역을 보면,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에서 대지급금 지급 1,897억원, 체불청산지원 융자 160억원을 증액하였음.

[2025회계연도 임금채권보장기금 지출결산]

(단위: 억원)

구 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 획 변경액	계획현액	지출액	불용액
합 계	9,142	0	0	9,142	9,567	320
【사업비 + 운영비】	6,285	0	2,098	8,383	8,072	310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6,112	0	2,097	8,209	7,898	310
- 대지급금 지급	5,293	0	1,897	7,190	6,885	306
- 체불근로자조력지원	115	0	39	154	154	0
- 체불청산 지원 융자	704	0	160	864	859	4
○고용노동행정지원	173	0	1	174	174	0
【기금간거래】 공자기금 예수금이자상환	10	0	0	10	0	10
【여유자금운용】	2,847	0	△2,098	749	1,495	0

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1) 수입결산

2025회계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수입결산 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 2조 4,021억원 대비 98.5%인 2조 3,664억원이 수납되었고, 328억원이 미수납되었으며, 29억원이 불납결손 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수입결산]

(단위: 억원, %)

구 분	계획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합 계	21,829	24,021	23,664	29	328	98.5
○ 재산수입 등	230	1,435	1,435	0	0	100.0
○ 경상이전수입	9,339	9,428	9,071	29	328	96.2
- 가산금	13	25	16	0	9	64.0
- 법정부담금	9,177	9,132	8,862	24	247	97.0
- 기타경상이전수입	149	270	192	5	72	71.1
○ 융자원금회수	66	77	77	0	0	100.0
○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5,001	6,913	6,913	0	0	100.0
○ 정부내부수입및기타	7,194	6,169	6,169	0	0	100.0

(2) 지출결산

2025회계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사업비 지출결산 내역을 보면, 계획현액 9,473억원 중 99.99%인 9,472억원이 지출되었고, 1억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그 외 여유자금 운용으로 7,192억원, 공자기금 예탁금 등으로 7,000억원이 지출되었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사업은 ①장애인고용지원 등의 '장애인고용증진' 및 ②'고용노동행정지원' 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장애인고용증진' 사업은 사업비 기준 전체 집행액 9,472억원 중 90.9%인 8,613억원을 집행하였으며, '고용노동행정지원' 사업은 9.1%인 859억을 집행하였음.

한편, 2025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사업은 당초 계획액(9,372억원)의 약 1.1% 규모의 금액인 101억원을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증액하였는데, 주된 내역을 보면, '장애인고용증진' 중 장애인고용지원 101억원을 증액하였음.

[2025회계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지출결산]

(단위: 억원, %)

구 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 획 변경액	계획현액	지출액	불용액
합 계	21,829	0	0	21,829	23,664	1
【사업비 + 운영비】	9,372	0	101	9,473	9,472	1
○장애인고용증진	8,513	0	101	8,614	8,613	1
- 장애인고용지원	6,997	0	101	7,098	7,098	0
- 장애인고용인프라지원	726	0	0	726	726	0
- 장애인직업능력제고	651	0	0	651	651	0
- 장애인고용연구및인식개선	86	0	0	86	86	0
- 장애인고용증진융자(융자)	11	0	0	11	10	1
- 장애인고용정보화	42	0	0	42	42	0
○고용노동행정지원	859	0	0	859	859	0
【기금간거래】 공자기금 예탁금 등	7,000	0	0	7,000	7,000	0
【여유자금운용】	5,457	0	△101	5,356	7,192	0

바. 근로복지진흥기금

(1) 수입결산

2025회계연도 근로복지진흥기금 수입결산 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 7,291억원 대비 72.5%인 5,283억원이 수납되었고, 1,945억원이 미수납되었으며, 63억원이 불납결손 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근로복지진흥기금 수입결산]

(단위: 억원, %)

구 분	계획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합 계	5,928	7,291	5,283	63	1,945	72.5
○ 재산수입	91	91	88	-	3	96.7
○ 경상이전수입	122	2,107	106	63	1,938	5.0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31	92	92	-	-	100.0
○ 융자원금회수	1,747	1,773	1,771	-	2	99.9
○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2,122	1,516	1,516	-	-	100.0
○ 정부내부수입및기타	1,715	1,712	1,710	-	2	99.9

(2) 지출결산

2025회계연도 근로복지진흥기금 사업비 지출결산 내역을 보면, 계획현액 2,736억원 중 92.4%인 2,529억원이 지출되었고, 206억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그 외 여유자금 운용으로 1,340억원, 기금 간 거래 등으로 1,413억원이 지출되었음.

근로복지진흥기금 사업은 ①근로자복지지원,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등의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과 ②'고용노동행정지원 등' 사업으로 구분되는데,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사업은 사업비 기준 전체 집행액 2,529억원 중 93.6%인 2,367억원을 집행하였으며, '고용노동행정지원'은 6.4%인 162억원을 집행하였음.

한편, 2025년 근로복지진흥기금 사업은 당초 계획액(2,004억원)의 약 36.5% 규모의 금액인 731억원을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증액하였는데, 주된 내역을 보면,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에서 신용보증대위변제 546억원,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149억원, 퇴직연금사업 운영 36억원 등을 증액하였음.

[2025회계연도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출결산]

(단위: 억원)

구 분	계획액	계획 변경 등	계획 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합 계	5,661	267	5,928	5,283	0	206
【사업비 + 운영비】	2,004	731	2,736	2,529	0	206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1,839	731	2,570	2,367	0	203
- 근로자복지지원	608	36	644	579	0	64
-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914	149	1,063	925	0	139
- 신용보증대위변제	317	547	863	863	0	0
○고용노동행정지원 등	165	0	165	162	0	3
【기금, 계정간거래】	1,147	267	1,413	1,413	0	0
【여유자금운용】	2,510	△731	1,779	1,340	0	0

Ⅱ. 결산 검토의견

1. 세입 결산

(1) 과징금(일반회계, 56-565)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과징금’은 「산업안전보건법」[3]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대행기관 등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4]에 따라 부정청구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제재부가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5]에 따

---

3)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영업정지의 요청) 및 제160조(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등
제159(영업정지의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발주 시 필요한 제한을 해당 사업자에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많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제5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60조(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1조제4항(제74조제4항, 제88조제5항, 제96조제5항, 제126조제5항 및 제135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업무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4)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① 행정청은 부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부과하는 제재부가금 등의 수입임.

과징금의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36억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27억 4,700만원으로, 이 중 29억 5,400만원을 수납하고 597억 9,300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불납결손액은 없음.

[2025회계연도 과징금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과징금	3,600	3,600	3,600	62,747	2,954	59,793	-	3,803

* 자료: 고용노동부

나. 과징금 미수납액 비중 증가에 대한 개선 필요

최근 5년간 과징금 결산 내역을 보면, 과징금 예산 규모가 확대되는 가운데 징수결정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수납액은 이에 비례하여 증가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미수납액은 2021년 105억 4,600만원에서 2025년 597억 9,300만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도 2024년 이후 4.7%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과징금 미수납이 누적되는 상황임.

[최근 5년간 과징금 결산 내역 및 2026년 예산]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1	78	78	-	78	12,321	1,775	2276.1	14.4	10,546	-
2022	78	78	-	78	28,369	4,682	6002.2	16.5	23,687	-
2023	1,072	1,072	-	1,072	34,026	4,343	405.1	12.8	29,683	-
2024	2,275	2,275	-	2,275	50,549	2,385	104.8	4.7	48,164	-
2025	3,600	3,600	-	3,600	62,747	2,954	82.1	4.7	59,793	-
2026	3,803	3,803	-	-	-	-	-	-	-	-

* 자료: 고용노동부

또한, 2025년 일반회계 세입 과목별 수납액 및 미수납액을 보면, 과징금은 수납액 비중(2.5%)에 비해 미수납액 비중(30.9%)이 높아 일반회계 미수납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비해 기타경상이전수입은 수납액 비중(53.6%)이 미수납액 비중(26.7%)보다 높아 과징금과 대비되는 모습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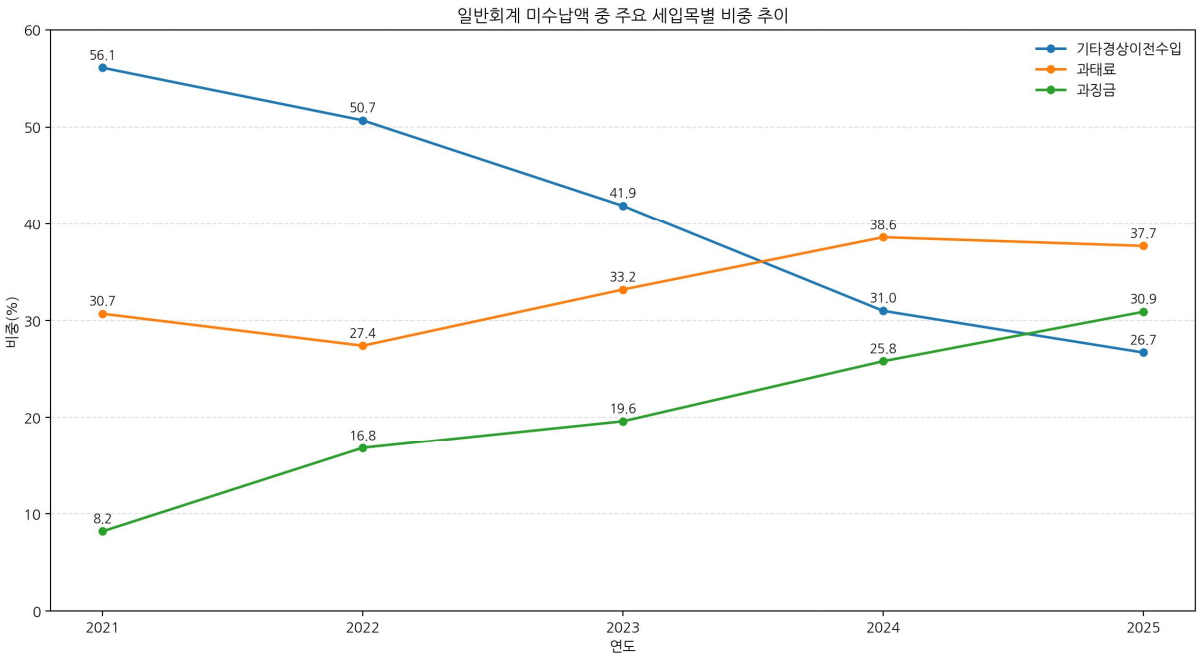
[2025년 일반회계 세입 과목별 수납액 및 미수납액 비중]

(단위 : 백만원, %)

목	미수납액		수납액	
	금액	비중	금액	비중
563목 과태료	72,997	37.7	46,201	38.6
565목 과징금	59,793	30.9	2,954	2.5
596목 기타경상이전수입	51,632	26.7	64,127	53.6
581목 가산금	7,520	3.9	266	0.2
546목 기타재산이자수입	702	0.4	5,945	5.0
561목 벌금및과료	518	0.3	0	0.0
564목 징계부과금	362	0.2	47	0.0
571목 변상금	31	0.0	8	0.0
691목 기타잡수입	10	0.0	109	0.1
572목 위약금	4	0.0	0	0.0
513목 기타관유물대여료	2	0.0	0	0.0
594목 민간출연금	2	0.0	0	0.0
511목 토지대여료	0	0.0	0	0.0
512목 건물대여료	0	0.0	0	0.0
651목 면허료및수수료	0	0.0	9	0.0
합계	193,573	100.0	119,666	100.0

* 자료: 고용노동부

아울러 일반회계 미수납액에서 각 세입 과목이 차지하는 비중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기타경상이전수입은 2021년 56.1%의 비중으로, 미수납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2025년에는 그 비중이 26.7%로 감소한 반면, 과징금은 같은 기간 8.2%에서 30.9%로 증가하여 일반회계 미수납액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음.



* 자료: 고용노동부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과징금의 경우 영세사업자가 주요 대상으로 휴·폐업 등 납부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6] 분할납부를 허용하여 단기간 내 수납률을 제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함.

그러나 과징금 미수납액은 최근 5년간 5배 이상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미수납액에서 과징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8.2%에서 30.9%로 확대되는 등 과징금 미수납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과징금은 법령상 의무 위반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미수납이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것은 제재의 실효성을 저하시키고 법령 준수 유인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과징금 미수납의 발생 원인과 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여 실효성 있는 징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6) 미수납액 중 휴·폐업 상태 체납자의 미수납액 비중: 48.2%

(2) 기타재산이자외수입(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54-547),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85-853)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내 **'기타재산이자외수입'**은 여유자금의 금융기관 예탁운용에 따른 수입이며,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는 여유자금 환매를 통한 원금회수액임.

'기타재산이자외수입'의 2025년 계획현액은 205억 2,000만원,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412억 6,200만원이며,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의 2025년 계획현액은 4,991억 9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6,905억 2,800만원임.

[2025회계연도 기타재산이자외수입 및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계획액		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계획액
	당초	수정						
기타재산이자외수입	20,520	20,520	20,520	141,262	141,262	-	-	50,889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499,109	499,109	499,109	690,528	690,528	-	-	697,898

* 자료: 고용노동부

나. 여유자금 관련 세입 추계 신뢰도 제고 필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세입 중 ‘기타재산이자외수입’과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는 기금 여유자금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으로, 각각 금융기관 예탁에 따른 이자 수입과 수익증권·MMF[7] 등의 환매에 따른 원금 회수액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결산 실적을 살펴보면 동 세입항목은 예산 대비 실제 수납액의 차이가 지속적으로 크게 발생하고 있음. ‘기타재산이자외수입’의 경우 2025년 계획액은 205억 2,000만원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1,412억 6,200만원으로 계획 대비 688.4%에 달하였으며, 최근 4년간 수납률도 150.4%~688.4%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연도별 기타재산이자외수입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당초	수정(A)					
2022	15,479	15,479	15,479	39,108	39,108	252.7	100.0
2023	16,165	16,165	16,165	24,320	24,320	150.4	100.0
2024	20,449	20,449	20,449	89,238	89,238	436.4	100.0
2025	20,520	20,520	20,520	141,262	141,262	688.4	100.0
2026	50,889	50,889	-	-	-	-	-

* 자료: 고용노동부

7) MMF(Money Market Fund)는 고객이 운용사에 자금 운용을 맡기고, 운용사가 이 자금을 우량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해 매일 발생한 수익을 원금에 더해주는 초단기 금융상품을 말함.

또한,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역시 2025년 계획액 4,991억 900만원 대비 실제 수납액은 6,905억 2,800만원으로 계획 대비 138.4%를 기록하였으며, 최근 4년간 수납률도 지속적으로 100%를 상회하고 있음.

[연도별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당초	수정(A)					
2022	532,842	532,842	532,842	535,243	535,243	100.5	100.0
2023	508,988	508,988	508,988	596,456	596,456	117.2	100.0
2024	501,379	501,379	501,379	669,526	669,526	133.5	100.0
2025	499,109	499,109	499,109	690,528	690,528	138.4	100.0
2026	697,898	697,898	-	-	-	-	-

* 자료: 고용노동부

기금 여유자금 운용 규모는 경기 상황, 금리 수준, 사업 집행 속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일정 수준의 추계 오차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특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은 상당한 규모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어 자금 운용 방식이나 만기 구조에 따라 실제 수익과 회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면이 있음.

그러나, ‘기타재산이자외수입’의 경우 최근 4년간 실제 수납액이 예산액의 1.5배에서 최대 6.9배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

한 시장 변동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이는 여유자금 규모, 운용계획 및 만기도래 자산 현황 등이 세입 추계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이 실제 세입 규모와 예산 간 괴리가 반복될 경우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데, 기금 수입액은 향후 기금 운용계획과 재정수지 전망의 기초가 된다는 점, 최근 대규모 적립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상기 수입과목은 여유자금과 관련된 수입으로서 기금의 여유자금 규모와 만기 도래 자산 현황은 일정 부분 예측 및 통제가 가능한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여유자금 운용 실적과 자산 만기구조 등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세입 추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세출 결산

《 기획조정실 》

[정책기획관]

(1) 고용노동행정(정보화)(일반회계, 7034-500)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고용노동행정(정보화)’ 사업(1985년~, 직접)은 홈페이지, 전자민원, 내부업무 포털, 근로감독행정 등 고용노동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고용노동부 본부, 지방고용노동지청(48개), 위원회(15개), 고객상담센터 및 산하기관의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함으로써 고용노동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25회계연도 예산액은 217억 100만원이었으나, 예비비 5,50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217억 5,600만원이 되었으며, 이 중 216억 2,000만원을 집행하고, 1,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2,0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고용노동행정(정보화) 사업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B)	이·전용 등 (C)	예비비	예산 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 고용노동행정 (정보화)	21,701	21,701	-	±29	55	21,756	21,620	17	120	23,739
▪ 정보시스템 구축	588	588	-	23	55	666	639	17	10	847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4,591	4,591	-	△23	-	4,568	4,515	-	53	5,041
▪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1,811	1,811	-	-	-	1,811	1,809	-	2	1,811
▪ 전산장비·SW 구매	2,161	2,161	-	-	-	2,161	2,161	-	-	1,623
▪ 정보시스템 운영	12,550	12,550	-	-	-	12,550	12,496	-	54	12,450

* 자료: 고용노동부

나. 예비비 요건 해당 여부의 엄밀한 검토 필요

내역사업인 ‘정보시스템 구축’은 고용노동부 직원용 업무포털, 대국민 고용노동정책 홈페이지 및 노동관계법 관련 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데이터 개방과 데이터기반 행정을 지원하는 사업임.

동 사업은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6억 6,600만원 중 6억 3,900만원을 집행하고 1,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0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정보시스템 구축	588	23	55	666	639	17	10
노사누리시스템 복구	-	20	55	78	75	-	-

* 자료: 고용노동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당초 예산액은 5억 8,800만원이었으나, 2025년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노사누리시스템[8]을 복구하기 위하여 다른 내역사업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에서 2,000만원을 자체전용하고, 예비비 5,500만원을 배정받아 노사누리시스템 복구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였음.

8) 고용노동부의 행정 및 민원 처리를 위한 노동포털

[노사누리시스템 복구를 위한 이·전용 및 예비비 배정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5.11.24.)	고용노동행정 (정보화) (7034-500)	관리용역비 (210-15)	20*	고용노동행정 (정보화) (7034-500)	일반연구비 (260-01)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복구
예비비 ('25.11.13.)	-	-	55	고용노동행정 (정보화) (7034-500)	일반연구비 (260-01)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복구

* 주: 전체 전용액 2,300만원이었으나 이 중 노사누리시스템 복구 비용은 2,000만원, 나머지 300만원은 개인정보시스템 복구 비용임

* 자료: 고용노동부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2024년 기준 노사누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민원 38만 건이 접수되고, 3천여 명의 근로감독관이 78만 건의 업무를 처리하는 등 시스템의 활용도가 높아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필요하였고, 이에 솔루션 개발업체 투입 등 복구에 필요한 예산 7,500만원 중 2,000만원은 관리용역비를 자체전용하고, 부족한 5,500만원은 예비비를 배정받아 충당하였다고 설명함.

이에 따라 노사누리시스템 장애 복구 사업은 2025년 12월 8일 7,5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였으며, 같은 달 24일 과업을 완료하였음.

[2025년 노사누리 시스템 장애 복구 사업 계약 현황]

(단위 : 천원)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자	계약금액	시작일	종료일
노사누리 시스템 장애 복구 사업	수의	(주)비인텍	75,000	2025-12-08	2025-12-24

* 자료: 고용노동부

노사누리시스템 장애 복구 사업은 예비비를 활용하여 긴급하게 추진된 만큼 예비비의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예비비 요구에 앞서 당초 본예산 편성시 예측할 수 없었는지, 연도 중에 시급하게 지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기정예산으로 충당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9)]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본예산 편성 당시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하고, 노사누리시스템이 다수의 민원 접수와 근로감독 업무 처리에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신속한 복구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다만, 노사누리시스템 복구 비용은 총 7,500만원으로 고용노동행정(정보화) 사업의 전체 예산(217억 100만원) 규모에 비해 크지 않았고, 복구 비용 중 2,000만원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의 관리용역비를 자체전용하여 충당하였다는 점에서, 나머지에 대해서도 기정예산의 집

9)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25, p. 141.

가. 예비비의 요구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 요구에 앞서 당초 본예산 편성시 예측할 수 없었는지, 연도 중에 시급하게 지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기정예산으로 충당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행잔액이나 이·전용 가능 재원을 우선 활용할 수 있었는지 충분한 검토가 부족한 측면이 있어 보임.

특히 2025회계연도 고용노동행정(정보화) 사업에서 총 1억 2,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예비비 요구 당시 집행 전망과 가용재원에 대한 검토가 다소 미흡했던 측면이 있어 보임. 물론 불용액은 회계연도 종료 후 확정된 결과이므로 이를 근거로 예비비 배정이 부적절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예비비 요구에 앞서 기정예산으로 충당 가능한 재원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었음.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향후 예비비를 요구하기에 앞서 세부사업별 집행 현황과 불용 예상액, 이·전용 가능 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기정예산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예비비를 요구하는 등 예비비 운용의 적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국제협력관]

(1) 고용노동 국제협력 및 통상협상 대응(일반회계, 3050-301)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고용노동 국제협력 및 통상협상 대응’ 사업(2004년 ~, 직접·해외이전·출연)은 선진국의 고용노동정책 경험 공유, 한국 고용노동정책의 대외안내, 국제기구 등과의 다자교류 협력을 통해 국가 위상을 강화하고, FTA 고용노동분야 협상 및 협정 이행에 대응하여 국익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임.

동 사업의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29억 8,900만원으로, 이 중 29억 3,700만원이 집행되었고, 5,2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고용노동 국제협력 및 통상협상 대응 사업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B)	이·전용 등 (C)	예비비	예산 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 고용노동 국제협력 및 통상협상 대응	2,989	2,989	-	-	-	2,989	2,937	-	52	1,215
▪ 고용노동분야 국제기구 및 다자교류협력 강화	2,386	2,386	-	-	-	2,411	2,411	-	-	758
▪ 고용노동분야 통상협정 대응	603	603	-	-	-	578	526	-	52	457

*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의 내역사업은 ① 한-OECD 공동연구 사업 수행 및 고용노동분야 국제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고용노동분야 국제기구 및 다자교류협력 강화'와 ② FTA 협상전략 구축, FTA 협정 사항 이행 및 당사국 간 노동 분야 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고용노동분야 통상협정 대응'으로 구성되어 있음.

나. APEC 고용노동장관회의의 성과 관리 미흡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분야 국제기구 및 다자교류협력 강화' 내역사업 예산현액 24억 1,100만원 중 80%가 넘는 19억 3,800만원을 APEC 고용노동장관회의에 집행하였음.

APEC 고용노동장관회의[10]는 APEC 회원국의 고용·노동·인적자원 담당 장관들이 모여 노동시장·일자리·인력양성 정책을 논의하는 각료급 회의로 2025년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APEC 정상회의을 개최하면서 고용노동부가 부수적으로 개최하였음.

이 회의는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노동시장과 일자리(Sustainable Labour Markets and Jobs for the Future)"라는 의제로 2025년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제주도에서 진행되었고, 국제장애고용포럼과 사회보장네트워크(LSPN) 및 능력개발네트워크(CBN), HRDWG(HUMAN RESOURCES DEVELOPMENT WORKING GROUP) 총회가 본회의에 연계되어 개최되었음.[11]

이 회의는 19억 3,800만원을 집행하여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심사·사후평가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으나[12] 그 기준인 20억에서 약 3% 낮

---

10) 2025회계연도 결산 공통요구자료 Ⅱ-1에는 'APEC 인적자원개발회의'로 명시되어 있음

11) 국제장애고용포럼이 2025년 5월 6일 사회보장네트워크(LSPN) 및 능력개발네트워크(CBN)가 5월 8일부터 9일까지, HRDWG 개회총회와 폐회총회가 각각 5월 7일 및 10일에 개최됨

12)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역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행사 중에서 20억원 이상의 국고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해당 국제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의 예산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되는 경우

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국제행사라는 점에서 준비과정부터 결과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한 결과보고서가 작성될 필요가 있음.

다자회의의 개최 목적이 의제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각료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국가의 위상을 제고하는 것임을 고려하였을 때, 고용노동부는 행사의 시행주체로서 결과보고서 작성을 통해 행사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회의 개최 이후 민간 행사대행업체로부터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았는데,[13]

민간 행사대행업체의 결과보고서는 행사장 조성과 홍보물 제작 및 게시, 부대행사 등 민간 행사대행업체가 수행한 용역 내용 위주로 작성되어 행사 준비·진행과정에서의 주체 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의 역할[14]을 알기 어려운 면이 있음.

해당 결과보고서에는 회의 개최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진행 의

---

2. 광역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제행사의 경우, 광역자치단체가 총사업비의 40% 미만을 부담하는 경우

제17조(국제행사 진행상황 및 개최결과 보고) ② 국제행사 주관기관은 행사 종료후 3월 이내에 당해 국제행사 개최결과보고서를 해당 국제행사를 주관하는 기관의 소관감독중앙행정기관 및 위원회(중앙행정기관이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한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6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3) 고용노동부는 이와 별개로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보고를 위해 회의결과를 정리한 문서를 자체적으로 작성하였다고 설명하였으며, 해당 문서에는 행사 개요, 공동성명 주요 의제 등이 간략하게 포함되어 있음 ['25년 APEC 고용노동장관회의 결과보고 참고자료('25년 5월), 고용노동부 국제개발협력팀]

14) 회의에서의 역할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장관회의 전체 의제 설정, 실무회의 의제 설정, 공동성명문 작성 및 회원경제체 간 의견조율, 장관회의와 실무회의에서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발언문 작성 등의 역할을 하였고, 이외에도 행사장 조성 및 회의 시스템 설치, 참가자 초청 및 출입국 지원, 참가자 수송·숙박, 장관회의 홍보, 결과물 제작 등의 과업에 있어서 검토 및 선정 등 의사결정을 고용노동부가 총괄해서 수행하고 민간대행업체는 이와 관련한 실제 집행 등 실무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설명함

제 도출이나 공동성명서의 채택 과정과 회의에서 논의된 참석자 주요 발언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고, 회의에서 참가국들이 취하였던 입장 등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고용노동부가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등 7개 경제체와 가졌던 양자면담과 관련해서도 면담록이 작성되지 않아 양자면담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국제회의의 결과보고서는 외교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향후 유사 행사 개최 시 참고가 되며, 회의의 성과나 예산 집행의 효과 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바, 향후 유사한 국제행사 개최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행사 주체의 관점에서 회의 준비과정이나 회의 내용·결과 등이 충실히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2025년 기획재정부가 주관하여 개최되었던 2025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는 행사의 준비과정과 기대효과, 협업체계 구축, 행사 추진 결과까지 모든 과정을 총망라하고, 콘텐츠 측면에서 드래프팅 지연이나 불발에 대비한 계획안들과 주요 쟁점사항을 대표단의 발언 위주로 기록하면서 합의에 이르는 상황을 상세하게 서술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함.[15)]

15) 2025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의 결과보고서(발간번호 11-1051000-100165-01)

(2)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개발협력(일반회계, 3050-302)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개발협력(ODA)’ 사업(2012년 ~, 직접·출연)은 개도국에 우리나라의 고용노동분야 정책발전경험을 공유·전수하기 위한 정책자문과 공공고용서비스 시스템 구축 지원 등의 공적개발원조(ODA)를 하고, 우리나라와 밀접한 지역협력체인 ASEAN과 세계은행(World Bank)과 같은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고용노동정책의 국제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임.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03억 4,100만원으로, 103억 3,000만원이 집행되었고, 1,1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개발협력(ODA)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개도국 고용노동 분야 개발협력	10,325	10,325	16	-	-	10,341	10,330 [9,132]	-	11	8,599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정책역량강화	3,803	3,803	16	-	-	3,819	3,808 [2,610]	-	11	2,320
▪다자금융기구 및 지역협의체를 통한 고용노동정책 교류	243	243	-	-	-	243	243	-	-	-
▪한-ILO 협력사업	6,279	6,279	-	-	-	6,279	6,279	-	-	6,279

* 자료: 고용노동부

나. 반복되는 ODA 사업 출연금 이월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필요

동 사업의 내역사업 중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정책역량강화'(예산액 38억 300만원) 사업은 개도국에 우리나라의 직업훈련·산업안전·고용서비스 등 고용노동분야의 정책과 시스템을 공유·전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서, 직접수행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고용노동부 소관 공공기관의 출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음.

[2025년도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정책역량강화 사업 예산 편성 내역]

※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정책역량강화: 3,803백만원

□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제도구축(직접·출연): 590백만원
- 제도구축 지원 정책컨설팅: 450백만원(150백만원×3개국)
- 제도구축지원사업 정책협의: 70백만원(업무추진비 4.5백만원, 국외여비 39.6백만원, 자료발간 등 25.9백만원)
- 사업평가: 70백만원(평가용역, 사전타당성 조사)

□ 개도국 직업훈련분야 역량강화(출연): 3,213백만원
① 개도국 기술격차 해소를 위한 기능경기 역량강화: 600백만원
- 전문가 파견: 134백만원 - 초청연수: 325백만원
- 공구 및 재료: 62백만원 - 사업관리 및 기타: 79백만원

② 캄보디아 귀국 이주노동자 재통합 지원 사업: 1,890백만원
- 정책관리자 역량강화: 472백만원
- 직업훈련 역량강화 236백만원
- 지원센터 인테리어 및 기자재: 1,182백만원

③ 네팔 해외취업 근로자 직업역량 강화: 364백만원
- 전문가 파견: 142백만원 - 국내 초청연수: 93백만원
- 사업관리비 129백만원

④ 아세안 직업기술교육훈련 역량강화(학위과정): 359백만원

* 자료: 고용노동부

이 중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캄보디아 귀국 이주노동자 재통합 지원사업’은 귀국 이주노동자의 적응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정책 관련자를 교육하며, 필요한 기자재를 구비하여 캄보디아 국립기술대학(NPIC) 내 재통합지원센터를 건립·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4년에 걸쳐 47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ODA사업임.

[캄보디아 귀국 이주노동자 재통합 지원사업 연도별 시행 계획]

시행연도	사업시행	예산
2024	관리자 및 실무자 대상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컨설팅 및 연수	709백만원
2025	재통합 지원센터 설립 및 기자재 지원	1,890백만원
2026	교육 및 전문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1,063백만원
2027	창업컨설팅 매뉴얼 개발 및 컨설팅 운영	1,063백만원

* 자료: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Ⅱ) P.777

이 사업은 2024년 사업을 시작한 이후 반복적으로 다음연도로 예산이 이월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2024년의 경우 수원국의 사업대상 지역 변경 요청 등으로 사업의 상당 부분이 지체되었으며, 2025년의 경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조달청 입찰이 지연[16]되며 이월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16) 화재로 행정부 시스템이 마비되며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도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리모델링 업체선정 입찰 공고 등 절차를 진행하지 못함

[캄보디아 지원사업 연도별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예산	교부액(A)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A+B)	실집행액(C)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C/(A+B)]
2024	709	709	-	709	222	487	-	31%
2025	1,890	1,890	487	2,377	941*	1,436	-	40%
2026.7월	500	350	1,436	1,785	838	-	-	-

* 주: 2024년 이월액 4억 8,700만원(초청연수, 정책컨설팅,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2025년 전액 집행함)
+ 2025년 예산 4억 5,400만원

* 자료: 고용노동부

캄보디아 사업의 경우 2024년 예산액 7억 900만원의 약 70%에 가까운 4억 8,700만원을 집행하지 못하여 이월을 했고, 조달청 입찰 지연으로 2025년 계획된 사업이 전부 시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고용노동부는 2025년에 예산 18억 9,000만원을 모두 교부하며 출연금의 이월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음.

[캄보디아 귀국 이주노동자 재통합 지원사업 연도별 이행 현황]

시행연도	1차년도('24년)			2차년도('25년)		
구분	계획	집행	이월	계획	집행	이월
예산	7.09억원	2.22억원	4.87억원	18.9억원(본)	4.54억원	14.36억원
				4.87억원 (이월)	4.87억원	
사업 내용 상세	관리자 및 실무자 대상	훈련과정 수요조사 및 분석(기초선	역량강화 워크숍· 초청연수,	재통합 지원센터 설립 및	정책관리자 초청연수, 직업훈련	재통합 지원센터 인테리어

시행 연도	1차년도('24년)			2차년도('25년)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컨설팅 및 연수	조사), 지원센터 역량강화 컨설팅, 재통합 지원사업 사무실 행정	이주 노동자 관련 제도 컨설팅,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운영(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과정 및 창업프로그램 개발·운영, 재통합지원 센터 운영 (취업박람회 개최 등)	공사, 기자재 구입, 창업역량 강화과정 개선, 파견 전문가 인건비

* 자료: 고용노동부

내역사업 내 또다른 사업인 '네팔 해외취업 근로자 직업역량 강화 사업'[17] 또한 2025년 네팔의 대규모 시위 사태라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여 2026년에도 원조사업의 첫 단계인 이행협약[18]조차 체결하지 못한 상황임에도 출연금 3억 6,400만원이 전부 교부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2024회계연도[19] 결산 과정에서 '베트남 국가기술자격 정보시스템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집행 부진으로 교부된 출연금이 이월되는 상황에서, 사업 이행 상황과 무관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출연금을 지속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실질적인 불용액이 누적된 점을 지적받은 바도 있음.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향후 ODA 사업예산의 경우 사업 계획의 차질 등에 따른 반복적인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원국과의 이행협약

17) 해당사업은 202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네팔의 해외 취업 희망 근로자 직업교육훈련과정 개선을 위한 인력강화(관리자, 훈련교사, 경력개발센터 운영인력 초청연수)와 인프라 개선(강의실, 실습실 등 리모델링 및 기자재 지원) 사업으로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총 4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임('25년 3.64억→'26년 0.8억→'27년 12.72억→'28년 22.84억)

18)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보통 이행협약 체결을 통해 사업시작 전 양국의 분담 수준 등을 명확히 한 후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캄보디아의 경우 2025년 1월 이행협약을 체결함.

19) 2024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 p.43

체결 상황, 수원국의 사업 준비상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출연금을 교부하는 등 출연금 교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외국인근로자고용관리(일반회계, 3051-308)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외국인근로자고용관리' 사업(2004년~, 직접·보조·위탁)은 지방과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상을 해소하면서도 내국인의 일자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를 적정 규모로 도입·관리하기 위한 사업임.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91억 9,500만원으로, 이 중 89억 8,900만원(98%)이 집행되고, 2억 6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외국인근로자고용관리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리	9,195	9,195	-	-	-	9,195	8,989 [8,633]	-	206	13,837
▪외국인취업자관리	5,073	5,073	-	-	-	4,867	4,867	-	206	5,229
▪외국인력상담센터	2,022	2,022	-	-	-	2,022	2,022 [1,999]	-	-	2,030
▪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지원	1,800	1,800	-	-	-	1,800	1,800 [1,767]	-	-	2,900
▪ 외국인근로자 공공주거시설지원	300	300	-	-	-	300	300 [0]	-	-	3,678

*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의 내역사업은 ① 고용허가를 받고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를 관리하고, 외국인고용사업장을 지도·감독하는 '외국인취업자관리' 사업, ②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와 고용사업주에게 전화상담을 제공하는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외국인력상담센터' 사업, ③ 외국인근로자 대상 체류지원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운용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지원' 사업, ④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설치 및 숙소 개보수를 지원하는 '외국인근로자 공공주거시설 지원'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나. 사업수행 방식에 맞는 예산과목 편성 필요

내역사업인 ‘외국인력상담센터’는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와 고용사업주가 상담을 통하여 신속하게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전화와 내방 상담이 가능한 외국인력상담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20],

2025년 예산액은 일반용역비 20억 2,200만원으로, 이 중 19억 9,900만원을 집행하였음.

외국인력상담센터 운영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21]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는 같은 법 제28조[22]를 근거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음에도 관련 예산을 일반용역비로 편성하고, 계약시 일반용역

---

20) 외국인력상담센터는 2010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시스템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고용허가제도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와 고용사업주를 위한 언어소통과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귀국 전반에 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1년 7월 경기도 안산시에 개소되었음.

21) 제21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국내 취업활동 및 효율적인 고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 지원사업
2.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교육사업
3. 송출국가의 공공기관 및 외국인근로자 관련 민간단체와의 협력사업
4.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상담 등 편의 제공 사업
5.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등에 대한 홍보사업
6.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2) 제28조(권한의 위임·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제1호의 사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비 전액을 교부한 후 남은 금액을 익년도에 반납받는 등 보조금과 같은 방식으로 집행하고 있음.

일반용역비는 업무 추진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영상자료 제작 등 일상적인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으로 계약 방법, 계약 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함.[2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공개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일반용역비의 경우 미리 사업수행 범위, 비용 등을 계약 당사자 간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된 사무를 처리하였다면 집행 후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절차 등이 없음.

그런데 동 사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되어, 계약 체결에 앞서 해당 사업의 예산액에 대한 교부 통지를 통해 동 사업에 수행되는 비용의 총액이 이미 확정·특정되고 있으며, 교부받은 일반용역비 중 남은 금액은 익년도에 반납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와 같은 사업 방식은 현행 법령, 예산집행지침 등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방식에 맞게 예산과목을 편성·집행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현재와 같이 일반용역비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법

23)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령을 준수하여 계약 내용의 협의, 계약서 작성 및 집행 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 사업 추진상황 및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필요

내역사업인 ‘외국인근로자 공공주거시설 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공모를 통하여 선정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및 한국생활 적응에 관한 프로그램 제공 등 체류지원을 위한 복합센터[24] 건립비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써, 2025년 예산액은 공공주거시설 설계비 3억원임.[25]

고용노동부는 2025년 2월 10일에 해당 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 모집 계획을 공고하였고, 2025년 3월 보조사업자로 경상남도가 선정[26] 되었음을 공고한 후, 경상남도와 지원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며, 경상남도에 1차 보조금(선급금)으로 6월 30일 예산액(설계비)의 70%에 해당하는 2억 1,000만원을 교부하였고, 이후 10월 24일 2차 보조금(잔금)으로 예산액의 30%인 9,000만원을 교부하며, 예산액 전액을 교부하였음.[2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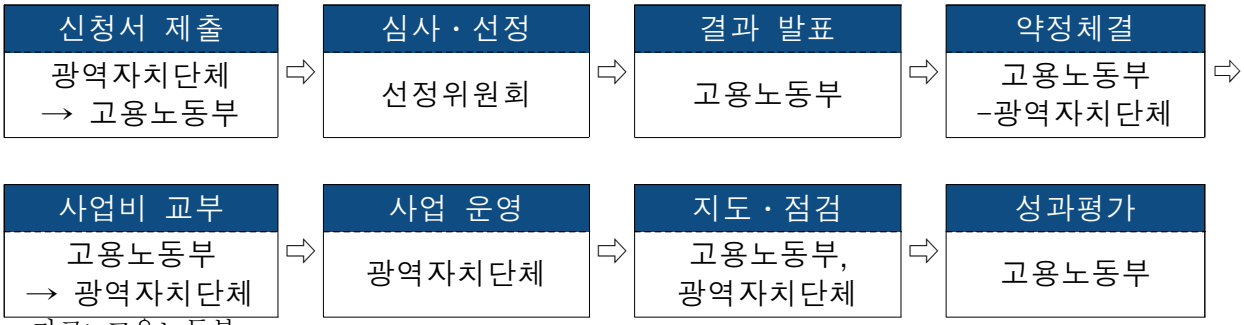
24) 1개소당 연면적 2,000㎡ 이상(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

25) 2025년 설계비 3억원, 2026년 공사비 20억 4,000만원, 2027년 공사비 30억 6,000만원으로 총 3년간 54억원을 지원함.

26) 경상남도는 사천시와 김해시 2개소에 공공주거시설 건립 계획을 제출함.

27)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자치단체자본보조(비목 330-03) 방식으로 운영되며, 2025년의 경우 국비 30%(3억원)+지방비 70%(7억원)으로 총 10억원을 조성하여 2개소(사천시, 김해시)에 각 5억씩 설계비를 지원할 예정이었음. 국비는 먼저 확보되었으나, 지방비는 투자심사 등을 거쳐 조성되는데, 지방비가 조성되지 않으면 사업 시행이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었으며, 지방비의 원활한 확보 및 확보 후 신속한 사업수행을 위해 국비를 먼저 경상남도에 교부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함.
교부와 관련하여, 1차 교부금은 재방재정 투자심사 직후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앞서 선급금으로 교부되었으며, 2차 교부금은 건축기획 단계에서 연내 집행 및 차년도 지방비 확보 목적으로 교부되었음.

[사업추진절차]



* 자료: 고용노동부

그런데 경상남도는 2025년 교부받은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였는데, 고용노동부는 경상남도가 「지방재정법」에 따른 투자심사,[2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29]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공건축 건축기획[30] 수행 등의 행정절차를

28)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직접 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의뢰하여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가. 채무부담행위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29)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30) 제22조의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① 공공기관은 건축물등이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적정한 수준의 품격을 갖추며,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건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거치느라 집행이 지연되었다고 설명함.

[2025년 외국인근로자 공공주거시설 지원 사업 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비목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B)	이·전용 등 (C)	예비비	예산 현액 (A+B+C)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300	300	-	-	-	300	300 [0]	-	-

* 자료: 고용노동부

한다.

② 공공기관은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3. 디자인관리방안
4.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5. 그 밖에 공공적 가치 및 품격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 공공기관인 경우로서 그 공공기관이 제2항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중 기본구상, 공사수행방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과정을 수행한 것으로 본다.

④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건축기획의 내용에 대하여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공건축 사업이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는 공공건축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가 완료된 후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1.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
2. 제24조의2에 따른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3. 건축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지방자치단체별 사업추진 현황]

<경상남도 사천시>

- (‘25.5월) 매칭비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 및 심사 추진(경남도, 사천시)
- (‘25.7월) 건물 취득에 따른 공유재산 심의(사천시)
- (‘25.9 ~‘26.1월) 건축기획 수행(규모, 내용, 발주방식 등 계획 수립)(사천시)
- (‘26.1 ~ 4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사천시)
- (‘26.5월) 공공건축 심의(사천시)
- (‘26.5 ~ 12월) 건축설계 공모 및 기본·실시 설계 용역 추진(사천시)
- (‘26.12 ~‘27.12월) 공사 실시(사천시)

<경상남도 김해시>

- (‘25.5월) 매칭비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 및 심사 추진(경남도, 김해시)
- (‘25.8 ~‘26.4월) 건축기획 수행(규모, 내용, 발주방식 등 계획 수립)(김해시)
- (‘25.10월) 건물 취득에 따른 공유재산 심의(김해시)
- (‘26.5 ~ 8월) 건축기획(신규 부지) 및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입체적 도시계획 결정(주차장+타용도(기숙사)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김해시)

  * 당초 선정부지 내 주민들의 반대 지속 등으로 사업부지 변경(대동면→진례면)
- (‘26.7월) 건물 취득에 따른 공유재산(신규 부지) 심의(김해시)
- (‘26.8월) 공공건축 심의(김해시)
- (‘26.9 ~‘27.3월) 건축설계 공모 및 기본·실시 설계 용역 추진(김해시)
- (‘27.4 ~‘28.3월) 공사 실시(김해시)

* 자료: 고용노동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집행지침」[31]에서 보조금 교부시 점검사항으로서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유무,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등에 대한 엄격한 사전 검토를 하여야 한다. 특히, 연내 집행 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하여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라 규정하여 보조금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천시는 투자심사를 2025년 5월에 경상남도에 의뢰하였고, 같은 해 7월 건물 취득에 따른 사천시의회의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으며, 같은 해 9월이 되어서야 공공건축 건축기획을 시작하였고,

김해시의 경우 사천시와 함께 2025년 5월에 경상남도에 투자심사를 의뢰하고, 같은 해 10월 건물 취득에 따른 사천시의회의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 등 절차가 지연되었음.

고용노동부는 2차 보조금을 교부한 10월 24일에는 회계연도 내 설계비 집행이 어려움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보조금 전액을 교부하였고, 2025년 예산 3억원이 전액 집행되지 못했음.

31) p.115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사업 집행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연내 집행이 가능한 예산만 교부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고용정책실 》

[노동시장정책관]

(1) 일자리안정자금지원(일반회계, 1233-300)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일자리안정자금지원’ 사업(2018년~, 보조)은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25회계연도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모두 20억 5,100만원이며, 이 중 지원금 6,000만원과 운영비 19억 6,500만원 등 20억 2,500만원을 집행하고, 지원금에서 2,6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일자리안정자금지원 사업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B)	이·전용 등 (C)	예비비	예산 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2,051	2,051	-	-	-	2,051	2,025	-	26	2,022
▪ 지원금	86	86	-	-	-	86	60	-	26	39
▪ 운영비	1,965	1,965	-	-	-	1,965	1,965	-	-	1,983

* 자료: 고용노동부

나. 일자리안정자금지원 사업의 사후관리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일자리안정자금지원 사업은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2018년 최저임금 시급을 전년 대비 16.4% 인상하면서,[32]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영세사업자에게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부[33]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2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되었음. 2022년 6월 신규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는 기지급된 지원금의 정산·환수 등 사후관리 업무 중심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2025년 예산에는 기지급된 지원금의 부지급 결정 취소 등에 따른 반환금 및 정산에 따른 추가지급금 등 지원금 8,600만원과 사업수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의 인건비 및 시스템 운영 유지비 등 운영비 19억 6,500만원[34]이 편성되었는데,

지원금 예산은 8,600만원 중 6,000만원이 근로복지공단에 교부되어 이 중 2,600만원이 실집행된 반면, 동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공단의 운영비 예산은 인건비[35] 9억 4,200만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7억 6,800만원 등 총 18억 5,6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

---

32) 최저임금위원회 2018년 최저임금 시급 7,530원 의결('17년 대비 16.4% 인상)
33) 2018년 기준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5만원까지 지급되었으나, 매년 단가가 인하되어 사업 마지막 해인 2022년에는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3만원 수준(최소 월 18,750원)으로 지급됨.
34) 운영비 19억 6,500만원 중 일반용역비 18억 5,600만원은 근로복지공단이, 나머지 1억 900만원(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국내여비, 관서업무추진비)은 고용노동부가 직접 집행함.
35) 공단본부(일자리안정지원관리부 및 정보화본부) 및 거점지사 정규직 20명에 대한 인건비

[2025년 근로복지공단의 지원금 및 운영비 실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내역	예산액	교부액	실집행액
지원금(민간경상보조)		보조금	86	60	26
운영비 (일반용역비)	기관운영	인건비	942	942	942
		운영비	115	115	115
		여비	22	22	22
		업무추진비	6	6	6
		직무수행경비	4	4	4
	정보화	운영비	768	768	768
	계		1,856	1,856	1,856

* 자료: 고용노동부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은 2022년 6월 신규지원 종료 이후 정산·환수 등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원금은 정산에 따른 추가 지급금 및 지원금 부지급 결정 취소 등에 대비하여 편성하고 있으나, 실제 발생 규모가 적어 불용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함.

그런데 2023년 이후 동 사업의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지원금 집행 규모는 크게 축소된(2023년 대비 2025년 △94.6%) 데 비해 운영비는 상대적으로 감소 폭이 적어(△59.7%), 2025년에는 집행액 중 운영비 비중이 97.0%로 나타남.

[연도별 지원금 및 운영비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액	집행액	비중	예산액	집행액	비중	예산액	집행액	비중
계	5,984	5,984	100.0	2,269	2,205	100.0	2,051	2,025	100.0
지원금	1,103	1,103	18.4	211	148	6.7	86	60	3.0
운영비	4,881	4,881	81.6	2,058	2,057	93.3	1,965	1,965	97.0

* 자료: 고용노동부

사후관리를 위해 기존 일자리안정자금지원 시스템을 일정 기간 유지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지원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관련 인력과 시스템을 별도로 운영함에 따라 예산의 상당 부분이 운영비로 집행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후관리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국가재정법」 제96조[36]의 금전채권 소멸시효(5년)에 따라 2027년도에 정산업무를 종료하고 이후에는 부당이득 등에 대한 환수 업무를 지속 수행할 계획으로, 환수에 필요한 일자리안정자금시스템 데이터를 과태료 시스템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일자리안정자금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 인력의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공단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36)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
(이하 생략)

다만, 운영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와 정보시스템 운영비와 관련하여, 운영 인력의 재배치, 기존 고용노동부 정보시스템으로의 이관 또는 통합 등 구체적인 운영 정비 계획을 조속히 마련되지 않을 경우 불필요한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예산 및 사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스템 통합·이관 및 인력 운용 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이행할 필요가 있음.

(2) 고용유지지원금(고용보험기금, 1045-350)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고용유지지원금' 사업(1995년~, 직접)은 경기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조정하지 않고 휴업, 휴직, 무급휴업·휴직 등을 통해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휴업·휴직수당)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25회계연도 계획액은 702억 5,500만원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111억 1,300만원(15.8%)이 증액되어 계획현액은 813억 6,800만원이 되었으며, 이 중 716억 9,200만원(88.1%)이 집행되었고, 96억 7,6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B)	계획 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 고용유지지원금	70,255	81,368	-	81,368	71,692	-	9,676	70,225
▪ 고용유지지원금	70,205	81,318	-	81,318	71,679	-	9,639	70,205
▪ 고용유지자금융자 채권관리비용	50	50	-	50	13	-	37	20

*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제21조[37] 및 같은 법 시행령[38]에 근거하여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일부 보전해 주는 제도임.

고용유지지원금은 유급과 무급으로 구분되며, 유급은 다시 '휴업'과 '휴직'으로 구분됨.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중 '휴업'은 사업주가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1개월의 단위기간 동안 해당 사업장의 총근로시간의 20% 이상을 감축하는 조치를 하고(휴업기준), 휴업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그 휴업수당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휴직'은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1개월 이상의 유급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가 휴직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사업임.

---

37) 「고용보험법」 제21조(고용조정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 근로자의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감소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8)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8조(고용조정의 지원 내용 등) ①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는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한다.

한편,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업·휴직의 필요성, 근로자 복귀 가능성, 직업능력 개발·향상 조치 등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대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승인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 등을 결정하여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결정된 지원금을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임.

[2025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요]

구 분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조정 불가피한 사유		① 기준달 매출액이 직전 6개월 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 ② 기준달 매출액과 직전 2분기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추세 ③ 업종·지역경제 상황 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	① 기준달 매출액이 직전 6개월 평균 대비 30% 이상 감소 ② 기준달 매출액과 직전 2분기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20% 이상 감소 ③ 업종·지역경제 상황 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
고용유지 조치 이행조건	휴업	1개월 단위 피보험자 전체 근로시간 대비 20% 초과 단축 후 휴업수당 등 금품 지급	사전 노동위원회 승인, 30일 이상 실시 및 휴업기간 평균임금 50% 미만 수당 지급 실시비율: ▲50% 이상 (19명 이하), ▲10명 이상 (99명 이하), ▲10% 이상 (100명~999명), ▲100명 이상 (1,000명 이상)
	휴직	1개월 이상 근로 면제 후 휴직수당 등 금품 지급	직전 1년 이내 유급휴업 또는 유급휴직(피보험자 20%이상)을 3개월(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은 1개월)이상 실시, 근로자대표 합의, 30일 이상 휴직 실시 후 금품 미지급 실시비율: ▲10명 이상 (99명 이하) ▲10% 이상 (100명~999명) ▲100명 이상 (1,000명 이상)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2">유급 고용유지지원금</th><th>무급 고용유지지원금</th></tr>
<tr><td rowspan="3">지원수준</td><td>일반업종</td><td>사업주 지급 수당 기준
▲우선지원 2/3
▲대규모 1/2 또는 2/3*
*단축률 50% 이상</td><td rowspan="3">평균임금의 50% 범위내에서 결정
(근로자별 지급)</td></tr>
<tr><td>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td><td>사업주 지급 수당 기준
▲우선지원 8/10
▲대규모 6/10 또는 7/10*
*단축률 50% 이상</td></tr>
<tr><td>특별고용
지원업종
/고용위기
지역</td><td>사업주 지급 수당 기준
▲우선지원 9/10
▲대규모 2/3 또는 3/4*
*단축률 50% 이상</td></tr>
<tr><td rowspan="2">지원한도
(기간)</td><td>일반업종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td><td>▲ 1일 6.6만원
(연 180일)</td><td rowspan="2">▲1일 6.6만원
(재직기간 중 180일)</td></tr>
<tr><td>특별고용
지원업종
/고용위기
지역</td><td>▲우선지원 1일 6.6만원
▲대규모 1일 68,100원
(연 180일)</td></tr>
</table>

* 자료: 고용노동부

나. 추경 증액 수요 예측의 정확성 제고 및 집행 저조 개선 필요

2025년도 고용유지지원금(내역사업)의 당초 계획액은 702억 500만원이었으나, 미국의 관세 부과, 경기 불확실성 등에 따른 국내 기업의 구조조정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111억 1,300만원(15.8%)을 증액함에 따라 계획현액은 813억 1,800만원이 되었음. 그러나 관세 부과 유예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기업의 지원 신청이 저조하여 이 중 716억 7,900만원만 집행되고 96억 3,9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년 고용유지지원금 계획변경 세부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목	세목	세사업	금액	계획수정 사유
국회의결 (2025.4.30.)	320	04	고용유지지원금	11,113	미국 관세부과, 경기하방 우려 등에 따른 고용충격 적시 대응 및 하반기 고용악화 대비를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
합 계				11,113	

* 자료: 고용노동부

그런데 고용유지지원금의 연도별 집행실적을 보면, 2022년과 2023년의 집행률은 각각 77.7% 및 64.3%에 불과했고, 2024년에는 당초 계획액을 전년 대비 1,258억 4,800만원(△63.8%) 감액 편성함에 따라 집행률이 98.3%로 개선되었음. 2025년에는 추경으로 111억 1,30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96억 3,900만원의 불용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8.1%임.

[고용유지지원금(내역사업)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2022	597,621	596,901	-	596,901	463,802	77.7	77.7	-	133,099
2023	197,220	197,220	-	197,220	126,802	64.3	64.3	-	70,418
2024	71,372	71,372	-	71,372	70,126	98.3	98.3	-	1,246
2025	70,205	81,318	-	81,318	71,679	88.1	88.1	-	9,639

* 자료: 고용노동부

또한, 최근에는 실제 지원 수요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유급휴업 지원 인원은 2022년 64,544명에서 2025년 24,346명으로, 유급휴직은 같은 기간 중 59,616명에서 8,294명으로 감소하였고, 무급휴업·휴직 지원 인원 역시 전반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원금 집행 규모도 당초 계획에 미달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연도별 고용유지지원금(내역사업) 지원 실적]

(단위 : 백만원, %, 명)

구분	2022			2023			2024			2025		
	계획 현액	집행액 (집행률)	지원 인원	계획 현액	집행액 (집행률)	지원 인원	계획 현액	집행액 (집행률)	지원 인원	계획 현액	집행액 (집행률)	지원 인원
유급 휴업	234,751	113,127 (48.2)	64,544	190,850	125,843 (65.9)	44,136	70,223	70,053 (99.8)	35,291	80,270	71,190 (88.7)	24,346
유급 휴직	312,650	307,833 (98.5)	59,616			16,441			9,520			8,294
무급	49,500	42,842 (86.5)	12,954	6,370	959 (15.1)	599	1,149	72 (6.3)	31	1,048	489 (46.7)	157

* 주: 2023년부터 유급휴업과 유급휴직 계획액을 통합하여 편성
* 자료: 고용노동부

2025년 월별 집행실적을 보면, 상반기 동안 누적 집행률이 34.7%에 머무르다가 하반기에 지원 인원과 지원금액이 증가하였으나, 그 증가 규모가 추경 편성 당시 예상한 지원 수요에는 미치지 못하여 최종적으로 96억 3,900만원의 불용이 발생하는 등 정책 소요 과다 예측으로 재원 배분의 효율성이 저해된 측면이 있음.

[2025년 월별 고용유지지원금(내역사업) 집행실적]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

구분	사업장수	지원연인원	지원순인원	지원금액		
				월별	누계	집행률
1월	664	7,341	6,503	5,509	5,509	6.8
2월	580	5,093	4,731	4,628	10,137	12.5
3월	640	5,307	4,746	5,079	15,215	18.7
4월	627	6,285	5,060	5,490	20,705	25.5
5월	635	4,182	3,786	3,820	24,525	30.2
6월	558	4,234	3,767	3,653	28,178	34.7
7월	666	4,815	4,299	4,209	32,387	39.8
8월	660	6,713	6,503	6,814	39,200	48.2
9월	759	7,957	7,227	7,967	47,167	58.0
10월	666	7,220	6,838	6,810	53,977	66.4
11월	579	6,581	5,938	7,500	61,476	75.6
12월	671	9,005	7,182	10,203	71,679	88.1

* 자료: 고용노동부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향후 고용유지지원금 추경 편성 시 실제 지원 수요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지원 규모가 과다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하고 예산의 비효율적 배분으로 인한 집행 저조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다. 고용유지자금융자 채권관리 업무의 근로복지공단 위탁에 대한 계약 미체결 부적정

내역사업인 ‘고용유지자금융자 채권관리 비용’ 사업은 코로나19 시기 지원된 고용유지자금융자 사업의 수혜 사업주에 대한 융자금 채권관리 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에는 계획현액 5,000만원 중 1,300만원[39]을 실집행하고 3,700만원을 불용하였음.

[연도별 고용유지자금융자 채권관리 비용 예산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2022	287	287	-	287	119	-	168
2023	154	154	-	154	154	-	-
2024	-	-	-	-	-	-	-
2025	50	50	-	50	13	-	37

*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자금융자[40]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휴업·휴직수당을 저리로 융자하는 사업으로, 2020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음.[41] 사업 종료 이후에는 융자금 회수를 위한 채권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당 업무는 융자 취급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고 있음. 2025년에는 융자금 5,000만원을 회수하였으며, 2025년 말 기준 융자금 잔액은 59억 200만원임.

39) 소송비(인지대, 송달료, 법정수수료 등) 및 수수료(가상계좌 이용·발급수수료)
40) 고용유지자금융자 사업 개요

[고용유지자금융자 융자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해당기관	'24년말 융자잔액	'25년 회수액	'25년말 융자잔액	채권연령		
					1~3년 (2022~2025년발생)	4~5년 (2021년 발생)	5~10년 (2016~2020년발생)
고용유지 자금융자	근로복지 공단	5,952	50	5,902	-	5,265	637

* 자료: 고용노동부

그런데 채권관리 비용 예산은 일반용역비(210-14목) 비목으로 편성되어 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별도의 계약 체결 절차는 거치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42] 및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규정」[43]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고용유지자금융자 사업과

□ (지원대상)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하고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하고 '20.7.1. 이후 휴업·휴직 실시하는 사업장
□ (법적근거)
  ㅇ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제8호, 제37조의3, 제145조제2항제8호의3
  ㅇ 고용유지비용의 대부 규정(2021-제35호)
□ (지원기간) '20. 7. 30.~'21. 12. 31.
□ (지원내용)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휴업·휴직수당
  ㅇ 대부액: 1개사 1회 최저 1백만원 ~최대 5억원
  ㅇ 대부조건: 월별 고용유지지원금 연계 우선 상환, 연리 1%
    * 대부 잔여원금 1년 거치 후 일시 상환(잔여원금이 1억원 이상일 경우 2년 분할 상환), 연체이율 연 9%
□ (상환방식) 고용유지조치 후 고용센터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을 경우 해당 금액은 공단 지정계좌로 송부되어 상환 완료
  * 대부액이 고용유지지원금보다 많은 경우, 해당 금액은 융자 조건에 따라 사업주 직접 상환
□ (수행기관) 근로복지공단 위탁 수행

41) 전체 융자건수 10,120건, 금액 1,006억 8,100만원
42) 제35조제8호, 제37조의3제3항, 제145조제2항제8호의3
43)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84호, 2022.12.15.)」
제3조 (사업수행기관) ① 영 제37조의3 및 제145조제2항제8의3호에 따라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사업은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한다.
② 공단은 이 고시에 규정된 사항 외에 대부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고용

채권관리는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계약 체결 없이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음.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호[44]는 '지출원인행위'를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반면,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규정」은 고용유지자금융자 사업의 수행기관을 근로복지공단으로 정한 일반적·추상적인 규범에 해당하며, 실제 2024년에는 채권관리 비용이 계상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동 규정만으로 개별적인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법률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대부규정 자체를 지출원인행위로 보는 것은 「국고금 관리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또한,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45]은 일반용역비(210-14목) 비목에 대하여, 기관의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으로 규정하면서, 계약방법 및 계약절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아울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마목[46]은

유지 비용 대부사업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1. 대부결정자 결정 및 취소 관련 제반 사항
2. 대부약정 관련 제반 사항
3. 대부금액에 대한 연체이자율 및 상환 관련 제반 사항
4. 채권관리 및 신용정보관리 관련 사항
5. 기타 대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44) "지출원인행위"란 「국고금 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재무관(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이 세출예산·계속비·국고채무부담행위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45)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25, p. 16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허용함으로써, 법령상 수행기관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도 계약 체결을 전제로 계약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실제 유사 사례인 고용영향평가사업(1045-301)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정 평가사업으로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목) 비목으로 편성되어 있고, 「고용영향평가 대행기관 지정 고시」[47]에서 한국노동연구원을 대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음에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가. 적용범위
- ㅇ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상적인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 학술, 기술, 평가, 자문 및 시운전, 실태조사, 전산개발, 임상연구 등 지식기반의 조사·연구 관련 용역은 일반연구비(260-01목)로 집행
  - ** 해당 용역 추진을 위해 직접 소요되는 수수료와 심사위원 수당 등 부대경비도 집행할 수 있다

나. 일반지침
- ㅇ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처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다. 낙찰차액 사용
- ㅇ 일반용역비 사업의 낙찰차액을 활용하여 추가 용역과제 등에 사용하는 경우, 추가적인 사업비 부담 유발, 용역과제를 통한 우회적 신규사업 추진 등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ㅇ 중앙관서의 장은 낙찰차액 사용내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마.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47) 「고용영향평가 대행기관 지정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호, 2026. 2. 4., 제정]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고용영향평가 업무 대행기관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노동연구원으로 지정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복지공단과 용역계약 등 별도의 계약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업무를 수행한 것은 일반용역비의 비목 성격과 「국고금 관리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공공기관에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의 취지에 따라 사업범위, 사업비, 위탁수수료, 권리·의무 및 책임관계 등을 계약을 통해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단순히 법령상 수행기관이 정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업시행계획 등에 따라 운영할 경우, 사업 수행의 기준과 책임관계를 충분히 규율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음.[48)]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향후 근로복지공단 등 공공기관에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도 예산 비목의 성격과 「국고금 관리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계약 체결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48) 국회예산정책처, 「공공기관의 정부 위탁사업 수행 및 재위탁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과제」, 2026. 5, p. 27, 35, 75.

[고용서비스정책관]

(1)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일반회계, 1234-300)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 사업(2021년~, 직접/출연)은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여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려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조 108억 6,500만원으로, 이 중 9,209억 7,500만원(91.1%)이 집행되었고, 898억 9,000만원(8.9%)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 사업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B)	이·전용 등 (C)	예비비	예산 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 국민취업지원제도	845,709	1,010,865	-	-	-	1,010,865	920,975	-	89,890	1,012,830
▪ Ⅰ유형	714,087	853,100	-	-	-	864,842	817,948	-	46,893	873,620
▪ Ⅱ유형	130,657	156,800	-	-	-	145,058	102,062	-	42,996	138,245
▪ 전산망강화	965	965	-	-	-	965	965	-	-	965

* 자료: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2020년 6월 9일 제정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2021. 1. 1. 시행)에 근거하여 시행 중임.

동 사업은 취업지원서비스(법 제6조)와 구직촉진수당(법 제7조) 수급자격을 모두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하여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Ⅰ유형, 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자격만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하여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는 Ⅱ유형으로 구분하여 운영됨.

Ⅰ유형은 15세 이상 69세 이하인 구직자 중 소득이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사람(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재산 5억원 이하)을 대상으로,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세부 유형을 구분하여 구직촉진수당(월 60만원, 최대 6개월)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역사업임.

Ⅱ유형은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층,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35세 이상 69세 이하의 중장년층, 기초연금 수급자와 결혼이민자 등 특정계층[49]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49) 특정계층에는 기초연금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구주,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자녀,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자유무역협정 피해실직자, 건설 일용근로자,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미혼모(부), 구직단념청년, 산

취업활동비용[50]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유형별 지원대상 및 요건 비교]

구분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Ⅰ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요건심사형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비경활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4억원 이하	선발시 고려
		청년	15~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5억원 이하	선발시 고려
Ⅱ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	청년층		15~34세	소득요건 없음	재산요건 없음	무관
	중장년층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요건 없음	무관
	특정계층		15~69세	소득요건 없음	재산요건 없음	무관

* 자료: 고용노동부

또한 Ⅰ유형 사업 참여자에 대하여는 생계 안정을 위해 부양가족 1명당 월 10만원(월 최대 40만원, 구직촉진수당과 마찬가지로 최대 6개월 지급)의 '부양가족수당'이 지급되고, 일정 요건을 갖춘 Ⅰ·Ⅱ유형 사업 참여자의 취업 성공 후 근속 유지를 유도하기 위하여 취업·창업 후 6개월 근속시 50만원, 12개월 근속시 100만원을 추가하여 총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됨.

재로 장해를 입은 자 등이 포함됨

50) 취업활동비용은 ①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②참여장려수당, ③훈련참여지원수당(2026년 폐지)으로 구분됨. ①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은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자에 대하여 15~25만원이 지급되고, ②참여장려수당은 고용센터 및 위탁기관에서 집중 취업상담(최소 30분 이상) 또는 취업알선을 실시한 방문 수급자에게 교통비 등 실비 차원에서 월 1회 2만원을 최대 5회에 한하여 지급됨. ③훈련참여지원수당은 2025년 기준 수립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훈련일수 1일당 18,000원씩 월 최대 284,000원, 최대 6개월까지 지급하였고 2026년 폐지됨.

나. 제도개선을 통한 집행성과 제고 필요

고용노동부는 2025년 본예산 편성 당시 Ⅰ유형 지원 인원을 215,000명, Ⅱ유형 지원 인원을 90,000명으로 하였으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Ⅰ유형 지원 인원을 27,000명 늘려 242,000명으로, Ⅱ유형 대상 인원을 90,000명에서 28,000명 늘려 118,000명으로 확대하였음. 특히 Ⅱ유형에는 건설업 퇴직자 10,000명을 대상으로 한 재취업지원 강화 프로그램을 별도로 편성하였음.

그런데 2025년도 집행 실적을 살피면 Ⅰ유형 참여인원은 본예산 편성 당시 목표 지원 인원과 유사한 약 220,000명에 그쳤고, Ⅱ유형 지원인원은 본예산 편성 당시 목표 지원 인원보다도 저조한 89,554명이었음.

세부내역을 살피면 Ⅱ유형 청년층 및 건설업 퇴직자 유형의 목표인원 달성률이 각각 72.9%, 10.2%로 다른 세부유형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고, 특히 Ⅱ유형 청년층의 경우 2025년 참여인원이 56,831명으로 추가경정예산 목표 인원에 미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본예산 당시 목표 인원이었던 68,000명에도 미치지 못하였음.

[2025회계연도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 유형별 집행 실적]

(단위 : 명, %)

구분		목표인원(A)	참여인원(B)	달성률(B/A)
Ⅰ유형	요건심사형	117,000	106,220	90.8
	선발형(비경활)	20,000	21,237	106.2
	선발형(청년)	105,000	92,623	88.2
	소계	242,000	220,080	90.9
Ⅱ유형	특정계층	12,000	15,032	125.3
	청년층	78,000	56,831	72.9
	중장년층	18,000	16,672	92.6
	건설업 퇴직자	10,000	1,019	10.2
	소계	118,000	89,554	75.9

* 자료: 고용노동부

이와 관련하여 2025년 추가경정예산 국회 심의 당시에도 2025년 5월까지의 Ⅱ유형 청년층 참여자 수가 목표 인원 68,000명의 27.2%에 불과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집행 성과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논의된 바 있음.

[2022~2025 유형별 목표 참여 인원 및 실제 참여 인원]

(단위: 명, %)

유형		연도	참여 인원 (수급자격 인정 인원)		달성률
			목표	실제	
Ⅰ유형	요건심사형	2022	250,000	86,233	34.5
		2023	200,000	83,595	41.8
		2024	88,100	88,431	100.4
		2025. 5.	90,000	44,757	49.7
		2025	117,000	106,220	90.8
	선발형 비경활	2022	80,000	30,242	37.8
		2023	60,000	28,697	47.8
		2024	20,000	26,690	133.5
		2025. 5.	20,000	14,684	73.4
		2025	20,000	21,237	106.2
	선발형 청년특례	2022	170,000	100,495	59.1
		2023	140,000	114,454	81.8
		2024	140,000	134,543	96.1
		2025. 5.	105,000	54,821	52.2
		2025	105,000	92,623	88.2
Ⅱ유형	특정계층	2022	10,000	12,983	129.8
		2023	20,000	15,029	75.1
		2024	9,870	12,535	127.0
		2025. 5.	12,000	5,679	47.3
		2025	12,000	15,032	125.3
	청년층	2022	80,000	37,801	47.3
		2023	40,000	39,709	99.3
		2024	40,000	40,259	100.6
		2025. 5.	**68,000**	**18,512**	**27.2**
		2025	**78,000**	**56,831**	**72.9**
	중장년층	2022	10,000	14,046	140.5
		2023	10,000	14,565	145.7
		2024	9,810	12,767	130.1
		2025. 5.	10,000	7,164	71.6
		2025	18,000	16,672	92.6
	건설업 퇴직자	2025	10,000	1,019	10.2

* 자료: 고용노동부

2025년 Ⅱ유형 청년층 참여인원은 56,831명으로 2024년의 40,259명보다 약 41% 확대되는 성과를 거두기는 하였으나, 목표인원을 전년

대비 95% 증가시키면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Ⅱ유형 청년층의 경우 연령 요건만 충족하면 소득, 재산, 취업경험 등을 불문하고 참여가 가능하나, 취업을 준비하는 6개월간 매월 6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수령할 수 있는 Ⅰ유형과 달리 취업활동비용[51]과 취업지원서비스만 받을 수 있음. 이는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제외하면 일회성으로 비교적 적은 금액만을 지원받는 것이고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장시간 대면 직업훈련을 받아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훈련을 받기 위하여 자기부담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청년들이 참여할 유인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또한 2025년에는 Ⅱ유형 청년층 대상 사업에서 1개월 이상 직업훈련 수료 후 빈일자리 업종[52](기업)에 취업하여 6개월 근속 시 최대 6개월간 월 20만원의 훈련참여지원수당 및 취업성공수당 4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청년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처음으로 시도하였으나 2025년 해당 지원을 받은 인원은 270명으로 이 역시 많은 청년층이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이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예산을 전년 대비 대규모 높일 때에는 단순히 목표인원만을 증가시킬 것이 아니라 예산 및 목표인원 증대에 수반하여 청년층의

51) 취업활동비용은 ①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②참여장려수당, ③훈련참여지원수당(2026년 폐지)으로 구분됨. ①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은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자에 대하여 15~25만원이 지급되고, ②참여장려수당은 고용센터 및 위탁기관에서 집중 취업상담(최소 30분 이상) 또는 취업알선을 실시한 방문 수급자에게 교통비 등 실비 차원에서 월 1회 2만원을 최대 5회에 한하여 지급됨. ③훈련참여지원수당은 2025년 기준 수립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훈련일수 1일당 18,000원씩 월 최대 284,000원, 최대 6개월까지 지급하였고 2026년 폐지됨.

52) 조선업, 뿌리산업, 보건복지업, 해운업, 수산업 등 범정부 일자리 TF 지정 10개 업종

수요를 높일 만한 인센티브 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 매칭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취업률 관리 및 제고 노력 필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이 구직촉진수당 등을 수급하여 생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동 사업의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로 고용보험 가입자 수만 관리하고 있을 뿐, 참여자 취업률은 성과지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고용노동부는 참여자 취업률을 성과지표로 하고 있지는 않으나 사업 참여 종료자의 취업률, 6개월 및 1년 고용유지율 등을 확인하고 있고, 수급자의 취업의욕 고취·취업기술 향상을 위한 (단기)집단상담 프로그램, 취업특강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취업설명회, 과제부여 등 고용센터 내 활용 가능한 취업지원서비스도 연계하고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취업 현황에 따르면 참여자의 평균 취업률은 60% 수준이고 Ⅱ유형 청년층의 취업률이 2022년 대비 하락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바, 취업의욕 고취 및 일자리 매칭 등의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임.

[2022~2025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취업 현황]

(단위: 명, %)

연도	유형		참여자수[1]		종료자수[2]	취업자수[3]	취업률[4]	6개월 고용 유지율[5]	1년 고용 유지율
			목표	실제					
2022	Ⅰ유형	요건심사형	250,000	86,233	110,854	61,961	55.9	65.8	51.2
		선발형(비경활)	80,000	30,242	45,945	12,915	28.1	61.1	46.1
		선발형(청년특례)	170,000	100,495	114,163	68,740	60.2	67.0	53.7
		소계	500,000	216,970	270,962	143,616	53.0	66.0	52.0
	Ⅱ유형	특정계층	10,000	12,983	23,576	9,494	40.3	63.2	48.5
		청년층	80,000	37,801	34,108	25,169	73.8	67.9	55.4
		중장년층	10,000	14,046	10,911	6,656	61.0	61.2	45.7
		소계	100,000	64,830	68,595	41,319	60.2	65.8	52.3
	합계		600,000	281,800	339,557	184,935	54.5	65.9	52.0
2023	Ⅰ유형	요건심사형	200,000	83,595	80,263	48,215	60.1	67.0	52.6
		선발형(비경활)	60,000	28,697	28,407	9,613	33.8	63.6	49.4
		선발형(청년특례)	140,000	114,454	97,031	62,276	64.2	69.7	55.9
		소계	400,000	226,746	205,701	120,104	58.4	68.1	54.1
	Ⅱ유형	특정계층	20,000	15,029	13,756	5,363	39.0	62.8	46.9
		청년층	40,000	39,709	36,269	25,893	71.4	69.9	56.9
		중장년층	10,000	14,565	13,849	8,254	59.6	62.5	47.6
		소계	70,000	69,303	63,874	39,510	61.9	67.4	53.7
	합계		470,000	296,049	269,575	159,614	59.2	68.0	54.0
2024	Ⅰ유형	요건심사형	88,100	88,431	83,526	51,056	61.1	67.0	53.0
		선발형(비경활)	20,000	26,690	26,850	9,323	34.7	63.9	49.8
		선발형(청년특례)	140,000	134,543	118,227	76,494	64.7	70.4	56.7
		소계	248,100	249,664	228,603	136,873	59.9	68.7	54.9
	Ⅱ유형	특정계층	9,870	12,535	14,233	5,409	38.0	63.6	49.8
		청년층	40,000	40,259	39,319	26,977	68.6	70.2	56.8
		중장년층	9,810	12,767	13,804	7,980	57.8	62.4	48.4
		소계	59,680	65,561	67,356	40,366	59.9	67.8	54.3
	합계		307,780	315,225	295,959	177,239	59.9	68.5	54.8
2025	Ⅰ유형	요건심사형	117,000	106,220	90,669	55,387	61.1	66.9	54.1
		선발형(비경활)	20,000	21,237	25,636	8,678	33.9	64.5	51.7
		선발형(청년특례)	105,000	92,623	130,973	81,458	62.2	70.6	59.6
		소계	242,000	220,080	247,278	145,523	58.8	68.9	57.3
	Ⅱ유형	특정계층	12,000	15,032	13,216	5,207	39.4	63.3	49.2
		청년층	78,000	56,831	44,717	31,262	69.9	69.3	57.9
		중장년층	18,000	16,672	13,737	8,827	64.3	64.9	52.9
		소계	118,000	88,535	71,670	45,296	63.2	67.8	56.1
	합계		360,000	308,615	318,948	190,819	59.8	68.7	57.1

* 주 1) 참여자 수: 해당 연도에 사업에 참여한 사람 수
2) 종료자 수: 해당 연도에 사업이 종료된 사람 수
3) 취업자 수: 해당 연도 종료자 중 취업한 사람 수
4) 취업률: 해당 연도 종료자 중 취업자의 비율, 다음 연도 4월 마감 기준
5) 고용유지율: 해당 연도 취업자의 고용유지율, 다음 연도 4월 마감 기준

** 자료: 고용노동부

특히 동 사업이 1조원 이상의 예산이 편성되어 상당한 금액이 집행되는 사업이라는 점, 청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상황 및 업황 악화에 대비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취업률을 성과지표로서 관리하고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고용보험기금 총괄

가. 고용보험기금 결산 개요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모성보호육아지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근로자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사회보험제도임.

기금의 주요 수입은 피보험자(사업주 및 근로자 등)가 납부하는 사회보장기여금(고용주부담금 및 피고용자분담금), 적립금의 투자 등에서 발생하는 기금운용수익 등이고, 주요 지출은 실업급여, 모성보호육아지원(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등) 및 기금운용비임.

2025회계연도 결산 기준 고용보험기금 수입액과 지출액은 23조 7,132억 8,100만원임.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수입의 경우 사회보장기여금 등의 수납에 따른 자체수입이 19조 7,985억 1,400만원, 여유자금회수가 3조 3,647억 6,700만원, 정부내부수입이 5,500억원이고, 지출의 경우 사업비가 19조 3,013억 9,500만원, 여유자금운용이 2조 7,728억 400만원으로 나타남.

[2025회계연도 고용보험기금 결산]

(단위: 백만원)

수 입			지 출	
자체수입		19,798,514	사업비	19,301,395
	부담금	18,917,653		
	융자원금회수	101,921	정부내부지출	1,521,617
	재산수입	587,829	기금운영비	117,464
	기타	191,111		
여유자금회수		3,364,767	여유자금운용	2,772,804
정부내부수입		550,000		

* 자료: 고용노동부

한편, 기금은 계정을 적용대상에 따라 임금근로자 계정과 자영업자 계정으로 구분하고, 보험사업의 특성에 따라 실업급여 계정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으로 나누어 총 4개의 계정으로 운영됨.[53]

[고용보험기금의 계정]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①실업급여	②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	③실업급여	④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

*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임금근로자 계정에 포함됨

실업급여 계정을 통해 지출되는 사업은 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53) 「고용보험법」 제82조(기금계정의 설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은행에 고용보험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고용보험기금계정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및 실업급여, 자영업자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및 자영업자의 실업급여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모성보호육아지원, 실업크레딧지원 등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계정을 통해 지출되는 사업은 고용유지지원금, 내일배움카드(고보),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 등임.

[계정별 주요 사업의 내용 및 목적]

실업급여 계정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계정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한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재취업활동을 전제로 이직 당시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자의 생활안정 및 노동시장 복귀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직 예방과 고용안정에 기여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가 구직급여 수급 중 조기에 재취업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장기실업 방지 및 조기 재취업 촉진	**내일배움카드(고보)**	급격한 기술발전 적응과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를 지원
모성보호육아지원	출산전후휴가급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등의 지급을 통해 모성을 보호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해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기업의 생산성 제고
실업크레딧지원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 중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추가 산입하려는 자 중 일정 요건 충족 시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실업자 노후소득 보장 및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	기업이 청년 등을 먼저 채용한 뒤 기업에서의 현장훈련과 학교에서의 이론교육을 통해 일학습병행 자격취득까지 연계하는 교육 훈련 제도

나. 모성보호 육아지원 사업 시행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 등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검토 필요

고용보험기금은 「고용보험법」 제84조에 따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은 해당 연도 지출액의 1배 이상 1.5배 미만의 여유자금을, 대량 실업의 발생이나 그 밖의 고용상태 불안에 대비해 실업급여 계정은 해당 연도 지출액의 1.5배 이상 2배 미만의 여유자금을 적립하여야 하나,[54]

2025회계연도 결산 기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의 여유자금 적립배율은 1.7배, 실업급여 계정의 여유자금 적립배율은 0.1배로, 법정 적립배율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실업급여 계정은 2017년 0.9배에서 2020년 0.3배로 꾸준히 하락하다 2025년에는 0.1배까지 내려간 상황이고, 최근 10년간 법정 적립배율을 달성한 적이 없음.

54) 「고용보험법」 제84조(기금의 적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량 실업의 발생이나 그 밖의 고용상태 불안에 대비한 준비금으로 여유자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자금의 적정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계정의 연말 적립금: 해당 연도 지출액의 1배 이상 1.5배 미만
2. 실업급여 계정의 연말 적립금: 해당 연도 지출액의 1.5배 이상 2배 미만

[최근 10년간 고용보험기금의 계정별(근로자) 적립배율 현황]

(단위: 억원, 배)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실업급여 계정	지출액 (A)	58,557	62,858	79,157	98,558	138,860	144,138	141,325	143,307	151,541	174,623
	연말 적립금 (B)	49,371	57,958	55,201	41,374	38,666	42,665	36,953	37,525	35,083	17,274
	적립배율 (B/A)	0.8	0.9	0.7	0.4	0.3	0.3	0.3	0.3	0.2	0.1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계정	지출액 (C)	30,064	31,700	36,566	40,894	65,706	66,325	39,182	27,101	34,711	34,560
	연말 적립금 (D)	46,198	44,264	38,886	31,726	27,800	13,163	25,658	39,794	47,835	59,484
	적립배율 (D/C)	1.5	1.4	1.1	0.8	0.4	0.2	0.7	1.5	1.4	1.7

* 자료: 고용노동부, 2025회계연도 고용보험기금 결산보고서

이와 같은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수지 악화 및 법정 적립배율 미준수 문제는 재정지출 규모의 확대로 인한 것으로 파악되는데,[55] 실업급

55) 실업급여 계정의 수입은 보험료율 인상 및 고용보험 가입자수 증가로 증가하는 추세임.

[고용보험료율 변화]

연도	1998 이전	1999.1.1. 이후	2003. 1.1. 이후	2006.1.1. 이후	2011.4.1. 이후	2013.7.1. 이후	2019.10.1. 이후	2022.7.1. 이후
보험료율	0.3	0.5	0.45	0.45	0.55	0.65	0.8	0.9

* 실업급여 고용주, 피고용자 각각의 부담분(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 보험료율/2)

** 2022. 7.부터 예술인·노무제공자 1.4%→1.6%(예술인·노무제공자 0.8%, 사업주 0.8%)

[고용보험 가입자수]

(단위: 천명)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가입자수	14,112	14,550	14,899	15,200	15,365	15,556

* 가입자 수는 매년 12월말 기준임 ** 자료: 고용노동부

여 계정에서 지출되는 사업 중 지출액의 비중이 큰 구직급여와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의 지출 규모가 최근 5년간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들 지출은 법령 등에 국가의 지출의무가 명시된 의무지출임.

특히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의 지출액은 2025년 4조 3,091억 5,500만원으로 2020년 1조 5,613억 5,800만원 대비 2조 7,477억 9,700만원(175.99%) 증가하였음.

[2020~2025년 실업급여 계정의 주요 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구직급여	11,855,625	12,062,474	10,910,504	11,307,122	11,740,486	12,365,489
조기재취업수당	321,316	442,832	468,018	468,354	544,284	486,922
모성보호육아지원	1,561,358	1,685,010	2,077,151	2,261,495	2,573,780	4,309,155
실업크레딧지원	27,433	32,013	55,918	31,967	32,157	31,720
자영업자실업급여	7,227	9,948	12,399	16,784	18,833	20,535

* 자료: 고용노동부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은 출산전후휴가급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난임치료휴가 급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은 2025년 시작되었고, 비중이 큰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은 2020년 1조 2,121억 4,300만원에서 2025년 3조 6,291억 6,900만원으로 2조 4,170억 2,600만원(199.4%) 증가하였음.

[2020~2025년 모성보호 육아지원 사업의 내역사업별 집행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출산전후휴가 급여	인원	70,933	70,319	73,072	73,207	77,718	90,759
	금액	285,736	289,479	304,849	326,290	353,689	416,299
유산사산휴가 급여	인원	1,010	1,110	1,238	1,329	1,650	2,701
	금액	1,433	1,433	1,595	1,647	2,323	4,031
육아휴직 급여	인원	112,038	110,555	131,084	126,008	132,535	184,329
	금액	1,212,143	1,297,525	1,657,231	1,796,995	2,052,487	3,629,16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인원	14,698	16,689	19,466	23,188	26,627	39,400
	금액	54,995	89,669	107,330	130,324	157,970	228,186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인원	18,720	18,270	16,168	15,797	18,241	24,412
	금액	7,050	6,904	6,146	6,240	7,311	31,355
난임치료휴가 급여	인원	-	-	-	-	-	787
	금액	-	-	-	-	-	114

* 자료: 고용노동부

이러한 증가의 요인은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로 인한 인원 증가뿐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2022년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신설하여 자녀 출생 후 12개월 이전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하는 경우 최대 3개월분에 대한 급여를 상향 지급하는 등 지속적으로 육아휴직 지원을 강화했기 때문임.

이에 더하여,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도입하고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일수를 확대하는 등 법령 개정에 따라 매년 실업급여 계정의 사업비 지출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은 국가가 시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고용보험법」 제5조[56]에 따라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57]에 드는 비용의 일부

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하고, 이에 고용보험기금에는 매년 일반회계전입금이 편성되어 있음. 전입금은 처음 편성된 200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25년 일반회계전입금은 5,500억원임.

[모성보호육아지원 지출 및 일반회계 전입금 현황]

(단위: 억원, %)

연도	실업급여 계정지출 (A)	모성보호 육아지원 지출(B)	모성보호 육아지원 지출비율 (B/A)	모성보호육아지원		일반회계 전입금 (C)	전입금 비율 (C/B)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주1)]	육아휴직 급여 등[주2)]		
2001	8,821	0.07	-	0.02	0.05	150	2142.9
2002	9,130	257	2.8	226	31	150	58.4
2003	11,375	441	3.9	335	106	-	-
2004	15,844	624	3.9	416	208	20	3.2
2005	19,054	743	3.9	460	282	20	2.7
2006	22,842	1,254	5.5	909	345	100	8.0
2007	27,132	1,934	7.1	1,324	610	100	5.2
2008	32,290	2,651	8.2	1,666	984	100	3.8
2009	45,294	3,182	7.0	1,785	1,397	100	3.1
2010	41,585	3,707	8.9	1,926	1,781	100	2.7
2011	41,876	5,092	12.2	2,329	2,763	100	2.0
2012	43,860	6,004	13.7	2,419	3,585	150	2.5
2013	46,057	6,569	14.3	2,351	4,218	250	3.8
2014	49,639	7,400	14.9	2,368	5,032	350	4.7
2015	54,978	8,859	16.1	2,590	6,269	700	7.9
2016	58,557	8,840	15.1	2,480	6,360	700	7.9

56) 「고용보험법」 제5조(국고의 부담) ①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의 관리·운영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57) 「고용보험법」 제4조(고용보험사업) ①보험은 제1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고용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실시한다.
②보험사업의 보험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단위: 억원, %)

연도	실업급여 계정지출 (A)	모성보호 육아지원 지출(B)	모성보호 육아지원 지출비율 (B/A)	모성보호육아지원		일반회계 전입금 (C)	전입금 비율 (C/B)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주1)	육아휴직 급여 등주2)		
2017	62,858	9,356	14.9	2,434	6,922	900	9.6
2018	79,157	11,041	13.9	2,493	8,547	900	8.2
2019	98,558	13,500	15.1	2,700	10,800	1,400	10.4
2020	138,860	15,614	11.2	2,942	12,672	1,800	11.5
2021	144,138	16,850	11.7	2,978	13,872	2,200	13.1
2022	141,325	20,772	14.7	3,126	17,646	3,000	14.4
2023	143,307	22,615	15.8	3,342	19,273	3,000	13.3
2024	151,541	25,738	17.0	3,742	21,996	4,000	15.5
2025	174,623	43,092	24.6	4,518	38,574	5,500	12.8

* 주1)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사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난임치료휴가 급여
주2)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자료: 고용노동부

2025년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의 지출액 대비 전입금의 비율은 12.8%로 전년 대비 하락하였는바, 법정 의무지출인 육아휴직 급여 등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의 지출을 위한 전입금 부족이 고용보험 실업급여 재정수지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국가의무지출인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계획액의 증가에 맞추어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고용지원정책관]

(1) 고용안정장려금(고용보험기금, 1345-350)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고용안정장려금’ 사업(2017년[58]~, 직접)은 고용안정, 정규직 전환,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 지원, 모성보호제도 활용 독려 등을 위한 각종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임.

2025회계연도 계획현액은 3,908억 9,400만원으로, 이 중 3,812억 9,900만원이 집행(97.5%)되었고, 95억 9,5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B)	계획 현액 (A+B)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 고용안정장려금	390,894	390,894	-	390,894	381,299	-	9,595	439,394

* 자료: 고용노동부

58) 각각의 장려금은 기존에도 있었으나, 동 세부사업으로 통합편성된 시기가 2017년임.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은 고용안정 및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활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출산·육아 지원제도 운영 등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생활 균형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사업주에게 각종 장려금과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동 사업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정규직 전환 지원,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주에게 장려금·인건비·인프라 구축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고용안정장려금 개요]

구 분	지원내용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소정근로시간 단축>** **(장려금 및 임금감소액 보전금)**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등으로 일을 그만두지 않고, 일정기간 근로시간 단축하여 근무하고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 지원 * 단축 근로자 1인당 장려금(월 최대 30만원), 임금감소액 보전금(월 최대 20만원), 최대 1년 지원 **<실근로시간 단축>** **(장려금)**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하여 연장근로 감소 등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 지원 * 근로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원(정액), 1년 지원
정규직 전환 지원	**(장려금 및 임금증가 보전금)** 6개월 이상 2년 이하 고용(사용)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 지원 * 근로자 1인당 장려금(월 최대 30만원), 임금증가 보전금(월 최대 20만원), 최대 1년 지원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 지원	**(유연근무제 장려금)**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게 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에 지원 * 활용횟수에 따라 월 최대 30만원, 1년 지원 **(일·생활 균형 인프라구축비)** 유연근무를 활용하거나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에 일·생활 균형 인프라 설치비용 지원 * 정보·보안시스템 등 시스템 구축비의용의 50~80%(최대 2천만원)
출산 육아기 고용 안정 장려금	**(장려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원 * 육아휴직 지원금: 월 30만원(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첫 3개월 월 20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월 30만원(인센티브 적용 시 월 10만원 추가 지급) **(대체인력 인건비)**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대체인력 지원금: 월 80만원(업무 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업무분담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 지원 (월 최대 20만원)

* 자료: 고용노동부

나. 고용안정장려금 지원금별 수요 분석 강화 필요

2025년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의 직접사업비(장려금 및 보험금) 전체 계획액은 3,858억 8,800만원, 결산액은 3,763억 7,100만원으로 전체 집행률은 97.5%로 나타났음.

각각의 장려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및 정규직 전환지원 장려금의 결산액은 각각 275억 1,600만원, 17억 7,800만원으로 당초 계획액 대비 78.1%, 71.1%로 나타난 데에 비해,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의 결산액은 192억 2,700만원으로 당초 계획액 대비 132.5% 집행되는 등 사업별 집행실적에는 다소의 편차가 발생하였음.

[연도별 고용안정장려금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장려금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계획액	23,345	28,860	33,132	35,238	55,274
	결산액	22,303	16,332	23,586	27,516	21,491
정규직 전환 지원 장려금	계획액	15,120	12,096	4,000	2,500	6,900
	결산액	10,345	9,150	9,599	1,778	679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계획액	16,446	16,446	12,314	14,513	12,009
	결산액	24,372	5,730	9,270	19,227	14,604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계획액	121,993	134,013	177,638	333,637	356,388
	결산액	149,521	170,635	290,803	327,850	275,930
계	계획액	176,904	191,415	227,084	385,888	430,571
	결산액	206,541	201,847	333,258	376,371	312,704

* 주: 1) 계획액은 당초 계획액 기준이며, 각 장려금 수치는 기타보전금 또는 보험금으로서 직접사업비 기준으로 작성
2) 2026년 결산수치는 7월 말 기준

* 자료: 고용노동부

아울러, 각각의 세부 장려금 집행실적을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당초 계획 대비 집행이 부진하거나 수요초과로 과다하게 집행되는 사례도 존재하는 바, 이하에서는 동 사업 내 각 장려금을 개별적으로 분석하겠음.

①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2025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기업의 장시간 근로 문화 개선을 위해 소정근로시간이나 실제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이에 따라 ① 소정근로시간 단축, ② 실근로시간 단축 등 2개 유형으로 나누어 시행되었음.

그런데, 각 장려금의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소정근로시간 단축 장려금은 당초 계획액과 유사한 규모로 집행되었으나, 실근로시간 단축 장려금의 경우 2024년 및 2025년의 당초 계획액은 약 108억원이나 결산액은 각각 12억원, 32억원 수준으로 상당한 불용이 발생한 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집행부진은 실근로시간 단축 장려금의 집행 부진에 기인하고 있음.

[연도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장려금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소정근로시간 단축	계획액	22,343	24,449	27,570
		결산액	22,343	24,335	20,172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액	10,789	10,789	2,557
		결산액	1,243	3,181	1,228

* 주: 1) 계획액은 당초 계획액 기준이며, 각 장려금 수치는 기타보전금 또는 보험금으로서 직접 사업비 기준으로 작성
2) 2026년 결산수치는 7월 말 기준
* 자료: 고용노동부

이와 같이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의 집행 성과의 차이가 발생한 것은 각 장려금 유형 간 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구조와 참여 유인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보임.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근로자가 육아, 돌봄, 학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상 근로시간 자체를 단축하는 제도로서 근로시간 감소에 따라 임금도 일정 부분 조정되는 구조인바,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시간 감소에 상응하는 인건비 부담 경감이 가능하며, 숙련 근로자의 퇴직을 방지하고 인력의 지속적인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제도 활용 유인이 높다고 볼 수 있음.

이에 반해 실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사업장 전체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제 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전 3개월 대비 2시간 이상 감소하는 것이 지급요건으로, 감소한 노동시간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 채용, 업무 재배치, 생산성 향상 및 근태관리체계 구축[59] 등을 부담하여야 하고, 노동집약적 업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생산 차질 우려가 커질 수 있으며, 연장근로수당 감소에 따른 근로자들의 참여 유인도 제한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따라 실근로시간 단축 장려금은 2024년도와 2025년도 각각 7,493명에게 월 30만원씩 평균 4.8개월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108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사업성과는 2024년 1,219명(평균 3.4개월), 2025

59) 실근로시간 단축 유형의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근로자 1인당 초과근무시간 등 장시간 근로 현황, 단축 목표 시간 및 시행일, 구체적인 단축 계획, 향후 지속 방안을 포함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2시간 이상 감소하여야 하며, 전자·기계적 방법으로 단축 전후 출퇴근 시간을 관리해야 함.

년 1,784명(평균 5.94개월)에 대한 지급에 그치는 등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는 2026년부터 실근로시간 단축 장려금의 신규 지원[60]을 종료하였음.

즉, 실근로시간 단축 장려금은 시행 첫해인 2024년도 집행액이 계획액의 11.5%에 그쳤고 다음 해에도 29.5%에 불과하였다는 점에서, 사업 시행에 앞서 실제 사업주 수요와 현장 수용 가능성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등을 설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음.

따라서, 향후 유사한 장려금 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업의 비용 부담, 근로자의 참여 유인 및 업종별 특성, 현장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게 제도를 설계하고, 지원규모를 결정할 필요가 있겠음.

②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기간제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인건비 일부 및 장려금을 지원하여 전환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하려는 취지로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등이 6개월 이상 2년 이하 고용(사용)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임.

60) 2026년 계획액은 2025년 말까지 신청한 기업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만 편성됨.

[정규직 전환 지원금 개요]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r>
<tr><td>지원
대상</td><td>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td></tr>
<tr><td>지원
기준</td><td>- 정규직으로 전환 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고, 다음의 조건을 충족
❶ 정규직 전환 후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❷ 고용보험 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❸ 기존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 등에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함</td></tr>
<tr><td>지원
내용</td><td>임금증가액에 따라 임금증가보전액 및 장려금 지원
<table>
<tr><th>전환 시 임금 증가</th><th>지원 수준</th></tr>
<tr><td>20만원 이상</td><td>임금증가 보전액 20만원 + 장려금 40만원 → 총 60만원
(2023년 이전 사업은 총 50만원)</td></tr>
<tr><td>20만원 미만</td><td>장려금 총 40만원(2023년 이전 사업은 총 30만원)</td></tr>
</table>
지원기간: 1년</td></tr>
</table>

* 자료: 고용노동부

동 지원금은 2015년 처음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2025년에는 당초 계획액 25억원 대비 71.1%인 17억 7,800만원이 집행되었음.

[연도별 정규직 전환 지원금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정규직 전환 지원금	계획액	17,896	15,120	15,120	12,096	4,000	2,500	6,900
	결산액	11,737	11,788	10,345	9,314	9,599	1,778	679
	집행률	65.6%	78.0%	68.4%	77.0%	240.0%	71.1%	9.8%

* 주: 1) 계획액은 당초 계획액 기준이며, 지원금 수치는 기타보전금 또는 보험금으로서 직접 사업비 기준으로 작성
2) 2026년 결산수치는 7월 말 기준('26년 재개된 사업으로 하반기 이후 집행 예상)

* 자료: 고용노동부

동 지원금의 최근 연도별 집행률은 2024년을 제외하면 대부분 약 70% 수준에 머물고 있어, 10년 이상 지원금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실제 집행실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1년과 2022년의 경우 실제 지원 인원은 당초 목표 인원 5,050명 대비 각각 80%, 74% 수준에 그친 바 있으며, 2023년과 2025년에는 지원 인원이 당초 목표한 인원보다 많았으나 평균 지원 단가가 낮아져[61] 집행부진이 발생하였음. 한편, 2024년의 경우 지원인원이 당초 목표 인원 대비 248% 초과되면서 당초 계획액 대비 2.5배 규모의 예산이 집행된 바 있음[62].

[연도별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원인원 및 단가]

(단위: 명, 천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인원	단가	인원	단가	인원	단가	인원	단가	인원	단가
편성	5,050	499	5,050	499	3,434	499	1,360	490	850	490
집행	4,065	483	3,735	462	4,044	377	3,370	475	935	317

* 주: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정규직 전환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 통보를 받은 날이 속한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에 계획을 이행(1회 6개월 연장 가능)한 시점부터 1년간 지급됨에 따라 2023년 이전에 신청된 지원금이 2025년 이후 집행될 수 있음
* 자료: 고용노동부

한편, 정부는 동 지원금 도입 이후 집행실적이 저조하다는 비판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신규 지원을 중단하였으나, 2026년 사업 재개를 발표하고 예산을 다시 편성한 바 있음.

61) 지급단가가 낮아지는 이유는 동 지원금이 정액 지급 방식이 아니라 임금증가액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구조이기 때문임. 동 지원금은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임금증가액에 따라 임금증가보전액 및 지원금이 지급되는데, 임금 증가액이 예상보다 작거나 지원기간을 모두 채우지 못하거나 일부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는 등에 따라 평균 지원 단가가 낮아질 수 있음.

62) 2024년 이후에는 신규 지원이 중단되어 기승인인원에 대한 잔여분만 집행되었음.

이와 같이 중단된 사업을 재개할 때에는 종전 사업의 정규직 전환율, 고용유지 효과, 임금·근로조건 개선효과 등 실질적 정책성과에 대한 분석과 그동안 집행실적이 부진했던 사유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그런데, 2026년 지원금 사업은 지원대상만 축소되었을 뿐[63] 지원요건 및 지원수준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에는 인건비 상승뿐만 아니라 퇴직금·복리후생비 등 고정비용 증가와 해고가 어려워지는 고용 경직성을 감수해야 하는 만큼, 단기적인 지원금이 실제 정규직 전환에 대한 유인으로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그 신청조건 및 지원단가에 대해서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동 지원금이 실제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③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유연근무제 장려금)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사업 중 유연근무제 장려금은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임.

63) 지원대상이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서 '30인 미만 기업'으로 축소되었음.

[유연근무제 장려금 개요]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r>
<tr><td>지원 대상</td><td>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td></tr>
<tr><td>지원 기준</td><td>
<table>
<tr><th>유형</th><th colspan="3">1개월 지급액</th><th>최대 지급액</th></tr>
<tr><td>재택·원격근무</td><td>15만원
(월 4~7일 활용)</td><td>20만원
(월 8~11일 활용)</td><td>3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td><td>360만원
(1년간)</td></tr>
<tr><td>육아기
시차출퇴근</td><td colspan="2">20만원
(월 6~11일 활용)</td><td>4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td><td>480만원
(1년간)</td></tr>
<tr><td>선택근무①</td><td colspan="3">30만원
(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td><td>360만원
(1년간)</td></tr>
</table>
</td></tr>
<tr><td>지원 유형</td><td>
<table>
<tr><td>선택근무</td><td>1개월(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업·종업 시각 및 1일 근로시간 등을 근로자가 결정하는 제도</td></tr>
<tr><td>재택근무</td><td>보통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일을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처리하는 방식</td></tr>
<tr><td>원격근무</td><td>보통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일을 주거지, 출장지와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처리하거나 외부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방식</td></tr>
<tr><td>시차출퇴근</td><td>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td></tr>
</table>
</td></tr>
</table>

* 자료: 고용노동부

동 장려금의 최근 연도별 예·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당초 계획액과 실제 집행액 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과 2022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택근무 수요 증가로 당초 계획액 대비 각각 346.7% 및 149.6%가 집행되었으나, 2023년과 2024년에는 집행실적이 계획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음. 반면 2025년에는 다시 계획액 대비 148.3%가 집행되었으며, 2026년의 경우 7월 기준 집행액이 이미 계획액 대비 130%를 상회하는 등 연도별 집행 규모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

[연도별 유연근무제 장려금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획액	23,554	15,746	15,746	9,614	11,813	10,609
집행액	81,652	23,563	5,185	8,109	17,522	14,604
집행률	346.7%	149.6%	32.9%	84.3%	148.3%	137.6%

* 주: 1) 계획액은 당초 계획액 기준이며, 장려금 수치는 기타보전금 또는 보험금으로서 직접 사업비 기준으로 작성
2) 2026년 결산수치는 7월 말 기준

* 자료: 고용노동부

이와 같은 집행 규모의 변동은 유연근무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기업의 인력운용 방식, 정부의 제도 개편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임.

구체적으로, 2023년과 2024년에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재택근무 수요가 감소한 가운데 중소기업의 제도 운영 부담, 근태관리시스템 구축[64] 등 추가적인 비용 부담으로 인해 사업 수요가 제한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2025년에는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한 재택·원격·선택근무 지원 수준을 일반 근로자의 2배로 상향[65]하고,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면서 관련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향후에는 최근의 제도 개편 효과와 육아기 유연근무 수요 증가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정교한 수요 예측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정 수준의 사업비를 편성할 필요가 있음.

---

64) 유연근무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그룹웨어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지원대상 근로자의 출근 및 퇴근 시각을 관리(재택·원격근무는 근로자 동의서도 인정)하여야 함.

65) 2025년 1월부터 '유연근무 장려금'은 재택·원격근무 활용 요건을 월 6일에서 4일로 완화하고,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시차출퇴근, 재택·원격, 선택근무 등을 활용할 경우 지원금이 2배로 가산되어 1인당 연간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변경되었음.

④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자에게 모성보호제도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개요]

구 분	내 용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휴직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특례*3개월 동안 월 200만원) * 만 12개월 이내(임신중포함), 3개월 이상 연속 부여 시 첫 3개월 월 200만원, 이후 월 30만원 ** '25년 개편사항: 남성육아휴직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신설(1~3번째 월 4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1~3번째 월 40만원)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1인당 월 120만원(인수인계 2개월 포함)
업무분담 지원금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20만원

* 자료: 고용노동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세부사업 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내역사업으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 지원 등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최근 수년간 예산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음. 동 장려금의 계획액은 2022년 1,220억원에서 2025년 3,336억원으로 증액

되었으며, 2025년에는 계획액 3,336억 3,700만원 중 3,278억 5,000만원(98.3%)이 집행되었음.

동 장려금의 기금계획액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최근 사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당초 계획액 대비 결산액이 초과되어 기금계획액 수정이 반복되고 있음.

[연도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계획액	121,993	134,013	177,638	333,637	356,388
집행액	149,521	170,635	290,803	327,850	275,930

* 주: 1) 계획액은 당초 계획액 기준이며, 각 장려금 수치는 보험금으로서 직접 사업비 기준으로 작성
2) 2026년 결산수치는 7월 말 기준

* 자료: 고용노동부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3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및 대체인력 지원금은 당초 계획액 대비 각각 238.4%, 416.9% 초과 집행되었으며, 2024년에는 육아휴직 지원금 및 대체인력 지원금이 각각 192.6%, 153.0% 초과 집행되었으며, 2025년에도 육아휴직 지원금은 180.0% 초과 집행되었음. 반면, 2024년 신설된 업무분담 지원금의 경우, 2024년 및 2025년 집행률은 각각 13.6%, 18.9%로서 실제 수요 대비 과다 편성되고 있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예결산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2023		2024		2025	
	계획액	결산액	계획액	결산액	계획액	결산액
계	134,013	170,635 (127.3)	177,638	290,803 (163.7)	333,637	327,850 (98.3)
육아휴직 지원금	115,946	115,407 (99.5)	117,610	226,562 (192.6)	123,646	222,603 (180.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11,260	26,849 (238.4)	43,261	41,894 (96.8)	55,404	44,448 (80.2)
대체인력 지원금	6,807	28,379 (416.9)	14,391	22,024 (153.0)	119,352	54,124 (45.3)
업무분담 지원금	-	-	2,376	323 (13.6)	35,235	6,675 (18.9)

* 주: 계획액은 당초 계획액 기준이며, 각 장려금 수치는 보험금으로서 직접 사업비 기준으로 작성
* 자료: 고용노동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저출생 대응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서 최근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수요 증가에 따라 사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2025년에도 높은 집행률을 나타내는 등 정책적 필요성과 현장의 수요가 인정되는 사업으로 볼 수 있음.

다만, 최근 육아휴직 지원금과 대체인력 지원금은 당초 계획액을 크게 초과하여 집행된 사례가 많은 반면, 2024년 신설된 업무분담 지원금은 2024년 및 2025년 집행률이 각각 13.6% 및 18.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각 지원금별 수요 예측의 정확성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특히 업무분담 지원금의 경우, 신설[66] 이후 집행실적이 저조하여 2026년에는 전년 대비 약 100억원 감액된 251억 9,4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26년 7

66) 업무분담 지원금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24년 7월 신설되었으며, 2025년 1월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업무분담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제도가 확대되었음.

월 말 기준 업무 분담지원금 집행액은 96억 700만원(계획액 대비 38.1%)이 집행되었으며, 연중 집행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이 여전히 저조한 수준인 만큼, 사업 수요 및 집행 여건[67]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적정한 예산 규모를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세부사업별 수요 특성과 현장의 활용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저조한 집행이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방식 및 지원수준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67) 동 지원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동료 근로자가 분담한 경우 사업주에게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나, 실제 현장에서는 업무 분담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지원 수준 또한 사업주의 참여를 유인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고용노동부는 업무 분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서 내 분담업무 및 업무분담기간 기재, 임금대장 등을 제출받고 있으며, 영세 사업장의 부담 완화를 위해 추가 제출 서류는 간소화하였으며, 사업주의 참여 유인 강화를 위해 2026년부터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지원 상한을 인상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 통합고용정책국·청년고용정책관 》

[통합고용정책국]

(1) 중장년 인턴제(일반회계, 1336-305)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중장년 인턴제[68]' 사업(2025년~, 직접)은 사무직 등 주된 업무에서 조기 퇴직한 중장년에게 경력전환형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79억 3,000만원으로, 이 중 79억 700만원이 집행(99.7%)되었고, 2,3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중장년 인턴제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B)	이·전용 등 (C)	예산 현액 (A+B+C)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 중장년 인턴제	3,640	7,930	-	-	7,930	7,907	-	23	8,417

*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은 50세 이상인 참여자를 대상으로 1~3개월간 유망 자격·훈련 분야에 대한 실무수행 및 직무교육, 멘토링 등을 포함하는 인

68) 2026년부터 사업명이 '중장년 인턴제'에서 '중장년 경력지원제'로 변경되었음.

턴십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참여자에게는 월 최대 150만원의 참여수당이 지급되고, 참여기업에는 월 최대 40만원의 운영지원금이 지급됨.

[중장년 인턴제 개요]

구 분	세부 사항
참여 유형	(현장실습형) 1~3개월 간 직무교육과 직무수행을 연계하여 제공 (근로계약형) 예외적으로 기업에서 근로계약을 희망하는 경우 근로계약 체결 가능(근로계약 시 4대보험 가입 필수)
참여 요건	(참여자) 퇴직 후 경력전환을 위해 자격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세 이상 중장년 ①당해 연도 중 만 50~65세인 한국 국적 미취업자 ②다음과 같이 일경험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자 - 훈련기관 등을 통해 자격취득 또는 훈련 이수 후 운영기관·고용센터, 중장년내일센터를 통해 일경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IAP 수립 후 자격취득 또는 훈련 이수 후 일경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참여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기업 등 - 임금체불·고용보험료 체납·중대재해 사업주 등 참여 불가
지원 내용	①참여자: 참여수당 월 최대 150만원 ②참여기업: 프로그램 운영수당 참여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
프로 그램	1~3개월간 유망 자격 · 훈련 분야 실무 수행, 직무교육, 멘토링 - 분야: 전기, 소방 · 시설, 산업안전,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등 숙련이 필요한 분야 - 직무교육: 소양 · 마인드셋, 디지털, 직무심화교육 등

<table>
<tr><td rowspan="5">집행
절차</td><td>고용센터</td><td>심사, 선정</td><td>운영기관 연계</td><td>일경험
지원·관리</td><td>사후관리</td></tr>
<tr><td>대상자 적격성
확인</td><td>참여자 요건
확인</td><td>운영기관에
안내</td><td>지원금 교부,
운영기관
지도·점검</td><td>만족도 조사</td></tr>
<tr><td>↕(계약)</td><td>↑</td><td>↓</td><td></td><td></td></tr>
<tr><td>운영기관</td><td>발굴</td><td>매칭</td><td>일경험
지원·관리</td><td>사후관리</td></tr>
<tr><td>대상자
발굴·매칭</td><td>참여자 및·
참여기업 발굴</td><td>참여자· 및
참여기업 매칭</td><td>교육 제공,
현장 모니터링</td><td>취업연계 지원,
취업 현황관리</td></tr>
</table>

* 자료: 고용노동부

나. 중장년층 경력전환 및 일경험지원 사업의 차별화 필요

중장년 인턴제는 사무직 등 주된 업무에서 퇴직한 중장년에게 경력전환형 일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취업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최근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직무전환 수요 확대 등을 고려할 때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 중장년층의 경력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 부족과 직무 적응 문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하에 2025년 신규 사업으로 실시되었음.

동 사업은 기존 사업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의 내역사업인 일경험프로그램 중 중장년층 지원대상 사업을 이관하여 신규 세부사업으로 편성한 것으로,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 내 일경험프로그램 사업 중 중장년층 지원대상 사업은 '중장년 인턴제' 사업으로, 청년층 지원대상 사업은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일반회계 1051-305) 사업으로 2025년에 각각 이관되었음.

일경험 프로그램을 사업참여자의 세대에 따라 분리한 것은 청년층과 중장년층이 직면하는 노동시장 여건과 취업 애로요인이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특히 중장년층의 경우 퇴직 이후 경력전환 과정에서 새로운 직무에 대한 적응과 실무경험 축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별도 사업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다만, 동 사업은 기존 일경험 프로그램의 지원방식을 상당 부분 유지하면서 사업명과 운영체계만 분리한 것으로 보여, 운영상 차별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봄.

우선,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사업 내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동 사업은 기업탐방형, 프로젝트형, 인턴형, ESG지원형 등 다양한 유형의 일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권역별 지원센터와 통합지원센터 및 운영기관을 통해 상담·컨설팅·매칭 기능이 수행되고 있음.

[청년일경험 지원사업 유형 구분]

유형		프로젝트형	인턴형	ESG지원형	기업탐방형
기간		2개월 내외	1~5개월 내외	6개월 이내	5일 내외
수행 방식		• 기업에서 제안한 팀 프로젝트를 수행 • 기업 또는 운영기관 지정 전문가가 수행 과정 코칭	• 기업 현장에서 과업을 직접 수행 • 기업은 과업 수행 지도를 위한 멘토 등 지정·운영	• 기업 등이 자율적으로 편성한 일경험, 직무훈련 등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	• 기업에 방문하여 현직자와의 대화, 직무체험 등 프로그램 참여
	사전 교육	직무교육(15시간 이상)	직무기초교육(5시간이상) + 직무교육(15시간 이상)		
지원내용	청년	프로젝트 수행비	참여수당	참여수당	-
	기업	프로젝트 기획·코칭·심사 등 운영·관리비	멘토수당 등 운영·관리비	운영비 지원 (대기업 50% 매칭)	시설 이용 등 운영비
	기타	프로그램 운영비(운영기관) 직무교육 운영비(교육기관)	프로그램운영비(운영기관) 직무교육운영비(교육기관)	-	프로그램 운영비 (운영기관)

* 자료: 고용노동부

또한,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부 사업뿐만 아니라 관계부처·지자체 사업, 공공부문 등의 일경험 프로그램까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통합 플랫폼(청년일경험 포털, https://yw.work24.go.kr/main.do)을 구축하여 청년층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일경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이에 비해 중장년 인턴제 사업은 참여기업[69]에서 제공하는 1~3개월 간의 유망 자격·훈련 분야[70] 실무수행, 직무교육[71], 멘토링 등을 제공하는 단일 프로그램으로서 청년일경험 지원사업 중 인턴형과 유사한 형태인데, 이는 중장년의 경우 이미 상당한 직업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단순 기업탐방이나 직무체험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을 설계한 것으로 보임.

다만, 2025년 청년 일경험 사업은 총 57,600명을 대상으로 2,141억원이 편성·집행된 데에 비해 중장년 인턴제 사업은 2,000명을 대상으로 79억원이 편성된바,[72] 세대별 일경험 지원 사업의 예산 규모와 사업 범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최근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중장년층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한편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새로운 직무 분야로의 전환 수요 또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이 단일한 인턴형 프로그램만으로 다양한 중장년층의 경력전환 수요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

69)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기업
70) 전기, 소방·시설, 산업안전,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등 숙련이 필요한 분야
71) 소양·마인드셋, 디지털, 직무심화교육 등
72) 2026년 사업 예산은 84억 1,700만원으로 2025년 추경예산 대비 4억 8,700만원 증액되었으나, 참여수당 및 프로그램 운영수당은 전년과 동일한 72억 9,500만원이 편성되었음.

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해 보임.

특히 중장년층은 경력 수준, 퇴직 전 직종, 희망 직무 및 재취업 목적 등이 매우 다양하므로, 경력설계 및 직무탐색 중심 프로그램, 직업훈련 연계형 프로그램, 전문경력 활용형 프로그램 등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원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중장년 인턴제 사업은 사회복지, 전기, 소방, 산업안전 등 특정 분야만을 대상으로 한 일경험지원 사업만 실시되고 있어 대상자의 특성을 적극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음.

다음으로, 중장년 인턴제 수료 이후 재취업에 성공한 통계를 살펴보면, 2025년 사업 참여자 1,618명 중 고용보험 취득자는 660명(40.8%)이며, 이 중 일경험 참여기업에 취업한 사례는 90명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대표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사업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2025년 평균 취업률은 약 60%, 국민취업지원제도 제2유형 중 중장년층의 취업률은 약 50% 수준이라는 점, 중장년 인턴제 사업의 참여자 중 다수는 취업 분야에 대한 자격증 취득자로서 취업 준비 및 의지가 담보된 측면이 있다는 점, 동 사업은 사회복지, 보육, 보건의료, 조리, 전기, 소방·시설 등 비교적 구인 수요가 명확히 존재하는 전문분야로 한정하여 추진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의 정량적인 취업 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예산 편성·집행 측면에서 살펴보면, 2025년 사업 예산은

총 2,000명에 대해 2.4개월 분의 참여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편성하였으나, 실제 평균 참여기간은 2.9개월로서 실제 참여자는 당초 2,000명에서 1,720명으로 감소하였음.

이처럼 평균 참여기간이 당초 예상보다 길어진 것은 참여자의 조기 취업이나 개인사유 등으로 인한 중도이탈률이 예상보다 낮았기 때문으로 보이는바, 고용노동부는 적정한 참여기간을 고려한 예산 편성을 통해 프로그램 참여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40세 이상 중장년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장년층 취업지원 사업[73]이 동 사업과 별도로 세부사업으로 편성·운영되고 있는데, 해당 사업은 중장년 내일센터[74]를 통해 직업지도, 생애경력설계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장년 인턴제 사업에서는 단순한 일경험 제공[75]보다는 중장년 내일센터의 경력설계·전직지원 서비스와 연계하여 참여자의 경력진단, 직무전환 준비, 취업알선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어 보임.

특히, 중장년층의 경우 청년층과 달리 기존 경력과 신규 직무 간의 연계성이 재취업 성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일경험 참여 이전 단계에서 적합한 직무전환 분야를 탐색하는데 필요한 직업훈련을

---

73) 일반회계 1340-300

74) 만 40세 이상 중장년의 평생현역 활동을 위한 생애경력설계서비스, 퇴직(예정)자를 위한 전직스쿨 프로그램, 재취업을 위한 재도약 프로그램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기관으로, 전국 40개 센터가 운영 중임.

75) 중장년 경력지원제 참여자는 훈련기관 등을 통해 자격취득 또는 훈련 이수 후 운영기관·고용센터, 중장년내일센터를 통해 일경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IAP(취업활동계획, Individual Action Plan) 수립 후 자격취득 또는 훈련 이수 후 일경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참여 전 단계에서 다른 재정사업과 일부 연계되어 있음.

강화하고, 재취업 단계별 서비스를 연계하여 일경험 종료 이후에는 취업알선 및 고용유지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통합적인 지원체계[76]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76) 고용노동부는 중장년고용네트워크 등 협업체계(중장년고용네트워크)를 통해 중장년내일센터·고용센터 등 지역 일자리 유관기관이 적합 일자리 발굴·훈련·일경험·취업알선 등 중장년 경력전환·이음을 통합 지원하고 있으며, '25년 15개소에서 '26년 37개소로 확대 중임.

(2) 고령자고용안정지원금(고용보험기금, 1347-350)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고령자고용안정지원금’ 사업(2006년~, 직접)은 고령자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정년연장 등의 조치를 하는 사업주(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및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되는 근로자(임금피크제)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고용촉진을 도모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25회계연도 계획현액은 648억 1,100만원으로, 이 중 631억 2,800만원(97.4%)이 집행되었고, 16억 8,3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고령자고용안정지원금(고보) 사업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B)	계획 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고령자고용안정지원금	56,730	64,811	-	64,811	63,128	-	1,683	53,560
▪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35,706	21,480	-	21,480	20,494 [20,494]	-	986	22,493
▪ 고령자 고용지원금	21,016	43,331	-	43,331	42,635 [42,635]	-	696	20,382
▪ 임금피크제지원금	8	-	-	-	-	-	-	1
▪ 고령자통합장려금	-	-	-	-	-	-	-	10,684

*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 ② 고령자

고용지원금 사업 ③ 임금피크제지원금 사업이 있으며 내역사업별 개요는 다음과 같음.

[2025년 고령자고용안정지원금 내역사업 개요]

구 분	지원 사업장	지원 대상 및 요건	지원내용	종료기간 (지원종료)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사업주)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 기업	· 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하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정년 연장 또는 폐지, 정년퇴직자 재고용)를 도입한 사업주	· 계속고용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	-
고령자 고용지원금 (사업주)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 기업	· 60세 이상 근로자를 직전 3년 평균 대비 초과 고용한 사업주	· 증가 근로자 1인당 분기별 3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	·'26.1분기 신규지원 중단, '25.4분기 최초 신청 건에 한해 계속 지원(최대 2년, ~27년) + 신청기간 1년 ('28년 지원종료)
임금피크제 지원금 (근로자)	모든 사업장	· 정년 연장으로 인해 사업장에서 10% 이상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	· 피크 임금 대비 10% 이상 낮아진 금액을 지급하되, 1인당 연간 1,080만원 한도	·고보법 시행령 제28조 사업으로 '16.12.31. 사업종료 - 다만, '13.12.31.까지 적용자 10년간 지원(~'23년) + 3년 소멸시효 ('26년 지원종료)

* 자료: 고용노동부

나. 연례적 기금운용계획 변경 지양 필요

동 사업은 당초 567억 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80억 8,100만원을 증액하였음. 내역사업별로 살펴보면 고령자 고용지원금 사업은 당초 계획액인 210억 1,600만원보다 많은 223억 1,5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은 당초 계획액의 39.8% 수준인 142억 2,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임금피크제지원금 사업은 당초 계획액인 800만원을 전액 감액[77]하였음.

[내역사업별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당초계획(A)	수정계획(B)	차이(C, B-A)	증감률(C/A)
고령자고용안정지원금	56,730	64,811	8,081	14.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35,706	21,480	△14,226	△39.8
·고령자 고용지원금	21,016	43,331	22,315	106.2
·임금피크제지원금	8	-	△8	100

* 자료: 고용노동부

그런데 동 사업의 최근 4년간 집행 현황을 보면 매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이루어졌는데, 2023년 이후 고령자 고용지원금 사업 증액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 감액 양상이 반복되고 있음.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계속고용제도 도입 등을 전제로 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요건 충족이 용이한 고령

77) 소멸시효에 따른 잔여사업으로 예비 잔여사업비를 미집행함

자 고용지원금에 대한 신청(소급신청 포함)이 많아 내역사업별 지원 목표와 실제 지원 간 차이가 발생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함.[78]

[최근 4년 고령자 고용지원금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당초 계획액	5,400	55,848	26,975	21,016
계획 변경액	17,634	19,950	31,334	22,315
집행액	22,567	71,659	58,787	42,635
변경사유	신설사업 집행 증가	소급신청에 따른 집행 증가	소급신청에 따른 집행 증가	소급신청에 따른 집행 증가

* 자료: 고용노동부

[최근 4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당초 계획액	10,800	26,795	34,982	35,706
계획 변경액	11,452	△7,500	△15,892	△14,226
집행액	22,631	19,101	18,467	20,494
변경사유	제도개편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장 증가	지원요건 강화에 따른 신청 감소	지원 목표대비 신청 감소	지원 목표대비 신청 감소

* 자료: 고용노동부

78) 고용노동부는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고용노동부 고시)를 개정하여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의 접수 요건을 신설하는 등 한정된 정부 예산 범위 내 사업추진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으나, '22.1~2분기를 최초로 하는 지원금 신청 건(최대 지원기간 2년)의 소급신청(시효 3년)이 이후 지속됨에 따라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함
- '22.7.1. 개정: '22.3분기를 최초 신청으로 하는 지원금건부터 시행공고에 따른 지원금 신청서 접수기간(통상 신청분기 익월부터 1개월) 내에만 신청 가능
- '23.1.1. 개정: 2회차 신청부터 해당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소급신청 등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정확한 추계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2023년부터 계획액 대비 집행액이 낮고,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계획액 대비 집행액이 높은 수준이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여 연례적으로 유사한 사유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비록 「국가재정법」 제7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9조[79]는 예측할 수 없거나 긴급한 자금의 소요가 필요한 경우 등 세부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기금을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유사한 사유로 연례적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향후 수요 변동 요인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각 사업별 집행 상황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연례적인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79) **「국가재정법」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기금관리주체는 지출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기금관리주체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세부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목적으로는 변경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3)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1453-304)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사업(2002년~, 출연)은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표준사업장의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2025회계연도 계획현액은 528억 5,600만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음.

[2025회계연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B)	이·전용 등 (C)	예산 현액 (A+B+C)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추경(A)							
□ 장애인 표준 사업장 지원	52,856	52,856	-	-	52,856	52,856 [51,193]	-	-	60,243

* 자료: 고용노동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사업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80]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

8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에게 그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소속 장애인의 근로의욕 증진, 직업생활의 질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업장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4분의 3 범위 내에서 최대 10억원까지 무상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음.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제도 개요]

구 분	세부 사항
사업장 인증 요건	장애인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면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장애인 편의 시설을 갖추는 등 장애인고용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표준사업장으로 인증 **※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요건** ① 장애인 근로자 10명 이상, ② 상시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 ③ 중증장애인을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시 15%, 100~300명 미만시 10%+5명, 300명 이상시 5%+20명 고용 ④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⑤ 장애인 편의시설 구비 **※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⑥ 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모회사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융자 또는 지원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주를 우대하여야 한다.

1.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비영리 법인 또는 다른 민간 기업으로부터 출자를 받는 등 지역 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통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

④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표준사업장을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8조·제29조 및 제33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고용하는 근로자 수(다만, 여성·중증장애인을 제외한 장애인은 그 총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를 말하며, 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올린다)에 포함하고,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해당 사업주의 사업장으로 본다. 다만,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제2조제8호 및 제22조의2(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으로 설립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한정한다)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기간이 속하는 월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둘 이상의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경우에는 그 비율에 해당하는 근로자 수(그 수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에는 버린다)를 해당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포함한다. 다만,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둘 이상의 사업주 중 제4항에 따른 실질적 지배사업주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다른 사업주가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비율에 해당하는 근로자 수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수를 실질적 지배사업주가 고용하는 근로자 수에 포함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융자 또는 지원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원 사항	**(무상지원금)** 작업 시설, 편의 시설, 장애인 출퇴근용 승합차, 장애인 고용관리 전문가 비용 등 총 투자금액의 75%까지 최대 10억 원 지원 - 지원금 4천만 원 당 장애인 1명 신규 고용 및 7년간 고용유지 의무, 고용의무 미준수 시 월할 계산하여 지원금 환수 ※ 무상지원금 9억원 이상 지급받은 사업체가 추가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총 지원금액 15억원 이내에서 지원 가능 **(운영지원)** 공공기관은 총 구매액의 0.8% 이상을 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구매하여야 하고, 수의계약 가능 **(세제혜택)** 최초 3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다음 2년간 50% 감면 **(연계고용 인정)**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도급계약 시 부담금 감면
지원 제한	1.「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2. 무상지원금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사업주.(이행담보 제출 또는 투자를 완료하지 않은 사유인 경우 제외) 3. 무상지원금을 지급 받고 있거나 제8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고용의무기간이 종료된 사업주.(사업주가 종전에 부여받은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에 더하여 장애인 고용인원을 추가할 목적으로 지원금 최대지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제외)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로부터 무상지원금용도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설치 · 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 또는무상지원 받은 사업주(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은 후 부족분에 대해 무상지원금을 신청하는 사업주는 제외) 5. 무상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사업주와「국세기본법」제2조제2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 자료: 고용노동부

나. 사후관리를 통한 표준사업장 인증취소 방지 노력 필요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일반 사업장보다 높은 수준의 장애인 고용비율과 편의시설 등을 갖춘 사업장으로서, 장애인 고용 확대와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표적인 인프라 지원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자회사형·컨소시엄형·도약지원형 등 지원유형이 다양화되면서 장애인고용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2025년도 말 기준으로 총 873개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동 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 수는 총 19,639명으로 나타남.

[연도별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 현황]

(단위: 개소, 명)

연도	표준사업장 수	장애인 근로자 수 (중증장애인 수)
2022	622	14,407(11,470)
2023	694	16,093(12,930)
2024	797	18,115(14,474)
2025	873	19,639(15,645)

* 자료: 고용노동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사업은 이러한 표준사업장의 설립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장 설립 초기 시설·장비 구축 등에 필요한 자본투자비용의 일부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별 사업장에 상당한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는 것이 특징임. 이에 따라 지원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며, 2025년에는 189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약

500억원의 무상지원금이 지원되었음.

[연도별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지원 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

연도	지원 사업체 수	지원 금액
2022	183	31,991
2023	163	38,537
2024	194	49,029
2025	189	49,988

* 자료: 고용노동부

다만, 현행 표준사업장 지원 제도는 무상지원금과 최초 5년에 지원되는 세제 혜택 등 사업장 설립과 초기 투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고, 지원 이후 사업장의 경영 안정성이나 장애인 고용 유지 실적에 대한 성과관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측면이 있음.

특히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표준사업장에 부여되는 세제혜택, 생산품 우선구매,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 등 각종 제도적 혜택을 활용할 수 없게 되고, 인증취소는 해당 사업장이 당초 표준사업장으로서 충족하였던 장애인 고용비율, 편의시설 구비 및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 등의 기준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의미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근로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81]이 있음.

81)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사업은 시설·장비 등의 초기 투자뿐만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의 장애인 고용을 지속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인증취소가 증가할 경우 당초 재정지원을 통해 조성한 장애인 친화적 작업환경과 장애인 일자리가 장기간 유지되지 못하는 문제가

그런데 최근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및 인증취소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인 표준사업장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인증취소 건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표준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2025년의 경우 인증취소 건수는 65건으로, 예년 대비 인증취소 건수가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및 인증취소 현황]

(단위: 개소)

연도	표준사업장 수	신규 인증	인증취소 건수			
			자진반납	인증기준 미준수	부정인증	소계
2022	622	94	**32(84%)**	5(13%)	1(3)	38
2023	694	109	**28(76%)**	8(22%)	1(3%)	37
2024	797	143	**24(60%)**	14(35%)	2(5%)	40
2025	873	141	**50(77%)**	15(23%)	-	65

* 주: 비율은 구성비

*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최근 4년간의 인증취소에 따르면, 134건은 자진반납, 42건은 인증기준 미준수, 4건은 부정인증으로, 대부분 자진반납에 의한 인증 취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업을 수행하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자진반납의 이유나 배경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분석을 하고 있지 않음.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사업은 설립 당시의 고용창출 효과뿐만 아

발생할 수 있음. 실제 지원금은 작업시설·편의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 등에 사용되고, 지원 이후에도 신규 장애인 고용 및 표준사업장 기준의 이행이 요구되고 있으며, 약정된 운영기간(7년) 이내에 인증이 취소될 경우, 기운영기간을 제외한 월할분의 무상지원금이 환수됨.

니라 지원 이후 표준사업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인증취소가 증가할 경우 지원된 시설·장비 투자와 장애인 일자리 창출 효과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못하고, 재정투입의 실효성 또한 저하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인증취소의 원인과 배경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현행 제도가 인증사업장의 지속적인 운영을 적절히 지원하고 있는지, 인증 유지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제도적 요인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 국가기관 우선구매 비율 제고 노력 필요

장애인 표준사업장 우선구매 제도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총 구매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우선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의4[82]에 근거함[83].

상기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표준사업장 우선구매 비율은 2019년까지 0.3%였으나, 2020년 0.6%, 2023년 0.8%로 상

---

8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의4(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물품·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이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라 한다)을 우선구매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공공기관별 총구매액(물품과 용역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실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구매계획의 이행 점검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과 해당 연도의 구매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36호]
Ⅰ.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은 1000분의 8으로 한다.

83)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는 공공조달시장의 구매력을 활용하여 정책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기업이나 생산품의 판로를 지원하고 취약계층의 고용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등 다양한 법률에서 규정되고 있음. 참고로,「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경우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향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비율 또한 증가하고 있는바, 2025년의 표준사업장 생산품 총 구매액은 1조원을 상회하며 구매비율은 1.47%를 기록하였음을 볼 때, 우선구매 목표비율 상향은 실효적인 정책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연도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총 구매액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총 구매액	표준사업장 생산품 총 구매액	구매비율
2018	48,119,630	267,326	0.56
2019	51,314,531	399,397	0.78
2020	60,535,088	551,824	0.91
2021	64,416,749	593,006	0.92
2022	70,599,814	709,992	1.01
2023	72,825,220	842,467	1.16
2024	69,937,758	876,038	1.25
2025	69,527,411	1,020,641	1.47

* 자료: 고용노동부

다만, 공공기관 유형별 우선구매 실적을 살펴보면, 국가기관의 구매비율은 최근 개선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2025년 0.74%로서 2023년 고시된 의무 구매비율 0.8%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84].

84) 참고로, 국가기관별 우선구매비율을 준수한 기관은 총 58개 기관 중 24개 기관으로, 34개 기관(58.6%)은 우선구매비율을 준수하지 못하였음.

[공공기관 유형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비율 현황]

(단위: 십억원,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총 구매액	표준 사업장 생산품 구매액	구매 비율	총 구매액	표준 사업장 생산품 구매액	구매 비율	총 구매액	표준 사업장 생산품 구매액	구매 비율
국가기관	**19,988**	**95**	**0.48**	**17,489**	**98**	**0.56**	**16,468**	**122**	**0.74**
공기업	15,210	230	1.51	15,185	202	1.33	15,337	261	1.70
교육청	10,150	140	1.38	10,374	139	1.34	10,115	182	1.80
지방 자치단체	9,333	190	2.04	9,548	226	2.37	10,211	237	2.32
기타 공공기관	8,741	69	0.79	7,088	69	0.98	7,723	72	0.93
준정부 기관	5,786	89	1.54	5,859	100	1.71	5,664	95	1.68
지방 공기업	3,024	24	0.80	3,818	34	0.90	3,309	44	1.34
지방 의료원	344	5	1.43	338	6	1.75	366	1	1.84
특별법인	249	0.3	0.11	267	3	0.14	335	7	0.29
계	**72,825**	**842**	**1.16**	**69,938**	**876**	**1.25**	**69,527**	**1,021**	**1.47**

* 자료: 고용노동부

이처럼 국가기관의 구매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현행법상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별도의 제재가 없고, 공기업·준정부기관과 달리 구매실적이 경영평가 등 성과평가에 직접 반영[85]되지 않아 우선구매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유인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2025년 기준 국가기관의 총구매액은 16조 4,682억 원으로 전체 공공구매

8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 ④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실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액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구매주체로서,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면 약 100억 원 규모의 추가 판로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기관의 우선구매 이행은 다른 기관에 비해 정책적 파급효과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음.

아울러, 국가기관은 법률상 우선구매 의무를 부담하는 공공부문의 대표적인 기관으로서 공공조달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도 의무구매비율을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용노동부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국가기관의 우선구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매실적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경우 보건복지부는 '한국장애인개발원' 및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를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공공기관과 생산시설 간 수의계약을 대행하고 구매를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구매 접근성을 높이고 생산시설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있는바, 장애인 표준사업장 우선구매 제도 역시 공공기관과 표준사업장을 연계하는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하거나 구매 대행·매칭 기능을 강화하는 등 우선구매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청년고용정책관]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일반회계, 1043-301)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2022년 ~, 직접)은 청년을 고용한 사업주와 해당 사업체에 근속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지를 촉진하여 청년고용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7,914억 2,600만원으로, 이 중 7,188억 1,900만원(90.8%)이 집행되었고, 726억 7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결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B)	이·전용 등 (C)	예비비	예산 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청년일자리창출지원	777,181	802,597	-	△11,171	-	791,426	718,819 [718,819]	-	72,607	907,959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777,181	802,597	-	△11,171	-	791,426	718,819 [718,819]	-	72,607	907,959

* 자료: 고용노동부

나. 예산 추계 및 집행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한 적정 규모의 예산 편성 필요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청년고용이 악화된 상황에서, 주요 청년 채용장려금 사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등)이 2021년 일괄 종료됨에 따라 청년고용 활성화와 취업애로청년의 취업 촉진을 위해 한시적(2022~2024년)으로 추진했던[86] 사업임.

그러나 청년실업 문제 장기화 등 고용 상황이 악화되면서 2025년에는 ‘유형1’(사업주 지급)과 ‘유형2’(빈일자리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 및 해당 사업주에게 지급)로 구분하여 운영하면서 계속사업으로 변경하였음[87].

① ‘유형1’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것이며, ② ‘유형2’는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고, 해당 빈일자리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 근로자’에게 2년간 최대 480만원(6・12・18・24개월차 각 120만원)을 지원하는 것임.

---

86) 고용노동부는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한시사업(2022~2024년)으로 실시한 바 있음.

[2024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 업종	지원대상청년	지원기간	사업주지원(청년1인당)	목표인원	예산
모든 업종	취업애로청년	2년	1,200만원 = 720만원(60만원/月, 1년) + 2년차 480만원	12.5만명	6,078억원

87) 2026년에는 ‘유형1’과 ‘유형2’가 아닌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운영

[2025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개요]

구분	유형1	유형2
지원 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28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지원대상 업종	모든 업종	빈일자리 업종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취업애로청년은 ▲만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 국민취업지원 참여자 등을 의미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은 1인 이상도 가능	① 청년* 을 채용한 5인 이상의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 ② 해당 기업 취업 후 빈일자리 업종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 * 청년: 채용일 기준 만15세~34세 * 빈일자리 업종은 조선업, 뿌리산업 등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대분류 'C'에 속한 기업 전부)과 농업, 해운업, 수산업 등 제조업 외 업종(관계부처 추천 기업)으로 구성
지원 내용	기업에게 신규채용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기업에게 신규채용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재직 시 2년간 최대 480만원을 지원(6·12·18·24개월차 각 120만원씩 지원) * 추경 시, 지급 시기 변경

*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위해 월별 채용인원, 고용유지율 등을 추계하여 2025년 본예산[88]에 7,771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음.

이후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① 당초 동 사업의 지원대상 청년에서 제외되었던 '대학교 졸업예정자'를 지원대상에 포함[89]하

88) 동 사업의 본예산은 ① 기타보전금(기업지원금으로 2023년, 2024년 채용자에 대한 잔여 지원금 및 2025년 채용자에 대한 신규 지원분) ② 민간위탁사업비(지급조건을 만족한 청년 1인당 운영기관에 지급되는 비용) ③ 사업출연금(전산시스템 유지·보수) ④ 수용비 등 경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 기준 기타보전금이 본예산의 96.6%를 차지하고 있음

89)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집행 전까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청년 중 ①친인척 관계 ②외국인 ③지자체 등으로부터 중복지원 받는 청년 ④학업 중인 자(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 ⑤재고용·간접고용 근로자 ⑥부정청구 청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음.

고 ② ‘유형2’에서 청년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6개월 및 12개월 근속인센티브’를 신설하면서 254억 1,600만원을 증액하였음.

그런데 2025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7,188억 1,900만원을 집행하여 결과적으로 당초 예산액보다도 집행액이 낮음.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세부 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이·전용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액분			
기타보전금 (기업지원금 및 청년 근속인센티브)	751,031	24,558	△11,171	691,831	72,587
민간위탁사업비	24,750	858	-	25,595	13
사업출연금	200	-	-	200	-
수용비 등 경상경비	1,200	-	-	1,193	7
합계	777,181	25,416	△11,171	718,819	72,607

* 자료: 고용노동부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2025년 신규 채용자에 대한 지원분 및 추경 증액분은 모두 집행하였으나, 지원 기간 중 인위적 감원[90] 등 지원 제외 요건 발생 및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기타보전금 중 2023년 및 2024년 채용자에 대한 잔여 지원금에서 불용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90) 장려금 수령을 위한 기업의 기존 인력 감축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 채용 후 1년의 기간 동안 고용조정 이직(권고사직, 경영상 해고 등 회사 사정에 의한 인위적 감원) 발생 시 지원을 제외하는 것임.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장려금 지원대상 청년뿐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 이직이 발생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사업 참여 기간이 길어질수록 인위적 감원 등 고용조정 이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임.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기타보전금 세부 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액(비율)	집행액
본예산	2023년 잔여 지원금	185,021(24)	154,798
	2024년 잔여 지원금	443,560(57)	372,769
	2025년 신규 지원금	122,450(16)	164,264
추경	2025년 추경 증액분	24,558(3)	
	합계	775,589	691,831

* 자료: 고용노동부

그러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예산은 과거 채용자에 대한 잔여 지원금이 큰 비중을 차지[91]하고 있어, 예산 편성 시 잔여 지원금에 대한 집행 전망도 중요하고, 지원 제외 요건 발생이나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등의 외부요인이 2025년에만 발생한 것이 아니며 장기간의 고용 유지를 전제로 지급되는 잔여 지원금의 특성상 기간의 경과에 따라 외부요인으로 인해 집행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점[92]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임.

91)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2025년 기타보전금 전체 예산액의 81% 수준임

92) 근속기간이 증가할수록 고용유지율이 떨어짐에 따라 집행액이 감소하고, 지원 제외 요건 발생 및 신청 지연 등 외부요인의 영향을 받기 쉬운 측면이 있음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고용유지율]

개월	6	7	8	9	10	11	12	18	24
유지율	0.83	0.78	0.75	0.73	0.71	0.69	0.68	0.43	0.4

[최근 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잔여 지원금 월별 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3년	37,040	51,205	66,746	67,088	67,508	62,037	59,866	47,514	37,461	32,094	18,690	16,320
2024년	34,298	30,413	41,103	37,752	37,530	33,575	37,977	23,738	19,177	17,840	13,775	9,122
2025년	35,335	53,463	57,619	60,477	55,115	58,011	55,441	35,969	35,706	27,775	27,401	25,255

* 자료: 고용노동부

특히 동 사업의 최근 연도별 집행률이 예산 대비 80% 수준[93]에 머무르며 1,000억원이 넘는 불용액이 발생한 바 있고, 집행실적을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성 문제가 이전 국회 예산심의 과정[94]에서도 제기된 적이 있었으며, 추가경정예산은 당해 예산 집행가능성을 중요하게 검토해야 함을 고려할 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 잔여 지원금 집행예

93) 이는 사업 수요 및 고용유지율에 대한 추계 등의 미흡에 기인한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2022년 사업 시행 이후 4년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용유지율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등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94)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예결위 검토보고서(p.344)
참고로 고용노동부는 2023년 11월 17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① △77억원 감액의견에 대해 원안유지를 희망하고, ② 2023년도 집행률이 90%정도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나, 고용노동부의 설명과는 달리 2023년도 실제 집행률은 80.9%에 불과하였고,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77억원이 감액 조정되었다면 불용액(2024년 1,192억 7,700만원 발생)이 감소하고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향후 고용노동부는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전향적으로 심의에 임할 필요가 있음.

<'24년도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회의록 중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관련 내용>

○ **수석전문위원 지동하:** 202페이지, 11번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2022년·23년 집행률을 고려, 신규 지원 인원을 감축하여 77억 원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 **소위원장 서삼석** 부처 의견 주십시오.
○ **고용노동부차관 이성희** 고용노동부는 감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청년도약장려금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장려금 제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2022년까지는 집행률이 43%로 좀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올해 들어서 집행 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71.3%고요 연말까지 한 90%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상임위원회에서도 똑같은 지적이 됐었습니다마는 여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원안 유지로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것을 반영해서, 상임위 논의를 고려해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국회 회의록 시스템

상액을 면밀히 추계한 후 예산을 편성했어야 할 것으로 보임.

[2023년~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현액	집행액(집행률)	불용액(불용률)
2023년	889,078	719,429(80.9)	169,649(19.1)
2024년	606,280	487,003(80.3)	119,277(19.7)

* 주: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의 내역사업 중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집행실적에 대해 작성
* 자료: 고용노동부

수요보다 과다한 예산 편성은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활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에 대한 정확한 추계 및 연내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2) 한국잡월드운영지원(일반회계, 1049-301)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한국잡월드운영지원’ 사업(2012년~, 출연·보조)은 직업에 대한 다양한 체험 및 직업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국잡월드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임.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224억 8,400만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음.

[2025회계연도 한국잡월드운영지원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B)	이·전용 등 (C)	예산 현액 (A+B+C)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 한국잡월드 운영지원	22,484	22,484	-	-	22,484	22,484 [21,484]	-	-	26,363
▪ 한국잡월드 운영지원	21,484	21,484	-	-	21,484	21,484 [21,484]	-	-	23,363
▪ 충남청소년 직업체험관 건립	1,000	1,000	-	-	1,000	1,000 [0]	-	-	3,000

* 자료: 고용노동부

나. 사업 추진 단계를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충남 청소년 직업체험관 건립 사업은 미래 세대에게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아산시 탕정면 일원에 추진 중인 중부권 최초의 종합 직업체험관 조성 사업으로, 급격한 기술 발전과 지역 특화 산업(반도체·디스플레이 등)에 맞춘 미래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2024년부터 추진되었으며, 2025년 국비 예산은 건설사업관리용역(1.5억원), 부지기반 조성(3.5억원), 체험시설 설계 및 제작(5억원) 등 총 10억원이 편성되었음.

[충남청소년 직업체험관 건립사업 추진 현황]

구 분	세부 사항
목적	지역에 특화된 미래 첨단산업을 이끌 미래세대 직업체험 시설(반도체·디스플레이 자동차제조공정 체험관 등) 구축
소재지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산 19-34
규모	지상 2층 (토지면적 19,888㎡, 건축연면적 5,915㎡) ※중앙투자심사 보완 과정 중 총사업비 및 사업 규모 변경
총 사업비	당초: 최초 350억원 → 422억원(국비 194억원, 지방비 228억원)
사업 기간	당초: 2024년~2027년 → 2024년~2029년
사업 연혁	2023. 12. 사업 추진 결정(사업비 350억원 추정) 2024. 12. (충남도) 기본계획 수립(사업비 430억원, 2024~2027년) 2025. 07.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재검토, 수요편익 과다추정, 일부 공사비용 누락) 2025. 10.~12. (충남도) 중앙투자심사 보완(사업비 422억원, 2024~2029년) 2026. 04.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조건부 통과, 운영수지 적자 최소화 방안마련 필요)

* 자료: 고용노동부

그런데, 동 사업은 2025년 7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95]에서 수요·편익 과다 추정, 일부 공사비용 누락 등의 사유로 재검토 통보를 받은바, 2024년에 편성된 이월액 5억원은 전액 불용, 2025년 예산 10억원은 전액 이월되었고, 건립 완공시점은 당초 2027년에서 2029년 말로 순연되었음.

[충남청소년 직업체험관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						비 고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2024	500	500	500	-	500	-	500	-	**편성:** 사업 설계비 **집행부진 사유:** 충청남도 사업계획 지연 제출에 따라 수시배정 및 교부 지연
2025	1,000	1,000	1,000	500	1,500	-	1,000	500	**편성:** 건설사업관리용역, 부지기반 조성, 체험 시설설계 및 제작 **집행부진 사유:** 행정안전부 중앙투사 심사 결과 재검토 결정

* 자료: 고용노동부

95) 중앙투자심사는「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및 재정적 지속가능성 등을 행정안전부가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임.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직접 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의뢰하여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④ 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는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및 부적정으로 구분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심사 결과가 재검토 또는 부적정인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① 시·도가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의 실시 주체별 투자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행정안전부장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이전재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사업

나.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사업

이와 같이 사업비가 불용·이월된 것은 국비가 다소 이르게 편성된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2024년 및 2025년에 편성된 국비 15억원은 충청남도가 동 사업의 건축기획 용역을 완료하고 기본계획을 수립(2024년 12월)하기 전에 편성된 것으로, 특히 동 사업이 300억원 이상의 중앙투자심사 대상 사업이고,「지방재정법」에 따른 중앙투자심사 결과가 확정되기 이전에는 총사업비 규모 등이 변동될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 추진의 구체적인 준비 정도와 주요 사전절차 이행 여부에 비해 예산이 선제적으로 반영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향후 중앙투자심사 조건 이행 여부와 설계·착공 등 후속 절차의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유사한 대규모 시설 건립사업의 경우에도 사업계획의 구체화 및 주요 사전절차 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단계적으로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재정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봄.

다. 한국잡월드 자체수입 추계 현실화 필요

한국잡월드는「고용정책기본법」제18조의2[96]에 따라 설립된 국립직업체험관(특수법인)으로, 어린이・청소년・청년들이 다양한 직업 세계를 체험하고 구체적인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직업체험관 운영, 진로교육 프로그램 및 직업세계에 대한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음.

[한국잡월드 개요]

구 분	세부 사항
설립목적	다양한 직업 체험과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직업관 및 근로의식 형성을 유도하여 자신에게 맞는 진로 및 직업선택 지원
설립일	2011. 11. 3.(개관 2012. 5. 15.)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수서로 501

96)「**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의2(한국잡월드의 설립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 산하에 한국잡월드를 설립한다.
1. 직업 관련 자료・정보의 전시 및 제공
2. 직업체험프로그램 개설・운영
3. 청소년 및 청년 등에 대한 직업교육프로그램 개설・운영
4. 교사 등에 대한 직업지도 교육프로그램 개설・운영
5. 직업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서비스 제공
6. 직업 관련 자료・정보의 전시기법 및 체험프로그램 연구・개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국제협력과 그 밖의 부대사업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한국잡월드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정부는 한국잡월드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④ 한국잡월드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입장료・체험관람료 징수 및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⑤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한국잡월드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잡월드에 금전이나 현물,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⑥ 한국잡월드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국가나 국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및 기부금
2. 그 밖에 한국잡월드의 수입금

⑦ 정부는 한국잡월드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국유물품을 한국잡월드에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시설규모	본관: 지하 1층, 지상5층(연면적 39,270m²) 숙련기술체험관: 지하 1층 지상 3층(6,406m²)

* 자료: 고용노동부

동 기관은 정부 출연금과 자체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수지차 보전방식[97]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5년 한국잡월드 운영예산은 총 341억 2,000만원으로, 이 중 320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음.

[연도별 한국잡월드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6월
총 예산액	39,697	29,957	33,022	36,152	34,120	35,224
총 결산액	31,388	29,784	34,106	34,255	32,040	23,387
집행률	79.1%	99.4%	103.3%	94.8%	93.9%	66.4%

* 주: 총 예산액 및 결산액은 출연금, 자체수입, 이월수입을 합한 수치

* 자료: 고용노동부

상기한 바와 같이 한국잡월드는 수지차 보전기관으로 운영되는바, 자체수입의 규모는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와 기관의 사업 수행 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자체수입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안정적인 기관 운영과 재정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

97) 수지차 보전방식은 정부 예산 절감을 위하여 기관의 지출 예산 총액에서 기관 운영으로 발생하는 자체수입(검사료, 교육수수료, 기술컨설팅수입, 연구개발수입 등 사업수입과 이자수입, 임대료, 자산매각수입, 잡수입 등 사업외수입 등) 예산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을 출연·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예산 운용방식을 말함. 수지차 보전기관은 예산 편성 시 자체수입 세부내역을 추계한 후 나머지 지출금액을 정부로부터 출연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받음.
공공기관의 수지차 보전기관 지정 및 운영, 관리 등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으나, 기획예산처는 연도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 “자체수입이 안정적으로 발생하는 출연·보조기관 중 수지차 보전방식으로 예·결산을 관리하는 것이 예산절감에 효과적인 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기관 및 주무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지차 보전기관으로 신규 지정하거나 지정 해제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참고로, 2025년 수지차 보전기관은 출연기관 37개소, 보조기관 25개소 등 62개소가 지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한국잡월드의 자체수입은 수년간 예산 대비 결산 실적이 지속적으로 목표에 미달하고 있어, 자체수입 전망이 실제 수입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3년에는 자체수입 예산 98억 9,500만원 대비 결산액이 96억 7,300만 원으로 약 2억 2,2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하였고, 2024년에는 4억 6,900만원, 2025년에는 8억 4,600만원이 각각 예산에 미달하는 등 예산액과 실제 결산액 간의 차이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임.

[한국잡월드 자체수입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6월
자체수입	差(B-A)	-610	-222	-469	-846	-5,068
	예산(A)	8,486	9,895	9,895	9,895	9,554
	-입장	4,478	6,076	6,076	6,076	5,376
	-광고	2,505	2,226	2,226	2,226	1,941
	-부대	1,503	1,593	1,593	1,593	2,237
	결산(B)	7,876	9,673	9,426	9,049	4,486
	-입장	4,068	5,020	5,295	4,658	2,083
	-광고	1,513	1,995	1,537	1,985	878
	-부대	2,295	2,658	2,594	2,406	1,525

* 주: 입장수입: 체험관 입장료 수입
광고수입: 잡월드 내 직업체험콘텐츠를 활용한 기관 및 기업 홍보 수입
부대수입: 시설임대, 주차, 대관, 기타 이자수입, 잡수입 등의 수입
* 자료: 고용노동부

특히, 자체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입장수입은 이용객 수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데, 최근 학령인구 감소, 현장체험학습 위축, 유사 공공 체험시설 증가 등에 따라 이용객이 감소하면서 예산 대비 실제 수입이 지속적으로

목표에 미달하고 있음[98].

한편, 최근 학령인구 및 한국잡월드 입장객 수를 살펴보면 2017~2019년까지는 학령인구수가 약 700만명으로 잡월드 입장객 수도 60만명을 크게 상회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을 거쳐 2023~2025년도의 경우 학령인구수가 600만명 수준으로 감소함에 따라 잡월드 입장객 수도 코로나-19 상황 이전에 비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음[99].

[연도별 학령인구 및 한국잡월드 입장객 수]

(단위: 명)

구분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학령인구수 (감소율)	7,183,471 (△2.6%)	7,006,341 (△2.5%)	6,838,303 (△2.4%)	6,735,298 (△1.5%)	6,603,692 ((△2.0%)	6,443,709 (△2.4%)	6,294,347 (△2.3%)	6,134,063 (△2.5%)	5,936,412 (△3.2%)	5,696,435 (△4.0%)
잡월드 입장객 수 (방문률)	689,693 (9.6%)	666,968 (9.5%)	639,686 (9.4%)	67,026 (1%)	110,766 (1.7%)	431,684 (6.7%)	543,977 (8.6%)	620,331 (10.1%)	626,767 (10.6%)	271,156 (4.8%)

* 주: 2026년 잡월드 입장객 수는 6월말 기준 수치임

* 자료: 고용노동부

실제 2026년 6월 말 기준 체험관 입장객은 271,156명, 입장수입은 20억 8,3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약 25,000명, 1억 6,000만원 감소하였음.

98) 한국잡월드는 최근의 자체수입 감소에 관하여, 학령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노란버스 논란*(2023. 9.), 속초 테마파크 사고(2024. 2.) 등 대외 환경으로 체험학습을 기피하는 기조가 확대되었고, 지자체, 교육청, 타 공공기관의 유사 분야 체험시설(안전체험관, 진로체험지원센터 등)이 신설되면서 해당 시설의 무료·저가 운영 확대에 따라 기관 입장객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노란버스 논란: 2023년 9월 법제처가 소풍,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이동 시 전세버스가 아닌 어린이통학버스(노란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전국에 등록된 노란버스 대비 현장체험학습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아 차량 수급 불균형이 발생한 바 있음.

99) 2026년 6월 말 기준 잡월드 체험관 입장객은 271,156명으로, 전년 동기(296,714명) 대비 25,558명 감소하였음.

[연도별 6월 말 기준 한국잡월드 입장객 수 및 자체수입]

(단위: 백만원, 명)

구분	2023. 6.	2024. 6.	2025. 6.	2026. 6
입장수입	2,446	2,327	2,242	2,083
체험관 입장객 수	252,751	262,335	296,714	271,156

* 주: 잡월드는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한 할인 행사를 실시하고 있어 연도별 객단가가 다를 수 있음
* 자료: 고용노동부

그러나 상기와 같은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입장수입을 비롯한 자체수입 예산은 최근 3년간 동일한 수준(98억 9,500만원)으로 편성[100]되어 실제 이용객 추이와 다소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에 따라 자체수입 목표와 실제 결산액 간의 차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향후에는 학령인구 감소 등 대내외 여건 변화를 자체수입 추계에 충실히 반영하여 예산과 결산 간의 괴리를 최소화하는 한편, 다양한 계층의 이용 수요를 반영한 콘텐츠의 기획·개발 및 홍보, 마케팅 등 자체수입 기반을 확대하려는 노력도 함께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00) 자체수입은 과거의 자체수입 금액 등을 바탕으로, 차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결정됨.

(3) 청년미래플러스(일반회계, 1051-308)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청년미래플러스' 사업(신규, 보조)은 산업별 협회 또는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ISC'[101])가 회원사인 대·중견기업과 협업하여 구직청년의 취업 및 재직청년의 산업 내 성장까지 청년고용의 全 주기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20억원으로, 이 중 19억 9,100만원이 집행(99.6%)되었고, 9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청년미래플러스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B)	이·전용 등 (C)	예산 현액 (A+B+C)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 청년미래플러스	2,000	2,000	-	-	2,000	1,991	-	9	4,060

*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은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기업의 직무능력 중심 채용이 확대되면서 사회초년생의 취업 준비기간이 장기화되는 한편 취업 이후에도 잦은 이·전직으로 중소기업의 인력양성 비용 손실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구직청년의 취업부터 재직청년의 경력개발까지 전(全) 주기를 지원하는 '토탈 케어(Full Cycle)'

101) Industrial Skills Council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청년의 안정적인 노동시장 정착과 산업인재 육성을 지원하고자 추진된 사업임.

[2025년 청년미래플러스 사업계획안]

<table>
<tr><th>구 분</th><th>세부 사항</th></tr>
<tr><td>목적</td><td>산업별 협회 또는 ISC가 회원사인 대·중견기업과 협업하여 ①구직청년취업 및 ②재직청년산업 내 성장까지 청년고용 全 주기 지원</td></tr>
<tr><td>지원 대상</td><td>해당 산업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구직자 및 청년 신입직원
(만 15~34세 이하)</td></tr>
<tr><td>사업 내용</td><td>❶ (구직청년*: 취업지원) 산업특화 실무중심의 컨설팅, 직무교육, 멘토링 등 산업 특성에 따라 유연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 구인기업 매칭 등 취업까지 연계
* 모든 미취업 청년(만 15~34세),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또는 일경험 사업 수료자 우선 지원
<table>
<tr><th>❶ 취업 컨설팅</th><th>❷ 직무교육</th><th>❹ 취업 연계</th></tr>
<tr><td>적성·역량 진단 기반 취업전략 수립 및 지원 프로그램 설계</td><td>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직무교육 실시</td><td rowspan="2">프로그램 이수 청년 대상 ISC 회원사 취업 연계</td></tr>
<tr><td colspan="2">❸ (멘토링) 희망자 대상 온·오프라인 멘토링 서비스 제공</td></tr>
</table>
❷ (재직청년*: 성장지원) 중소기업 재직 청년 대상 맞춤형 OJT, 멘토링, 경력설계를 지원 → 산업 내 (중간)관리자로 성장 지원
* 중소기업 재직 청년(만 15~34세)으로 1단계 프로그램 수료자 및 일경험 수료자 우선 지원
<table>
<tr><th>❶ OJT</th><th>❷ 멘토링</th><th>❸ 경력설계</th></tr>
<tr><td>핵심직무 OJT 프로그램 지원</td><td>기업 현직자 멘토가 멘티의 경력개발 코칭</td><td>산업별 성장 로드맵 근거하여 1:1 경력설계 컨설팅 → 청년성장 플랜 수립</td></tr>
</table></td></tr>
</table>

운영 방안	**(운영기관 선정)** 청년들이 선호하는 유망산업의 ISC 또는 산업별 협회를 운영기관으로 공모·선정하여 시범 운영(예: 정보기술·산업관리, 문화콘텐츠, 화학·바이오, 전자, 방송통신, 자동차 등) **(운영방안)** 운영기관에서 산업별 수요와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 자율 구성, 청년은 본인에게 필요한 단계를 선택하여 이수 가능 **(프로그램 운영)** 운영기관에서 산업별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설계·운영, 단계별로 청년들이 지속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 **(정책 연계)** 필요 시 기존 일경험 사업 및 온보딩 사업과 연계하여 청년정책 연계 시스템 강화
추진 체계	**(고용노동부)** 사업 기획, 운영기관 성과관리 및 평가 등 사업 총괄 **(운영기관)** 산업별 특화 청년고용지원 프로그램 운영, 회원사 구인수요 파악 및 취업 연계 등 지원

* 자료: 고용노동부

나. 추진방식 재검토를 통한 사업성과 제고 필요 등

2025년도 예산에서 신규 편성된 청년 미래플러스 사업은 특정 산업별 협회 등을 운영기관으로 선정함으로써 ①구직청년 대상 IT, 바이오, 자동차 등 특정 산업(직무)에 특화된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및 회원사 기업 취업 연계, ②재직청년 대상 경력 설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지원대상은 해당 산업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구직자 또는 청년 신입직원(만 15~34세 이하)으로, ①구직청년에게는 산업특화 실무중심의 컨설팅, 직무교육, 멘토링 등 산업 특성에 따라 유연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과 구인기업 매칭 등 취업 연계를, ②재직청년에게는 중소기업 재직 청년 대상 맞춤형 OJT, 멘토링, 경력설계를 지원하여 산업 내 (중간)관리자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이 '산업 단위'의 경력형성·개발, 상담·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기존의 청년 취업 지원 사업과 차별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다만, 동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사업의 목표와 추진방식 간의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특정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구직청년의 취업부터 재직청년의 경력개발까지 전(全) 주기를 지원하는 '토탈 케어(Full Cycle)'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기존의 청년 취업 지원 사업과의 차별성으로 제시하고 있음. 이러한 산업특화에 따른 전 주기 지원 체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동일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참여 청년에 대한 연속적인 경력관리 체계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특히, 산업 진입·정착 및 경력형성, 관리자 육성, 장기근속 유도 등은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과제로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동일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참여 청년에 대한 연속적인 경력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동 사업은 매년 공모를 통해 운영기관을 선정[102]하고 있어 운영기관이나 지원 산업이 변경될 경우 산업별 전문성과 기업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기 어렵고, 기존 참여 청년에 대한 후속 경력관리에 제약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동 사업이 산업 진입부터 경력형성 및 성장까지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도별 신규 사업실적뿐만 아니라 기존 참여 청년에 대한 후속지원 및 동일 산업에 대한 지원의 연속성을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 선정 및 사업관리 방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가령, 2025년도에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인공지능협회의 경우 2026년

102) 동 사업은 2025년에는 민간보조사업으로, 2026년부터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출연사업으로 추진 방식이 변경되었으나, 운영기관은 종전과 동일하게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있음.

도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지 못하였는데, 이 경우 전년도에 해당 기관의 지원을 받은 청년에 대한 후속적인 경력관리 및 상담·멘토링이 새로운 운영기관의 사업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취업 이후 경력형성 및 산업 내 성장까지 지원한다는 당초 사업 취지와 달리 연도별 사업 참여에 그칠 가능성이 있음.

이처럼 운영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전년도 참여자의 취업 및 재직 현황, 경력개발 수요 등에 관한 정보와 기업 네트워크가 다음 연도 사업에 충분히 연계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운영기관 변경 시 기존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사업수행 정보의 인계·연계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청년미래플러스 운영기관 현황]

2025년	2026년
1.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 산업협회	1.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 산업협회
2. 청주상공회의소	2. 청주상공회의소
3. 한국전파진흥협회	3. 한국전파진흥협회
4. 대구경북기계협동조합	4. 대구경북기계협동조합
5. 인공지능협회	5. 광주경영자총협회
	6. 벤처기업협회
	7. 부산경영자총협회

* 자료: 고용노동부

둘째, 지역경제단체를 운영기관으로 선정하는 현행 방식이 특정 산업의 인력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취업지원 및 재직청년의 산업 내 경력개발이라는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의 운영기관으로서, 2025년에는 청주상공회의소를, 2026년에는 청주상공회의소, 광주경영자총협회, 부산경영자총협회를 운영기관으로 선정하였는데, 이들 기관은 특정 산업을 대표하는 산업별 협회나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와 달리 다양한 업종의 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지역)경제단체의 성격이 강한바, 특정 산업의 인력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취업지원과 재직청년의 산업 내 경력개발을 지원한다는 사업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선정된 운영기관이 산업 전문성과 대표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026년 운영기관별 산업 특화분야]

운영기관	특화분야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 산업협회	정보기술(IT)
청주상공회의소	전기전자(반도체), 화학·바이오, 운전·운송
한국전파진흥협회	방송기술, 통신기술, 문화콘텐츠
대구경북기계협동조합	로봇, 자동차, 금속
광주경영자총협회	자동차, 전자기기개발(가전, 반도체)
벤처기업협회	기획사무, 총무인사, 정보기술
부산경영자총협회	경영, 기계(선박 등), 정보통신

* 자료: 고용노동부

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는 지역경제단체는 지역별 주력 산업(예: 광주-자동차/광가전, 부산-기계/해양, 벤처-IT/소프트웨어)에 맞춰 사업을 수행하고, 전국 단위 단일 산업협회보다 지역 내 산업 클러스터와 밀

착되어 있어 해당 지역 중소기업의 실제 직무 수요를 훨씬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고, 경제단체가 주관하더라도 커리큘럼 설계나 멘토링은 해당 산업 분야의 전문가, 현직자 멘토단을 위촉 및 협력하여 운영하므로 전문성 결여에 관한 우려가 없다는 입장임.

그러나, 이와 같이 지역경제단체 다수를 운영기관으로 선정할 경우 선정된 지역 내에서는 해당 지역 주력 산업(자동차, 기계, 해양, 반도체 등)에 맞춰 사업을 수행할 수 있어 지역 내 중소기업의 실제 직무 수요 반영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선정되지 않은 지역의 청년들은 해당 사업의 혜택을 받기 어렵거나 아예 참여 기회가 제한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지역경제단체를 운영기관으로 선정할 경우에는 특정 산업에 특화된 청년의 취업지원 및 경력개발 지원이라는 사업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당해 산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산업별 전문성 및 대표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지역경제단체가 선정되지 않은 지역의 청년이 소외되지 않도록 산업별 공동 프로그램 운영, 운영기관 간 권역·산업별 연계체계 구축,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 동 사업의 운영기관 중 청주상공회의소의 경우 청년미래플러스 운영 사업 분야로 2025년에는 충북 미래특화산업인 반도체·바이오·자동차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2026년에는 전기전자·화학바이오·운전운송 분야로 확대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는 2025년 반도체·바

이오·자동차 분야가 각각 2026년 NCS[103] 대분류상 전기전자·화학바이오·운전운송분야로 각각 대응되어 표기된 것으로, 실질적인 사업분야의 연속성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NCS는 직무의 유형을 중심으로 총 24개의 대분류로 구성되어 있는바, 이 중 3개 대분류를 기준으로 사업 분야를 구분할 경우 그 포괄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산업별 특화성 및 전문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가령, 전기전자(대분류)의 경우 3개의 중분류 및 24개의 소분류로 구분되어 있으며, 소분류 각각은 가전기기 개발, 반도체 개발, 디스플레이 개발, 로봇개발, 의료장비제조, 광기술개발 등으로서 서로 다른 산업적 특성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를 포괄하고 있음.

따라서, “전기전자”라는 대분류가 특정 산업 또는 직무 분야를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당 대분류를 기준으로 사업을 운영할 경우 당초 사업이 의도한 산업별 특화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음.

셋째, 기존 청년 취업지원사업 및 산업계 주도 훈련사업과의 차별성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이 산업별 협회 등을 중심으로 구직청년의 취

103) NCS(국가직무능력표준,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는 산업 현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한 것으로 능력단위 또는 능력단위의 집합을 의미함.

업부터 재직청년의 경력개발까지 지원하는 '산업 단위의 전 주기(Full Cycle) 지원' 사업이라는 점에서 기존 청년 취업지원사업과 차별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다만, 현재 고용노동부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청년일경험지원 사업 등을 통해 청년을 대상으로 진로설계, 직무교육, 일경험, 취업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산업별 협·단체를 수행주체로 하여 산업 수요를 반영한 훈련과 취업지원을 실시하는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사업도 운영하는 등[104] 유사한 취업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한편, 청년 미래플러스 사업은 2026년부터 직장적응지원 사업[105]과 통합·운영되고 있는바, 직장적응지원 사업은 입직 초기 청년의 조직

104)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은 산업별 협·단체가 산업계와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청년 구직자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수행주체, 정책대상 및 사업내용 등에서 동 사업과 상당한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동 사업은 2024년부터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내 '산업맞춤형' 유형으로 통합·운영되고 있음.

[청년 대상 취업 지원 사업 비교]

구분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청년미래플러스
사업 목적	**청년층(청년 구직자, 재직자 등)을 주요 대상으로 산업계·기업 수요를 반영한 훈련을 제공**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	산업별 협회(또는 ISC)가 회원사와 협업하여 **구직청년의 취업 지원 및 재직청년의 산업 내 성장 지원**
수행 주체	한국기술교육대 등 8개 기관(2023년 기준)	**산업별 협회(또는 ISC)**
정책 대상	**구직자 및 재직자** - 청년 참여 비율(구직 70%, 재직 50% 이상)	**구직청년 및 재직청년**
훈련 내용	해당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고 **산업계·기업의 수요를 직접 반영한 과정 운영 및 다양한 훈련방식 도입**	**산업 수요와 특성에 맞는** 구직청년 취업지원 및 재직청년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운영기관 주도로 자유롭게 설계·운영**
지원 내용	(훈련비용) 공동훈련센터에 대해 훈련비용(실비) 지원 (인프라지원금) 산업별 협·단체 및 공동훈련센터에 대해 지원 - 산업별 협·단체: 운영비 및 프로그램 개발비 - 공동훈련센터: 운영비 및 시설·장비비	(기관당 사업비) 인건비, 프로그램비, 기타운영비 등

105) 직장적응지원 사업은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일반회계 1051-305)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2024년부터 추진되었음.

적응과 노동시장 이탈 예방을 목적으로 온보딩 프로그램, 멘토링 및 상호교류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는 양 사업이 재직청년 대상 경력설계, 직장적응 등 노동시장 안착 지원 목적 등이 동일하다고 보아, 재직 청년의 경력설계부터 직장적응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여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음.

[청년 미래플러스 및 직장적응지원 사업 개요]

구 분	청년 미래플러스	직장적응지원
사업목적	사업계와 협업하여 구직청년의 취업지원 및 재직청년의 산업 내 성장까지 청년 고용 全주기 지원	산단 입주기업, 중소기업 등의 청년친화적 조직문화 조성 및 입직 초기 청년의 직장적응을 지원하여 쉬었음 전환 방지
사업대상	구직청년, 중소기업 재직청년	산단 입주기업 등에 재직 중인 CEO·중간관리자·인사담당자 채용 후 1년 이내인 신입 청년직원
사업 및 지원내용	구직청년: 취업 컨설팅+직무교육+멘토링 등 산업(직무)특화 취업지원 패키지 프로그램 제공 재직청년: 산업별 성장로드맵에 근거한 맞춤형 경력설계·멘토링·OJT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컨설팅 신입직원 대상 직장적응 지원 프로그램(On-boarding) 제공 ※ 온보딩 프로그램은 협업, 비즈니스 매너,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신입직원 적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말함
2025년 예산	20억원(업종별 3개 프로그램)	46억원
추진방식	출연	지자체 경상보조(국비 70%)

[청년 미래플러스 사업 개편 현황]

2024년	2025년	2026년
-	신설 **청년 미래플러스**(20억) 산업계 주도 재직청년 경력설계 등 지원(협회 등 공모, 국고 100%)	통합 **청년 미래플러스**(41억) 산업계 주도 재직청년 경력설계 등 지원+직장적응 지원 (국고 100%) * 전달체계 개편 ▲인력공단 출연
신설 **직장적응 지원**(44억) ①신입직원 대상 온보딩 +②관리자 대상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국고 100%)	개편 **직장적응 지원**(46억) ①산단 입주기업 등 신입직원 온보딩 + ②관리자 대상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지자체 매칭 30%)	

* 자료: 고용노동부

이와 같은 양 사업의 통합운영은 구직청년의 취업 지원과 재직 초기 청년의 직장 적응 및 경력개발을 하나의 사업체계에서 연계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나, 직장적응지원 사업은 입직 초기 청년의 조직 적응과 노동시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온보딩 프로그램과 멘토링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서, 청년미래플러스 사업이 당초 차별화 요소로 제시한 산업 단위의 경력형성 및 산업 내 성장 지원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

실제 2025년 운영기관의 재직청년 프로그램도 직장적응 교육, OJT, 멘토링 등 입직 초기 적응을 중심으로 운영된 측면이 있는바, 양 사업의 통합 이후에는 재직청년의 산업별 경력설계 및 중간관리자 육성 등 청년미래플러스의 고유 기능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106].

106) 고용노동부는 2026년 양 사업 통합 이후 직장적응프로그램에 한정하지 않고 직무교육·온보딩과 멘토링·경력설계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직자 멘토링을 통해 재직청년의 맞춤형 경력설계 및 산업 내 성장을 지원하는 등 청년미래플러스의 고유기능인 산업 내 경력형성 및 성

[2025년 청년미래플러스 재직자 프로그램]

운영기관	프로그램
대구경북기계협동조합	Skill up 프로그램: 기업에서 청년들이 커리어를 개발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 직장적응에 필요한 직장예절, 소통능력강화, 팔로우십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 (청년 근로자의 조직 적응 능력 강화에 중점) Teamwork 프로그램: 청년들이 관리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협력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PBL(프로젝트 기반 학습)형태의 활동 제공 (조직 내 소통 능력과 리더십 배양)
청주상공회의소	**재직청년 OJT 교육 프로그램**: 신입사원 동기부여 강화 및 조직 문화 이해와 협력, 조직문화 이해, 개인 역량 강화 및 경력 개발 교육, 기업 문화 및 조직 내 역할 이해, 직장 내 소통법 **1:1 멘토링**: 산업 분야별 커리어 설계 및 경력개발 컨설팅 진행, 업무 노하우 및 직장 적응도 향상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재직자 트랙**: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을 대상으로 멘토링, 경력 설계 등을 지원

* 자료: 고용노동부

따라서 사업 통합 이후에도 산업별 협회 등의 전문성을 활용한 경력설계, 산업별 네트워크 구축 및 산업 내 성장 지원 등 청년미래플러스 사업의 차별화된 기능이 실질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사업내용과 성과관리체계를 보다 명확히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장 지원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직업능력정책국 》

[직업능력정책국]

(1) 내일배움카드(일반) (일반회계, 1131-300)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내일배움카드(일반)’ 사업(1998년 ~, 직접)은 기술발전 적응 및 노동시장 변화 대응을 위하여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첨단산업·디지털 기초역량훈련, 돌봄서비스 훈련, 일반고 특화훈련, 신기술 인력수급 분석 지원 등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동 사업의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5,961억 6,100만원으로, 이 중 5,938억 3,300만원(99.6%)이 집행되었고, 3,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2억 9,0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내일배움카드(일반) 사업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B)	이·전용 등 (C)	예비비	예산 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 내일배움카드	580,161	596,161	-	-	-	596,161	593,833	38	2,290	627,325
▪ K-하이테크 플러스 사업	498,116	498,116	-	△500	-	497,616	496,519	-	1,097	541,313
▪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478,116	478,116	-	△500	-	477,616	476,994	-	622	521,313
▪ 첨단산업·디지털 기초역량훈련	20,000	20,000	-	-	-	20,000	19,525	-	475	20,000
▪ 돌봄서비스 훈련	33,100	33,100	-	500	-	33,600	33,577	-	23	29,440
▪ 일반고 특화훈련	45,557	61,557	-	-	-	61,557	60,619	-	938	55,383
▪ 신기술 인력수급 분석 지원	900	900	-	-	-	900	900	-	-	-
▪ 운영비 등	2,488	2,488	-	-	-	2,488	2,218	38	232	1,189

* 자료: 고용노동부

나. 일반고 특화훈련 사업의 취업률 등 제고 필요

내역사업 ‘일반고 특화훈련’ 사업은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 3학년 재학생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반고[107]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1,152~1,300시간(약 10개월) 범위 내에서 직종별 전공교육, 창의적 체험활동[108]을 실시하여 참여자에게 훈련비 전액과 월 최대 20만원의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615억 5,700만원으로, 이 중 606억 1,900만원(98.5%)이 집행되었고, 9억 3,800만원이 불용되었음. 당초 본예산은 455억 5,700만원이었는데, 본예산 편성시 예상 참여인원(5,180명)보다 참여 수요가 많이 발생하여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초과 수요 1,820명에 대한 훈련비와 훈련장려금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최종적으로 7,170명에 대한 훈련비 등이 집행된 것임.

이때 동 사업 참여 학생들의 수료율·취업률 등 지표를 살펴보면, 성과가 미진한 측면이 다소 있는 것으로 보임.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동 사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훈련 현황을 보면, 중도탈락이 매년 전체 참여자 수의 10% 내외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학생들의 수료율은 59.4~72.3%이나, 수료자 수 대비 훈련종료일 기준 6개월 이내 취업한 훈련생은 66.7~72.5%에 불과함. 취업 이후 6

107) 일반고 외에도 자율고, 대안교육 특성화고, 대안학교, 학력인정시설에 다니는 학생이나 17~19세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춘 학교 밖 청소년도 참여할 수 있음.
108) 직업기초프로그램, 노동인권교육, 취업지원프로그램 등

개월 고용유지율도 44.3~50.1%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

[2020~2025년 일반고 특화훈련 사업의 훈련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참여자 수[1)]	7,102	6,917	6,815	5,544	5,804	7,165
중도탈락자 수[2)]	761	652	788	664	577	704
수료자 수[3)]	4,973	4,766	4,533	3,453	3,445	5,183
취업자 수[4)]	3,317	3,454	3,194	2,341	2,447	-
중도탈락률(%)	10.7	9.4	11.6	11.9	9.9	9.8
수료율(%)[5)]	70.0	69.0	66.5	62.3	59.4	72.3
취업률(%)[6)]	66.7	72.5	70.5	67.8	71.0	-
고용유지율(6개월)(%)[7)]	50.1	49.3	48.6	44.3	45.9	-
고용유지율(1년)(%)	45.9	47.4	49.2	49.5	-	-

* 주 1) 참여자 수: 훈련시작일 기준, 훈련실시인원
2) 중도탈락자 수: 훈련시작일 기준, 중도탈락인원
3) 수료자 수: 훈련종료일 기준, 수료인원
4) 취업자 수: 수료자 기준, 훈련종료일 기준 6개월 이내 취업훈련생 수
5) 수료율(%): [수료자 수/참여자 수]×100
6) 취업률(%): [취업자 수/수료자 수]×100
7) 고용유지율(%) (고용유지자 수/취업자 수)×100
** '24년 고용유지율(1년), '25년 취업실적 등은 '26.10월 이후 추출 가능
*** 자료: 고용노동부

이는 동일 기간 전체 내일배움카드 사업의 6개월 고용유지율이 59.9~63.4% 수준인 것에 대비해 저조함. 특히 2025년 재정사업 일자리사업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동 사업의 취업률·고용유지율·임금수준은 모두 구직자훈련 전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109)]

109) 다만, 재정사업 일자리사업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일반고 특화훈련은 매년 3월에서 익년 2월까지 이루어지는 장기훈련으로 취업률은 익년 8월 마감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기준(해당 연도 1.1.~12.31.)으로 취업률을 산정하면 일부 훈련실적 누락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처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

동 사업은 일반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취업률 등 사업의 성과가 낮게 나타날 수는 있을 것이나, 동 사업의 지표가 내일배움카드의 타 사업 및 구직자훈련 사업보다 현저하게 낮음을 고려하면 단순히 훈련 수료 인원의 확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취업률 및 고용유지율 등 내실화 있는 사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일반고 특화훈련 사업의 취업률 및 고용유지율 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 내일배움카드(일반, 고보) 내 고용센터 시설비를 고용센터 자체 청사관리비로 이관할 필요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안정 사업 등 종합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센터’는 내일배움카드 사업 중 일부를 수행함. 이때 고용센터의 청사 운영에 필요한 시설 유지·관리 비용 등은 고용보험기금의 지출사업인 ‘고용센터자체청사관리비’에서 지출되고 있음.[110)]

[2025회계연도 고용센터자체청사관리비 사업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B)	계획 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 고용센터 자체 청사관리비	16,158	16,433	-	16,433	16,393	-	40	16,446
▪ 상용임금	3,963	3,963	-	3,963	3,937	-	26	4,321
▪ 일반수용비	83	83	-	83	82	-	1	83
▪ 공공요금 및 제세	3,978	3,978	-	3,978	3,971	-	7	3,694
▪ 유류비	23	23	-	23	20	-	3	23
▪ 시설장비 유지비	5,787	5,787	-	5,787	5,787	-	-	5,920
▪ 복리후생비	73	73	-	73	73	-	-	73
▪ 관리용역비	404	404	-	404	402	-	2	404
▪ 사업추진비	2	2	-	2	2	-	-	2
▪ 고용부담금	775	775	-	775	775	-	-	856
▪ 공사비	928	1,203	-	1,203	1,202	-	1	928
▪ 자산취득비	142	142	-	142	142	-	-	142

* 자료: 고용노동부

110) 세부사업 고용센터자체청사관리비(7076-228)으로, 동 사업은 2025년 계획현액 164억 3,300만원 중 163억 9,300만원(99.8%)을 집행하고 4,000만원을 불용하였음. 이 중 고용센터 청사 시설 유지관리비 등이 61억 9,000만원 집행되었고, 고용센터시설공사비는 12억 200만원 집행되었으며, 자산취득비는 1억 4,200만원이 집행되었음.

그런데 일반회계와 고용보험기금에 분리 편성되어 있는 **‘내일배움카드’ 관련 예산[111]에는 고용센터자체청사관리비와 별도로 고용센터 관련 시설비가 편성**되어 있음.

내일배움카드(일반)의 경우 2025년 예산현액 2,900만원 중 2,400만원이 집행되었고 500만원은 불용되었으며, 내일배움카드(고보)의 경우 계획현액 9,600만원 중 6,100만원이 집행되었고 3,5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년 내일배움카드(일반, 고보) 사업 중 시설비(공사비)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B)	이·전용 등 (C)	예비비	예산 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 내일 배움카드(일반)	580,161	596,161	-	-	-	596,161	593,833	38	2,214	627,325
▪ 운영비 등	2,488	2,488	-	-	-	2,488	2,218	38	232	1,189
- 시설비(공사비)	29	29	-	-	-	29	24	-	5	29
□ 내일 배움카드(고보)	603,198	603,198	-	-	-	603,198	543,371	37	59,690	508,979
▪ 운영비 등	1,045	1,045	-	-	-	1,045	920	37	88	823
- 시설비(공사비)	96	96	-	-	-	96	61	-	35	96

*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내일배움카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고용센터 직업능

111) 고용노동부는 사업의 성격, 목적의 특화 여부 등에 따라 일반회계와 고용보험기금으로 사업을 분리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함. 내일배움카드(일반)에서는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돌봄서비스 훈련, 일반고 특화훈련 등을 진행하고 있고, 내일배움카드(고보)에서는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산업구조변화대응특화훈련, 일반직종훈련 등을 진행하고 있음.

력개발팀의 인원 증가에 따른 자리 추가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한 자리 재배치, 홍보게시판 부착 등 수요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지출을 위해 각 세부사업에 시설비가 편성되어 있다고 설명함.

그러나 2025년 집행 내역을 보면 ①상수도 급수 펌프 정비 보수 공사, 냉난방기 설치 공사 등 내일배움카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이 아닌 고용센터자체 청사비로 집행되어야 할 사항에 관한 지출 성격이 다수 있고, ②일부 센터의 경우 동 사업의 시설비를 고용센터 자체청사비와 혼용하여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112] 추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해당 시설비를 고용센터 자체청사비로 일원화하여 예산 집행의 명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음.[113]

[2025년 내일배움카드(일반, 고보) 내 시설비 집행내역]

(단위: 원)

세부사업	계약명	집행액
내일배움 카드 (일반)	청주 고용센터 게시판 부착 공사	1,870,000
	부산북부 고용센터 홍보판 제작설치 공사	3,000,000
	부산센터 관내 우수훈련기관 홍보 게시판 제작	748,000
	부산동부센터 **직업훈련 정보관** 신설 공사	14,800,000
	안양센터 고용센터 자리배치 공사	3,730,650
	안양센터 고용센터 문수리 공사	119,350
내일배움 카드 (고보)	인천북부센터 직업훈련기관 거치대 설치 공사	9,500,062
	인천센터 고용센터 커튼, 앵글 제작 및 설치 공사	5,000,000

112) 예컨대 익산고용센터의 경우, 2025.11.14. 익산고용센터 4층 완강기실 타일 교체 공사를 위한 비용을 내일배움카드(고보) 공사비로 2,070,000원, 고용센터자체청사관리비로 614,000원으로 분할하여 지출하였음.

113) 참고로 고객상담센터의 경우 '고객상담센터운영' 사업에서 청사 관련 시설비를 일원화하여 집행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내 타 사업에서도 개별 사업에 센터의 시설비가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세부사업	계약명	집행액
	원주 고용센터 **냉방기** 설치 공사	3,465,000
	익산 고용센터 1층 **냉난방기** 설치 공사	5,464,000
	부산 고용센터 개폐식 액자 제작 및 설치	866,800
	안양고용센터 **탕비실 배관** 공사	693,000
	고용센터 전등 수리(안양센터)	380,000
	고용센터 노후랜선 교체(안양센터)	927,000
	고용센터 홍보게시판 설치 공사(충주센터)	4,180,000
	수원고용센터 4층 재배치 공사	915,000
	수원고용센터 중회의실 시설개선 공사	28,083,000
	용인고용센터 중장년내일센터 관련 랜설치	429,000
	익산센터 지하1층 **상수도 급수 펌프 정비 보수** 공사	2,930,000
	익산센터 4층 **완강기실 타일** 교체 공사	2,070,000
	수원고용센터 **LED조명 설치** 공사	1,573,000

(2) 숙련기술장려사업(일반회계, 1134-317)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숙련기술장려사업’(1982년 ~, 출연)은 우수숙련기술인 선정, 숙련기술인의 날 행사, 기능경기대회 개최 등 숙련기술장려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 예산 전액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출연하여 집행되었음.

동 사업의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245억 5,500만원으로, 예산액 전액(100.0%)이 집행되었음.

[2025회계연도 숙련기술장려사업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B)	이·전용 등 (C)	예비비	예산 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 숙련기술장려	33,744	24,555	-	-	-	24,555	24,555	-	-	35,405
▪ 숙련기술장려	19,201	10,012	-	-	-	10,012	10,012	-	-	18,765
- 우수숙련기술인 선정 및 우대지원	1,066	1,066	-	-	-	1,066	1,066	-	-	1,066
- 숙련기술인의 날 기념식	100	100	-	-	-	100	100	-	-	100
- 직업능력의달 기념식 등	132	132	-	-	-	132	132	-	-	132
- 계속종사장려금지원	7,078	7,078	-	-	-	7,078	7,078	-	-	7,078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B)	이·전용 등 (C)	예비비	예산 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활용사업	1,200	1,200	-	-	-	1,200	1,200	-	-	1,200
- 숙련기술진흥원 추가건립	9,625	436	-	-	-	436	436	-	-	9,189
▪ 기능경기대회	14,543	14,543	-	-	-	14,543	14,543	-	-	16,640
- 국내기능경기대회	10,051	10,051	-	-	-	10,051	10,051	-	-	10,451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4,055	4,055	-	-	-	4,055	4,055	-	-	5,752
- 기능경기지원 및 과제출제	437	437	-	-	-	437	437	-	-	437

* 자료: 고용노동부

나.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주체별 예산 부담 기준 마련 필요

내역사업 **‘기능경기대회’**는 기능경기대회 개최를 통하여 우수숙련기술자를 발굴·육성하여 기능인 및 청소년들에게 기능 습득을 장려하려는 사업으로, 지방기능경기대회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등 국내기능경기대회 개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참가, 기능경기대회 과제출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됨. 동 내역사업은 예산현액 145억 4,300만원 전액(100.0%)이 집행되었고, 이 중 **‘2025년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의 경우 국비 63억 1,300만원이 집행되었음.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지역 간 숙련기술 수준의 상향평준화를 도모하고 범국민적 숙련기술 우대풍토 조성 등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매년 고용노동부와 개최지 지자체 및 지자체의 교육청이 주최하는 대회임. 2025년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는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되었음.[114)]

[2025년 광주광역시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요]

구분	내 용
대회명칭	2025 광주광역시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주 최	고용노동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주 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및 광주광역시 기능경기위원회
후 원	삼성전자, IBK기업은행, 롯데지주사, CJ푸드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대동, 페스툴, LS엠트론, TYM(주), KCC, 노루페인트, 3M, 로이스기계, LS산전, 수시스템, 한국엠텍, 화천기계, 한국어도비시스템즈, 월드웰, 오토데스크, 엘제이기업, 유니티코리아, ㈜약손명가, ㈜코시아, 현대중공업

114) 참고로, 전국기능경기대회의 개최지는 17개 시·도에서 순차적으로 결정됨.

대회기간	2025년 9월 20일 ~ 9월 26일, (7일간)
개 최 지	광주광역시
경기장	김대중컨벤션센터 등 6개 경기장 (51직종) - 열린경기장 : 김대중컨벤션센터(19), 인력개발원(2) - 특성화고 : 광주공고(8), 광주전자공고(8), 전남공고(9), 광주자연과학고(5)
경기직종	폴리메카닉스 등 51개 직종 * (시범직종) 산업용드론제어, 사이버보안, 모바일앱개발
참가규모	선수 1,725명
주요행사	개회식, 폐회식(나눔과 다짐 한마당), 홍보부스 운영, 사진제출행사 등
시상/특전	선수 시상 : 직종별 1위(1,000만원), 2위(600만원), 3위(400만원) • 1위: 고용노동부 장관상, 2~3위: 대회장상 • 1위 입상자 중 우수자 2명을 선정,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시상

* 자료: 고용노동부

통상 기능경기대회 운영 시 참가선수와 직종별 심사위원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운영비, 시설 장비비, 행사 지원비는 주최 측인 고용노동부, 지자체, 교육청이 분담하여 부담하였음.

고용노동부의 설명에 따르면, 예산 부담에 관한 별도의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국비로 지원하는 전국기능경기대회 비용은 대회 운영비[115], 행사 지원비[116] 등이고, 지자체의 경우 특성화고 등 학교 시설에서 운영 불가능한 직종에 대한 시설장비비[117] 등을 부담하며, 교육청은 교육기관 경기장 내 운영 가능 직종의 시설 및 직종별 장비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등 관례적으로 각 주최 기관이 30% 내외(70억원 상당)에서 분담하여 왔다고 설명함.

115) 직종별 재료비, 심사위원 수당, 선수 상금 등
116) 개·폐회식 및 부대행사 운영
117) 대규모 경기장소(열린경기장) 임차료 및 시설장비 구축비

그런데 2025년의 경우, 주최 지자체인 광주광역시가 기능경기대회 외 타 대회[118]도 개최함에 따라, 지자체가 분담하는 금액이 34억 7,700만원(20.7%)으로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전국기능경기대회의 총 소요예산 규모도 전년 대비 55억 4,000만원 감소한 167억 9,000만원 규모로 행사가 추진되었음.

[2022~2025년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주체별 예산 부담 현황]

(단위 : 백만원)

개최년도	개최시도	총 계	고용노동부	지자체(시도)	교육청	참여인원
2022년	경남	23,768	6,868 (28.9%)	7,000 (29.5%)	9,900 (41.6%)	1,797명
2023년	충남	26,400	6,800 (25.8%)	7,200 (27.2%)	12,400 (47.0%)	1,691명
2024년	경북	22,330	6,800 (30.5%)	7,000 (31.3%)	8,530 (38.2%)	1,755명
2025년	**광주**	**16,790**	**6,313 (37.6%)**	**3,477 (20.7%)**	**7,000 (41.7%)**	**1,725명**

* 자료: 고용노동부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공단의 별도 회계인 **“숙련기술장려적립금”** 중 12억 3,000만원을 국비 및 지자체 등의 비용으로 충당하여야 할 전국기능경기대회 예산에 보태어 사용하는 내용으로 적립금 관리운용계획을 변경하고, 최종적으로 10억 4,900만원을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의 시설용역·행사용역·재료 구매 비용 등으로 집행하였음.

118) 2025년 광주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 등

[2025년 한국산업인력공단 숙련기술장려적립금 계획 및 결산]

(단위 : 백만원)

구분			당초	1차 변경 (2025.2.)	2차 변경 (2025.7.)	결산
우수숙련기술인 지원			20	20	20	12
기능경기대회 지원			808	1,308	1,958	1,127
	국내기능 경기대회	모범지도자포상	18	18	18	18
		대회 홍보지원	80			530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운영	-	580	580	
		전국기능경기대회 중앙재료 구매	-	-	650	519
	국제기능올림픽대회		696	696	696	52
	민간기능경기대회		14	14	14	8
계			828	1,328	1,978	1,139

주 1)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경우, 국비로 편성된 국제대표선발, 전지훈련, 훈련수당 외 선수단의 파견 등에 대한 경비임
주 2) 모범지도자포상은 국내기능경기대회의 모범지도자에 대한 포상으로, 별도 국비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음
주 3) 대회 홍보지원은 경기개최 이전의 홍보에 대한 용역비용이라고 설명함
＊ 자료: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숙련기술장려적립금은 「숙련기술장려법」 제6조제2항[119]에 근거하여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적립금의 운용수익금 등을 주된 재원[120]으로 하는 별도 회계로,[121] 재원의 특성을 고려

119) 「숙련기술장려법」
제6조(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사업의 재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국가예산, 지방자치단체예산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사업과 숙련기술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되는 숙련기술장려적립금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숙련기술장려적립금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0)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2조(적립금의 재원) 「숙련기술장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숙련기술장려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적립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121) 1994년부터 2000년까지 ‘(舊)기능장려기금’에 정부세출예산으로 출연한 금액이 있으나, 2000년 기금관리기본법 개정(법률 제6101호)에 따라 기능장려기금이 폐지되고, 기 조성된 기금은 ‘기능장려적립금(현재의 숙련기술장려적립금)’으로 관리함. 2000년 이후에는 국비 투입은 없고, 삼성

하면 정부 및 지자체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하여 쓰이는 것이 적절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이러한 취지에서 적립금의 관리운용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도 자체 규칙[122]을 통해 동 적립금의 사업 범위가 국가예산·지방자치단체예산 또는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자체 측의 예산 부담 규모 축소로 인해 행사 운영에 차질이 생겨 적립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당초 기능경기대회 개최 주체별 예산 부담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적립금 집행 계획을 변경하며 행사 부족분에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한 집행이라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따라서 향후 고용노동부는 기능경기대회 개최 주체별 예산 부담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참여 지자체의 미분담 금액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별도 회계로 조달하는 방식의 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중공업·삼성전자 등의 기부금이 있음.

122) 「숙련기술장려적립금관리운용규칙」

제4조 (사업비)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에 적립금을 사용하되, **법 제6조의1항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숙련기술장려법」

제6조(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사업의 재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국가예산, 지방자치단체예산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숙련기술진흥원 추가건립 사업 계획 수립 필요

내내역사업 **‘숙련기술진흥원 추가건립’**은 예비 숙련기술인(직업계 고교생)에게 고숙련기술을 체계적으로 전수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운영하기 위하여 숙련기술진흥원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당초 2025년도 본예산에는 96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동 사업 예산이 본예산(96억 2,500만원) 대비 91억 8,900만원이 감액되어 예산현액은 4억 3,600만원임. 2025년 예산현액은 전액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출연금으로 교부되었음.

[2025회계연도 숙련기술장려사업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B)	이·전용 등 (C)	예비비	예산 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 숙련기술장려	33,744	24,555	-	-	-	24,555	24,555	-	-	35,405
▪ 숙련기술장려	19,201	10,012	-	-	-	10,012	10,012	-	-	18,765
- 숙련기술진흥원 추가건립	9,625	436	-	-	-	436	436	-	-	9,189

* 자료: 고용노동부

숙련기술진흥원은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숙련기술을 전수하고 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의 전문기관임. 현재 숙련기술진흥원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1개소가 설립되어 있는데, 울산광역시에 추가로 1개소를 건립하기 위하여 2023년도부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임.

[숙련기술진흥원 추가건립 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목적	영남권 예비 숙련기술인(직업계고교생)에게 대한민국명장 등의 고숙련기술을 체계적으로 전수하는 전문기관 설립·운영
위치	울산광역시 중구 복산동 681-1
총사업비	333억 1,800만원 → 365억 6,200만원
사업 규모	부지 6,656㎡(2,013평) 및 시설 7,801㎡(2,363평), 지상1~5층
사업 기간	2023~2026년 → 2023~2028년
사업수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출연)

*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의 실집행현황을 보면, 2024년 교부현액 125억 6,100만원 중 64억 7,900만원(51.6%)이 실집행되고 60억 8,200만원이 이월되었음. 이에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감액되어 예산현액이 4억 3,600만원이나, 사업수행자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교부현액은 65억 1,800만원이었음. 그러나 이 중 5,300만원(0.8%)만 집행되어 실집행이 저조하게 나타난바 사업관리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숙련기술진흥원 추가건립 사업 실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본예산	예산현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A)	실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2023	1,929	1,929	1,929	-	1,929	1,927	-	2	99.9
2024	12,561	12,561	12,561	-	12,561	6,479	6,082	-	51.6
2025	**9,625**	**436**	436	6,082	6,518	53	6,465	-	0.8
2026.4.	9,189	9,189	9,189	6,465	15,654	24			

사업의 추진 계획 및 경과를 살펴보면, 당초 고용노동부는 2023년 부지선정 이후 2024년 기본·실시설계를 거쳐 2024년 하반기에 착공 후 2026년 완공 예정이었음. 그러나 당초 계획에 설계공모 보상비, 측량, 지반조사, 인증 및 인허가 비용 등 각종 법정설계부대비용이 미반정되어 조달청에서 설계 공모를 반려함에 따라, 2024년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조정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1차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하였음. 이후에도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어, 2025년 6월에서야 중간설계에 대한 조달청의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었음.

[숙련기술진흥원 추가건립 당초 및 변경 사업 계획]

구분	당초	변경(2026.3.)	비고
부지 매매계약	'23.6월~11월	'23.6월~11월	'24.1월 토지매매계약 체결
설계 공모	'23.8월~12월	'23.8월~'24.5월	5개월 지연
설 계	'24.1월~7월 · 발주 전 준비기간 1개월 · 기본설계 3개월 · 실시설계 4개월 · 설계경제성검토(VE) 1개월 · 각종 인허가 및 인증 취득 2개월	'24.6월~'26.8월 · 발주 전 준비기간 1개월 · 기본설계 1개월 · 중간설계 2개월 · 실시설계 4개월 · 설계경제성검토(VE) 1개월 · 각종 인허가 및 인증 취득 2개월	· 기본설계 3개월 소요 · 기본설계 적정성검토 3개월 소요 · 중간설계 적정성검토 5개월 소요 · '25.7~9월 기재부 총사업비 심의
착공준비	'24.8월~10월	'26.8월~10월	
건축공사	'24.10월~	'26.11월~	공사기간 31개월 (작업기간 28.5개월) 소요 예상
준 공	'26.12월	'28.12월	

* 자료: 고용노동부

2025년 6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의 시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지연상황을 고려하여 동 사업 2025년 예산을 감액한 정부안을 제출하면서, 2025년 11월 실시설계용역이 종료될 예정으로, 연말에 시공사 및 감리업체와의 계약을 추진하여 2026년 3월 착공 예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음.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설명과 달리,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2025년 교부현액 대비 0.8%인 5,300만원만이 집행되었음.

동 사업 중간설계적정성검토 결과 총사업비 증액소요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여 기획예산처와의 총사업비 조정 협의에 3개월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등 사업 지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계획보다 지연된 2025년 12월에야 동 사업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음.

또한 2025년 6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의 시 고용노동부의 계획에는 실시설계 이후 필수 행정절차인 조달청 실시설계적정성검토의 소요기간이 반영되지 않은바, 해당 절차의 진행에 대한 기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되어[123] 2026년 7월 현재까지도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기획예산처와 총사업비 조정 협의 중임. 이러한 사업 지연에 따라 연장된 사업기간인 2028년까지도 사업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음.

123) 2026년 4월 조달청 실시설계적정성검토가 완료되었음.

[숙련기술진흥원 추가건립 사업 실제 추진 상황]

2025 제2회 추경 시 계획	실제 추진 상황
‘25.2~6월 조달청의 중간(2차) 설계 적정성 검토 경제성(VE) 진행 中	‘25.6. 심의완료
‘25.7월~ 총사업비 조정, 실시설계, 각종 인증 인허가	‘25.7~9월 총사업비 심의
‘25.9월 조달청의 실시설계(3차) 적정성 검토	
‘25.11월 설계용역 종료	‘25.10월 실시설계 재개
‘25.12월~‘26.2월 시공사·감리업체 선정 계약	‘25.12월 실시설계 완료 및 적정성 검토 요청
‘26.3월 공사 착수 및 시공	‘26.4월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완료
‘28.11월 준공	‘26.7월 총사업비 조정 협의 중

* 자료: 고용노동부

따라서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숙련기술진흥원 추가건립 사업이 추가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향후 유사한 건축사업에 있어 행정사항에 소요되는 기간을 충분히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음.

(3)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135-308)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 사업(1998년~, 출연)은 국가 기간산업 분야 기술 발전에 필요한 기술 인력을 산업 현장의 수요에 맞춰 양성하고 공급하기 위한 훈련 인프라 구축 및 훈련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 소관 수지차보전 공공기관이자 사립학교법인인 한국폴리텍대학[124]의 인력개발사업, 시설확충사업, 경상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3,076억 500만원으로, 2,978억 2,800만원(96.8%)이 집행되었고 97억 7,7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 사업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B)	이전용 등 (C)	예비비	예산 현액 (A+B+C)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 한국 폴리텍 대학 운영 지원	307,605	307,605	-	-	-	307,605	297,828	-	9,777	313,648
▪ 인력개발사업	92,588	92,588	-	-	-	92,588	92,564	-	24	83,917
▪ 시설확충사업	41,092	41,092	-	-	-	41,092	41,092	-	-	44,824
▪ 정보전산화	4,779	4,779	-	-	-	4,779	4,779	-	-	6,775
▪ 경상경비	205,226	205,226	-	-	-	205,226	193,131	-	12,095	209,826
▪ 자체수입	△36,080	△36,080	-	-	-	△36,080	△33,738	-	△2,342	△31,694

* 자료: 고용노동부

124) 한국폴리텍대학은 법인 본부와 8대학(35캠퍼스, 4교육원), 1고등학교(다솜고)로 구성됨.

나. 서천캠퍼스 신설 사업: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출연금 교부 필요

내역사업 **‘시설확충사업’**은 한국폴리텍대학의 노후시설보강, 교육훈련시설 증개축, 기숙사 개보수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 예산현액 410억 9,200만원이 전액(100.0%) 출연기관인 한국폴리텍대학으로 교부되었으나, 한국폴리텍대학 차원의 실집행실적은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음.

2025년 편성된 각 내내역사업별 실집행실적을 보면, 개보수·환경개선·노후시설보강 등은 원활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신설 및 신규 구축 사업의 경우에는 집행실적이 저조함.

[2025회계연도 내역사업 시설확충사업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5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B)	이·전용 등 (C)	예비비	예산 현액 (A+B+C)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 한국 폴리텍 대학 운영지원	307,605	307,605	-	-	-	307,605	297,828	-	9,777
▪ 시설확충사업	41,092	41,092	-	-	-	41,092	41,092	-	-
- 서천캠퍼스 신설	2,000	2,000	-	-	-	2,000	2,000 [-]	-	-
- 아산 반도체종합 교육시설 구축 2차연도	1,246	1,246	-	-	-	1,246	1,246 [27]	-	-
- 충남 복합관 증개축 3차연도	7,080	7,080	-	-	-	7,080	7,080 [2,155]	-	-
- 나주 복합관 증축	718	718	-	-	-	718	718	-	-

사업명	2025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B)	이·전용 등 (C)	예비비	예산 현액 (A+B+C)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1차연도							[268]		
- 안성 반도체융합 학생회관 증축 1차연도	433	433	-	-	-	433	433 [162]	-	-
- 화성 기숙사개보수 1차연도	406	406	-	-	-	406	406 [375]	-	-
- 나주전력기술교육원 신설	418	418	-	-	-	418	418 [368]	-	-
- 구미 공학권 리모델링 3차연도	7,905	7,905	-	-	-	7,905	7,905 [7,905]	-	-
- 직업훈련 기숙사 환경개선	400	400	-	-	-	400	400 [400]	-	-
- 노후시설보강	7,545	7,545	-	-	-	7,545	7,545 [7,545]	-	-
- 오수처리시설	137	137	-	-	-	137	137 [137]	-	-
- 식당개보수	421	421	-	-	-	421	421 [421]	-	-
- 노후창호교체	625	625	-	-	-	625	625 [625]	-	-
- 석면천장재교체	4,256	4,256	-	-	-	4,256	4,256 [4,256]	-	-
- 메타버스플랫폼 구축	48	48	-	-	-	48	48 [48]	-	-
- 냉난방기설비 교체	4,535	4,535	-	-	-	4,535	4,535 [4,535]	-	-
-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2,919	2,919	-	-	-	2,919	2,919 [2,919]	-	-

내내역사업 **‘서천캠퍼스 신설’**은 2016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충청남도 서천군에 서남부 해안지역의 해양산업에 특화된 캠퍼스를 설립하려는 사업임. 2026년 4월 기준 동 사업의 총사업비는 478억 7,200만원임.

[서천캠퍼스 신설 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목적	서남부 해안지역의 해양산업에 특화된 캠퍼스를 설립하여 해양수산산업 분야 특화 인력 양성
위치	충남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화천리 브라운필드* 내 *군유지 사용으로 오염토양 우선 정화 완료 지역
총사업비	315억 3,800만원 → 347억 1,700만원→ 478억 7,200만원
사업 규모	부지 49,724㎡(15,067평) 및 시설 14,060㎡(4,253평) (본관, 공학관, 학생복지관, 기숙사, 경비실로 구성)
사업 기간	2016~2020년 → 2016~2025년→ 2016~2028년
사업수행기관	한국폴리텍대학(출연)
훈련규모	2년제 학위 200명, 전문기술분야 100명, 재직자 1,500명

*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은 2016년 설립타당성 연구용역 등 예산 5억원이 최초 편성된 이후 2017년 설계비 13억 200만원, 2018년 공사비 및 감리비 21억 6,100만원, 2019년 공사비 18억 6,000만원이 기편성된 바 있으나, 사업부지 소유권 이전 및 토양오염정화[125]로 인하여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어, 2017년부터 2021년 동안 한국폴리텍대학의 실집행액은 0원이었고, 국비 예산도 2020년부터 2024년까지는 편성되지 않았음.

한국폴리텍대학은 2021년 사업계획을 재수립하였고, 2021년 12월 공

125)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토양오염정화가 이루어졌음.

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설계에 착수하였음. 한국폴리텍대학은 2023년 10월 설계 용역(계획설계)에 착수하여 2024년 5월에는 조달청 계획설계 적정성검토를 완료하고, 중간설계에 착수하였음.

[서천캠퍼스 신설 사업 총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 원)

계약명	계약일자	계약금액 (A)	집행일자	집행금액 (B)	잔액 (A-B)
(설계)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확인 수당	'22.06.14	250,000	'22.06.14.	250,000	.
(설계)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심의수당	'22.06.14	1,542,650	'22.06.14.	1,542,650	.
(설계)설계공모 보상비	'23.09.25	33,333,000	'23.09.25	33,333,000	.
(설계)설계공모 심사 수당	'23.09.25	6,133,665	'23.09.25	6,133,665	.
(설계)법규 검토 수당	'23.09.25	671,276	'23.09.25	671,276	.
(설계)설계용역	'23.10.25	1,334,408,000	'24.02.13	266,871,000 1차 기성	776,149,530
			'25.09.25	291,387,470 2차 기성	
(기타설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24.01.25	107,642,000	'24.07.23	32,292,600	75,349,400
(기타)소규모재해영향평가	'24.01.25	67,295,000	-	-	67,295,000
(부대비)설계용역계약 조달수수료	'23.11.06	14,209,670	'23.11.06	14,209,670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조달수수료	'24.01.25	845,850	'24.01.28	845,850	.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조달수수료	'24.01.25	538,360	'24.01.28	538,360	.
중간설계 적정성검토 자문수당	'25.09.18	8,770,000	'25.09.18	8,770,000	.
계		1,575,639,471		656,845,541	918,793,930

이에 고용노동부는 2024년 하반기에 중간설계가 완료되고, 2025년 하반기에는 실시설계 완료 및 건축공사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여 2025년 예산에 서천캠퍼스 공사비 20억원을 편성하고 전액을 한국

폴리텍대학에 교부하였다고 설명함.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예상과 달리, 2024년 하반기에 진행된 중간설계 및 이에 따른 조달청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결과 공사비 131억 5,500만원 증액 및 사업기간 연장(+3년)이 필요한 것으로 나와, 기획예산처와의 총사업비 조정에 기간이 소요되어 2026년 4월에야 실시설계 용역이 재개되었음.[126)127)]

126) 고용노동부는 2026년 10월경 실시설계가 완료될 것이라고 예상함.

127) 참고로, 동 사업의 총사업비는 당초 315억 3,800만원이었으나 조달청 설계적정성검토를 거치며 2026년 4월 기준 총사업비가 478억 7,200만원까지 증액되었음. 만약 2026년 10월 이후 실시설계 종료에 따른 실시설계적정성검토 단계에서 **총사업비가 500억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국가재정법」 제50조제2항 및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9조에 따라 **'타당성재조사'를 받아야 함.**

「국가재정법」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사업규모·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이하 "타당성재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9조(타당성재조사의 요건)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국가재정법」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기획예산처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중 해당 연구개발의 수행에 필수적인 시설물의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은 제외한다.

종합하면, 2017년[128]~2025년 교부된 출연금 총 73억 2,300만원 중 한국폴리텍대학의 실집행액은 6억 5,600만원(실집행률 9.0%)에 그쳤으며, 2025년 교부된 공사비 20억원도 전액 미집행 이월되는 등 출연금의 연례적 이월이 지속되고 있음. 이는 고용노동부가 사업의 연내 실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요구한 뒤, 출연금을 전액 교부한 데에 기인함.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4조(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① 예비타당성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규 사업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 사업

128) 2016년 교부된 출연금 1억원은 총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아 제외하였음.

[2017~2025년 서천캠퍼스 신설 사업 한국폴리텍대학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고용노동부		한국폴리텍대학						
	본예산	예산현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A)	실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2017	1,302	1,302	1,302	-	1,302	-	1,302	-	-
2018	2,161	2,161	2,161	1,302	3,463	-	3,463	-	-
2019	1,860	1,860	1,860	3,463	5,323	-	5,323	-	-
2020	-	-	-	5,323	5,323	-	5,323	-	-
2021	-	-	-	5,323	5,323	-	5,323	-	-
2022	-	-	-	5,323	5,323	2	5,321	-	-
2023	-	-	-	5,321	5,321	54	5,267	-	1.0
2024	-	-	-	5,267	5,267	300	4,967	-	5.7
2025	2,000	2,000	2,000	4,967	6,967	300	6,667	-	4.3
2017~2025년까지의 총 교부액: 73억 2,300만원 2017~2025년까지의 실집행액 6억 5,600만원(실집행률 9.0%)									

주) 2016년 국비 1억원은 총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아 제외하였음

＊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을 포함한 한국폴리텍대학의 신규 캠퍼스 건립 사업은 과거 국회 결산 심의 과정에서 '폴리텍 설립 관련 사업비 변경 및 사업기간 연장을 최소화하는 등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것'[129], '신규 캠퍼스 설립 예산이 반복적으로 이월되고 있으므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130], '향후 사업의 재개 가능성조차 미지수인바 캠퍼스 추가신설 신중검토 필요'[131]

129) 2019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130) 2018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131) 2017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등 집행부진으로 다수 지적된 바 있음에도, 2025년도에 과거와 유사한 집행부진의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서천캠퍼스 건립 등과 관련하여 향후 출연금의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교부하고, 차년도 예산 편성시에는 기교부된 출연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실제 집행 가능한 금액만 편성하는 등 사업에서의 집행부진이 관행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출연금 집행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음.

(4)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고용보험기금, 1152-350)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사업(1995년~, 직접·보조 및 출연)은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해 노동자 직무능력 및 기업 생산성 제고 지원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일반훈련', '혁신형 기업훈련', '현장맞춤형 체계적훈련', '지역산업맞춤형 훈련' 등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동 사업의 2025회계연도 계획현액은 3,006억 7,000만원으로, 2,917억 9,900만원(97.0%)이 집행되었고, 88억 7,1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사업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B)	계획 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	300,670	300,670	-	300,670	291,799	-	8,871	249,668
▪ 일반훈련	195,424	211,351	-	211,351	208,860	-	4,491	210,237
▪ 혁신형 기업훈련	51,867	38,867	-	38,867	35,535	-	3,332	-
▪ 현장맞춤형체계적훈련	32,706	29,279	-	29,279	28,431	-	849	35,899
▪ 지역·산업 맞춤형훈련	19,041	19,541	-	19,541	19,446	-	95	-
▪ 운영비	1,632	1,632	-	1,632	1,527	-	105	3,532

* 자료: 고용노동부

나. 빈일자리 재직 청년 기술연수 사업: 현장 수요 사전 파악 후 면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할 필요

내내역사업 **'빈일자리 재직 청년 기술연수'** 사업은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의 직무역량 개발을 위해 국내 현장 훈련 기회를 부여하여 기술훈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당초 계획액은 42억 2,700만원이었으나 자체변경(감)을 통해 계획현액 1억원으로 변경되었고, 이 중 6,4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3,6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빈일자리 재직청년 기술연수 사업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B)	계획 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	300,670	300,670	-	300,670	291,799	-	8,871	249,668
▪ 현장맞춤형 체계적훈련	32,706	29,279	-	29,279	28,431	-	849	35,899
▪ 빈일자리 재직청년 기술연수	4,227	100	-	100	64	-	36	폐지

* 자료: 고용노동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고용노동부는 국내연수 6개월·해외연수 3개월(단기) 또는 6개월(장기)의 유급휴가 훈련을 진행하는 내용으로 동 사업을 설계하였으나, 사업대상인 중소기업 사업주의 수요조사 없이 신규 시범사업을 추진한바[132] 국회 예산안 심의 단계에서 30억원이 감액 편성되었고,[133] 중소기업의 인력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연수

132) 고용노동부는 신규 사업 편성시에는 사전 수요조사 등을 거치지 않았고,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2024년 10~11월 중소기업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등을 추진하였다고 설명함.

지역을 국내로 한정하는 등의 사업 방식 변경에 대한 부대의견이 의결되었음.[134]

이후 고용노동부는 사업수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선정한 연수기관을 통하여 국내 위탁 연수를 하는 방식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음. 고용노동부는 빈일자리 업종[135]에서 2년 이상 재직 중인 만 15~34세[136] 청년을 지원 대상으로 하여 40시간의 기술연수를 지원하되, 빈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 현장 근로환경을 고려하여 비유급휴가형(A형)과 유급휴가형(B형)으로 구분하여 훈련비의 300% 이내를 지원하고자 하였음.

[빈일자리 재직 청년 기술연수 사업 개요]

구분	A형(비유급휴가형)	B형(유급휴가형)
연수시간	최소 40시간 이상	월 120시간 이상
연수기간	-	1개월 이상
연수방법	집체, 혼합 (기초, 이론 과정에 한해 비대면 쌍방향 최대 50% 비중 편성 가능)	
지원항목	훈련비: 300% 이내, (B형: 임금, 대체인력 인건비)	

※ B형은 유급휴가형으로,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가 아닌 경우로서 휴가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를 말함

* 자료: 고용노동부

133) 당초 정부안 72억 2,700만원 → 국회 심의 단계에서 30억원 감액 → 당초 계획액 42억 2,700만원

134) 2025년도 예산안 부대의견: 고용노동부는 추진중인 빈일자리 재직청년 기술연수 사업은 중소기업의 인력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연수지역을 국내로 한정하고, 연수기간도 대폭 단축하는 등 중소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35) 제조업,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업, 음식점업, 농업,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

136)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까지 참여가능)

그러나 연수기관 모집부터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위탁 연수를 위해 연수기관 및 연수과정을 모집하였음. 그러나 1차 모집공고 시에는 2개 기관만이 지원하였고, 지원한 기관들의 기본요건 미충족으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후 2025년 10월 말까지도 동 사업의 연수기관 및 연수과정 선정이 완료되지 않았음.

[2025년 빈일자리 재직 청년 기술연수 사업 연수기관 모집 추진현황]

구분	일정	내용
1차 모집공고	'24.12.30.~ '25.2.3.	2개 기관 지원하였으나, 기본요건 미충족으로 부적합
2차 모집공고	'25.2.9.~3.12.	5개 기관(6개 과정) 승인
3차 모집공고	'25.4.7.~4.28.	2개 기관(3개 과정) 승인
신규과정 선정	'25.6.24.	한국생산성본부(기선정기관) 신규 신청 1개 과정 승인
	'25.8.11.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기선정기관) 신규 신청 1개 과정 승인
신규기관 진입	'25.8.11.	한국기술사업화진흥협회(1개 과정)
	'25.9.1.	대한상공회의소 부산인력개발원(1개 과정)
	'25.9.24.	한국로봇융합연구원(2개 과정)
	'25.10.29.	한국품질재단(2개 과정)

* 자료: 고용노동부

연수기관 및 연수과정 선정 외에도 실제 직업훈련의 대상인 빈일자리 업종 2년 이상 재직 중인 청년 인원의 부족 및 40시간 이상의 장기훈련에 대한 업무공백으로 인한 기업 부담 등으로 인하여 사업 참여가 저조하였음.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동 사업의 계획 참여 인원을 605명으로 보았으나, 실제 연수에 참여한 인원은 94명(15.5%)에 불과하

였고, 전체 17개 과정 중 참여 인원이 전혀 없는 과정이 9개 과정(52.9%)에 달하였음.

[빈일자리 재직 청년 기술연수 사업 과정별 계획인원 및 참여인원]

선정일	연수기관	연수과정	연수장소	연수비 단가	계획인원	참여인원
25.5.20.	대구직업전문학교	제조업기반 용접과 VR을 통한 안전 실무 과정	대구	11,970원 (NCS 단가의 150%)	15	-
	스팩스페이스	생성형 AI를 활용한 기계 장비 제조 공정 기획 과정	서울	19,860원 (NCS 단가의 300%)	30	15
	한국생산성본부	제조업 전문가를 위한 AI 기초	서울	21,870 (NCS 단가의 300%)	30	27
		스마트공장 구축 및 운영 과정	서울	21,570 (NCS 단가의 300%)	30	-
	한국직업능력교육원	파이썬과 ChatGPT를 이용한 뿌리·건설산업 기업 대상 AI 활용 과정	경기	7,290 (NCS 단가의 103%)	60	-
	한국표준협회	청년 제조업 종사자의 업무 혁신을 위한 생성형 AI 실전 가이드	서울	21,870 (NCS 단가의 300%)	60	-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제조혁신을 위한 데이터 활용(화장품 분야)	인천	10,932 (NCS 단가의 150%)	30	-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헬스케어 산업을 위한 생성형 AI 도입 실무과정	서울	19,860 (NCS 단가의 300%)	75	-
		AI 기반 반도체 공정 & 패키징 과정	경기	20,550 (NCS 단가의 300%)	50	11

선정일	연수기관	연수과정	연수 장소	연수비 단가	계획 인원	참여 인원
25.6.24.	한국생산성본부	제조업에 필요한 임베디드 시스템 숙련과정	서울	19,860 (NCS 단가의 300%)	20	15
25.8.11.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반도체 공정의 데이터 분석 및 최적화 과정	경기	20,550 (NCS 단가의 300%)	20	-
	한국기술사업화진흥협회 대구평생교육원	품질실무 기반 QES(품질·환경·안전) 통합 청년 심사원 과정	대구	10,755 (NCS 단가의 150%)	30	13
25.9.2.	대한상공회의소 부산인력개발원	스마트 품질관리 입문 과정	부산	21,150원 (NCS 단가의 300%)	15	-
25.9.24.	한국로봇융합연구원	AI비전·협동로봇 융합 실무 프로젝트 과정	경북	19,590원 (NCS 단가의 300%)	20	-
		스마트제조 산업용로봇 소재이송 스킬업 과정	경북	19,590원 (NCS 단가의 300%)	20	-
25.10.29.	한국품질재단	IATF 16949 요구사항 및 CORE TOOL (핵심 부속서) 실무	대구	10,742 (NCS 단가의 150%)	50	13
		품질 불량 분석 및 Q-COST 통합 과정	대구	10,742 (NCS 단가의 150%)	50	-
계					605	94

*자료: 고용노동부

결국 동 사업의 당초 계획액 42억 2,700만원 대비 집행액은 6,400만원(1.5%)에 불과하였고, 고용노동부는 지원요건 및 장기훈련에 대한 기업 부담 등으로 수요가 부족함을 인지하여 동 사업 예산 중 총 41억 2,700만원을 타 내역사업인 일반훈련 내 일반직무훈련으로 기금 자체변경(감) 하였으며, 2026년에는 빈일자리 재직 청년 기술연수 사업을 편성하지 않아, 동 사업은 단년도 시범사업으로 별도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폐지되었음.

이와 같이 빈일자리 재직 청년 기술연수 사업의 추진 내역을 살펴보면, 결국 고용노동부가 당초 직업훈련 대상인 근로자 및 기업의 사전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여 시범사업으로써의 성과도 내지 못한 채 사업이 폐지된 것이므로, 향후 고용노동부는 신규 사업 추진 시 현장의 수요를 사전에 파악한 이후 면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다. 탄력운영제: 사업 추진 방식과 부합하지 않는 관련 법령 정비 필요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금 사업은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고용보험기금 재원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집행됨. 이때 내역사업 '혁신형 기업훈련'에서는 기업훈련 절차 및 지원체계 개선과 관련된 내내역사업을 위주로 지원하고 있음.

내역사업 '혁신형 기업훈련'의 내내역사업 **'탄력운영제'**는 현행 사업주가 직업훈련과정을 인정·변경하는 방식을 간소화하여 사업주의 행정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147억 8,700만원 중 142억 300만원이 집행(96.1%)되고 5억 8,4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탄력운영제 사업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계획액
	계획액		이전용등 (B)	계획 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	300,670	300,670	-	300,670	291,799	-	8,871	249,668
▪ 혁신형 기업훈련	51,867	38,667	-	38,867	35,535	-	584	내역이동
▪ 탄력운영제	18,287	14,787	-	14,787	14,203	-	584	내역이동

주) 탄력운영제 사업은 2026년부터 일반직무훈련의 내역사업으로 이관되었고, 2026년 계획액은 182억 8,700만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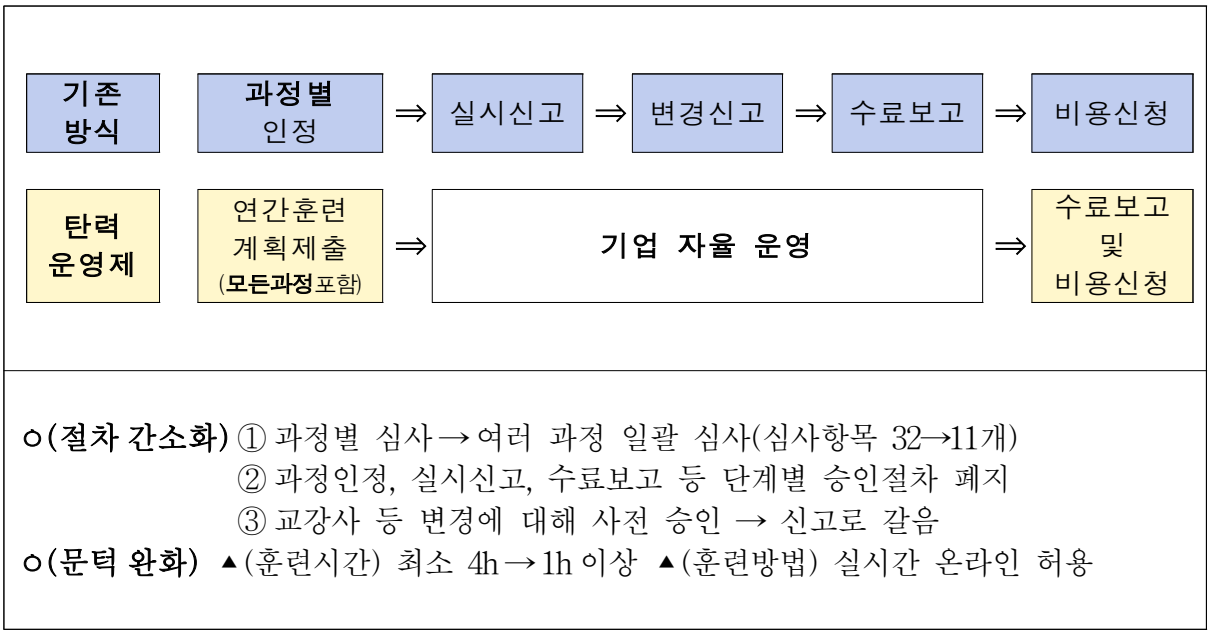
* 자료: 고용노동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사업주는 직

업훈련과정을 과정별로 인정받게 되어 있고, 인정받은 훈련 과정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이때 '탄력운영제' 사업은 사업주가 여러 개의 직업훈련과정을 한 번에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고, 훈련과정 변경 사전 승인이 아닌 사후 보고 방식으로 변경하여 사업주의 행정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최소 훈련시간을 현행 4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이고, 실시간 온라인 훈련을 허용하는 등 훈련시간과 방법의 유연화를 통한 직업훈련 기회의 확대를 목적으로 함.

[탄력운영제 사업 개요]



*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별도 예산 투입 없이[137] 탄력운영제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였고, 2025년부터 동 사업을 신규 내내

137) 고용노동부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집행은 별도 내내역사업 편성 없이 내역사업 일반훈련의 예산 중 일부를 활용하여 지원하였다고 설명함.

역사업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2025년의 경우, 322개 기업이 탄력운영제에 참여하여 당초 계획액 182억 8,700만원 중 142억 300만원(77.7%)이 집행되었음.[138)]

[2022~2025년 탄력운영제 참여기업 등 현황]

(단위 : 개, 명, 백만원)

구분	참여기업	실시인원	수료인원	지원인원	계획액(당초)	지원금액
2022	24	3,323	3,171	1,328	-	77
2023	118	50,741	46,167	25,745	-	1,614
2024	217	149,581	136,416	109,088	-	6,776
2025	322	196,785	182,612	203,042	18,287	14,203
2026.3.	216	55,092	35,078	36,894	18,287	2,723

주1) 참여기업은 기업이 스스로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자체적으로 훈련하는 기업으로 훈련기관에 해당함
주2) 2022~2024년 집행은 일반훈련에서 지원하였음
* 자료: 고용노동부

이러한 탄력운영제는 개별 기업현장에 맞춰 설계된 자체훈련을 확대하여 훈련 효과성의 제고를 도모할 수 있고, 행정부담 완화 및 훈련 시간·방법의 유연화가 가능하다는 제도상 의의가 있으나, 고용노동부가 시범사업 이후 지속적으로 탄력운영제를 운영하기 위하여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탄력운영제를 통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직업훈련의 최소 시간을 1시간으로 단축하고, 훈련운영 과정에서

138) 고용노동부는 타 내역사업인 일반훈련 중 일반직무훈련의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여, 탄력운영제 사업의 당초 계획액 중 불용예상액 35억원을 일반훈련 예산으로 자체변경하였음.

의 변경을 사후 신고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부합하지 않음.

현행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2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직업훈련의 최소시간을 4시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명칭, 훈련기간·시간, 교사·강사 등 사항등 인정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변경예정일 5일 전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탄력운영제 사업의 주된 내용 자체가 하위법령에 위배되는 상황인 것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①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그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 또는 융자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3.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사업주·사업주단체등으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4.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사업주·사업주단체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게 한 경우

4의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한 경우

5.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6.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7. 제10조의2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8. 제58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따른 경우
9. 제58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에 의한 관계 서류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인정이 취소된 자 중 비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

하여는 그 취소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제1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과 제1항 및 제19조에 따른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의 범위·요건·내용 및 유효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인정취소의 세부기준, 인정취소 사유별 구체적인 인정 제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2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① 법 제2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훈련시간이 4시간 이상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훈련과정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훈련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훈련과정의 훈련기간 및 훈련시간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가.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원격훈련
나.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혼합훈련 중 원격훈련이 포함된 훈련
다. 단체협약, 노사협의회 의결 또는 이에 준하는 노사합의에 따라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실시하는 훈련으로서 그 훈련을 수강하는 것이 승진, 승급, 전보 등 인사관리를 할 때 우대되고 있는 훈련
2. (생 략)
② 법 제2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인정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또는 기관의 명칭·소재지와 인정받은 사람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2.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명칭, 훈련내용, 훈련기간·시간, 훈련방법, 훈련장소, 훈련시설·장비 및 교사·강사
3. 인정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8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신청 등) ① (생 략)
② (생 략)
③ 법 제24조 및 영 제22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영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인정 내용을 변경(훈련내용 및 훈련방법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변경인정) 신청서에 변경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통지서를 발급한 공단의 분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 실시하는 훈련과정의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의 개시 4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탄력운영제 사업은 2026년에도 기금운용계획에 182억 8,700만원 상당으로 편성되어 있는바 고용노동부는 탄력운영제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보이는데,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는 사업주직

업훈련지원금 사업의 근거법령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하여 사업내용과 법령의 불일치를 개선할 필요가 있겠음.

(5)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고용보험기금, 1153-350)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사업(2001년~, 직접/보조)은 대기업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자체 훈련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체계적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여 대-중소 상생의 직업훈련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산업맞춤형·하이테크형·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유형으로 구분됨.[139]

동 사업의 2025회계연도 계획현액은 1,293억 2,500만원으로, 1,292억 3,900만원(99.9%)이 집행되었고, 8,6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사업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B)	계획 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 국가인적자원 개발 컨소시엄 지원	119,225	129,325	-	129,325	129,239	-	86	192,240
▪ 산업맞춤형	71,225	71,225	-	71,225	71,225	-	-	59,285
▪ 하이테크형	34,000	38,000	-	38,000	38,000	-	-	35,600
▪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12,200	18,300	-	18,300	18,300	-	-	10,500
▪ 일반용역비	1,800	1,800	-	1,800	1,714	-	86	1,800

* 자료: 고용노동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의 경우 훈련 인프라(훈련장비 및 시설, 교강사 등)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우수한 훈련인프라를 갖추고 있

139) 2026년부터 대중소상생 아카데미는 내역사업 ‘산업맞춤형’의 내내역사업으로 이관됨.

는 대기업(대학) 등이 협력기업 등 중소기업과 컨소시엄(협약체결)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됨.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업 사업 추진체계]



자료: 고용노동부

동 세부사업은 산업맞춤형·하이테크형 및 대중소상생아카데미의 3개 내역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음.

내역사업 '산업맞춤형'은 대기업, 협·단체가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중소기업의 훈련 수요 조사를 통해 공통의 훈련과정을 개발하거나 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인프라비용을 공동훈련센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계획현액 712억 2,500만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전액 교부되었음.

내역사업 '하이테크형'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디지털 및 첨단산업, 산업전환 분야의 중소협력기업 재직자 및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직무훈련 및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훈련센터를 지원

하는 사업으로, 2025년 계획현액 380억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전액 교부되었음.

내역사업 ‘대중소상생아카데미’는 ①대기업이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인증을 받아 직접 운영하거나, ②대기업이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한 이후에 인증을 받고 대학이나 협회와 같은 수행기관과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훈련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계획현액 183억원이 전액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교부되었음.

나. 대중소상생아카데미 사업: 기금운용계획 변경 증액분의 집행부진

내역사업 **‘대중소상생아카데미’**는 대기업이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인증을 받아 직접 운영하거나, 대기업이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한 이후에 인증을 받고 대학이나 협회와 같은 수행기관과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훈련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당초 고용노동부는 대중소상생아카데미 사업 100개 프로그램에 각각 1억 2,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이에 당초 계획액은 122억원이었으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 시 공동훈련 인프라 확대를 위해 동 사업 계획액을 61억원 증액하였음.[140)]

2025년 계획현액 183억원은 전액(100.0%) 보조사업자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교부되었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보조금 183억원 중 127억 2,300만원(69.5%)을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하였음. 이때 간접보조사업자의 실집행현황을 보면, 실집행액은 75억 3,700만원으로, 교부현액 대비 실집행률이 59.2%에 불과하고 집행액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기 전 예산인 122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140) 고용노동부는 철강, 화학 에너지 등 산업에서 통상마찰과 급속한 산업전환 등으로 정부지원의 필요성이 커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훈련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대중소상생아카데미 프로그램 50개를 추가로 개설하기 위하여 6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2025년 대중소상생아카데미 사업 실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간접보조사업자				
계획액		집행액	교부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교부현액 (A)	실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당초	변경										
12,200	18,300	18,300	18,300	12,723	-	5,577	12,723	7,537	-	5,186	59.2

* 자료: 고용노동부

구체적인 각 운영기관별 사업 실적을 살펴보면, 2025년 총 41개 운영기관 중 23개 운영기관(56.1%)의 목표인원 대비 모집인원 달성률이 70%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고, 모집인원이 0명인 기관도 있음.

[2025년 대중소상생아카데미 사업 실적]

(단위: 명, %)

연번	운영기관	선정일	훈련업종	목표인원 (A)	모집인원 (B)	B/A
1	H000000	2024. 3.	용접, 전장	2,602	867	33.3
2	H0000000		항해, 기관	1,270	1,231	96.9
3	L00000		창호, 벽지	308	222	72.1
4	S0000		기계정비	4,600	2,123	46.2
5	삼0000		품질, 설비	310	242	78.1
6	세00		반도체	180	113	62.8
7	H00000	2024. 8.	용접, 전장	5,810	3,704	63.8
8	L00000		전기, 전자	360	171	47.5
9	두0		정보통신	2,025	1,461	72.1
10	명0		자동차	440	248	56.4
11	코00000		전기, 전자	60	60	100.0
12	에000000		전기, 전자	60	44	73.3
13	현0000		자동차	1,050	966	92.0
14	삼000000	2024. 9.	전기, 전자	1,518	801	52.8
15	우0000	2024. 12.	사출	708	391	55.2
16	포00		정비, 건설	4,334	3,166	73.1
17	부00000		철도	540	122	22.6
18	S00	2025. 4.	생성형AI	1,920	1,480	77.1
19	L0000		가전설치	180	152	84.4
20	대000	2025. 7.	조선	840	832	99.0
21	삼0000		조선	200	200	100.0
22	한0000		인공지능	350	154	44.0

(단위: 명, %)

연번	운영기관	선정일	훈련업종	목표인원 (A)	모집인원 (B)	B/A
23	한000		조선	1,920	897	46.7
24	S00000		반도체	300	276	92.0
25	L0000	2025. 9.	클라우드	540	357	66.1
26	S0000		정보보안	180	100	55.6
27	에000		클라우드	360	253	70.3
28	**한0000**		**스마트팩토리**	**120**	**0**	**0.0**
29	한000000000000	2025. 10.	전기, 전자	72	34	47.2
30	엔00		정보통신	80	56	70.0
31	대0		농기계	160	131	81.9
32	한000		조선, 용접	120	18	15.0
33	파0000		식품가공	96	87	90.6
34	에00000		자동차	150	71	47.3
35	**S000000**		**조선, 용접**	**120**	**0**	**0.0**
36	K0000		정보통신	210	72	34.3
37	한0000000		재료	80	40	50.0
38	티000		기계	310	175	56.5
39	한00000000		선박운항	450	64	14.2
40	케00000		정보통신	100	32	32.0
41	현00000		정보통신	100	100	100.0

* 자료: 고용노동부

이러한 집행부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당초 1개 프로그램당 단가를 1억 2,200만원으로 설정하였으나, 실제 운영 단가는 평균 7,000만원으로, 프로그램당 실제 평균 운영단가가 예산편성 단가보다 낮게 형성되며 집행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실집행률이 낮게 나타났다고 설명함. 또한 고용노동부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7월에 확정되고 2025년 9월 이후 프로그램이 선정됨에 따라 훈련생 모집에 어려움이 있어 목표인원 대비 모집인원이 낮게 나타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함.

그러나 예산편성 단가와 실제 운영단가의 차이가 5,000만원 이상 발생한 것은 당초 예산편성시부터 고용노동부가 동 사업 예산에 대한 추계를 면밀하게 하지 못했음을 의미함.[141] 또한 고용노동부의 설명

중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으로 인한 사업 지연의 경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신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4개월로 제한된다는 점,[142] 2025년 5월말을 기준으로 각 운영기관의 훈련목표인원 대비 모집인원 실적이 부진한 측면이 있어 기존사업의 관리가 더 필요하다는 점[143] 등 우려사항이 지적되었음을 고려하면 당초 고용노동부가 사업의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향후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추진중인 사업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해 사업의 연내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고려한 이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141)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2026년 예산부터는 개소당 지원단가를 7,000만원으로 변경한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함.
142)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14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용노동부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다. 산업맞춤형: 보조금 중 인건비와 운영비 비중이 과다하므로 제도개선 필요

내역사업 **'산업맞춤형'**은 대기업, 협·단체가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중소기업의 훈련 수요 조사를 통해 공통의 훈련과정을 개발하거나 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인프라비용을 공동훈련센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계획현액 712억 2,500만원이 전액 교부되었음.

2025년 고용노동부는 산업맞춤형 사업에서 공동훈련센터 195개소(692억 2,500만원)와 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 훈련 10개소(20억원)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었음.

동 사업의 실집행현황을 보면,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보조금 712억 2,500만원을 전액 교부하였으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 중 698억 5,100만원을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하고 13억 7,400만원은 불용하였음. 간접보조사업자는 교부현액 698억 5,100만원 중 638억 6,100만원(91.4%)을 실집행하였고, 59억 9,0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년 산업맞춤형 사업 실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간접보조사업자				
계획액		집행액	교부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교부현액 (A)	실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당초	변경										
71,225	71,225	71,225	71,225	69,851	-	1,374	69,851	63,861	-	5,990	91.4

* 자료: 고용노동부

그런데 2025년 산업맞춤형 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 집행액을 지원항목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업 예산이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성 경비로 지출되고 있음.

2025년 산업맞춤형 사업의 실집행액 638억 6,100만원 중 인건비는 290억 6,300만원(45.5%), 일반운영비는 85억 6,400만원(13.4%), 보전금은 11억 2,800만원(1.8%)임. 이때 보전금은 전년도 사업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차년도에 지급하는 것으로, 각 개인에 대한 성과금으로 지출되고 있는데, 이를 고려하면 산업맞춤형 사업 결산액 중 60.7%인 387억 5,500만원이 인건비·운영비성 경비로 지출된 것임.

[2025년 산업맞춤형 사업 지원항목별 결산액]

(단위: 백만원, %)

구분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장비비	프로그램 개발비	보전금	과정 운영비	계	인건비+일반 운영비	인건비+일반 운영비+보전금
결산액	29,063	8,564	6,004	1,590	1,128	17,512	63,861	**37,627**	**38,755**
비중	45.5	13.4	9.4	2.5	1.8	27.4	100.0	**58.8**	**60.7**

* 자료: 고용노동부

초기 대규모 시설·장비 투자 이후 구축된 시설·장비를 활용하여 훈련을 진행하는 동 사업의 특성상 인건비와 운영비성 경비의 비중이 높을 수는 있으나, ①기획재정부의 「20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사업비 중심으로 지원하고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은 최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유사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동일한 세부사업의 타 내역사업인

‘하이테크형’ 사업의 경우 인건비와 운영비성 경비의 비중이 40.6%라는 점을 고려하면 산업맞춤형 사업에서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지원금 중 인건비·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낮출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144)]

[2025년 하이테크형 사업 지원항목별 결산액]

(단위: 백만원, %)

구분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장비비	프로그램 개발비	과정 운영비	보전금	계	인건비+일반 운영비	인건비+일반 운영비+보전금
결산액	9,488	4,298	15,605	4,975	-	259	34,625	13,786	14,045
비중	27.4	12.4	45.1	14.4	-	0.7	100.0	39.8	40.6

* 자료: 고용노동부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산업맞춤형 사업의 보조금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인건비와 운영비성 경비로 지출되는 비중을 줄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145)]

144)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하이테크형 사업의 경우 2021년 신규 사업으로 출범함에 따라 아직까지 인프라 구축 단계로 산업맞춤형에 비해 시설·장비비 비중이 높다고 설명함.

145)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산업맞춤형의 경우 2001년 사업 출범 이후 초기 인프라 투입되어 경상경비인 인건비·운영비 비중이 높은 구조이나, 성과평가를 통해 부진기관들을 퇴출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시설·장비비 신규 확충이 필요한 공동훈련센터에 재배분하는 등 자체 질관리 노력을 병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훈련 품질관리에 대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나, 인건비·운영비 비중이 과다하게 높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 마련을 위한 추가적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임.

라. 산업맞춤형과 하이테크형 사업의 보조금 중요재산 미공시 문제 개선 등 보조사업 관리·감독 강화 필요

내역사업 **산업맞춤형**과 **하이테크형 사업**의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간접보조사업자가 실제 보조금을 집행한 내역을 살펴보면 고용노동부가 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일부 보조사업자의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공시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현행 보조금 관련 법령은 보조사업자가 중요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공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146]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보조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을 보조금으로 취득한 경우 현재액과 증감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중요재

---

14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① (생 략)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중요재산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해당 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중요재산의 현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산의 현황을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147] 및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고용노동부 훈령)」[148]은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 보

147)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6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 보고는 「보조금법」 제35조제1항과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며 별지 제3호서식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하여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후 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 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 취득현황과 변동현황을 확인·점검 후 보조금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이때, 취득현황은 보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하고, 변동현황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 공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시 기간은 최초 공시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1. ~ 4. (생 략)

④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을 제1항에 따라 관리하되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정한 50만원 이하 내구성재산은 포함하여야 한다.

148)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35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 보고는 「보조금법」 제35조제1항과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며 보조사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중요재산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하여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해당 부서·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후 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 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에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② 「보조금법」 제35조의 현재액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며,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 등 자산평가업무에 전문성 있는 평가인의 평가에 의한 가격으로 한다.

③ 부서·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 취득현황을 확인·점검 후 「보조금법」 제35조제2항과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1개월 이내에 보조금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하고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 변동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 기간은 최초 공시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의 경우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의 경우 10년
3. 항공기의 경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의 경우 5년

④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50만원을 초과하는 중요재산과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보조금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정한 50만원 이하의 내구성 재산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고에 한해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중앙관서의 장은 이를 “1개월 이내”에 보조금시스템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상의 규정을 고려하면, 각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등 취득가액 50만원 이상의 물품에 대하여 법령상 기간 내에 보조금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할 것임.

그러나 2026년 7월 보조금시스템 공시 확인 결과, 일부 보조사업자의 경우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공시를 누락하였음. 예컨대 oo ooooo 산학협력단의 경우 자산취득비로 교육용 pc 등을 구매하여 총 1억 9,800만원 상당을 지출하였는데,[149] 해당 취득물품에 대한 공시를 전혀 하지 않았음.

[보조사업 중요재산 미공시 일부 사례]

(단위: 원)

구분	보조사업자명	취득물품명	금액
산업맞춤형	한0000000	빔프로젝터	2,970,000
	한0000000	마이크로피펫 1-10 ㎕, 16대	3,320,064
하이테크형	강0000 산학협력단	디지털미디어센터 시사실 음향장비	39,994,000
		디지털미디어센터 시사실 LED Display system	49,506,600
		행정업무용 사무장비(문서세단기)	980,000
	경00000000 산학협력단	실습실 모니터	5,200,000
		실습실 PC	52,572,000

⑤ 부서·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장소, 재정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49) 한편, 0000000 산학협력단의 모든 자산취득비 지출이 2025년 12월 31일에 이루어졌음.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0000000 산학협력단은 2025년 K-하이테크 플랫폼 신규 선정기관으로 시설 구축이 하반기에 진행됨에 따라 PC 등 장비 구매·취득이 지연되어 연말에 모든 자산취득비 지출이 이루어졌고, 중요재산 공시 등이 누락되었다고 설명함.

(단위: 원)

구분	보조사업자명	취득물품명	금액
		실습실 대형 모니터 등	9,418,400
		실습실 메모리 등	8,964,800
		이동형 훈련장비	14,541,600
		유량시험기 및 휴대용 수소검지기	97,933,000
		소형 수소생산-공급-충전시스템	142,500,000
		헬륨리크 시험장비	144,400,000
		훈련지원실 복합기	3,450,500
		훈련지원실 서버	4,400,000
		훈련지원실 문서세단기	854,590
		강의실 및 행정지원실 집기 구입	34,782,800
		훈련지원실 pc	7,600,820
		훈련지원실 모니터	2,010,800
		훈련지원실 냉장고	522,800
	국000000 산학협력단	업무용 집기(PC, 모니터 등)	13,316,000
		철제 실습용 테이블	18,000,000
		인터렉티브 화이트보드	2,080,000
		국000000 K-하이테크플랫폼사업 홍보 전시관 설치	97,850,000
		충방전기 외 14종 훈련장비	101,174,100
		인터랙티브 화이트보드 등	14,950,000
		무선마이크	1,780,000
	제000000 산학협력단	교육용 pc등 *모든 자산취득비 미공시	198,315,585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재구성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시설 구축이 하반기에 진행된 일부 기관의 경우 장비 구매·취득이 지연되고 업무가 집중되어 중요재산 공시 등이 누락되었다고 설명함. 그러나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1개월 이내 보조금시스템 공시는 법적 의무이행 사항으로, 고용노동부는 해당 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임.[150]

150) 고용노동부는 중요재산 미공시 기관에 해당 사항을 안내 완료하였고, 향후 공동훈련센터 회계 정산 시 중요공시 의무에 관한 사항을 추가 교육하여 이행률을 제고하겠다고 설명함.

따라서 각 보조사업자들이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보조금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보조사업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151]

151) 고용노동부는 지적사항에 대해 지방노동관서 및 공단의 현장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보수규정 및 보수 결정 증빙 자료를 교차 확인하여 유사 부적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공동훈련센터 지원 자산에 대한 자산 관리 표준화 및 실태조사 등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함.

(6)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 사업(고용보험기금, 1154-356)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 사업(2014년~, 직접/보조/출연)은 기업이 청년 등을 선(先)채용 후 이론교육과 현장훈련을 실시하여 현장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25회계연도 계획현액은 2,766억 3,200만원으로, 2,755억 2,200만원(99.6%)이 집행되었고 11억 1,0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 사업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B)	계획 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	276,632	276,632	-	276,632	275,522	-	1,110	267,952
▪ 일학습병행 운영·지원	70,159	73,159	-	73,159	73,159	-	-	70,159
▪ 일학습병행공동훈련센터	73,346	67,246	-	67,246	66,542	-	704	68,516
▪ 일학습병행 훈련비	133,127	136,227	-	136,227	135,821	-	406	129,277

* 자료: 고용노동부

나.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 사업: 연말 보조금 불용예상액의 자체변경 부적정 및 연내 집행 가능한 규모의 기금운용계획 편성 필요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 사업은 외국인 유학생을 인구소멸지역의 제조업 및 뿌리산업에 숙련인력으로 신속히 공급하기 위하여 재학 단계부터 기능인력으로 양성하는 사업으로, 내역사업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내 **외국인 유학생 공동훈련센터** 사업과 내역사업 '일학습병행 훈련비' 내 **외국인 유학생 훈련비**로 구성됨.[152]

동 사업은 전문대 및 4년제 대학교 유학생 중 졸업한 후에도 국내 정주를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이론교육(Off-JT)과 현장훈련(OJT)을 실시하는 사업임.[153] 고용노동부는 D-2(유학) 혹은 D-10(구직)[154]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유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최대 1년 동안 일학습병행 훈련에 참여하도록 하고 향후 인구소멸지역 내에 계속 근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계획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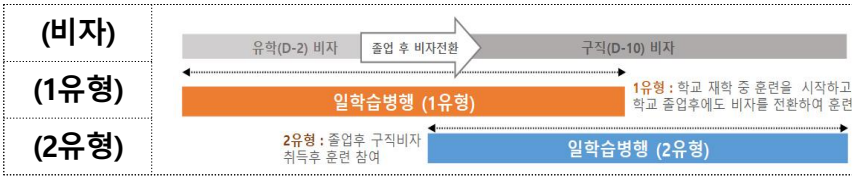
---

152) 2024년에는 별도 내역사업으로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 사업이 있었으나, 고용노동부는 2025년부터 내역사업 구분 없이 일학습병행 운영지원 및 훈련비 내에서 외국인 유학생 훈련과 관련한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고 설명함.

153)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시 고용노동부는 **인구소멸 위기 광역자치단체 소재** 전문대·4년제 대학교 유학생 중 졸업 후에도 국내 정주를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인구소멸 위기 자치단체가 선정한 제조업·뿌리산업 중심의 적합 직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2024년 실제 사업 추진 단계에서 훈련대상 및 훈련직종이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 사업의 개요] 표와 같이 변경되었음.

154) D-2(유학) 비자는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학술연구기관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학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비자이며, D-10(구직) 비자는 교수, 회화지도, 연구, 기술지도, 전문직업, 예술흥행, 특정활동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을 하려는 자 등으로서 국내 기업 · 단체 등에서 행하는 구직활동, 정식취업 전에 연수비를 받고 행하는 단기 인턴과정 등에 참여하는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비자임.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 사업의 개요]

<table>
<tr><td>훈련대상</td><td>전문대·4년제 대학교 유학생 및 졸업생 중 졸업 후 국내 정주를 원하는 학생(체류자격 D-2, D-10)</td></tr>
<tr><td>훈련직종</td><td>E-1~E-7체류자격으로 연계 가능한 훈련 직종</td></tr>
<tr><td>운영방식</td><td>· 훈련실시 시작 시점의 체류자격에 따라 1, 2유형으로 구분
 

· 대학(공동훈련센터) 학위과정 내 기업의 수요를 충실히 반영한 이론교육(Off-JT)과 현장 중심의 맞춤형 훈련(OJT)
- 한국어 교육 및 한국 문화 및 직장예절 등 필수 이수
- 지역 내 기업 수요, 외국인 유학생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
- (1유형, 재학생) D-2체류자격으로 OFF-JT훈련을 6개월 이내 실시 후, D-10으로 비자 전환하여 OJT훈련 6개월 이내 실시
<table>
<tr><th colspan="3">훈련기간 (총 1년 이내)</th></tr>
<tr><td>D-2
졸업 전 마지막 학기</td><td>비자전환</td><td>D-10
졸업 후 6개월 이내</td></tr>
<tr><td colspan="2">OFF-JT (6개월 이내)</td><td>OJT (D-10 전환 후 6개월 이내 연수활동)</td></tr>
</table>
- (2유형, 졸업생) D-10체류자격으로 OFF-JT훈련을 6개월 이내 실시 후, OJT훈련 6개월 실시
<table>
<tr><th colspan="2">훈련기간 (총 1년 이내)</th></tr>
<tr><td colspan="2">D-10</td></tr>
<tr><td>OFF-JT (6개월 이내)</td><td>OJT (6개월 이내 연수활동)</td></tr>
</table>
* 주간단위, 구간단위, 학기제(선형)단위 훈련 운영 가능</td></tr>
</table>

* 자료: 고용노동부

2025년도 외국인 유학생 특화 공동훈련센터 사업의 당초 계획액은 69억원(민간경상보조)이나, 2025년 12월 5일 고용노동부는 기금운용계획을 자체변경하여 계획현액은 8억원으로 수정하였고, 8억원을 전액(100.0%)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교부하였음.[155] 한국산업인력공단은 8억원

155)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외국인 유학생 공동훈련센터를 포함한 내역사업 '일학습병행공동훈련센터'의 보조사업자인바, 고용노동부는 동 내역사업의 보조금 전체를 2회로 나누어 분할 교부하였음(1차: 2025년 1월, 2차: 2025년 9월). 고용노동부는 사업의 집행 현황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 사업의 불용예상액을 제외한 금액은 2차 교부 때 보조사업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교부하였고, 이후 2025년 12월에 해당 금액을 자체변경(감)한 것임.

중 7억 1,700만원을 공동훈련센터 지원금으로 실집행하였으며, 8,300만원은 불용하였음.

한편, 외국인 유학생 훈련비의 경우 당초 계획액은 55억원(보험금)으로 1,000명의 외국인 유학생 훈련비가 편성되었으나, 이 중 5억 5,000만원(10.0%)만이 외국인 유학생 훈련비로 집행되었고, 잔액 49억 5,000만원은 일반 일학습병행 훈련비로 지출되었음.[156]

[2025년도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 사업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B)	계획 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	276,632	276,632	-	276,632	275,522	-	1,110	267,952
▪ 일학습병행공동훈련센터	73,346	67,246	-	67,246	66,542	-	704	68,516
▪ 외국인 유학생 공동훈련센터	6,900	800	-	800	800	-	-	내역통합
▪ 일학습병행 훈련비	133,127	136,227	-	136,227	135,821	-	406	129,277
▪ 외국인 유학생 훈련비	5,500	5,500	-	5,500	550	-	-	내역통합

주 1)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유학생 훈련비의 경우 별도 내내역사업으로 구분되지 않으므로 당초 1,000명분의 훈련비 55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집행이 부진함에 따라 집행잔액 49억 5,000만원을 일반 일학습병행 훈련비로 지출하였다고 설명함. 이에 따라 별도 기금운용계획 상 계획현액의 변동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다음연도 이월액 및 불용액도 없음.

주 2) 고용노동부는 2026년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 관련 예산은 36.5억원이라고 설명함

* 자료: 고용노동부

실제 집행 세부내역을 보면 2024년에는 5개소의 공동훈련센터가 지

156)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유학생 훈련비의 경우 별도 내내역사업으로 구분되지 않으므로 당초 1,000명분의 훈련비 55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집행이 부진함에 따라 집행잔액 49억 5,000만원을 일반 일학습병행 훈련비로 지출하였다고 설명함.

정되어 운영되었으나, 훈련인원은 목표 1,000명 대비 22명(2.2%)에 그쳤고,[157] 2025년에도 훈련인원은 목표 1,000명 대비 6.3%인 63명에 불과하였음.

[외국인 유학생 공동훈련센터 지정 및 운영 현황]

(단위 : 개, 명, 백만원)

센터명	신규 지정일	2024년			2025년			비고
		참여 기업 수	참여 인원	지원금	참여 기업 수	참여 인원	지원금	
대림대학교	2024.6.12.	2	9	68	7	20	164	
충북보건과학대학교	2024.6.12.	4	8	60	5	7	119	
한국공학대학교	2024.6.12.	2	4	83	9	22	187	
홍익대학교	2024.6.12.	1	1	74	1	1	125	
동의과학대학교	2024.11.12.	-	-	-	6	13	122	운영: 2025
계		9	22	285	28	63	717	

* 자료: 고용노동부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유학생과 기업의 기대 수준에 차이가 있고,[158]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비자 전환이 어려워 직업훈련 후 합법적으로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직업훈련에 참여할 유인이 부족하여 그간 집행이 부진하였다고 설명함.

---

157) 동 사업은 2024년 신규 사업으로, 2024년에도 계획액 124억원(외국인 유학생 특화 공동훈련센터 69억원+외국인 유학생 훈련비 55억원) 중 2억 8,500만원(2.3%)이 실집행되어 집행실적이 부진하였음. 실집행된 2억 8,500만원은 전액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교부된 민간경상보조금인 공동훈련센터 운영비이고, 유학생 훈련비 55억원은 전액 불용됨. 사업 약정상 훈련비는 OJT 훈련 시작 후 4개월 경과 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2024년 훈련비 집행액은 없었음.

158) 유학생은 사회복지, 마케팅, 경영학 등 인문계열이 다수(85%)를 차지하나, 기업의 수요는 생산관리, 기계요소설계 등 제조업 기반인바 직종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는 것임

또한 고용노동부는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당시부터 사업 참여 유학생이 지역에 계속 거주하면서 취업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의 세부 방안 협의 노력을 하였으나, 행정부 내부 협의에 시간이 소요되어 2025년 11월에서야 법무부와의 비자제도 개선 협의가 완료되는 등[159] 2025년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았던 점이 있다고 설명함.

이처럼 연말까지의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 사업의 집행이 부진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불용이 예상되는 민간경상보조금(320-01목) 61억원을 보험금(320-04목) 및 출연금(350-02목)으로 자체변경하였음.

[2025.12.5. 기금 자체 변경 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현 액(a)	금회변경(b)	변경후(a+b)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	301,547	276,632	-	276,632
민간경상보조(320-01)	83,855	73,346	△6,100	67,246
보험금(320-04)	137,008	133,127	3,100	136,227
출연금(350-02)	80,684	70,159	3,000	73,159

* 주: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 사업의 집행부진과 함께 2025년 말 학습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긴급한 지출소요가 발생하여 기금 자체변경을 실시하였다고 설명함. 참고로 자체변경(증)된 출연금은 내역사업 '일학습병행 운영·지원' 중 기업현장교사 및 HRD 담당자 수당으로 집행되었음.
*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은 2024회계연도 결산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집행부진이 지적되어 시정요구사항이 의결되는 등[160]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159) 현행 제도에서는 전문학사 출신 유학생이 전공과 무관한 직종으로 취업하려면 최소 1년 이상 경력이 필요하였으나, 제도개선을 통해 일학습병행을 이수하기만 하면 학력과 무관하게 경력 요건이 전부 면제되고, 전공 무관 취업도 전문학사까지 확대됨.

160)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미흡한 사업 준비 과정 및 보조금 교부에 따라 대부분의 사업비 불용이 발생하였으므로,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예산집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제도개선)

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전년과 동일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한 이후 자체변경을 통하여 타 사업 예산으로 충당하는 방식의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국회 예산 심의 취지에 부합하는 집행이라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일학습병행 사업의 집행가능 규모 등 보조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161]

161) 참고로 2025년 11월 비자제도 개선이 있었으나 외국인 유학생과 기업의 기대 수준 차이라는 요소는 해결되지 않아 동 사업 집행은 2026년 7월말 기준으로도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음. 고용노동부는 2026년 7월말 현재 55명이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함.

(7)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폴리텍)(고용보험기금, 1155-350)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한국폴리텍대학은 고용보험기금의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폴리텍)'** 사업(1998년~, 출연)을 통해 교육훈련과정에 소요되는 훈련비용을 지급받고 있음. 2025년 폴리텍은 전문기술과정, 하이테크과정, 신중년특화과정 등 총 7개의 비학위과정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였음.

동 사업의 2025회계연도 계획현액은 619억 6,100만원으로, 616억 1,100만원(99.4%)이 집행되었고 3억 5,0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폴리텍) 사업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B)	계획 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 기능인력양성 및 장비 확충(폴리텍)	57,689	61,961	-	61,961	61,611	-	350	59,778
▪ 전문기술과정	7,287	7,287	-	7,287	7,287	-	-	6,319
▪ 신중년특화과정	5,532	9,189	-	9,189	9,789	-	-	10,556
▪ 하이테크과정	12,150	12,150	-	12,150	12,150	-	-	12,997
▪ 훈련장려금	4,284	4,899	-	4,899	4,549	-	350	4,978
▪ 기능장과정	603	603	-	603	603	-	-	569
▪ 소규모사업장 훈련	1,270	1,270	-	1,270	1,270	-	-	1,261
▪ 여성재취업훈련	4,756	4,756	-	4,756	4,756	-	-	3,791
▪ 교육훈련과정 운영	1,488	1,488	-	1,488	1,488	-	-	1,488
▪ 교과개발 및 교재발간	2,419	2,419	-	2,419	2,419	-	-	2,419

사업명	2025							2026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B)	계획 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 신기술장비보강	11,700	11,700	-	11,700	11,700	-	-	11,700
▪ 학과신설 및 개편	4,000	4,000	-	4,000	4,000	-	-	-
▪ 이주배경구직자직업훈련	2,200	2,200	-	2,200	2,200	-	-	2,200

* 자료: 고용노동부

나. 소규모 사업장 훈련 사업: 고용보험기금 내 동 사업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계획 변경 및 외국인 근로자 훈련 추진 문제

기능인력양성 및 장비확충(폴리텍) 사업의 내역사업인 **'소규모사업장훈련'** 사업은 훈련시설이 미비하거나 훈련기관이 없는 지역 등 교육훈련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중소기업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업내 훈련시설이나 임차한 훈련시설 등에서 이동식 현장훈련, 집체교육 등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12억 7,000만원 전액(100.0%)이 집행되었음.

2024년 이전까지 동 사업은 내국인 대상으로 진행되었음. 그러나 한국폴리텍대학은 2025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200명을 대상으로 한 이동식 현장훈련을 시범 운영하여, E-9 외국인근로자 도입 확대에 발맞추어, 사업장 자체 훈련이 곤란한 소규모사업장 종사 외국인근로자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특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장 훈련을 진행

할 계획이라며 예산 1억 5,700만원을 편성하여 이를 전액 집행하였음.

[외국인근로자 대상 소규모사업장 훈련 사업의 내용]

<table>
<tr><td>사업목적</td><td>외국인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장의 훈련 수요 및 특성을 고려한 특화 과정 개발 및 맞춤형 훈련을 실시하여 외국인 훈련지원 체계 마련</td></tr>
<tr><td>사업내용</td><td>소규모사업장 참여 기업체 중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훈련</td></tr>
<tr><td>기대효과</td><td>외국인 대상 특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맞춤형 훈련 지원을 통한 외국인 조기 근무 정착 지원 및 외국인 고용사업장 생산성 제고</td></tr>
<tr><td>예산 산출내역</td><td>157백만원 = 200명 × 786천원
<table>
<tr><th>구 분</th><th>예산액
(백만원)</th><th>산출내역</th></tr>
<tr><td>계</td><td>157</td><td></td></tr>
<tr><td>일반수용비</td><td>39</td><td>40개 과정 × 975천원</td></tr>
<tr><td>여비 등</td><td>20</td><td>40개 과정 × 50천원 × 2명 × 5회</td></tr>
<tr><td>운영수당</td><td>52</td><td>40개 과정 × 65천원 × 20h</td></tr>
<tr><td>재료비·교재비</td><td>16</td><td>200명 × 4천원 × 20h</td></tr>
<tr><td>수요조사 및 프로그램개발비</td><td>10</td><td>40개 과정 × 250천원</td></tr>
<tr><td>통역서비스</td><td>20</td><td>40개 과정 × 200천원 × 2.5일</td></tr>
</table></td></tr>
</table>

* 자료: 고용노동부

2025년 소규모 사업장 훈련 사업의 결산 내역을 보면, 다음 2가지 측면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한국폴리텍대학은 소규모 사업장 훈련 사업을 실시하며 당초 계획과 달리 훈련대상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확대하여 실시하고, 동일인이 연 2회 이상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등 사업의 상세 내용을 변경하였는데,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동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훈련 세부 요건 변경이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한국폴리텍대학은 중소·영세 기업의 대체인력 부족 등에 따른 기존

집체 중심 훈련방식의 한계와 현장 요구를 반영하여 훈련 형태를 변화시켰으며, 기업 사정에 맞게 훈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요건 제한 및 참여횟수 제한을 폐지하였다고 설명함.

[2025년 변화된 사업 내용 비교]

구분	~2024년	2025년
훈련형태	맞춤형집체훈련 현장애로기술지도	**생산성 향상 컨설팅,** 기술애로 지원, **산업안전, 경력설계, AI, 마케팅 등 소규모 사업장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기업 니즈에 따라 맞춤형으로 설계, 연중 수시 제공
훈련대상	300인 이하 사업장에 종사하는 **고용보험가입 재직근로자(내국인)** - 이동식 현장훈련: 근로자 수 50명 이하 사업장 - 집체교육: 일반 제조업은 근로자 수 300명 이하, 서비스업은 근로자 수 120명 이하인 사업장	국내 소재 모든 1인 이상 소규모 사업장과 300인 미만 중소기업 **(내국인 및 외국인 모두 가능)** **※고용보험 여부와 관계없음**
참여 횟수 제한	2회까지 참여 가능	**참여 횟수 제한 폐지**

* 자료: 고용노동부

그 결과 한국폴리텍대학은 당초 계획했던 4,400명(내국인 4,200명, 외국인 200명)보다 3배 이상 증가한 13,396명(내국인 12,983명, 외국인 413명)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였다고 설명함.

[연도별 소규모 사업장 훈련 결과]

(단위 : 명)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획인원	4,200	4,200	4,200	4,200	4,200	4,200	4,400
훈련인원	4,711	4,536	4,635	4,574	4,636	4,650	13,396
(내국인)	4,711	4,536	4,635	4,574	4,636	4,650	12,983
(외국인)	-	-	-	-	-	-	413

* 자료: 고용노동부

그러나 동 사업은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지출사업인바, 고용보험 미가입자까지 훈련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고용보험기금 지출 사업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고용보험기금은 타 기금과 달리 기금 수입[162] 중 고용자부담금과 피고용자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80%이고, 기금 자체수입에서 이러한 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95.6%에 달함. 이러한 취지에서 당초 고용노동부 및 한국폴리텍대학은 2025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심의 시 훈련 대상을 고용보험에 가입한 재직근로자로 한정했던 것으로 보임. 그런데 최초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심의 시와 달리 연도 중 사업 성과 제고를 위해 고용보험기금 사업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까지 훈련대상을 확대한 것은 적절한 사업 계획변경이라 보기 어려운 것임.[163]

특히 한국폴리텍대학은 훈련 참여 대상 확대와 함께 기존 연간 2회로 제한되어 있던 훈련 참여 횟수 제한 기준까지 삭제하여 동일 근로자가 횟수 제한 없이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이는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업에서 신규 훈련자의 참여 기회를 축소시킬 수 있고, 기존 참여자에 대한 반복지원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어, 제한된 재원 내에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 변경이라 보기 어려움.[164]

---

162) 총계 기준

163) 이에 대해 한국폴리텍대학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이들에 대한 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설명함. 그러나 해당 지원이 필요했다면 고용보험기금 지출사업이 아닌 일반회계 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이 적절한 측면이 있음.

참고로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대한 고용노동부 고시인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용노동부 고시)」의 경우, 동일 훈련생이 동일 훈련과정을 반복 수강하는 경우 재수강 사유서를 첨부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도록 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를 심사하여 동일·유사 과정을 반복하여 수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훈련비를 지원하도록 하며 반복수강에 대한 지원은 동일 회계연도 내 1회에 한하여 제한하고 있음.[165][166]

둘째, 외국인 근로자 훈련 과정 내용을 살펴보면, 단일캠퍼스 중 가장 많은 외국인 근로자 훈련인원(100명)이 발생한 항공캠퍼스는 '한국어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폴리텍이 실시하고 있는 타 사업과 중복되는 교육내용이고, 동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교육임.

한국폴리텍대학은 세부사업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의 내내역사업인 '외국인근로자 한국어훈련' 사업(5억 6,800만원)을 통해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역량 향상 교육을 실시하여 사업장

---

164) 사업수행자인 한국폴리텍대학은 동일인의 반복 수강에 대하여 별도 통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함.

165)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8조(훈련실시신고 등) ④ 훈련과정을 인정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훈련생의 휴대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일 훈련생이 동일 훈련과정을 반복 수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수강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훈련 종료 보고 및 지원금 등의 신청)

⑥ 공단은 제8조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수강 사유서」를 심사하여 동일·유사한 과정을 반복하여 수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훈련비를 지원한다. 이 경우, 반복수강에 대한 지원은 동일 회계연도 내 1회에 한하여 제한한다.

166) 참고로 한국폴리텍대학에 이러한 계획 변경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①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2025년 훈련 참여 현황 ② 동일인의 반복 훈련 참여 횟수 등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제출되지 않음.

내에서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였음.

이때 항공캠퍼스의 외국인 근로자 소규모 사업장 훈련의 '한국어교육'은 당초 동 사업에서 목적으로 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특화 과정 개발 및 맞춤형 훈련이라는 사업 목적이 아닌, 외국인의 한국 산업 현장 적응을 목적으로 하는바, 동 사업이 아닌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훈련' 사업을 통해 추진되었어야 할 훈련과정으로 보임.

이와 같이 한국폴리텍대학은 2025년 신규로 외국인 근로자 소규모 사업장 훈련을 실시하며 당초 국회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취지와 다르게 훈련대상 등을 변경하고, 일부 캠퍼스의 경우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타 사업과 중복되는 교육을 실시하였으므로, 향후 제도개선을 통해 효과적인 소규모 사업장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음.

[2025년 외국인 근로자 소규모 사업장 훈련 캠퍼스별 집행 내역]

(단위 : 명, 원)

캠퍼스	외국인 훈련인원	캠퍼스 전체 훈련인원	집행액	교육과정	교육내용
서울정수	8	637	67,231,857	기술케어	열처리 및 표면경화 등 2개 과정
서울강서	2	308	29,211,859	경영케어	한옥 색채 디자인 실무 애로 해소 및 조화로운 색채 적용 방안 컨설팅
성남	8	410	29,211,869	기술케어	스마트팜 모니터링 시스템 설계 등 2개 과정
				조직케어	제품 치수·형상 측정 실무 및 기술 설정
제주	-	100	10,432,811		
분당융합기술	-	106	10,432,778		

캠퍼스	외국인 훈련인원	캠퍼스 전체 훈련인원	집행액	교육과정	교육내용
인천	19	675	57,853,195	토탈케어	생산성 향상 및 불량감소를 위한 컨설팅 및 산업안전 교육
				기술케어	자동차 부품 열처리 변형에 대한 현장실무 등 5개 과정
남인천	7	367	38,900,255	기술케어	첨단 복합재 부품 RTM 생산 공정 애로 기술 지도
화성	38	505	38,900,255	기술케어	CO2 용접기 장비 조작 방법을 통한 생산 품질 향상 등 4개 과정
				경영케어	자동제어 공정개선 및 전기 공사 기술컨설팅 등 3개 과정
광명융합기술	2	81	8,780,949	기술케어	2D&3D 설계관리 및 안전자문
춘천	32	1,800	127,394,396	기술케어	산업현장 안전과 배관용접기술 등 3개 과정
원주	1	341	32,385,183	기술케어	파이프 응력 해석
강릉	-	371	38,644,869		
대전	4	350	41,562,796	기술케어	짐벌 활용 및 촬영실습
청주	23	249	29,825,884	경영케어	필름히터 공정 개선 지도 등 2개 과정
아산	5	255	26,174,400	기술케어	노후설비유지보수를 위한 용접공정선정및 조건최적화
충남	6	152	16,002,410	기술케어	콘크리트 구조물의 구조해석 및 3D프린팅 시제품 제작
충주	-	198	20,436,354		
광주	9	400	56,799,046	기술케어	작업장 안전교육
익산	2	264	27,125,307	조직케어	안정적 조직문화를 위한 구성원의 성격이해 및 심리적 안정감
전북	-	266	27,125,307		
전남	31	292	27,125,307	기술케어	블록탑재시 용접 결함 및 정도 측정에 있어 불량률 감소 기술지도 등 2개 과정
순천	3	277	27,125,307	경영케어	롤 흠탐상기 오버홀 기술지원 등 2개 과정

캠퍼스	외국인 훈련인원	캠퍼스 전체 훈련인원	집행액	교육과정	교육내용
대구	18	607	58,885,608	경영케어	신규 설비 및 장비 도입에 따른 현장 기술활용도 제고 및 품질 안정화
				기술케어	설비분야의 유지관리 및 자동화 제어능력 배양(3차)
구미	9	315	28,168,588	기술케어	Die Casting 소재 드릴링 시, 최적 절삭 조건 도출을 위한 애로기술 지도
남대구	-	206	22,952,183		
포항	1	236	25,038,745	기술케어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영주	17	146	15,649,216	기술케어	머시닝센터 장비 사용 및 G-code 기초 등 4개 과정
영남융합기술	-	325	32,341,713		
창원	6	515	39,737,054	기술케어	신제품개발 양산성 검토 및 금형구조 파악 등 3개 과정
부산	5	320	35,563,930	토탈케어	프레스 금형공정관리
울산	4	528	35,563,930	기술케어	생산안전지도
동부산	26	184	25,131,119	기술케어	CNC 선반 프로그래밍 등 3개 과정
진주	11	440	33,477,368	기술케어	굴착기 프레임 이산화탄소 아크용접 등 2개 과정
석유화학공정	10	187	14,627,670	경영케어	공구 3D역설계 애로기술지도
바이오	-	287	37,036,477		
항공	**100**	190	29,152,098	기술케어	CNC밀링 실무 기초
				경영케어	**한국어교육**
반도체	6	342	35,471,556	기술케어	반도체 전장제어반 및 하네스 진단 및 방법개선
				경영케어	사무자동화 운용실무
로봇	-	164	12,519,373		
계	**413**	**13,396**	**1,269,999,022**		

* 자료: 고용노동부

다. 홍보물품 구매 연말 집중 부적정

한국폴리텍대학은 ‘기능인력양성 및 장비 확충(폴리텍)’ 사업의 각 내역사업에 있는 운영비[167]로 홍보물품을 다수 구매하였음. 일반운영비 집행 세부내역 중 홍보물품 구매와 관련된 금액을 살펴보면, 한국폴리텍대학은 총 30억 4,000만원 상당의 홍보물품을 구매하였고, 월별 집행 내역은 다음 표와 같음.

[폴리텍 일반운영비 중 홍보물품 구매 비용 월별 집행 내역]

월	집행건수	집행금액(원)	월	집행건수	집행금액(원)
1	39	33,440,150	7	59	88,116,245
2	39	44,607,939	8	58	105,956,580
3	42	57,404,010	9	120	248,310,061
4	63	102,999,330	10	72	171,742,020
5	52	123,597,610	11	199	525,032,699
6	108	334,783,065	12	414	1,204,275,760
			계	1,265	3,040,265,469

* 자료: 고용노동부

월별 집행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월별로 홍보물 구매 집행의 편차가 크고, 2025년 전체 집행액 중 56.9%가 11월과 12월에 집행되어 연말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이와 같이 홍보물품을 연말에 집중하여 구매하는 것은 차년도 사업 예산 확보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여 사업 운영비의 불용 예상액을

167) 해당 운영비는 캠퍼스별 경상경비 및 운영비와 별도로 비학위과정의 운영을 위하여 사업출연금 내에 편성된 운영비성 경비임.

연내에 무리하게 집행하는 관행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양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가장 많은 홍보물품을 구매한 캠퍼스는 성남 캠퍼스로, 연내 1억 7,133만원 상당의 홍보물품을 구매하였고, 2025년 12월에만 9,150만원(53.4%)의 홍보물품을 구매하였음.

[폴리텍 성남 캠퍼스 2025년 12월 홍보물품 구매 내역]

지출결의 일자	예산과목	지출건명	지출결의 금액(원)
2025-12-10	고용보험-교육훈련과정-일반운영비	취업 정보 제공·안내 등을 위한 홍보용품 구매(수건 1종)	3,000,000
2025-12-15	(추경1차)고용보험-신중년특화과정(단기)-일반운영비	취업 등 캠퍼스 교육사업 홍보를 위한 물품 구입	850,400
	고용보험-소규모사업장훈련-일반운영비	취업 등 캠퍼스 교육사업 홍보를 위한 물품 구입	7,092,200
	고용보험-여성재취업훈련-일반운영비	취업 등 캠퍼스 교육사업 홍보를 위한 물품 구입	1,093,500
	정부출연-대국민 직업교육서비스(꿈드림공작소)-일반운영비	취업 등 캠퍼스 교육사업 홍보를 위한 물품 구입	900,000
	고용보험-교육훈련과정-일반운영비	취업 등 캠퍼스 교육사업 홍보를 위한 물품 구입	7,000,000
	고용보험-이주배경 구직자 직업훈련-일반운영비	교육운영 과정 홍보용품 및 답례품 구매(텀블러 등 4종)	17,500,000
	고용보험-여성재취업훈련-일반운영비	교육운영 과정 홍보용품 및 답례품 구매(텀블러 등 4종)	1,440,000
	정부출연-대국민 직업교육서비스(꿈드림공작소)-일반운영비	교육운영 과정 홍보용품 및 답례품 구매(텀블러 등 4종)	4,100,000
2025-12-16	정부출연-외국인근로자 한국어 훈련-일반운영비	대학 홍보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물품(티슈등 9종)구매	18,430,000
	고용보험-이주배경 구직자 직업훈련-일반운영비	대학 홍보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물품(티슈등 9종)구매	8,540,000
	고용보험-소규모사업장훈련-일반운영비	대학 홍보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물품(티슈등 9종)구매	1,260,000
	고용보험-소규모사업장훈련-일반운영비	대학 홍보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물품(티슈등 9종)구매	2,970,000
2025-12-17	정부출연-다기능기술자-일반	교육과정 홍보물품(칫솔트레블세트	1,221,000

지출결의 일자	예산과목	지출건명	지출결의 금액(원)
	운영비	및 덤블러 등 4종)구매	
	고용보험-이주배경 구직자 직업훈련-일반운영비	교육과정 홍보물품(칫솔트레블세트 및 덤블러 등 4종)구매	1,257,084
	고용보험-전문기술과정-일반 운영비	교육과정 홍보물품(칫솔트레블세트 및 덤블러 등 4종)구매	1,072,720
	고용보험-하이테크과정-일반 운영비	교육과정 홍보물품(칫솔트레블세트 및 덤블러 등 4종)구매	7,800,000
	정부출연-외국인근로자 한국어 훈련-일반운영비	교육과정 홍보물품(칫솔트레블세트 및 덤블러 등 4종)구매	373,196
2025-12-19	정부출연-대국민 직업교육서비스(꿈드림공작소)-일반운영비	꿈드림공작소 모집 홍보를 위한 사무용품 구매	997,900
	고용보험-전문기술과정-일반 운영비	캠퍼스 인지도 제고 및 홍보를 위한 소모품 구매	990,000
	고용보험-신중년특화과정(단기)-일반운영비	캠퍼스 교육 과정 운영 홍보를 위한 소모품 구매	4,210
	고용보험-신중년특화과정-일반운영비	캠퍼스 교육 과정 운영 홍보를 위한 소모품 구매	569
	정부출연-다기능기술자-일반 운영비	캠퍼스 교육 과정 운영 홍보를 위한 소모품 구매	1,431
	(추경1차)고용보험-신중년특화과정(단기)-일반운영비	캠퍼스 교육 과정 운영 홍보를 위한 소모품 구매	78,220
	고용보험-전문기술과정-일반 운영비	캠퍼스 교육 과정 운영 홍보를 위한 소모품 구매	250,020
	고용보험-여성재취업훈련-일반운영비	캠퍼스 교육 과정 운영 홍보를 위한 소모품 구매	664,550
2025-12-23	정부출연-다기능기술자-일반 운영비	대학 신입생 모집홍보를 위한 머그컵 구매	998,400
	정부출연-외국인근로자 한국어 훈련-일반운영비	입시 홍보 키링 구매	800,000
	고용보험-하이테크과정-일반 운영비	대학홍보를 위한 홍보품 구매	46
	정부출연-대국민 직업교육서비스(꿈드림공작소)-일반운영비	대학홍보를 위한 홍보품 구매	95,524
	정부출연-외국인근로자 한국어 훈련-일반운영비	대학홍보를 위한 홍보품 구매	722,944
계			91,503,914

* 자료: 고용노동부

신입생 유치 등 홍보물품 구매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연말에 대부분

의 홍보물 구매 예산을 집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면이 있으며, 해당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볼 소지도 있는 것으로 보임.[168] 따라서 향후 한국폴리텍대학은 홍보 계획 및 홍보물 구매 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에 보고하고, 고용노동부는 해당 계획이 적정한지를 판단하여 예산을 교부·집행할 필요가 있음.[169]

168) 참고로 2024년의 경우에도, 전체 홍보물품 구매액 27억 5,100만원 중 10억 1,300만원(45.0%)이 12월에 집행된바, 한국폴리텍대학의 홍보물품 연말 집행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홍보물품 구매 관련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볼 소지도 있는 것으로 보임.

169) 한편 고용노동부는 학위과정 신입생 유치 및 차년도 직업훈련과정 모집 등 홍보 수요가 연말에 집중되어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나, 2년제 학위과정의 2026학년도의 입시 일정은 9~10월(수시1차 모집), 11월(수시 2차 모집), 12월~2026년 1월(정시 모집)에 걸쳐서 이루어진바 반드시 12월에 대부분의 홍보 물품 구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홍보물품 구매에 관한 합리적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노동정책실 》

[노동정책관]

(1) 노동약자지원(일반회계, 2031-303)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노동약자지원’ 사업(2025년~, 민간보조 등)은 영세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나 기존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기 어려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종사자·프리랜서 등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강화하고, 이들의 실질적인 고충과 애로사항의 해결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5년 기준 동 사업은 노동약자 참여·소통 활성화 지원,[170] 노동약자 일터개선 지원,[171] 노동약자 상생 복지지원,[172] 불법·부당 노동관행 등 개선 지원[173] 등 총 4개의 내역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음.

동 사업의 2025회계연도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159억 8,900만원이었으며, 이 중 134억 2,900만원을 집행하고, 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5억 5,400만원을 불용하였음.

---

170) (노동약자 참여·소통 활성화 지원) 이음센터, 타운홀 미팅을 통해 권리 밖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상담·교육, 현장소통, 정책의제 발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

171) (노동약자 일터개선 지원) 취약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무제공자 등을 대상으로 쉼터 설치 및 복지 물품·서비스 지원 및 국내외 실태조사 실시 등을 지원

172) (노동약자 상생 복지지원) 원·하청 상생협력을 통한 노동약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원청 노·사가 협력사 근로복지 개선을 위해 재원을 마련하면 정부가 지원

173) (불법·부당 노동관행 등 개선 지원) 취약노동자 보호를 위해 영세사업장 HR플랫폼 이용, 취약노동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비정규직 근로조건 보호, 필수업무종사자 보호 등에 지원

[2025회계연도 노동약자지원 사업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B)	이·전용 등 (C)	예비비	예산 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 노동약자지원	15,989	15,989	-	-	-	15,989	13,429	6	2,554	25,345
▪ 노동약자 참여·소통 활성화 지원	4,446	4,446	-	-	-	4,446	4,446	-	-	2,248
▪ 현장밀착형 취약 노동자 권익 보호	-	-	-	-	-	-	-	-	-	1,325
▪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 지원	-	-	-	-	-	-	-	-	-	200
▪ 노동약자 일터 개선 지원	2,063	2,063	-	-	-	2,063	1,878	6	179	2,500
▪ 노동약자 상생 복지지원	6,632	6,632	-	-	-	6,632	4,277	-	2,355	-
▪ 불법·부당 노동관행 등 개선 지원	2,848	2,848	-	-	-	2,848	2,828	-	20	3,292
▪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	-	-	-	-	-	-	-	-	-	15,780

* 자료: 고용노동부

나. 노동약자 일터개선 지원 사업의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집행 부진 개선 필요

내역사업인 '노동약자 일터개선 지원' 사업은 민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취약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플랫폼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를 대상으로 쉼터를 설치하거나 복지 물품·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국가가 이를 지원하는 보조사업(민간보조, 지자체보조)임.

2025회계연도에는 예산액 18억 3,800만원 중 16억 7,000만원을 교부하였으며, 보조사업자의 실제 집행액은 14억 4,600만원으로 실집행률은 78.7%임. 민간경상보조 사업은 예산액 6억 4,900만원 중 4억 4,600만원이 집행되어 실집행률은 68.7%이고, 지자체경상보조 사업은 예산액 11억 8,900만원 중 10억원이 집행되어 실집행률은 84.1%로 나타남.

[2025회계연도 노동약자 일터개선 지원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사업시행주체	부처		사업시행주체(보조사업자)				
		예산액(A)	집행액	교부액(B)	실집행액(C)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C/A)
민간경상보조(320-01)	생활연구소 등 10개소	649	501	501	446	-	55	68.7
지자체경상보조(330-01)	34개 지자체	1,189	1,169	1,169	1,000	-	169	84.1
계		1,838	1,670	1,670	1,446	-	224	78.7

* 자료: 고용노동부

2025년에는 지자체 35개소(11억 8,900만원), 민간 10개소(6억 4,900만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2025년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전년도 사업의 연장 지원 대상은 2024년 12월에 선정되어 2025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반면, 신규지원의 경우 2025년 2월에 있었던 공모에서 계획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여 네 차례에 걸쳐 공고와 선정이 이루어졌고, 최종 선정은 2025년 8월에야 마무리되었음.

[2025년 노동약자 일터개선 지원 사업 공고 · 선정 일정]

구분	공고기간	신청기관(개소)		선정일자 (공고일자)	선정기관(개소)		1차 교부일	2차 교부일
		민간	지자체		민간	지자체		
연장	'24.11.28. ~12.11.	2	8	'24.12.19. ('24.12.30.)	2	8	'25.1.22.	'25.10.14.
1차	'25.1.17. ~2.13.	8	23	'25.2.27. ('25.3.11.)	4	17	'25.3.25.	'25.10.14.
2차	'25.3.13. ~4.10.	4	3	'25.4.24. ('25.5.1.)	3	3	'25.5.22.	'25.10.22.
3차	'25.6.4. ~6.25.	3	8	'25.7.10. ('25.7.16.)	1	7	'25.7.29.	'25.10.22.
4차	'25.7.25. ~8.1.	0	2	'25.8.8. ('25.8.12.)	0	2	'25.8.26.	'25.10.27.

* 자료: 고용노동부

이와 관련하여 보조사업별 집행실적을 보면, 전체 47개 사업 중 집행률이 80% 미만인 기관은 7건임. 차수별로는 연장 지원기관 중에는 집행률 80% 미만인 기관이 없었으나, 1차 선정기관은 21건 중 2건(9.5%), 2차는 6건 중 1건(16.7%), 3차는 8건 중 3건(37.5%), 4차는 2건 중 1건(50.0%)으로, 선정 시기가 늦어질수록 집행률이 낮은 기관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음.

[2025년 노동약자 일터개선 지원 피보조기관별 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연번	피보조기관	사업 내용	교부액(A)	집행액(B)	집행률(B/A)
연장	민간	1	더블유컴퍼니	쉼터 운영	38	37	97.4
		2	로지올	쉼터 운영	74	64	86.5
	자치단체	1	서울 관악구	쉼터 운영	7	6	85.7
		2	경기 용인시	쉼터 운영	35	35	100
		3	경남 창원시	쉼터 운영	5	5	100
		4	전북 익산시	쉼터 운영	37	37	100
		5	서울 도봉구	안전교육 및 장비지급	16	15	93.8
		6	서울 강북구	안전교육 및 장비지급	6	6	100
		7	인천 남동구	안전교육 및 장비지급	19	18	94.7
		8	인천 계양구	안전교육 및 장비지급	7	6	85.7
1차	민간	1	생활연구소	청소 플랫폼 종사자 쉼터 조성 및 심리상담 지원	50	47	94.0
		2	홈체크	주택점검 플랫폼 종사자 쉼터 조성 및 운영 지원	35	35	100
		3	한국노총전국연대노동조합 플랫폼운전자지부	이동형 쉼터 운영 지원	36	36	100
		4	보건복지자원연구원	간병 종사자 세탁 및 정서 지원	34	31	91.2
	자치단체	1	서울특별시	쉼터 조성(2개소) 및 운영 지원	100	64	64.0
		2	서울 강서구	간이 쉼터 조성 및 운영 지원	52	45	86.5
		3	서울 광진구	쉼터 조성 및 운영 지원	14	13	92.9
		4	서울 노원구	영세사업장 종사자 문화프로그램 지원	10	10	100
		5	서울 영등포구	가사·돌봄 종사자 예방접종 및 심리상담 지원	17	17	100
		6	서울 구로구	여성 노무제공자 휴게 여건 개선 지원	36	30	83.3
		7	경기 안산시	산업단지 소규모사업장 종사자 조식 및 휴게 지원	15	15	100
		8	강원 춘천시	영세소규모사업장 종사자(특고) 휴게 여건 개선 지원	10	10	100
		9	울산광역시	쉼터 조성 및 교육, 상담 등 지원	95	95	100
		10	울산 동구	이동노동자 물품 지원	10	10	100
		11	경남 김해시	간이 쉼터 조성 및 운영 지원	33	31	93.9
		12	경남 양산시	쉼터 조성 및 교육, 상담 등 지원	65	64	98.5
		13	경북 포항시	쉼터 조성 및 교육, 상담 등 지원	230	185	80.4
		14	경북 구미시	이동노동자 조식 지원	50	49	98.0
		15	광주 광산구	배달종사자 야간·휴일 정비 지원	15	6	40.0
		16	전북 김제시	쉼터 조성 및 물품 지원	33	29	87.9
		17	충북 청주시	쉼터 조성 및 교육, 상담 등 지원	38	32	84.2

구분		연번	피보조기관	사업 내용	교부액(A)	집행액(B)	집행률(B/A)
2차	민간	1	전남노동권익센터	쉼터 조성 및 운영 지원 등	70	70	100
		2	(재)한국플랫폼 프리랜서 노동공제회	플랫폼·프리랜서 종사자 건강검진 및 직무역량 강화 지원	110	73	66.4
		3	(사)일터	플랫폼 종사자 온열질환 예방 지원	8	8	100
	자치단체	1	경북 포항시	쉼터 조성(2개소) 및 운영 지원 등	230	185	80.4
		2	서울 종로구	돌봄종사자 소진 예방 지원	10	10	100
		3	경기 광명시	노동약자 동아리 활동 지원	5	4	80.0
3차	민간	1	(사)퀵서비스협회	안전교육 및 안전장비 지원 등	45	45	100
	자치단체	1	서울특별시	도심제조업 환풍기 설치 지원	7	0	0.0
		2	서울 영등포구	안전교육 및 안전장비 지원 등	17	17	100
		3	서울 금천구	안전교육 및 안전장비 지원	7	6	85.7
		4	경기 구리시	취약노동자 법률구조 지원	5	4	80.0
		5	경기 김포시	안전교육 및 안전장비 지원	9	8	88.9
		6	전남 나주시	안전교육 및 안전장비 지원	6	4	66.7
		7	전남 강진군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등	36	27	75.0
4차	자치단체	1	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121	110	90.9
		2	경북 영천시	안전교육 및 안전장비 지원	12	0.5	4.2

* 자료: 고용노동부

집행률이 80% 미만인 사업(7건)의 집행 부진 사유를 보면, 건강검진·교육 참여 저조 등 사업 수요가 예상에 미치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 3·4차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기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여 쉼터 개소 지연, 교육 횟수 축소, 추가 참여기관 확보 곤란 등으로 집행이 저조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음.

특히 3차 선정된 서울특별시의 '도심제조업 환풍기 설치 지원' 사업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추가 참여 자치구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집행 실적이 없었고, 4차 선정된 경북 영천시의 '안전교육 및 안전장비 지원' 사업도 선정 이후 군의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채 사업 추진기간이 부족하여 집행률이 4.2%에 그쳤음.

[2025년 노동약자 일터개선 지원 집행률 80% 미만 사업의 집행 부진 사유]

(단위 : 백만원, %)

구분	연번	피보조기관	교부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사유
민간	1	(재)한국플랫폼 프리랜서 노동공제회	110	73	66.4	건강검진 목표 대비 참여 저조
자치 단체	1	서울특별시 (쉼터)	100	64	64.3	쉼터 장소선정 및 공사 지연으로 쉼터 개소가 늦어졌고(12.29. 개소) 이에 따라 계절질환 예방 안전용품 제공 계획을 시행하지 못함
	2	광주 광산구	15	6	40.0	이동 노동자들이 시간 부족(생업 종사)를 이유로 이륜자동차 교육 참석율이 저조(당초 계획 200명, 실 참여 71명)
	3	전남 나주시	6	4	66.7	배달 노동자의 특성상 교육 참여율이 저조하였고, 3차 공모 선정(7월중 선정)되어 사업기간이 짧아 교육횟수를 늘리지 못함
	4	서울특별시 (도심제조업 환풍기)	7	0	0.0	소규모 사업장 환경 개선사업(환풍기 개선)을 진행하였으나 신청 자치구가 없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함. 사업기간이 짧아(3차 공모 선정) 추가 희망 사업장 찾지 못함
	5	전남 강진군	36	27	75.0	3차 공모 선정 이후 쉼터 개소가 늦어져 예산 집행이 저조
	6	경북 영천시	12	0.5	4.2	4차 공모 선정 이후 군의회 예산 미확보로 사업 진행 불가

* 자료: 고용노동부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사업 신설(민간 '21년, 지자체 '22년) 이후 첫 지원 기간 종료(민간 최대 3년, 지자체 최대 2년)로 주요 참여기관(대규모 플랫폼사)의 연장 수요가 감소하였고, 민간기업과 자치단체의 신규 공모 참여도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추가 공모를 통해 16건의 사업을 선정하였으나 절대적인 사업 운영 기간이 부족하여 집행이 저조하였다는 설명임.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추경 편성 지연, 쉼터 입지 선정 지연, 프로그

램 참여자 모집의 어려움에 따른 참여율 저조 등도 보조사업의 실집행 저조의 원인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이처럼 동 사업은 최초 공모에서 사업목표치를 충족하지 못하여 추가 공모가 반복됨에 따라 선정이 하반기까지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 충분한 사업 기간을 확보하지 못하여 추진이 지연되거나 계획한 내용을 완료하지 못한 사례가 확인되는바,

고용노동부는 향후 보조사업의 수요를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공모·선정 절차를 조기에 추진함으로써 피보조기관이 충분한 사업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174]

174) 고용노동부는 2026년 사업의 경우 공모에 앞서 사전 간담회(2025.12.4.)를 개최하여 기존 지원 사례를 공유하였고, 연장 23개소와 신규 30개소를 대상으로 1차 공모만으로 피보조기관 선정을 3월까지 완료하였다고 설명함.

다. 노동약자 상생 복지지원 사업 등: 신규·증액 시 실수요를 반영한 사업 설계 필요

내역사업인 '노동약자 상생 복지지원' 사업은 원·하청 간 상생 협력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원청 기업의 노·사가 협력사의 근로복지 개선을 위한 재원을 출연하면 정부가 이에 매칭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 신규로 추진되었으나 2025년을 끝으로 종료되었음. 2025년 예산액은 66억 3,200만원[175]이었으며, 이 중 42억 7,700만원[176]을 집행하고, 23억 5,500만원을 불용하여 집행률은 64.5%로 나타남.

[노동약자 상생 복지지원 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목적		○ 원·하청 상생 협력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원청 노·사가 협력사의 근로복지 개선 사업의 재원 마련시 정부가 지원
사업 대상		○ 협력사 근로복지 개선 사업의 재원을 형성하려는 기업(원청)
지원 내용	매칭 비율	○ 원청 사업주 출연의 100%, 원청 근로자 출연의 200%
	지원 한도	○ 1개 업종당 최대 40억 지원, 1개 기업당 최대 15억 지원, 컨소시엄 구성시 최대 20억 지원
복지사업 가능 범위		○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한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 사업단,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된 것 제외

* 자료: 고용노동부

2025년에는 현대자동차 등 5개 기업에 총 41억 7,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기업별 지원 현황을 보면, 현대자동차가 20억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고, SK에너지 18억원, 두산밥캣코리아 3억원, 대상 5,00

175) 지원금 65억 3,200만원, 운영비 1억원 편성
176) 지원금 41억 7,700만원, 운영비 1억원 집행

0만원, 풀무원식품 2,200만원 순으로 지원이 이루어졌음.

[2025년 노동약자 상생 복지지원 사업 추진현황]

(단위 : 백만원)

참여기업	출연금	정부지원금	주요 사업 내용
현대자동차(주)	2,000	2,000	2·3차 협력사 근로환경 개선
SK에너지(주)	1,400*	1,800	협력사 근로자 복지제도 마련
두산밥캣코리아(주)	300	300	체육·문화 활동 등 협력사 복지 지원
대상(주)	50	50	협력사 근로자 복지 개선
풀무원식품(주)	22	22	협력사 근로자 복지개선 지원
계	3,772	4,172	

* 주: 사업주 10억원, 근로자 4억원
* 자료: 고용노동부

한편, 동 사업의 2024년 추진 실적을 보면, 예산액 49억원이 전액 집행되었으며, 현대자동차(38억원), SK에너지(9억 5,000만원), 동원F&B(1억원), 대상(5,000만원) 등 4개 기업을 지원하였음.

[2024년 노동약자 상생 복지지원 사업 추진현황]

(단위 : 백만원)

참여기업	출연금	정부지원금	주요 사업 내용
현대자동차(주)	6,000	3,800	화장실 등 복지시설 설치, 명절 선물
SK에너지(주)	550*	950	협력사 공동샤워장 신설
동원 F&B	100	100	복지시설 설치, 명절 선물, 문화활동 지원
대상(주)	50	50	복지시설 설치, 명절 선물, 문화활동 지원
계	6,700	4,900	

* 주: 사업주 1억원, 근로자 4.5억원
* 자료: 고용노동부

2025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액이 증가하고 참여기업 수도 5개로 늘

어났으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현대자동차의 출연금액이 감소하면서 정부 지원 실적(41억 7,200만원)은 전년보다 감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대내·외 시장 불확실성 증가 및 자부담으로 인한 대기업(원청)의 공모 참여 저조로 당초 계획 대비 집행 금액이 저조하였다고 설명함.

한편, '노동약자 상생 복지지원' 사업 외에도, 내역사업인 '노동약자 참여·소통 활성화 지원' 사업에 편성된 '노무제공자 분쟁예방지원단 운영' 사업 역시 2025년에 종료되었는데, 이 사업은 2025년에 신규로 편성되었으나 단년도 시행 후 종료된 것임.

'노무제공자 분쟁예방지원단 운영' 사업은 전국 10개소의 근로자이음센터에 분쟁예방지원단을 설치·운영하여 노무제공자의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사업임. 분쟁예방지원단은 노무제공자를 대상으로 변호사 등 전문가의 사전상담을 실시하고, 정식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의견 청취 및 조사를 거쳐 권고·조정안을 제시함으로써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한 분쟁 해결을 지원하며, 2025년 예산은 2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 노무제공자 분쟁예방지원단 운영 예산 내역]

- 이음센터 內 노무제공자 분쟁예방지원단 신설 235백만원 ・조정회의 수당 60백만(10회×10개소) ・분쟁조정 상담수당 120백만원(60회×10개소) ・안건검토비, 조정안 작성 및 성공 인센티브 등 기타 운영비 55백만(10개소)

* 자료: 고용노동부

2025년 사업계획 상 분쟁조정은 센터당 10건씩 총 100건, 상담은 센터당 60건씩 총 600건을 목표로 하였으나, 실제 운영실적은 분쟁조정 1건, 상담 46건에 그쳤음. 분쟁조정은 서울근로자이음센터에서 처리한 1건이 유일하고, 청주·부산·광주근로자이음센터에서는 상담만 이루어졌으며, 나머지 6개 센터에서는 상담 및 분쟁조정 실적이 없었음.

[2025년 노무제공자 분쟁예방지원단 운영 실적]

센터명	분쟁예방지원단 운영 여부	운영실적	비고
서울근로자이음센터	○	·사전상담 27건 ·분쟁조정 사건 1건	·분쟁조정 성립 (당사자 합의)
평택근로자이음센터		-	
청주근로자이음센터		·사전상담 10건	
대구근로자이음센터		-	
부산근로자이음센터		·사전상담 5건	
광주근로자이음센터		·사전상담 4건	
김포근로자이음센터		-	
천안근로자이음센터		-	
군산근로자이음센터		-	
울산근로자이음센터		-	

* 주: 분쟁예방지원단은 분쟁조정 사건 발생시 별도 위촉 운영
* 자료: 고용노동부

이에 따라 분쟁예방지원단 운영 예산 2억 3,500만원 중 분쟁조정 상담수당, 조정회의 수당, 조정안 작성 및 성공인센티브 등으로 380만원이 집행되었고, 홍보 등 기타 운영비로 3,270만원이 집행되어 총 집행액은 3,630만원, 집행률은 15.4%에 그쳤으며 동 사업은 단년도 시행 후 2026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음.

[2025년 노무제공자 분쟁예방지원단 운영 예산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세부집행내역
계	235	36.5	-
분쟁조정 상담 수당	120	1.6	기초 법률상담(전화·서면·대면) 46건
조정회의 수당	60	0.8	('25.7.21.) 분쟁조정회의 참석위원 4명
조정안 작성	55	0.2	('25.7.21.) 분쟁조정회의 관련 1건
성공 인센티브		1.2	('25.7.21.) 분쟁조정회의 참석위원 4명
기타 운영비		32.7	홍보(온라인 앱 배너, 이동노동자 쉼터 배너 부착 등)

* 자료: 고용노동부

그런데 이들 두 사업에 대해서는 2025년 예산안 심사 단계에서부터 참여 수요와 제도 활용 가능성이 충분한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음.

'노동약자 상생 복지지원' 사업은 기업의 재원 출연을 전제로 정부가 매칭하는 사업구조를 감안할 때, 확대된 사업 규모에 상응하는 다수 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충분한 사업 수요를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를 고려한 사업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또한, '노무제공자 분쟁예방지원단 운영' 사업은 노무제공자의 분쟁조정 제도 활용 가능성과 관련하여, 분쟁예방지원단의 분쟁조정은 법률에 근거한 다른 분쟁조정제도와는 달리 조정의 법적 효과가 제한적[177]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 바 있음.[178]

앞서 살펴보았듯이 두 사업의 2025년 집행 결과는, '노동약자 상생

177) 조정 결과에 별도의 집행력이 부여되지 않고,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

178)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2025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임대형민자사업한도액안 검토보고서, 2024. 11., pp. 149-166.

복지지원’ 사업은 확대된 예산 규모와 달리 기업의 참여 및 출연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집행률이 64.5%에 그쳤고, ‘노무제공자 분쟁예방지원단 운영’ 사업 역시 당초 계획한 분쟁조정 100건 및 상담 600건에 크게 미달하는 분쟁조정 1건 및 상담 46건에 그쳐 예산의 9.4%만 집행되는 등 예산안 심사 시 제기되었던 우려가 집행 과정에서 일정 부분 확인되었음.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향후 신규사업을 도입하거나 기존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는 경우 현장의 참여 수요와 제도 활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노동약자의 처우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설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노사협력정책관]

(1)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운영지원(일반회계, 2031-305)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운영지원' 사업(2021년~, 출연)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에 따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노사관계 당사자, 고용노동 관련 업무 종사자, 국민에 대한 고용노동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25회계연도 예산액은 187억 6,300만원이며, 전액 집행되었음.

[2025회계연도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운영지원 사업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B)	이·전용 등 (C)	예비비	예산 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운영지원	18,763	18,763	-	-	-	18,763	18,763	-	-	21,105
▪ 고용노동교육	7,967	7,967	-	-	-	7,967	7,180	-	-	8,206
▪ 고용노동행정 업무종사자교육	2,929	2,929	-	-	-	2,929	2,929	-	-	2,929
▪ 생애주기별 맞춤형 노동교육	-	-	-	-	-	-	-	-	-	900
▪ 정보시스템 구축	1,594	1,594	-	-	-	1,594	1,594	-	-	1,534
▪ 지역거점센터 운영	443	443	-	-	-	443	443	-	-	443
▪ 노후건축보수	500	500	-	-	-	500	500	-	-	638
▪ 인건비	9,106	9,106	-	-	-	9,106	9,106	-	-	9,425
▪ 경상비	1,147	1,147	-	-	-	1,147	1,147	-	-	1,141
▪ 자체수입	△4,923	△4,923	-	-	-	△4,923	△4,136	-	-	△4,111

* 자료: 고용노동부

나. 청년 고용노동교육의 수혜자 편중 개선 필요 등

내역사업인 ‘고용노동교육’ 사업에 편성된 ‘청소년·청년 고용노동교육’은 중·고등학생, 취약청소년(특수학교 학생, 학교 밖 청소년 등), 대학생 및 청년이 노동과 직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노동 가치관과 균형 있는 노사관계관을 형성하여 노동 존중 사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교육사업으로, 2025년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예산액 4억 4,600만원 중 4억 1,500만원을 실집행하였음.

[2025년 청소년 · 청년 고용노동교육 예산 집행 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A)	배정액(B)	집행액(C)	집행률(%)	집행잔액(A-C)
계	445,979	419,538	415,150	93.1	30,829
강사수당	407,329	380,888	378,885	93.0	28,444
국내여비	3,200	3,200	2,311	72.2	889
인쇄비	10,000	10,000	10,000	100.0	-
일반수용비	6,750	6,750	5,717	84.7	1,033
회의비	1,200	1,200	737	61.5	463
공공요금 및 제세	17,500	17,500	17,500	100.0	-

* 자료: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육실적을 보면, 4개 과정에서 총 1,245회에 걸쳐 11만 1,744명을 교육하였으며, 전체적으로는 교육 횟수와 교육 인원이 각각 계획 대비 136.7%, 138.0%를 기록하여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였음. ‘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고용노동교육’의 경우 실적이 계획을 크게 상회하였고(교육 인원 목표달성률 218.1%), ‘청년을 위한 찾아가는 고용노동교육’은 교육 인원이 당초 계획과 유사한 실적(99.4%)을 보였음.

[2025년 청소년 · 청년 고용노동교육 계획 대비 실적]

구분	교육과정	계획		실적		실적률(%)		만족도(5점)			
		횟수	인원(명)	횟수	인원(명)	횟수	인원(명)	평균	과정	교과	강사
계	4개 과정	911	81,000	1,245	111,744	136.7	138.0	4.42	4.34	4.43	4.49
기본	고용노동캠프 (JOB학다식노동캠프)	50	1,000	71	1,326	142.0	132.6	4.55	4.46	4.55	4.62
지원	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고용노동교육	510	35,000	1,084	76,321	212.5	218.1	4.41	4.33	4.41	4.48
	청년을 위한 찾아가는 고용노동교육	50	5,000	89	4,972	178.0	99.4	4.46	4.37	4.47	4.53
	청(소)년 취업활성화 교육	300	10,000	-	-	-	-	-	-	-	-
온라인	마이크로러닝(7종 180편)	1	30,000	1	29,125	100.0	97.1	-	-	-	-

* 주: 청(소)년 취업활성화 교육은 교육대상에 따라 청소년·청년 지원교육 실적에 포함
  - 청소년 55회 6,664명/ 청년 17회 502명
* 자료: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또한, 청소년·청년 대상의 찾아가는 고용노동교육의 최근 3년간 추진 실적을 보면, 전체 교육 인원은 2023년 4만 1,991명, 2024년 4만 2,184명에서 2025년에는 8만 1,293명으로 전년 대비 92.7% 증가하였음. 이는 청소년 대상 교육이 2024년 3만 7,665명에서 2025년 7만 6,321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한 데 기인하며, 청년 대상 교육도 2023년 446명에서 2024년 4,519명, 2025년 4,972명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

[2023~2025년 청소년 · 청년을 위한 찾아가는 고용노동교육 추진 실적]

교육대상	2023년(명)	2024년(명)	2025년(명)
청년	446	4,519	4,972
청소년	41,545	37,665	76,321
계	41,991	42,184	81,293

* 자료: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교육부와 협업하여 수능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고용노동교육을 총 239회 실시하여 1만 5,378명이 참여하였으며, 이에 따라 교육 운영실적이 증가하였다고 설명하였음.

다만, 청소년·청년 고용노동교육의 결산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됨.

첫째, 청소년·청년 고용노동교육 중 '청년을 위한 찾아가는 고용노동교육'과 관련하여,

'청년을 위한 찾아가는 고용노동교육'의 수혜자별 교육실적을 보면, 2024년 교육 인원 4,519명 중 사회복무요원이 4,285명(94.8%)이고, 2025년에도 4,972명 중 4,669명(93.9%)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데 비해, 대학생 등 일반 청년은 각각 234명(5.2%), 303명(6.1%)에 그쳐 수혜자의 편중이 나타남.

[2023~2025년 청년을 위한 찾아가는 고용노동교육 수혜자별 추진 실적]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횟수	인원(명)	비율(%)	횟수	인원(명)	비율(%)	횟수	인원(명)	비율(%)
사회복무요원	-	-	-	42	4,285	94.8	76	4,669	93.9
대학생 등 청년	23	446	100.0	11	234	5.2	13	303	6.1
계	23	446	100.0	53	4,519	100.0	89	4,972	100.0

* 자료: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병무청과 업무협약('25.3.6)을 체결하여 사회복무요원 등 병역이행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는 의무복무로 사업장 이동이 제한되는 등 노동권 침해에 구조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지원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다만, 이러한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청년 고용노동교육이 사회복무요원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여성 청년이 수혜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고, 대학생 등 일반 청년층에 대한 교육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음. 또한, 특정 집단 위주로 교육이 운영될 경우 일반 청년층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고용노동교육 콘텐츠의 개발이 소홀해질 우려도 있음.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향후 청년 고용노동교육 운영에 있어 사회복무요원 중심의 교육 구조에서 벗어나 대학생을 비롯한 일반 청년층의 교육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교육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교육수혜의 균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둘째, 2025년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청년실업 완화 및 노동시장 참여 유도를 위해 '청소년·청년을 위한 찾아가는 고용노동교육' 사업 내에서 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직업관 등을 교육하는 '청(소)년 취업활성화 교육'을 신규로 추진하여, 청소년 6,664명(55회), 청년 502명(17회)을 교육하였음.

[2025년 청소년 · 청년을 위한 찾아가는 고용노동교육 내 고용노동교육 및 취업활성화교육 실적 비교]

(단위 : 명, 천원)

교육대상	구분	2024년	2025년		
				고용노동교육	취업활성화교육
청년	교육횟수	53	89	72	17
	교육인원	4,519	4,972	4,470	502
청소년	교육횟수	976	1,155	1,100	55
	교육인원	38,736	77,647	70,983	6,664
청소년·청년 예산		415,450	456,041	354,241	101,800

* 자료: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그런데 ‘청(소)년 취업활성화 교육’은 법률[179] 및 정관[180]에 따른 한

179)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6조(사업) ①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한 고용노동교육
2. 고용노동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 고용노동 관련업무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3. 청소년, 청년 등 국민에 대한 노동인권 및 노동자 권리보호 관련 교육
4. 교육원 외의 자가 수행하는 고용노동교육 사업에 대한 지원
5. 고용노동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보급 및 관리
6.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의 양성 및 관리
7. 고용노동교육 관련 홍보 및 상담
8. 국내외 고용노동교육 관련 자료수집, 통계작성 및 간행물 발간
9. 고용노동교육 관련 국제협력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관련 부대사업
11. 고용노동부장관,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업

180)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정관」 제4조(사업) ① 교육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한 고용노동교육
2. 고용노동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 고용노동 관련업무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3. 청소년 등 국민에 대한 노동인권 및 노동자 권리보호 관련 교육
4. 교육원 외의 자가 수행하는 고용노동교육 사업에 대한 지원
5. 고용노동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보급 및 관리
6.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의 양성 및 관리
7. 고용노동교육 관련 홍보 및 상담
8. 국내외 고용노동교육 관련 자료수집, 통계작성 및 간행물 발간
9. 고용노동교육 관련 국제협력

국고용노동교육원의 목적 사업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임.[181] 또한, 동 사업을 회계연도 중 신규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청소년·청년 고용노동교육 사업의 재원을 활용함에 따라 본래의 고용노동교육 사업이 축소 운영되었으며, 군인 등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를 강사로 위촉하는 등 취업활성화 교육 추진 과정에서도 절차적·내용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지적되었음.[182]

[강사 위촉 절차 비교]

기타 청(소)년 고용노동교육	청(소)년 취업활성화 교육
해당 분야 외부 전문가 등이 강사양성교육 수료 후 교육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강사로 위촉	원장 지인, 해병대 사령부 등이 추천한 인사들이 부적정한 강사양성 교육 수료 후 강사로 위촉

* 자료: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따라서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향후 기관의 목적 사업과 부합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신규사업 추진 시에는 사전에 예산에 반영하여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우회하지 않도록 하며, 고용노동부는 출연기관의 사업추진 및 예산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철저히 점검·관리할 필요가 있음.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관련 부대사업
11. 고용노동부장관,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업

181) '청(소)년 취업활성화 교육사업' 관련 예산 및 교육인원은 2025년 당초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음

182) 고용노동부의 2025년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2025.7.)
- 기존 청(소)년 고용노동교육 예산을 감액하여 목표를 축소함(1만명 감축)
- 강사 84명 중 안보학·군사교육학 교수, 지인 등 노동인권 강의 내부 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비전문가 35명 위촉됨

[청년 취업활성화 교육 실적]

(단위 : 시간, 명)

연번	구분	교육대상(학교·기관명)	지역	교육일자	교육시간	수료인원
1	청년	청주대학교	충북	2025-03-11	2	30
2	청년	청주대학교	충북	2025-03-11	2	40
3	청년	여주대학교	경기	2025-03-25	1	18
4	청년	여주대학교	경기	2025-03-25	1	19
5	청년	세명대학교	충북	2025-04-01	2	37
6	청년	육군 제7279부대	경기	2025-04-10	2	46
7	청년	수도군단700 특공연대	경기	2025-04-23	2	33
8	청년	청주대학교	충북	2025-04-25	2	30
9	청년	여주대학교	경기	2025-04-30	2	22
10	청년	청주대학교	충북	2025-05-02	2	28
11	청년	해병대사령부(해병2사단)	경기	2025-05-07	1	24
12	청년	해병대사령부(해병2사단)	경기	2025-05-07	1	26
13	청년	해병대사령부(해병2사단)	경기	2025-05-14	2	43
14	청년	충청대학교	충북	2025-05-19	2	30
15	청년	해병 2사단 포병여단 방공중대	인천	2025-05-21	2	27
16	청년	해병 2사단 포병여단 본부중대	인천	2025-05-21	2	24
17	청년	경동대학교	강원	2025-06-04	2	25

* 자료: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청소년 취업활성화 교육 실적]

(단위 : 시간, 명)

연번	구분	교육대상(학교·기관명)	지역	교육일자	교육시간	수료인원
1	청소년	대전전자디자인고등학교	대전	2025-03-06	1	19
2	청소년	대전전자디자인고등학교	대전	2025-04-17	1	21
3	청소년	청주 IT과학고등학교	충북	2025-04-30	2	52
4	청소년	증평공업고등학교	충북	2025-05-09	1	72
5	청소년	대전전자디자인고등학교	대전	2025-05-22	2	27
6	청소년	광주여자고등학교	광주	2025-05-23	2	12
7	청소년	부평공업고등학교	인천	2025-05-27	2	29
8	청소년	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	인천	2025-06-13	1	56
9	청소년	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	인천	2025-06-13	1	56
10	청소년	춘천한샘고등학교	강원	2025-07-02	1	37
11	청소년	춘천한샘고등학교	강원	2025-07-02	1	38
12	청소년	춘천한샘고등학교	강원	2025-07-02	1	38
13	청소년	원주의료고등학교	강원	2025-07-03	2	85
14	청소년	김화공업고등학교	강원	2025-07-04	1	33
15	청소년	김화공업고등학교	강원	2025-07-04	1	30
16	청소년	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	충북	2025-07-04	1	83
17	청소년	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	충북	2025-07-04	1	56
18	청소년	전곡고등학교	경기	2025-07-07	2	44
19	청소년	군산동산중학교	전북	2025-07-07	2	230
20	청소년	양영디지털고등학교	경기	2025-07-07	2	168
21	청소년	교하중학교	경기	2025-07-07	1	805
22	청소년	남양중학교	경기	2025-07-08	2	530
23	청소년	경기경영고등학교	경기	2025-07-08	2	168
24	청소년	진부고등학교	강원	2025-07-09	2	67
25	청소년	양구고등학교	강원	2025-07-09	2	190
26	청소년	부산영상예술고등학교	부산	2025-07-09	2	49
27	청소년	부산영상예술고등학교	부산	2025-07-09	2	49
28	청소년	부산영상예술고등학교	부산	2025-07-09	2	40
29	청소년	부산영상예술고등학교	부산	2025-07-09	2	42
30	청소년	부산영상예술고등학교	부산	2025-07-10	2	50
31	청소년	부산영상예술고등학교	부산	2025-07-10	2	46
32	청소년	전남고등학교	광주	2025-07-11	2	10
33	청소년	부산영상예술고등학교	부산	2025-07-11	2	46
34	청소년	부산영상예술고등학교	부산	2025-07-11	2	37
35	청소년	부산영상예술고등학교	부산	2025-07-11	2	46

연번	구분	교육대상(학교·기관명)	지역	교육일자	교육시간	수료인원
36	청소년	부산영상예술고등학교	부산	2025-07-11	2	22
37	청소년	김포중학교	경기	2025-07-11	2	344
38	청소년	완도수산고등학교	전남	2025-07-14	2	70
39	청소년	양오중학교	경기	2025-07-14	1	51
40	청소년	양오중학교	경기	2025-07-14	1	52
41	청소년	양오중학교	경기	2025-07-14	1	78
42	청소년	신양중학교	경기	2025-07-14	2	100
43	청소년	인천국제비즈니스고등학교	인천	2025-07-14	1	68
44	청소년	인천국제비즈니스고등학교	인천	2025-07-15	1	62
45	청소년	인천국제비즈니스고등학교	인천	2025-07-16	1	72
46	청소년	인천디자인고등학교	인천	2025-07-15	2	192
47	청소년	하남중학교	경기	2025-07-16	1	406
48	청소년	판교중학교	경기	2025-07-16	2	206
49	청소년	판교중학교	경기	2025-07-16	2	187
50	청소년	모락중학교	경기	2025-07-17	1	630
51	청소년	충북비즈니스고등학교	충북	2025-07-17	2	66
52	청소년	판교중학교	경기	2025-07-17	2	193
53	청소년	상도중학교	경기	2025-07-30	1	187
54	청소년	상도중학교	경기	2025-07-30	1	151
55	청소년	상도중학교	경기	2025-07-30	1	166

* 자료: 한국고용노동교육원

(2) 노사발전재단지원(일반회계, 2036-311)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노사발전재단지원' 사업(2007년~, 보조)은 2006년 노사정 합의(고용노동부, 노사정위원회, 한국노총, 한국경총)에 따라 노사공동의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노사발전재단[183]이 노사상생협력, 글로벌노사관계지원,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비와 일반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25회계연도 예산액은 205억 5,900만원이며, 이를 전액 집행하였음.

[2025회계연도 노사발전재단지원 사업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B)	이·전용 등 (C)	예비비	예산 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 노사발전재단지원	20,559	20,559	-	-	-	20,559	20,559	-	-	25,257
▪ 노사상생협력교육	91	91	-	-	-	91	91	-	-	91
▪ 글로벌노사관계지원	400	400	-	-	-	400	400	-	-	400
▪ 노사협의회 구축 및 활성화 지원	100	100	-	-	-	100	100	-	-	100
▪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	-	-	-	-	-	-	-	-	-	2,900
▪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지원	220	220	-	-	-	220	220	-	-	220
▪ 일반관리비	19,748	19,748	-	-	-	19,748	19,748	-	-	21,546

* 자료: 고용노동부

183)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노사발전재단 운영 지원) ① 국가는 노동단체와 사용자단체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동으로 설립한 노사발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노사 주도의 자율적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나. 해외진출기업 대상 국가별 노무관리 지원자료의 활용도 제고 필요

내역사업인 '글로벌노사관계지원' 사업은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노사관계 형성과 노무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별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현황, 노동관계 법·제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는 예산액 4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노사발전재단은 동 사업을 통해 해외진출기업이 현지의 노동관계 법·제도와 노무관리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별 노무관리 안내서, 인사·노무 Q&A, 노동법령집 등 노무관리 지원자료를 발간하고 있음.

최근 노무관리 지원자료의 발간 현황을 보면, 2022년에는 스리랑카·베트남·몽골·우즈베키스탄·칠레·브라질·멕시코 등 7개국의 노무관리 안내서를 발간하였고, 2023년부터는 국가별 노무관리 안내서 외에도 인사·노무 Q&A와 핸드북(베트남)을 제작하였으며, 2024년에는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184]에 관한 노동·인권 실사 메뉴얼과 우즈베키스탄 노동법령집을, 2025년에는 EU CSDDD 번역본 등을 추가하였으며, 2026년에는 식품·외식업과 건설업을 대상으로 한 업종별 가이드를 제작하는 등 지원자료의 유형과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184)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은 대기업이 자사의 사업장뿐만 아니라 협력사와 공급망 전체에서 인권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스스로 살피고 고치도록 의무화함

[2022년~2026년 발간 노무관리 지원자료 발간 현황]

연도	구분	대상국가	주요내용	용역수행자
2022년	노무관리 안내서	스리랑카	현지 노사관계, 노동시장 및 개정 법·제도 등 종합적인 정보 제공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칠레		국제개발컨설팅 유한책임회사(KODAC)
		브라질		
		멕시코		
2023년	노무관리 안내서	라오스	현지 노사관계, 노동시장 및 개정 법·제도 등 종합적인 정보 제공	부산외국어대학교
		아랍에미리트		법무법인 화우
		캄보디아		법무법인(유) 원
	인사노무 Q&A	미얀마	현장에서 자주 직면하는 인사·노무 이슈를 중심으로 실무형 질의응답(Q&A) 수록	법무법인 리우
		태국		
		인도		Ernst & Young LLP
		인도네시아		법무법인(유) 세종
	핸드북	베트남	근로계약, 해고, 임금, 휴게, 휴일, 휴가, 4대보험 및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제도 등	김앤장 법률사무소
2024년	매뉴얼	EU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을 기준으로 기업 담당자를 위한 노동·인권 실사 매뉴얼	법무법인(유) 태평양
	노무관리 안내서	미국	현지 노사관계, 노동시장 및 개정 법·제도 등 종합적인 정보 제공	법무법인 미션
		말레이시아		법무법인 라움
	인사노무 Q&A	중국	현장에서 자주 직면하는 인사·노무 이슈를 중심으로 실무형 질의응답(Q&A) 수록	법무법인(유) 지평
		필리핀		법무법인 디엘지
		방글라데시		
	노동 법령집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개정 노동법 전문 및 인사노무 관련 Q&A	김덕 변호사
2025년	노무관리 안내서	베트남	현지 노사관계, 노동시장 및 개정 법·제도 등 종합적인 정보 제공	법무법인(유) 세종
		중국		
		인도		
		몽골		법무법인 디엘지
	인사노무 Q&A	미국	현장에서 자주 직면하는 인사·노무 이슈를 중심으로 실무형 질의응답(Q&A) 수록	법무법인 미션
		멕시코		법무법인(유) 태평양
		브라질		법무법인 디엘지
		우즈베키스탄		
	번역본	EU	EU CSDDD 전문(Preamble), 본문(Enacting Terms), 부속서(Annex) 번역본 및 참고용 원문(부록)/ EU 플랫폼 작업에서의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유럽의회 및 집행이사회 지침 번역본	노사발전재단

연도	구분		대상국가	주요내용	용역수행자
2026년*	노무관리 안내서		태국	현지 노사관계, 노동시장 및 개정 법·제도 등 종합적인 정보 제공	법무법인 디엘지
			인도네시아		법무법인(유) 세종
			일본		법무법인(유) 지평
	업종별 가이드	식품외식업	미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식품·급식업체의 노동법 리스크 사전 대응 등 현장 중심의 표준화된 인사·노무관리 가이드	법무법인(유) 세종
		건설업	UAE, 베트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해외 주요 건설 진출국의 고용·노동 관련 법·제도 및 노무관리 환경을 분석한 실무 중심 가이드	
	인사노무 Q&A		CLMV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개정 법·제도 주요 사항 및 최신 이슈 사례 중심의 자주묻는 질의응답 수록	법무법인(유) 세종
			인도네시아	주인도네시아 대사관을 통해 접수된 24개 질의응답 수록	법무법인(유) 세종
	노동 법령집		인도	4대 신(新) 노동 법률 핵심 준수 사항과 주요 주(州)별 노동법 시행 현황 등	버드트리 매니지먼트
			필리핀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대한 주요 관련 법을 해석하여 인사·노무 리스크 사전예방	법무법인(유) 세종

* 주: 2026년은 발간 예정 자료를 포함
* 자료: 노사발전재단

또한, 2025년 지원자료의 발간 및 배포 실적을 보면, 베트남·중국·인도·몽골의 노무관리 안내서 4종과 미국·멕시코·브라질·우즈베키스탄의 인사·노무 Q&A 4종을 총 3,200부 제작하여 대사관·총영사관, KOTRA 무역관, 현지 경제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였음.

그런데 기관별 배포 현황에 따르면, 전체 제작물량 3,200부 중 610부(19.1%)는 노사발전재단이 보유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의 경우 재단 보유분이 해당 자료 물량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사례도 있음.[185] 이 중 일부가 유보 물량임을 감안하더라도 해당 자료가 수요자에게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

185) 멕시코(55.0%), 몽골(42.5%), 브라질(42.5%), 중국(41.5%), 인도(28.0%), 미국(14.5%), 우즈베키스탄(11.7%), 베트남(6.4%)

또한, 현지 배포 물량도 현지 공관, KOTRA 무역관 및 현지 한인경제단체 등 유관기관에 배포되고 있어, 중간기관에 대한 배부실적만으로는 해당 자료가 최종 수요자인 해외진출기업에 실제 전달·활용되고 있는지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2025년 발간 노무관리 지원자료 배포 현황]

해외진출기업 인사·노무관리 안내서

유형	배포처	부수
베트남 진출기업 인사·노무 관리 안내서	대사관	500
	코트라 하노이 무역관	100
	베트남 한인상공인연합회(코참)	45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2
	중소기업중앙회 베트남사무소	10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 지원공사(KIND)	1
	해외건설협회	3
	연구진	10
	재단 보유	74
	총 계	1,150
중국 진출기업 인사·노무 관리 안내서	대사관	10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3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 지원공사(KIND)	1
	해외건설협회	3
	연구진	10
	재단 보유	83
	총 계	200
인도 진출기업 인사·노무 관리 안내서	대사관	100
	코트라 뉴델리 무역관	10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2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 지원공사(KIND)	1
	해외건설협회	3
	연구진	10
	재단 보유	84
	총 계	300
몽골 진출기업 인사·노무 관리 안내서	대사관	10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1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1
	해외건설협회	3
	연구진	10
	재단 보유	85
	총 계	200

주요국 인사·노무 Q&A

유형	배포처	부수
미국 인사·노무 Q&A	대사관	100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100
	주뉴욕 총영사관	100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100
	주애틀랜타 총영사관	100
	주시애틀 총영사관	100
	코트라 LA 무역관	2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7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1
	해외건설협회	3
	연구진	10
	재단보유	109
	총 계	750
멕시코 인사·노무 Q&A	대사관	3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1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1
	해외건설협회	3
	연구진	10
	재단 보유	55
	총 계	100
우즈베키스탄 인사·노무 Q&A	대사관	150
	코트라 타슈켄트 무역관	10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1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1
	해외건설협회	3
	연구진	10
	재단 보유	35
	총계	300
브라질 인사·노무 Q&A	대사관	10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1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1
	해외건설협회	3
	연구진	10
	재단 보유	85
	총계	200

* 자료: 노사발전재단

보다 근본적으로는 인쇄물 배포방식은 제작비 외에도 배송 등 부대 비용이 수반되는데,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상당하고, 일부 배부처는 1~3부에 불과한 소량을 배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인쇄물을 일괄 제작하여 기관별로 배부하는 현행 방식에 대한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편, 노사발전재단이 2025년 실시한 「해외투자기업의 노무관리 현황 조사」 결과를 보면, 재단이 발간하는 노무관리안내서를 '알고 있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9.6%에 그쳤고,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28.8%이며, 노무관리안내서를 실제로 '활용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8.8%로 '활용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비율 30.8%보다 낮았음.

[노사발전재단 노무관리안내서 인지도 및 활용도 조사 결과]

(단위: %)

구분		사례수	인지도		활용도	
			긍정	부정	긍정	부정
전체(*)		250	29.6	28.8	28.8	30.8
해외공장 위치	동남아시아	100	30.0	35.0	26.0	36.0
	중국	91	30.8	22.0	34.1	24.2
	유럽	12	16.7	33.3	33.3	41.7
	북미	30	23.3	30.0	26.7	26.7
	기타	17	41.2	23.5	17.6	35.3
해투법인 근로자 수	100명 미만	101	23.8	30.7	23.8	32.7
	100~300명 미만	65	30.8	29.2	29.2	35.4
	300~500명 미만	22	36.4	27.3	40.9	18.2
	500~1,000명 미만	15	26.7	33.3	33.3	13.3
	1,000명 이상	47	38.3	23.4	31.9	31.9

* 주: 전체 기준 긍정 응답은 각각 '아는 편 24.4% + 매우 잘 알고 있음 5.2%', '활용하는 편 24.4% + 많이 활용함 4.4%'이며, 부정 응답은 각각 '모르는 편 20.8% + 전혀 모름 8.0%', '활용하지 않은 편 20.8% + 전혀 활용하지 않음 10.0%'임
* 자료: 노사발전재단, 「해외투자기업의 노무관리 현황 조사」, 2025.

노사발전재단이 매년 대상 국가와 자료 유형을 확대하면서 노무관리 안내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간·배포하고 있음에도 실제 수요자인 해외진출기업의 인지도와 활용도는 30% 내외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에서, 자료의 제작·배포가 해외진출기업의 실질적인 활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히 기업 규모별로는 '100명 미만' 소규모 진출기업의 인지도 및 활용도가 각각 23.8%로 가장 낮게 나타나는데, 자체적인 노무관리 역량과 정보 접근 여건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지원 필요성이 큰 소규모 기업에서 오히려 안내자료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아울러 같은 조사에서 해외투자기업이 현지국 노무관리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응답한 정부 지원의 내용은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이 67.2%로 가장 높았고, 해외투자법인 간 상호 교류 지원 62.4%, 헬프데스크 61.2%, 조직진단과 컨설팅 59.6% 순으로 나타났음. 이는 해외진출기업의 노무관리 지원 수요가 자료 제공뿐만 아니라 교육, 상담, 기업 간 정보교류 및 컨설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줌.

따라서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노무관리 안내자료의 지속적인 발간·배포에도 불구하고 해외진출기업의 인지도와 활용도가 30% 내외인 점을 고려하여, 인쇄물 중심의 제작·배포방식을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재검토하고, 기업의 수요가 높은 교육·상담·기업 간 교류 등과 연계하는 등 안내자료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근로기준정책관]

(1) 대지급금 지급(임금채권보장기금, 3051-300)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대지급금 지급' 사업(1998년~, 직접/출연)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지급 소요를 충당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임.

동 사업의 2025회계연도 계획현액은 7,190억 9,200만원으로, 이 중 6,885억 1,900만원(95.7%)이 집행되었고, 305억 7,3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대지급금 지급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대지급금 지급	529,346	719,092	-	-	719,092	688,519 [688,516]	-	30,573	746,068

대지급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로, ①법원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가 기업의 파산 또는 도산을 인정한 경우 청구할 수 있는 **도산대지급금**과 ②기업의 도산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확

인서를 받아 청구할 수 있는 **간이대지급금**으로 구분됨.

[대지급금 제도 개요]

구분		도산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퇴직자	재직자
지급 사유		▸법원의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지방관서의 **도산등사실 인정**	▸법원의 **확정판결** ▸지방관서의 **체불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 임금 등 확인	
지급요건	대상 근로자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파산·회생·도산인정 신청일 등	▸**(확정판결)** 퇴직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 제기 ▸**(체불확인서)** 퇴직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제기	①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 유지** (일용근로자 제외) ②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 110% 미만** ③마지막 체불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확정판결의 경우) 또는 **1년 이내 진정**(체불확인서의 경우) 제기
	사업 주기 준	① 산재보험 적용 사업		
		②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에	②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 영위	② 소송 또는 진정 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 영위
		③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도산등사실인정**	③ 체불에 대한 **확정판결** 또는 **체불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 임금등 확인	
지급 범위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 기준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상한		**최대 2,100만원** (연령별 차등, 월별(연별) 상한액 존재)	**총 1,000만원** (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700만원**
청구 기한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	**확정판결일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	
횟수 제한		-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

* 자료: 고용노동부

나. 대지급금 회수율 개선을 통한 기금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 필요

2020년부터 2025년의 임금체불액 규모와 대지급금 지급 추이를 살펴보면, 임금체불액은 2020년 1조 5,830억원에서 2025년 2조 679억원으로 4,849억원(30.6%) 증가하였고, 대지급금 지급액은 2020년 5,797억원에서 2025년 6,845억원으로 1,049억원(18.1%) 증가하였음. 이는 경기 침체로 인한 경영난 등으로 임금체불액이 급증하며 대지급금 지출액도 큰 폭으로 증가한 데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임.

또한 최근 대규모 임금체불 업장 발생과 개정 「임금채권보장법」(2026. 8. 20. 시행)에서 대지급금 지원 범위가 종전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서 최종 6개월분의 임금으로 확대되는바 대지급금 지급액 확대 추이는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임.

[2020년~2025년 임금체불 규모 및 대지급금 지급 추이]

(단위: 백만원)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임금체불액		1,583,014	1,350,452	1,347,209	1,784,530	2,044,848	2,067,896
대지급금 지급액		579,690	546,571	536,864	686,905	724,207	684,511
	도산대지급금	109,975	79,360	36,576	39,635	54,828	69,274
	간이대지급금	469,715	467,210	500,288	647,271	669,379	615,237

* 자료: 고용노동부

대지급금은 법정 의무지출으로, 지급 수요 증가에 따른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한 증액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다만, 대지급금 지급 규모의 확대로 인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여유자금이 큰 폭으로 감소

하고 있어, 중장기적인 기금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20년부터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적립금은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 기금 적립금은 2020년 8,340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2025년 2,766억원으로 감소(△66.8%)하였음.

[임금채권보장기금 수입 지출 및 적립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수입(A)	515,629	523,876	565,385	617,255	663,021	736,848
지출(B)	640,374	627,414	600,342	792,305	836,242	807,518
사업비지출	627,195	613,715	584,138	773,028	818,023	789,845
대지급금 지급액	579,690	546,571	536,864	686,905	724,207	684,511
수지차 (A-B)	△124,745	△103,538	△34,957	△175,050	△173,221	△70,670
적립금	834,032	730,494	695,537	520,487	347,266	276,596
여유자금	629,067	626,307	590,558	416,886	292,690	270,746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탁금	2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	0
한국은행 예치금	4,965	4,188	4,980	3,601	4,576	5,850

* 주: 적립금 = 여유자금+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금+한국은행 예치금
* 자료: 고용노동부

한편 고용노동부에서 지출한 대지급금 상당의 금액을 체불사업주로부터 회수하는 대지급금 환수액은 임금채권보장기금 총수입의 주요한

수입원임에도 대지급금 회수율이 30%를 하회하는 수준인바, 임금채권 보장기금 재정건전성을 위하여 대지급금 회수가 제고될 필요가 있음.

[대지급금 지급액 회수율]

(단위: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대지급금 회수율	32.8	32.2	31.9	30.9	30.0	29.7
도산대지급금 회수율	39.2	39.8	40.7	41.1	41.2	41.3
간이대지급금 회수율	12.8	14.6	16.0	16.4	17.0	18.1

*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최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을 통하여 체불임금 대지급금 회수에 국세체납처분 절차가 도입됨에 따라 별도의 민사 확정판결 없이도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대지급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게 되는바 대지급금 회수가 수월해지고 기금의 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임.

다만 도산대지급금의 경우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결정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사실인정 이후에 지급되는 것으로서 국세체납처분 절차 도입의 효과가 충분히 높지 않을 수 있고, 도산대지급금 회수율과 간이대지급금 회수율 모두 더욱 증대될 필요가 있는바 향후 제도 시행에 따른 실제 회수 성과 및 사업장별 특성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점검한 후 원인별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지급금 회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산업안전보건정책실 》

[산업안전예방정책관]

(1)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4151-350)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사업(2001년 ~, 출연)은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산재보험가입 중소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 미만 건설현장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하여 위험기계·공정·장비 등을 개선·교체하고, 스마트 안전장비가 보급·확산되도록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려는 사업임.

예산의 집행현황을 보면, 2025년 계획현액 4,967억 9,200만원 중 4,965억 2,100만원(99.9%)이 집행되었고, 2억 7,1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481,792	496,792	-	-	496,792	496,521	-	271	537,093
▪ 안전일터 조성지원	110,707	110,707	-	-	110,707	110,659	-	48	160,607
▪ 안전동행지원사업	332,000	332,000	-	-	322,000	331,999	-	1	332,000

▪ 건강일터 조성지원	35,825	50,825	-	-	50,825	50,824	-	1	40,825
▪ 클린사업장 사후관리 및 사업수행경비	3,260	3,260	-	-	3,260	3,039	-	221	3,661

*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의 내역사업은 ① 기술·재정이 취약한 산재보험가입 50인 미만 사업장 등의 유해·위험요인 개선 및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치 보급·확산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② 50인 미만 제조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이 미흡한 위험기계 교체 및 유해·위험공정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안전동행 지원' 사업, ③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직업성 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보호 시설 및 장비의 임차·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 ④ 사후관리 비용 등 관련 '클린사업장 사후관리 및 사업수행경비'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내역사업인 '안전일터 조성지원'은 기술·재정이 취약한 산재보험가입 50인 미만 사업장[186]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 노후화로 인한 고위험 기계·기구·설비나 방호·안전장치 등을 신규 지정품목으로 교체하고, 시스템비계 등 추락방지 안전시설 지정품목을[187] 구매하거나 임차하며 신기술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재해예방 효과가 있는 스마트 안전장비 구비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188] 사업임.

186)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별표 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의 매출액 이하인 기업 포함
187)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고소작업대
188) 참고 1 안전일터 조성사업 지원비율 및 지원금액 참조

사업주의 지원신청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설치·구매 계획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나 지원금을 결정하고,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설치·구매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며, 2025년 계획액 1,107억 700만원 중 1,106억 5,900만원을 집행하였음.

나. 재해예방 효과, 지원비용 등을 고려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품목 선정 필요

‘안전일터 조성지원’ 내역사업 내 ‘스마트안전장비 보급·확산’은 인공지능, 로봇공학, 정보통신, 센서 기술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재해예방 효과가 있는 안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37종의 지정 품목과 자율신청 품목 중 25종의 품목을 2,352개 사업장에 지원하여 350억원의 예산 중 342억 2,000만원이 집행되었음.

[안전일터 조성지원 내역사업 세부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내내역사업		예산(A)	집행(B)	불용 (A-B)	사업 내용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확산		35,000	34,220	48	신기술 활용 등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비용 지원
유해위험요인시설개선	제조서비스업 고위험개선	24,240	24,972	-	끼임, 충돌 등 사고 예방 및 위험요인 개선 비용 지원
	건설현장 추락붕괴 예방	51,467	51,467	-	건설현장 추락, 붕괴 예방시설 임차 및 구입 비용 지원
합계		110,707	110,659	48	

* 자료: 고용노동부

지원품목 중 ‘스마트 안전장치 전동지게차’[189]는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스마트 안전장치(카메라센서형 충돌방지장치, 부착형 충돌방지장치)가 장착된 지게차로, 2025년에는 843개 사업장에 104억 5,200만원이 지원되며, 전체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금액의 30.5%를 차지하고 있음.

189) 스마트 안전장치 전동지게차는 장착된 스마트 안전장치를 통해 일반 지게차보다 작업 중 충돌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면이 있음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품목 및 지원 금액]

연번	품목구분	품목명	지원비율(%)	지원금액(백만원)
1	지정	인공지능(AI)기반 인체감지시스템(고정식)	36.0	12,315
2	지정	스마트 안전장치 전동지게차	30.5	10,452
3	지정	전기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전기안전)	18.4	6,286
4	지정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스마트 안전장치 (충돌방지장치(카메라센서형))	8.9	3,049
5	지정	인간공학적 중량물 운반 보조장치	1.8	624
6	자율	금형파손예방장치(로드모니터)	1.0	341
7	지정	화학사고예방 통합 모니터링시스템(고정식)	0.6	206
8	지정	고위험 기계설비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인공지능)	0.5	181
9	자율	운반로봇	0.5	177
10	자율	화학사고예방 통합 모니터링시스템(AI화재감지기)	0.4	134
11	지정	인공지능(AI) 기반 크레인 충돌방지장치 (흔들림 방지장치(옵션))	0.3	115
12	지정	인공지능(AI)기반 인체감지시스템(이동식)	0.2	76
13	지정	근력보조슈트	0.2	75
14	자율	산업용 청소로봇	0.2	56
15	자율	추락보호에어백	0.1	42

* 자료: 고용노동부

그런데 동 사업에서는 스마트 안전장치 전동지게차와 별도로 기존 지게차에 부착할 수 있는 충돌방지장치도 지원하고 있는데, 두 지원방식 모두 충돌 위험을 감소시키는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에도 지원단가는 스마트 안전장치 전동지게차에 비해 낮은 수준임을 고려

할 때, 지원단가가 높은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대상에 스마트 안전장치 전동지게차를 계속 포함하여 지원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스마트 안전장비 품목별 지원단가]

품목명	지원단가(천원)
스마트 안전장치 전동지게차	15,000천원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스마트 안전장치 (충돌방지장치(카메라센서형))	1,178천원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스마트 안전장치 (부착형 충돌방지장치)	960천원

* 자료: 고용노동부

다.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관련 사후관리 강화 필요

산업재해예방사업 관련하여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하였는데,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에 대한 충돌예방장치 등 스마트 안전장비(37종) 지원과 관련하여 현장을 점검한 결과 안전기능 미사용·고장·방치 등 60%가 부적정 사용하고 있다는 결과를 발표하였음.

[스마트 안전장비 주요 부적정사용 예시]

품목명	부적정사용 내용	부적정사용률
차량 충돌예방장치	- CCTV 채널 고장 방지 - 알람 소음으로 인한 기능 차단	80%
근력보조슈트	- 착용 시 작업 불편 - 활동 제약으로 인한 미사용	76%
스마트 안전장치 전동지게차	- 알람 소음으로 인한 전원 차단 - 스마트 안전기능 미사용	64%
AI인체감지시스템	- 위험상황을 인지할 수 없는 공간에 설치 - 알람 소음으로 인한 안전기능 차단	50%

* 자료: 산업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결과 발표 보도자료 재구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알람 소음 등으로 인해 장비의 안전기능을 사용하지 않거나, 현장여건에 맞지 않아 장비를 방치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안전장치가 고장이 나도 작업에 영향이 없고, 수리비가 부담되어 고장이 난 상태로 사용하는 등 부적정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된바,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의 산재예방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보임.

또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장비의 경우 선정절차를 준수

하지 않고 현장 활용성에 대한 검증이 충분하지 않은 등의 사례도 있었던바, 고용노동부는 지원 품목 선정시 재해예방 효과 및 현장 활용성 등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실제 사업장에서 지원된 장비의 안전기능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참고 1 안전일터 조성사업 지원비율 및 지원금액

구 분	지급대상	지급조건	지급금액 및 지급비율
건설현장 추락·붕괴 예방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 시스템비계, 시스템 동바리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등을 임대·설치·구입 및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한도 : 같은 사업주당 9,000만원 까지 ※ 현장당 한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필요시 지원한도 내에서 현장 당 한도 조정가능) ▸ 지원비율 : 소요비용의 50%~65%* * 공사금액 20억원미만(65%), 20억~50억원미만(50%) ※ 시스템비계, 수직보호망, 안전대 부착설비는 조견표에 따른 정액제 지원
제조·서비스업 고위험 개선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건설업 제외)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 등	▸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서 필요에 따라 신청한 경우**(자율신청)** ▸ 고용부 감독·점검, 공단 기술지도, 민간위탁사업 및 체계구축 컨설팅 결과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Quick-pass)**	▸ **지원금액 :** 사업장 당 3,000만원 까지 ※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 . 고용증가 사업장(1명당 200만원 범위)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 고위험업종(산재보험료율 상위업종 등) ▸ **지원비율 : (고위험)** 공단 판단금액의 70% **(스마트)** 공단 판단금액의 80%

참고 2 스마트안전장비 최소 성능기준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구성</th><th>최소 성능기준</th></tr>
<tr><td rowspan="4">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스마트 안전장치</td><td rowspan="2">카메라 센서형</td><td>필수구성품 (모니터, 경보장치, 무선통신기)</td><td>1. 운전자 모니터에는 충돌방지 현황(실시간 영상, 인체충돌 및 기타 위험 정보 등) 표시되고, 충돌위험 시 경보가 울릴 것
2. 무선통신을 통해 기기(모니터, 카메라, 감지장치, 무선통신기, 그 밖의 기타 장치 등) 간 연결될 것.
3. 방수방진등급 IP55 이상일 것(빗물, 분진 등의 유입이 되지 않는 운전석 내부에 설치되는 필수구성품은 미적용)
4. 단. 지게차에 설치하는 경우, 별도의 모니터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제3자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
- 인체충돌 등 위험상황 발생 또는 발생우려 시 경보음 및 알림(충돌방향·위치 표시)을 알 수 있을 것
- 지게차와의 무선통신 반경은 최소 10m 이상일 것.
5. KC전파인증서 제출</td></tr>
<tr><td>카메라 및 감지장치</td><td>1. 카메라 및 감지장치는 최소 4대 이상 설치
2. 방수방진등급 : IP55 이상
3. 감지장치로부터 최소 1m 거리의 사람 또는 물체를 감지
4. KC전파인증서 제출</td></tr>
<tr><td rowspan="3">부착형</td><td>카메라</td><td>1. 카메라 및 감지장치는 최소 4대 이상 설치
2. 방수방진등급 : IP55 이상
3. 감지장치로부터 최소 1m 거리의 사람 또는 물체를 감지
4. KC전파인증서 제출</td></tr>
<tr><td>필수구성품 (모니터, 경보장치, 무선통신기)</td><td>1. 운전자 모니터에는 충돌방지 현황(실시간 영상, 인체충돌 및 기타 위험 정보 등) 표시되고, 충돌위험 시 경보가 울릴 것
2. 무선통신을 통해 기기(모니터, 카메라, 감지장치, 무선통신기, 그 밖의 기타 장치 등) 간 연결될 것
3. 경보장치는 작업자가 바로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의 음량과 밝기를 갖출 것
4. KC전파인증서 제출</td></tr>
<tr><td>부착설비</td><td>1. 자석 등 그 밖에 방법으로 설비에 탈부착이 가능할 것
2. 부착 후 쉽게 떨어지지 않는 구조일 것</td></tr>
<tr><td colspan="2">스마트전동 지게차 충돌방지장치</td><td colspan="2">1. 운전자 모니터에는 충돌방지 현황(실시간 영상, 인체충돌 및 기타 위험 정보 등) 표시되고, 충돌위험 시 경보가 울릴 것
2. 무선통신을 통해 기기(모니터, 카메라, 감지장치, 무선통신기, 그 밖의 기타 장치 등) 간 연결될 것
3. 방수방진등급 IP55 이상일 것</td></tr>
</table>

	4. 별도의 모니터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제3자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 - 인체충돌 등 위험상황 발생 또는 발생우려 시 경보음 및 알림(충돌방향·위치 표시)을 알 수 있을 것 - 지게차와의 무선통신 반경은 최소 10m 이상일 것 5. KC전파인증서 제출 6. 전·후방 사각지대 예방, 영상분석 시스템 기반 정확한 인체감지(최소 4대 이상 설치) 7. 방수방진등급 IP55 이상일 것 8. 최소 1m이상 거리에서 근접하는 작업자(인체)를 감지 및 경보 기능을 갖출 것 9. KC전파인증서 제출

(2) 업종별 재해예방(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4152-350)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업종별 재해예방’ 사업(1988년~, 계속)은 50억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사고성재해 집중관리, 화학사고 재해 예방 및 공공기관을 포함한 사업장 자율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사고성 재해 예방에 기여하려는 사업임.

예산의 집행현황을 보면, 2025년 계획현액 1,631억 5,200만원 중 1,558억 1,200만원(95.5%)이 집행되었고, 2,200만원이 2026년으로 이월되었으며 7,34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업종별 재해예방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 업종별 재해예방	163,152	163,152	-	-	163,152	155,812 [155,790]	22	7,340	236,062
▪ 사고성재해 집중관리	13,386	13,386	-	-	13,386	12,528 [12,506]	22	858	60,234
▪ 민간 기술지도	51,323	52,793	-	-	52,793	52,542 [52,542]	-	251	51,273
▪ 화학사고재해집중관리	2,620	2,620	-	-	2,620	2,535 [2,535]	-	85	2,620
▪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	95,823	94,353	-	-	94,353	88,207 [88,207]	-	6,146	121,935

*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의 내역사업은 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공단의 사업장 대상 기술지도, 산재 현황 분석,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실시하는 '사고성재해 집중관리' 사업, ② 소규모 사업장에 민간재해예방기관이 방문하여 산재 예방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하는 '민간 기술지도' 사업, ③ 화학공장 대형사고 예방 등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하는 '화학사고재해 집중관리' 사업 ④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역사업별 계획액 및 집행액은 다음과 같음.

[업종별 재해예방 사업의 내역사업 및 기금 집행 내역]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계획액	집행액
사고성재해 집중관리 (공단)	◆ 공단 기술지도(300인 미만 제조·서비스업, 120억원 미만 건설업 등),등 안전보건공단 직접 수행 사업		
	· 사망사고 핵심 고위험요인 집중관리	10,368백만원	9,601백만원
	· 종합심사낙찰제 건설안전지표 산정	698백만원	671백만원
	· 민간재해예방기관평가	876백만원	847백만원
	· 노무제공자 사고성 재해 예방	400백만원	391백만원
	· AI빅데이터 활용산재예방지원 시스템	544백만원	544백만원
	· 안전보건종합진단	500백만원	452백만원
민간 기술지도 (위탁)	◆ 50인 미만 제조업·서비스업 사업장 및 대한 민간재해예방기관의 방문 기술지원		
	· 민간 기술지도(51,323백만원)	51,323백만원	52,542백만원
화학사고재해 집중관리	◆ 화재·폭발, 독성물질 누출 등 화학사고 재해예방 지원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및 확인	990백만원	971백만원
	· 중소규모사업장 화재사고 예방기술지도	1,000백만원	957백만원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630백만원	607백만원
자율안전관	◆ 사업장 자율적인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등을 위한 안전보건체계 구축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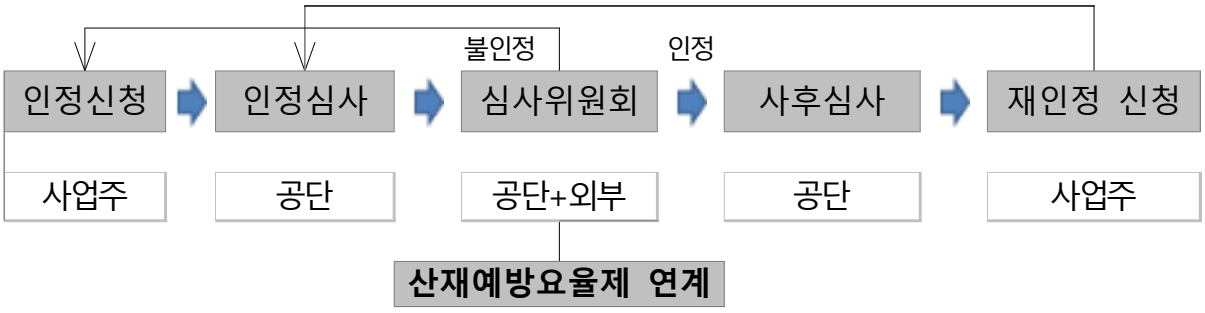
리체계구축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2,632백만원	2,468백만원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1,350백만원	1,269백만원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지원 협력업체 지원	13,019백만원	12,396백만원
	· 산업안전보건 표준제정 산업안전보건 표준개발보급	564백만원	546백만원
	·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1,093백만원	1,070백만원
	·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 컨설팅	63,679백만원	62,319백만원
	· 협·단체 공동안전관리 지원	12,600백만원	7,262백만원
	· 업종별 협단체 네트워크 지원	886백만원	877백만원

* 자료: 고용노동부

나.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 참여 감소에 대한 개선 필요

내역사업 중 '사고성재해 집중관리'에는 '사망사고 핵심 고위험요인 집중관리'를 위한 기금 103억 6,800만원이 계획되어, 96억 1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는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장(건설공사를 제외)과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 수준을 확인·심사하여 일정 수준인 경우 '인정'을 부여하고 인정기간 중 사후 점검 실시를 통해 실행 수준 점검하는 사업(이하 '위험성평가 인정'이라 함)이 포함되어 있음.[190]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 체계도]



자료: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인정 신청을 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심사

190)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3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16조(인정의 신청) ① 장관은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활동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인정하는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장**(건설공사를 제외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에 따른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사업주의 사업장(이하 "도급사업장"이라 한다)과 수급사업주의 사업장(이하 "수급사업장"이라 한다) 각각의 근로자수를 이 규정에 의한 상시 근로자 수로 본다.
2.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를 하여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에 70점을 미달하는 항목이 없고 종합점수가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받은 사업장을 인정으로 결정하고,[191] 인정사업장은[192]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0%를 감면받으며,[193]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 감독을 유예받을 수 있는데,[194] 최근 5년간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은 다음과

---

191)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7조(인정심사) ① 공단은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항목에 대해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인정 여부를 심사(이하 "인정심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주의 관심도
2. 위험성평가 실행수준
3. 구성원의 참여 및 이해 수준
4. 재해발생 수준
제19조(위험성평가의 인정) ① 공단은 인정신청 사업장에 대한 현장심사를 완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인정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인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제2장에서 정한 방법, 절차 등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수행한 사업장
2. 현장심사 결과 제17조제1항 각 호의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에 70점을 미달하는 항목이 없고 종합점수가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인 사업장**

192)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하수도업에만 적용됨

19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사업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한 비율을 제1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과 합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이하 "산재예방요율"이라 한다)로 할 수 있다.
⑥ 산재예방요율을 적용할 때 재해예방활동의 내용·인정기간, 산재예방요율의 적용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주가 실시하는 재해예방활동별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산재예방요율의 적용) ①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은 다음 각 호의 활동으로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위험성평가의 실시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해예방 관련 교육의 이수와 사업장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재예방계획의 수립
② 제1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별 산재보험료율 인하율(이하 "인하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비율로 하되,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94)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27조(인정사업장 등에 대한 혜택) ① 장관은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에 대하여는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인정 유효기간 동안 사업장 안전보건 감독을 유예할 수 있다.

같음.

[최근 5년 간 인정 심사 대상 사업장 및 신청 사업장, 인정사업장 현황]

(단위: 개소)

연 도	전체 사업장 (인정심사 대상*)	신청 사업장(개소)	인정 사업장 (비율)
합계	**14,793,998**	**29,111**	**22,735 (0.154%)**
2021	2,837,242	4,813	3,532 (0.124%)
2022	2,934,238	5,822	5,094 (0.174%)
2023	2,902,653	7,625	6,640 (0.229%)
2024	2,957,610	7,079	5,905 (0.200%)
2025	3,162,255	3,772	1,564 (0.049%)

* 주: 비율은 전체 사업장의 수 대비 인정 사업장의 수임.
* 자료: 고용노동부

그런데 2025년의 경우 인정사업장의 수는 전년도의 26.5% 수준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고, 인정 신청 사업장의 수도 전년도의 53.2%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이러한 인정사업장의 감소는 2024년 화성 일차전지 제조공장 화재 사업장이 위험성 평가 인정사업장으로서 일반 산재보험요율보다 낮은 요율을 적용받아[195] 3년 동안 총 8,130,320원의 보험료를 감면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의 실효성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고용노동부가 '외국인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195) 2022년 '기타전기기계기구 제조업'의 일반 산재보험요율인 0.6%에서 17% 낮은 0.498%를, 2023~2024년엔 20% 낮은 0.48%의 보험료율을 적용받았음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인정 기준을 기존의 70점에서 90점으로 강화한 것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

그러나 위험성평가는 그 자체로 산업재해 위험을 제거하거나 대체하여 원천적으로 사업장에서의 산업재해 발생을 차단한다기보다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스스로 위험을 찾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관리 체계의 한 축으로서 산재예방의 시작점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는 점[196],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시행되고 있다는 점,[197] 인정사업장은 사고사망만인율이 전체 100인 미만 사업장보다 낮게[198]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사업에 되도록 많은 사업장들이 참여하도록 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위험성평가의 과정을 경험하고 인정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이를 관리하는 역량을 스스로 강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는 인정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미 감면된 보험료를 환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고,[199] 사후점검도 모든 인정사업장이 1회 이상 받도록 확대되었

196) 위험성평가는 예측 가능한 위험(추락, 끼임, 충돌처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유형)을 찾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제도이므로 중대산업재해(예: 자연재해와 설비 이상이 동시에 발생해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처럼 예측 자체가 어려운 사건까지 완벽하게 예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197)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6조제1항 참조

198) 21~25년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 인정사업장 0.389 < 전체(100인미만) 0.503

19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532호, 2026. 4. 7., 일부개정, 2026. 10. 8 시행)

으며,[200] 근로자 참여 정도와 개선대책 이행 여부에 대한 심사 배점도 상향하는 등[201]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된 점을 고려한다면,

고용노동부는 인정기준을 강화하는 방식 외에도 보험료 감면 혜택을 확대 적용하는 등 사업장 참여 유인을 다양화함으로써 더 많은 소규모 사업장의 참여를 유도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는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경우

2.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재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⑨ 제8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취소된 사업의 경우에는 산재예방요율 적용을 취소하고,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은 기간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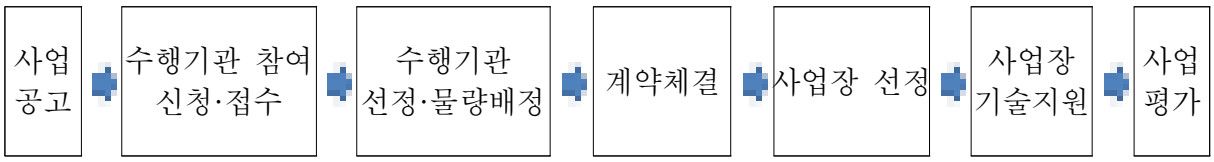
200)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21조에 따른 사후심사의 범위와 빈도를 “매년 인정사업장의 20%”에서 “인정기간 중 1회 이상”으로 개정함(2024. 12. 18.)

201) 고용노동부는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항목 및 기준 중 항목별 배점을 조정하여 ‘위험성평가 실행 수준>수립한 위험성 감소대책의 이행’ 항목 배점을 10점에서 20점으로, ‘구성원의 참여 및 이해 수준> 위험성평가 실행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 및 이해 수준’ 항목 배점을 20점에서 30점으로 상향하였음.(2024. 12. 18.)

다. 건설현장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민간 기술지도 방식의 문제

내역사업 중 '민간 기술지도'는 민간재해예방전문기관이 총 3차례 사업장을 방문하여[202]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현황을 파악하고, 위험성평가를 통하여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지도하며, 그 이행을 확인하는 등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계획현액 527억 9,300만원 중 525억 4,200만원을 집행하였음.

[민간 기술지도 사업 체계도]



* 자료: 고용노동부

건설업종은 공사 진행에 따라 작업내용과 투입인력이 수시로 변동하는 건설현장을 작업장으로 한다는 점에서, 상시근로자가 고정된 장소에서 작업하는 제조업 등 다른 업종과는 작업환경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산업재해 예방지도의 대상[203]이 아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1억 미만의

202) 단, 서비스 업종은 2차례 방문

203)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초·소규모 건설공사를 민간 기술지도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특히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민간 기술지도 지원 개요]

대 상		2025년	2026년
초소규모 건설현장 (1억 미만 건설공사)	사업규모	12만회 (180억원)	
	방문횟수	동일 건설현장별 1회	
		건설현장 1회, 본사 1회 (고위험 작업 구분 없이 각 1회)	**건설현장 1회(최대 3회*)**, 본사 1회 * 고위험 작업(지붕 개·보수, 외부도장 작업)의 경우 공사 기간에 따라 최대 3회(공사기간 3일 이하 2회, 4일 이상 3회) ※ 작업별 지원 상한(최대 40%, 인테리어와 리모델링 각 10%, 20% 초과 금지) 설정
	지원내용	공사금액 1억원 미만의 고위험 작업 또는 고위험 기인물 사용 건설현장에 대해 방문시 위험요인 및 향후 발생 위험요인에 대해 기술지원* 실시 * 핵심 안전수칙 및 추락 등 사고사망 주요 위험요인 집중 확인·개선 지원(추락 예방 조치, 개인 보호구 착용, 안전점검 실시, 기후변화 대응 기술지원 및 예방안내)	
제조업 등 (50인 미만)	사업규모	18.7만회 (280.5억)	
	방문주기	최소 1개월 이상	
	방문횟수	동일 사업장별 3회	
	지원내용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사업장 핵심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고, 개선조치 이행여부 확인 등 사고·질병재해 예방 기술지원* 실시 * 공정·작업별 위험성평가 직접지원, 핵심위험요인 감소대책 제시 및 이행여부 확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① 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 사업주가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시공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4.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서비스업 (50인 미만)	사업규모	5만회 (37.5억원) * 건물관리업 3만회, 음식업 2만회	5만회 (37.5억원) * 건물관리업 3만회, **음식업 1만회, 도소매업 1만회**
	방문주기	최소 2개월 이상 ※ 3회차 기술지원의 경우, 2회차 기술지원 이후 1개월 이상 주기로 방문 가능	
	방문횟수	(건물관리업) 사업장당 2회* (음식업) 사업장당 1회 *2회차 평가결과가 미흡 이하이고, 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3회 가능	
	지원내용	업종별 사고·질병 재해위험요인 및 필수 준수사항을 중심으로 현장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기술지원* 실시 * 건물관리업·음식업·도소매업의 주요 사고·질병재해 위험요인 점검 및 필수 준수사항 지원	

* 자료: 고용노동부

그러나 건설업종의 1억 미만 공사현장은 공사 기간이 매우 짧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사전에 공사현장을 파악하여 지원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어려운 면이 있음.

이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일선기관의 사고사망 현황 등을 분석하여 고위험 현장·작업 등 지원대상 범위를 정하고, 민간재해예방전문기관의 수행요원들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현황을 통해 인지하거나 직접 발굴한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민간 기술지도를 받을 것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지원 대상이 선정되고 있음.

이러한 선정 방식은 공사현장의 위험도에 따르기보다는 민간재해예방전문기관 수행요원이 확보한 현장 정보나 지리적 접근성에 의하여 민간 기술지도 사업장이 결정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면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의 산업재해예

방사업 추진실태 점검결과에는 지붕개·보수나 외부도장 등 사망사고가 많은 공사현장보다 접근이 용이한 도심지의 인테리어 또는 리모델링 공사현장에 민간기술지도가 편중되어 지원의 실효성이 낮다는 점이 지적되었음.[204]

또한, 민간 기술지도는 수행요원이 사업장을 3회 방문하여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근로자 등이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한 후 그 이행 여부까지 확인하도록 하는 '단계적'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바,

제조업 등 다른 업종의 경우 지도 내용이 사업장 내에서 공유·이행되고 정착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문 간격을 1개월 이상으로 두고 있음.

그러나 건설업종은 1억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1회 방문 지도를 기본 방식[205]으로 정하여 지도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고, 고위험 작업의 경우에는 공사 기간 중 최대 3회를 방문하고 있으나 방문 간격이 짧아 실질적으로 지도 내용을 이행한 후 그 결과를 점검·보완하기 위한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재해

---

204) 지붕개·보수나 외부도장 공사현장에서의 사망자 비율이 62.2%임에도 실제 민간기술지도의 비중은 18.3%에 그쳤고, 인테리어·리모델링 공사현장은 사망자 비율이 14.2%임에도 민간 기술지도의 비중이 64.5%에 이르렀음

205) 건설공사(1억 미만) 현장의 경우 일반공사는 1회가 원칙이나, 2026년부터 위험도가 높은 지붕개·보수, 외부도장 작업에 한하여 공사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2회, 4일 이상일 경우에는 3회까지 방문하여 지도를 하도록 정하고 있음

예방이라는 사업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산업보건보상정책관]

(1) 산재보험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4051-350)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산재보험급여' 사업(1964년 ~, 위탁)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노동자 및 그 유족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신속·공정하게 지급하여 산재노동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산재 장해급여자의 직업훈련 및 직장복귀 지원을 통해 사회복귀를 촉진하려는 사업임.

2025회계연도 계획현액 8조 43억 2,600만원 중 8조 43억 2,400만원(100.0%)이 집행되고, 2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산재보험급여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5년							2026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8,004,326	8,004,326	-	8,004,326	8,004,324	-	2	8,146,300

* 자료: 고용노동부

산재급여는 8종으로,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기간 중에 지급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요양 종료 후 지급하는 장해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 및 장례비가 있음.

[산재급여의 종류]

종류	내용
요양급여	· 4일 이상 요양 중인 산재환자에 대한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보조기의 지급, 처치, 수술 및 치료비(간병료 포함)
휴업급여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
장해급여	· 산재치료 종결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장해상태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 장해등급: 14등급 체계(1~3급은 연금으로만 지급, 4~7급은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가능, 8~14급은 일시금으로만 지급)
유족급여	·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 또는 사망추정 시 유족에게 지급 * 연금 :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365)의 52~67% ** 일시금 : 평균 임금의 1,300일분
간병급여	· 산재치료 종결 후 상시 또는 수시간병이 필요하여 실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상병보상연금	· 요양개시 이후 2년 이상이 경과하였으나,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중증요양상태 제1급~제3급에 해당하는 자에게 휴업급여 대신 지급
장례비	· 산업재해로 사망 시 장례를 지낸 유족 또는 유족이 아닌 자가 장례를 지낸 경우에는 그 장례를 지낸 자에게 지급 * 평균임금의 120일분(최고금액 17,241,680원, 최저금액 12,460,160원)
직업재활급여	· 제1급~제12급 장해판정(예정)자의 조기 직업복귀를 위한 직업훈련* 및 제1급~제12급 산재장해인을 원직장 복귀**, 직장적응훈련 실시 또는 재활운동 실시***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 * 훈련비(정부지원승인 훈련비 전액, 이외 기타 훈련은 연 600만원 이내) 훈련수당(최저임금 100%까지 차등지급) ** 제1급~제3급(80만원/월), 제4급~제9급(60만원/월), 제10급~제12급(45만원/월) *** 직장적응훈련(최대 45만원/월), 재활운동지원(최대 15만원/월)

* 자료: 고용노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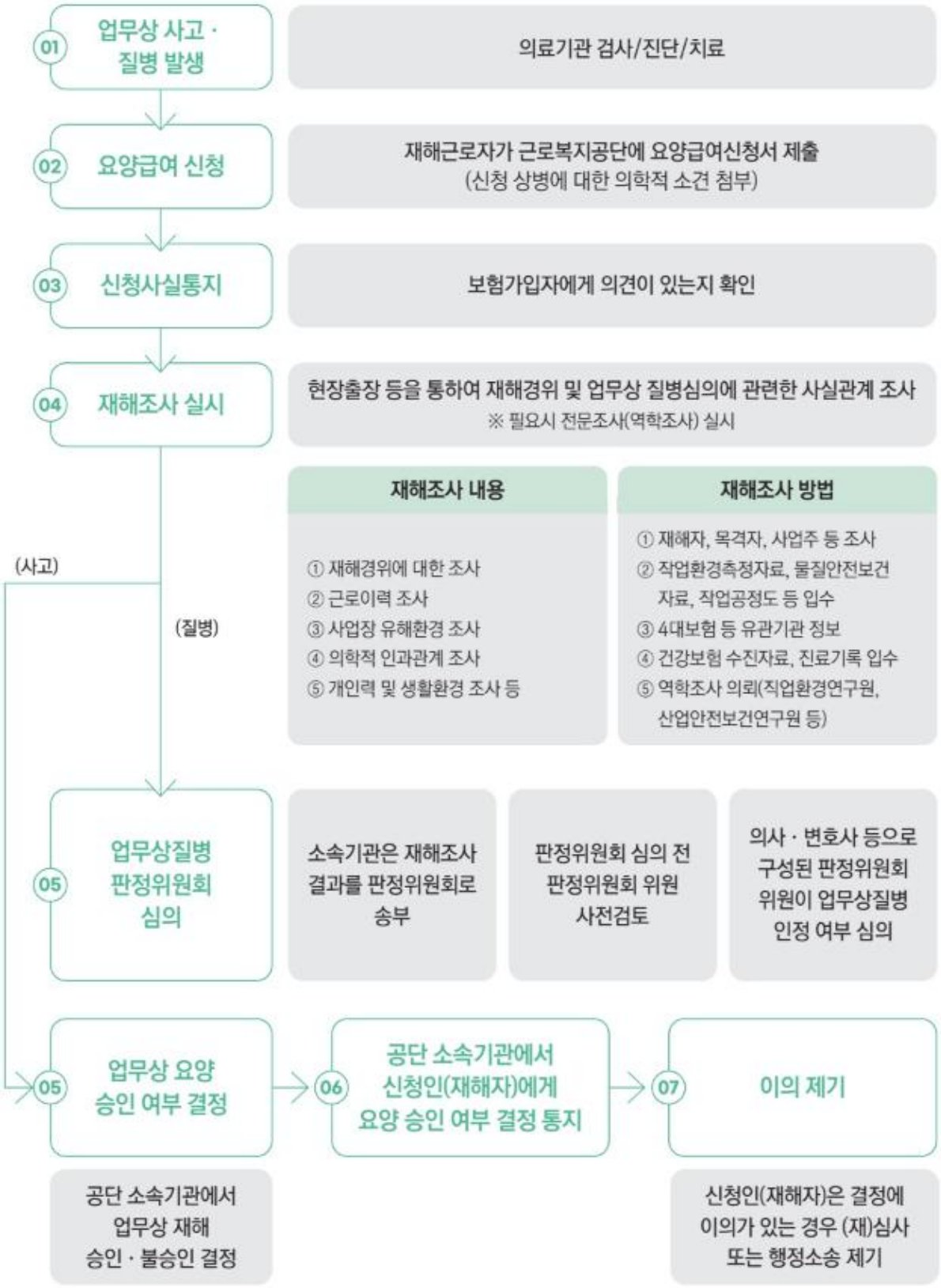
업무상 원인으로 근로자에게 부상, 질병, 장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각종 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의 심사에 따라 급여가 지급됨.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급여 심사 시 업무상 재해 여부를 확인하는데, 업무상 재해는 사고에 의한 경우와 질병에 의한 경우로 분류됨.

①**업무상 사고**의 경우 공단 직원이 관련자(사업주, 동료, 재해근로자 등) 진술서, 현장출장, 의료기록 확인을 통한 재해경위 조사 및 근로이력 확인 등의 '재해조사'를 실시한 뒤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요양승인 여부를 바로 결정하나,

②**업무상 질병**의 경우 재해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인정여부를 심의·결정하게 되며, 새롭게 등장한 질병이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는 직업병 등에 대해서는 재해조사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연구원(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또는 직업환경연구원(근로복지공단 소속)에 의뢰하여 작업환경측정, 시료분석, 문헌검토 등의 전문적인 조사인 역학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음.

[업무상 재해의 조사 절차]


01 업무상 사고 · 질병 발생
의료기관 검사/진단/치료
02 요양급여 신청
재해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 제출
(신청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 첨부)
03 신청사실통지
보험가입자에게 의견이 있는지 확인
04 재해조사 실시
현장출장 등을 통하여 재해경위 및 업무상 질병심의에 관련한 사실관계 조사
※ 필요시 전문조사(역학조사) 실시
재해조사 내용
① 재해경위에 대한 조사
② 근로이력 조사
③ 사업장 유해환경 조사
④ 의학적 인과관계 조사
⑤ 개인력 및 생활환경 조사 등
재해조사 방법
① 재해자, 목격자, 사업주 등 조사
② 작업환경측정자료, 물질안전보건 자료, 작업공정도 등 입수
③ 4대보험 등 유관기관 정보
④ 건강보험 수진자료, 진료기록 입수
⑤ 역학조사 의뢰(직업환경연구원,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등)
(사고)
(질병)
05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심의
소속기관은 재해조사 결과를 판정위원회로 송부
판정위원회 심의 전 판정위원회 위원 사전검토
의사 ·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판정위원회 위원이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심의
05 업무상 요양 승인 여부 결정
06 공단 소속기관에서 신청인(재해자)에게 요양 승인 여부 결정 통지
07 이의 제기
공단 소속기관에서 업무상 재해 승인 · 불승인 결정
신청인(재해자)은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사 또는 행정소송 제기

나. 산재 장기심사사건 업무처리기준 마련 등 산재 심사기간 단축 노력 필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르면, 요양급여의 지급 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요양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그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위 7일의 기간에는 공단의 재해조사 기간이 제외되어 있어[206] 실제 신청인 입장에서 산재 결정을 받기까지의 처리기간은 장기간이 소요됨.

실제 산재사건의 접수일부터 결정일까지 처리기간을 살펴보면, 2025년 기준 업무상 질병의 처리기간은 244.7일로 나타나며 지속적으로 소요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음.

20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21조(요양급여의 결정 등)** ① 공단은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요양급여를 지급할지를 결정하여 신청인(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한 경우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및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 7일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1. 판정위원회의 심의에 걸리는 기간
2. 법 제117조 및 법 제118조에 따른 조사에 걸리는 기간
3. 법 제119조에 따른 진찰에 걸리는 기간
4. 제20조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된 서류의 보완에 걸리는 기간
5. 제20조제2항에 따른 보험가입자에 대한 통지 및 의견 청취에 걸리는 기간
6.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역학조사나 그 밖에 필요한 조사에 걸리는 기간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할 때 필요하면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자문의사(이하 “자문의사”라 한다)에게 자문하거나 영 제43조에 따른 자문의사회의(이하 “자문의사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2021년~2025년 산재급여 처리소요일수 현황]

(단위: 건, 일)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업무상 질병	처리건수	24,871	28,796	31,666	38,219	50,946
	소요기간	175.8	182.0	214.5	227.7	244.7

* 자료: 고용노동부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조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요양업무처리규정」에 규정하고 있고, 뇌심혈관질병, 근골격계질병, 직업성 암, 감염병, 정신질병, 소음성 난청 등 질병별로 상세한 업무처리기준을 두고 있으나,[207] 해당 내규에서 '재해조사의 기간'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고용노동부는 개별·구체적 사정에 따라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처리기간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근로복지공단도 업무상 질병의 유형이 다양하고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처리기간에 관한 일률적인 기준을 설정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임.

다만, 다수의 사건이 접수되면서도 검사방식이나 심사 절차가 정형화되어 있어 진단·평가 소요기간이 타 질병에 비해 비교적 일률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상병군(群)[208]에 대하여는 각 진단·평가 단계별 평

207) 근로복지공단은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 근골격계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 직업성 암 재해조사 및 판단 요령, 감염병의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지침, 정신질병 업무관련성 조사 지침,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등을 마련하고 있음.

208) 예컨대 소음성 난청 사건의 경우 청력손상 여부를 확인하는 청력검사와 소음에 노출된 정도와 기간을 확인하는 소음노출력 조사가 주된 절차에 해당하는바 심사 절차가 정형화되어 있고 검사 대기기간을 단축하면 처리기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균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처리기간의 기준일수를 지정하고 그 기준을 도과하여 업무처리가 지나치게 장기화되는 장기 심사 사건에 대한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임.

또한, 위와 같은 업무처리기준이 마련되어야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의 우선 검진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우선 회부 등 심사 절차의 신속한 진행, 체계적인 처리실적 관리 등 실효적인 심사기간 단축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고, 신청인 측에서도 사건의 처리 상황 및 경과를 파악하기 위한 일응의 참고기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209)210)]

따라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검사나 심사 절차가 정형화되어 있는 산재사건부터 사건 처리기간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성과지표를 수립하며, 처리기간이 기준을 과도하게 도과한 장기심사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업무처리지침을 수립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 요양급여 신청자들이 산재 결정을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209) 법원의 경우 「장기미제사건관리에 관한 예규」(대법원 재판예규)에 따라 재판부의 재판장 또는 사법보좌관이 장기미제사건을 별도로 분류(소액사건 1년, 1심 본안 2년 6개월, 항소심 1년 6개월 초과 시)하여 지연사유와 처리계획을 기록한 사건기록카드를 매년 2월, 8월 두 차례 작성하고 이를 법원장에게 제출하며, 이 자료를 바탕으로 장기미제사건 통계표를 법원별로 작성하는 등 장기사건 관리 지침을 두고 있음.

210) 검찰청의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3개월이 경과된 사건에 대하여는 지연사건으로 보고 있고, 「고소·고발사건 처리 지침」(대검찰청예규)에 따라 수사기간 연장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수사기간 연장에 대하여는 부장검사 또는 지청장의 결재를 받도록 하는 등 장기사건에 대한 일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형사소송법」 제257조(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고객상담센터 》

[고객상담센터]

(1) 고객상담센터운영(일반회계, 7931-301)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고객상담센터운영’ 사업(2004~, 직접)은 고용·노동 분야 상담을 원하는 국민에게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1350’ 또는 인터넷(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속하고 종합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객상담센터 운영비에 지출되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25회계연도 예산액은 240억 4,000만원이었으나, 이·전용 등으로 1,100만원이 감액되어 예산현액은 240억 2,900만원이며, 이 중 239억 9,300만원이 집행되고 3,6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고객상담센터운영 사업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B)	이·전용 등 (C)	예비비	예산 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 고객상담센터 운영	24,040	24,040	-	△11	-	24,029	23,993	-	36	26,607

* 자료: 고용노동부

나. 공공요금 및 제세 비목의 연례적 조정 최소화 필요

2025년도 고객상담센터운영 사업의 공공요금 및 제세(210-02목) 예산액은 전년(5억 9,300만원) 대비 1억 4,100만원 증액된 7억 3,4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동 비목의 집행 내역을 보면, 예산액 중 2억 5,200만원을 조정 감액하여, 예산현액은 4억 8,200만원이 되었고, 이를 전액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공공요금 및 제세(210-02목) 비목 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등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 고객상담센터운영	24,040	24,040	-	△11	-	24,029	23,993	-	36	26,607
· 공공요금및제세(210-02)	734	734	-	△252	-	482	482	-	-	734

* 자료: 고용노동부

조정 감액된 2억 5,200만원의 세부 내역을 보면, 대법원 판례 변경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의 통상임금 인상으로 발생한 상용임금(110-03목)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1억 7,500만원을 자체전용하였고, 관리용역비(210-15목) 부족분 및 직원 경조사비 등 기타운영비(210-16목)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7,700만원을 세목조정하였음.

[공공요금 및 제세(210-02목) 비목 감액 조정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5.5.14)	고객상담센터 운영 (7931-301)	공공요금 및제세 (210-02)	70	고객상담센터 운영 (7931-301)	관리용역비 (210-15)	관리용역비 부족분 충당
자체전용 ('25.12.16)		공공요금 및제세 (210-02)	175		상용임금 (110-03)	공무직 통상임금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충당
세목조정 ('25.12.23)		공공요금 및제세 (210-02)	7		기타운영비 (210-16)	기타운영비 부족

* 자료: 고용노동부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공무직 근로자의 임금 체불 방지와 청사 안전 유지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전용 및 세목조정을 실시하였으나, 공공요금 체납 등 지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름철(7~8월)과 겨울철(12월~2월) 피크전력 관리 등을 통해 전력 사용량을 절감하고, 2025년 7월 도입된 SNS 채팅 상담시스템의 초기 상담 인입량이 당초 목표치를 하회함에 따라 서비스 이용료 불용이 발생하여, 공공요금 및 제세 비목 예산의 부족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함.

그런데 최근 3년간 고객상담센터운영 사업의 공공요금 및 제세 비목의 조정 내역을 보면, 2023년에는 7억 5,500만원 중 2억 4,000만원(31.8%), 2024년에는 5억 9,300만원 중 1억 3,200만원(22.3%), 2025년에는 7억 3,400만원 중 2억 5,200만원(34.3%)을 각각 감액 조정하여 관리용역비, 상용임금, 기타운영비 등의 부족분에 충당하는 등 공공요금

및 제세는 3년 연속 당초 예산액의 20% 이상이 다른 용도로 조정된 반면, 관리용역비는 같은 기간 매년 부족분이 발생하여 공공요금 및 제세 등 타 비목에서 증액한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 공공요금 및 제세(210-02목) 비목 조정 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당초 예산액(A)	감액 조정액(B)	증액 조정액	순감액 (C)	조정 후 예산현액	집행액	순감액률 (C/A)	주요 사용처
2023년	755	△240	-	△240	515	465	31.8	관리용역비 134, 일반수용비 90, 임차료 16
2024년	593	△135	3	△132	461	461	22.3	관리용역비 135, 임차료에서 공공요금으로 3 재조정
2025년	734	△252	-	△252	482	482	34.3	상용임금 175, 관리용역비 70, 기타운영비 7
합계	2,082	△627	3	△624	1,458	1,408	30.0	

* 자료: 고용노동부

특히, 2025년에는 공공요금 인상 전망과 SNS 채팅 상담시스템 도입에 따른 이용료 증가를 고려하여 전년도보다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을 1억 4,100만원 증액하였으나,[211] 실제로는 예산액의 3분의 1 이상을 감액하여 공무직 통상임금 인상 등에 사용하였음.

211) 고용노동부는 '25년 본예산 편성 당시 ① 글로벌 에너지 위기 지속 및 한전 적자 가중 등으로 인해 전기·가스·통신료 등 전반적인 공공요금 단가가 역대 최고치로 인상될 것이라는 대외적인 예측이 지배적이었고, 공공서비스 제공 및 청사 운영 중단(체납 등) 등 치명적인 행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당시 인상 전망치를 반영하였고, ② SNS채팅상담시스템 도입에 따른 상담원 연결 서비스 및 간편/본인인증 서버 이용료도 반영하여 '24년 593백만원('23년 755백만원 대비 △21.5%)이었던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예산을 '25년에는 734백만원으로 인상하여 편성하였다고 설명함.

공무직 통상임금 증가와 같이 편성 당시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매년 상당한 규모의 잔여 재원이 발생하는 동시에 관리용역비 등에서 반복적으로 부족분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목별 소요액 산정 시 실제 집행 수요를 보다 충실히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212]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 예산의 이·전용[213] 절차상 자율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다만, 절차적 신축성을 인정하더라도 「국가재정법」 제45조[214]는 예

212)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해제 등) ① 법 제2조 및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중앙책임운영기관과 조사연구형 기관, 교육훈련형 기관, 문화형 기관, 의료형 기관, 시설관리형 기관 및 기타 유형의 기관의 설치 및 구분은 별표1과 같고, …후략…

[별표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구분

구분	소속책임운영기관	중앙책임운영기관
… 중략 …		
기타 유형의 기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특허청

213)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예산의 전용) ① 기관장은「국가재정법」 제46조와 「정부기업예산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계의 계정별 세출예산 또는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각각의 총액 범위에서 각 과목 간에 전용(轉用)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25, , p. 72

7-5. 예산 이·전용의 특례

○ 중앙관서의 장은 책임운영기관 예산집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 본지침상의 자체 이용권 위임범위에도 불구하고 예산총칙의 범위내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자체 이용할 수 있다.

- 중앙관서의 장이 이용한 때에는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예산 집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 본 지침상의 전용권 위임범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100목)와 물건비(200목)간 상호 자체 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다.

-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전용한 때에는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당해기관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결산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되어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환류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례적으로 조정을 통해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는 행태는 개선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는 최근 공공요금 집행실적, 관리용역 계약금액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예산 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공요금및제세의 과다 편성을 방지하고 반복적으로 부족분이 발생하는 관리용역비 등은 적정 규모를 본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연례적인 조정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214)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 중앙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1) 노동위원회청사관리(일반회계, 7036-306)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노동위원회청사관리’ 사업(1998년~, 직접)은 노동위원회 청사·숙소의 안정적 확보 및 관리를 통해 사무환경을 개선하고, 민원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한 사업임.

동 사업의 2025회계연도 예산액은 22억 3,000만원이었으나, 전용으로 1억 2,200만원이 감액되어 예산현액은 21억 800만원이 되었으며, 이 중 20억 6,600만원을 집행하고, 4,1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노동위원회청사관리 사업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B)	이·전용 등 (C)	예비비	예산 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 노동위원회 청사관리	2,230	2,230	-	△122	-	2,108	2,066	-	41	2,276
▪ 기존 청·관사 유지관리	2,080	2,080	-	△122	-	1,958	1,919	-	38	
▪ 노후시설개선·장비교체	150	150	-	-	-	150	147	-	3	150

* 자료: 고용노동부

나. 연례적인 관사 임차보증금 과다 편성 및 전용 재원 활용 개선 필요

노동위원회의 직원 관사 운영 현황을 보면, 2025년말 기준 중앙·부산·경기·충남·전남·경북·경남·울산·강원·충북·전북 등 11개 관서에서 총 38명이 입주 가능한 26개소의 관사를 임차하여 운영 중임.

[노동위원회 직원 관사 운영 현황]

(단위 : 명, ㎡, 천원)

관서명	소재지	사용 인원	면적	보증금(임차료)	임차 기간
중앙	세종	1	84	241,500(575)	'25.11.1.~'27.10.31.
부산	부산 해운대구	1	59	220,000(0)	'25.8.17. ~'27.8.16.
	부산 금정구	1	59	85,000(200)	'24.3.20. ~'26.3.19.
	부산 금정구	1	20	70,000(0)	'25.4.14. ~'27.4.13.
경기	경기 수원시	2	49	30,000(840)	'25.2.23. ~'27.2.22
	경기 수원시	2	49	20,000(870)	'25.2.24. ~'27.2.23.
충남	대전 서구	1	84	118,000(700)	'25.8.20. ~'27.8.19.
	대전 서구	1	59	195,000(0)	'25.5.15. ~'27.5.14.
전남	광주 서구	1	44	50,000(0)	'05.3.16~
	광주 광산구	1	84	246,000(0)	'24.10.24.~'26.10.23.
	광주 북구	2	65	99,600(550)	'24.4.21. ~'26.4.20.
경북	대구 수성구	1	84	200,000(100)	'25.9.11. ~'27.9.12.
	대구 수성구	2	59	201,000(150)	'25.5.21. ~'27.5.20.
경남	경남 창원시	2	59	100,000(400)	'25.4.7.~'27.4.6.
	경남 창원시	1	79	100,000(600)	'25.5.25.~'27.5.24.
울산	울산 남구	1	59	200,000(0)	'25.4.7. ~'25.12.22.
	울산 남구	2	72	1,250,000(0)	'25.3.16. ~'27.3.15.
	울산 남구	1	27	50,000(0)	'25.11.15. ~'27.11.14.
강원	강원 춘천시	1	84	50,000(850)	'24.2.9. ~'26.2.8.
	강원 춘천시	3	59	110,000(0)	'25.11.21. ~'27.11.20.
	강원 춘천시	1	29	3,000(420)	'25.12.16. ~'27.12.15.
	강원 춘천시	1	19	90,000	'23.12.31. ~'25.12.30.
충북	충북 청주시	1	80	150,000(470)	'25.8.31. ~'27.8.30.
	충북 청주시	1	49	10,000(500)	'24.8.9. ~'26.8.8.
전북	전북 전주시	1	84	50,000(600)	'25.12.13. ~'27.12.12.
	전북 전주시	1	49	0(650,000)	'25.2.23. ~'27.2.23.

* 주: 2025년말 기준
* 자료: 중앙노동위원회

관사 임차보증금은 내역사업인 '기존 청·관사 유지관리' 사업의 무형자산(440-00목) 비목으로 편성되어 있음. 2025년 관사 임차보증금의 집행 내역을 보면, 당초 예산은 1억 5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이 중 6,000만원만 집행하였고, 예산액의 42.9%인 4,500만원은 소송 패소 배상금 부족분에 충당하기 위해 전용 감액하였음.

[2025년 관사 임차보증금 세부 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용액	집행액	세부 내역		비고
관사 임차보증금	105	△45	60	50	부산지노위 관사 전세 계약 보증금	2025.4월 집행
				10	부산지노위 관사 재계약 증액보증금	2025.8월 집행

* 자료: 중앙노동위원회

그런데 이러한 전용 감액은 최근 3년간 연도별 관사 임차보증금 결산에서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음. 2023년에는 예산액 1억 7,800만원 중 1억 800만원(60.7%), 2024년에는 3억원 중 5,800만원(19.3%), 2025년에는 1억 500만원 중 4,500만원(42.9%)이 각각 소송 패소 배상금[215]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 전용되었음.

215) 세부사업: 노동위원회전문성강화(7039-309)

[2023~2025년 연도별 관사 임차보증금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	예산액(A)	전용액(B)	예산현액	집행액	전용비율(B/A)
2023	178	△108	70	70	60.7%
2024	300	△58	242	242	19.3%
2025	105	△45	60	60	42.9%

* 자료: 중앙노동위원회

[2023~2025년 연도별 관사 임차보증금 전용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3.11.30.)	노동위원회 청사관리 (7036-306)	무형자산 (440-00)	△108	노동위원회 전문성강화 (7039-309)	배상금 (310-02)	소송 패소 배상금 부족
자체전용 ('24.11.01.)	노동위원회 청사관리 (7036-306)	무형자산 (440-00)	△58	노동위원회 전문성강화 (7039-309)	배상금 (310-02)	소송 패소 배상금 부족
전용 ('25.9.30.)	노동위원회 청사관리 (7036-306)	무형자산 (440-00)	△45	노동위원회 전문성강화 (7039-309)	배상금 (310-02)	소송 패소 배상금 부족

* 자료: 중앙노동위원회

이는 관사 임차보증금 예산이 실제 소요보다 과다 편성되어 집행 후 잔액이 반복적으로 다른 사업의 전용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향후 실제 관사 운영계획과 임차 수요를 보다 면밀히 반영하고, 임차보증금 예산의 반복적 전용을 개선하는 등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음.

(2) 노동위원회전문성강화(일반회계, 7039-309)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노동위원회전문성강화' 사업(2005년~, 직접)은 노동위원회 위원 및 조사관의 역량강화, 부문별 위원회 운영, 노사분쟁 조정기능 지원, 송무수행 및 이행강제금 반환 등을 위한 사업임.

동 사업의 2025회계연도 예산액은 88억 9,8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2,000만원과 전용 증액 5억 6,1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94억 7,900만원이 되었으며, 이 중 92억 4,000만원을 집행하고, 4,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9,8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노동위원회전문성강화 사업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B)	이·전용 등 (C)	예비비	예산 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 노동위원회 전문성강화	8,898	8,898	20	561	-	9,479	9,240	40	198	9,645
▪ 위원 및 조사관 역량강화	400	400	-	△16	-	384	369	-	14	400
▪ 부문별 위원회 운영	7,013	7,013	-	539	-	7,552	7,503	-	48	7,660
▪ 고용노사분쟁 조정·화해기능강화	785	785	20	△9	-	796	721	40	35	785
▪ 송무수행	700	700	-	47	-	747	647	-	100	800

* 자료: 고용노동부

나. 회의수당 등 미지급금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반 집행 시정 필요

내역사업인 ‘부문별 위원회 운영’ 사업은 노동위원회의 부문별 위원회에 참여하는 외부 위원에 대한 회의수당, 안건검토비 지급 및 공인노무사·민간경력자를 활용한 초기상담 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에는 회의수당 및 안건검토비 67억 3,200만원, 회의참석 교통비 1억 3,100만원 등을 포함하여 총 75억 300만원을 집행하였음.

[2025회계연도 부문별 위원회 운영 사업 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증감액	예산현액	집행액
계	7,013	539	7,552	7,503
회의수당 및 안건검토비	6,192	541	6,733	6,732
중노위 회의참석 교통비	65	66	131	131
차별시정전문위원 및 권리구제지원 인건비	724	△51	673	627
권리구제지원팀 설치 및 운영비	25	△20	5	5
회의운영비 등	7	2	9	9

* 자료: 중앙노동위원회

최근 3년간 노동위원회의 사건처리 실적을 보면, 사건 접수는 2023년 2만 1,691건에서 2024년 2만 4,265건, 2025년 2만 6,806건으로 증가하였고, 처리 건수도 같은 기간 1만 8,955건에서 2만 2,680건으로 증가하는 등 노동위원회의 사건처리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조정회의 및 심판회의 개최 건수도 2023년 1만 1,547건에서 2024년 1만 2,099건, 2025년 1만 2,764건으로 증가하였음.

[최근 3년간 노동위원회 사건처리 실적]

(단위: 건)

구분	접수	처리										
		합계	노동쟁의 조정(調整)				복수노조	심 판				차별시정
			소계	조정(調停)	중재	필수유지		소계	부노	부해	기타	
2023년	21,691	18,955	1,097	1,056	20	21	696	16,984	823	15,816	345	178
2024년	24,265	21,389	1,014	996	8	10	547	19,620	778	18,619	223	208
2025년	26,806	22,680	999	978	8	13	391	21,077	718	20,176	183	213

* 자료: 중앙노동위원회

[최근 3년간 조정회의 및 심판회의 개최 건수]

(단위: 건)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조정	심판	계	조정	심판	계	조정	심판	계
합계	1,902	9,645	11,547	1,727	10,372	12,099	1,827	10,937	12,764
중 앙	362	1,863	2,225	355	1,949	2,304	349	1,797	2,146
지노위	1,540	7,782	9,322	1,372	8,423	9,795	1,478	9,140	10,618

* 회의개최 건수: 조정회의, 심판회의(고발, 재처분, 이행강제금 회의 제외) 안건 수 기준
* 자료: 중앙노동위원회

사건처리 및 회의 개최 증가에 따라 회의수당 및 안건검토비 소요 역시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3년간 회의수당 및 안건검토비 집행 현황을 보면, 연례적으로 당초 예산편성액을 초과한 집행이 반복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소요액을 당해연도 예산으로 충당하지 못해 미지급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해당 미지급금은 다음연도 예산으로 이월하여 집행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음.

2025년의 경우 회의수당 등은 예산편성액 61억 9,200만원 대비 8억

5,000만원(13.7%)을 초과한 70억 4,200만원이었으나, 이 중 연내 집행액은 67억 3,200만원에 그쳤고, 나머지 3억 1,000만원은 재원 부족으로 2026년에 지급되었음.

이처럼 회의수당 및 안건검토비가 매년 당초 예산만으로는 실제 소요를 충당하지 못하여 전용 등을 통해 초과 집행하고, 이에 더하여 다음 연도 예산을 통해 이월 집행하는 행태가 반복되는 것은, 사건 접수 및 회의 개최 증가에 따른 실제 소요를 예산 편성 시에 반영하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음.

실제로 노동위원회의 사건 접수는 2024년 2만 4,265건에서 2025년 2만 6,806건으로, 조정·심판회의 개최 건수도 같은 기간 1만 2,099건에서 1만 2,764건으로 증가하였음에도 2024년과 2025년의 예산편성액은 동일한 수준(61억 9,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실제 소요와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최근 3년간 회의수당 및 안건검토비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편성액	회의수당 등 발생액	연내 집행액	연내 미집행액
2023년	5,535	6,491	6,012	479
2024년	6,192	6,741	6,338	403
2025년	6,192	7,042	6,732	310

* 자료: 중앙노동위원회

「국가재정법」 제3조[216]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

216)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

며, 같은 법 제48조[217]는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으나, 명시이월비 등 법령으로 정하는 경비에 한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및 세출예산의 이월 제한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세출을 명확히 구분하려는 것으로, 정부의 예측 가능한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국민과 국회가 정부의 재정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따라서 실제 발생한 회의수당 및 안건검토비를 당해연도 예산으로 충당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 예산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반복되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소지가 있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건 접수 및 회의 운영 실적, 회의수당 등의 실제 발생 규모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함으로써 미지급금의 다음 연도 예산 집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217)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1. 명시이월비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5.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노동위원회 심판 · 조정위원 1회 회의참석에 따른 수당 지급금액]

구분	최소액	최대액	비고
조정회의	13만원	58만원	1) 회의수당(13만~30만): 2시간 미만 13만원, 2시간 이상 18만원, 4시간 초과 시 추가 수당 초과 1시간당 2만원, 1일 최대 30만원 2) 안건검토비(18만): 안건 1건당 18만원, 최초 1회만 지급 3) 수락보수(2~10만): 조정안 제시 2만원, 수락 시 8만원(미수락시 2만원 지급)
심판회의	19만원	68만원	1) 회의수당(13만~22만): 2시간 미만 13만원, 2시간 이상 18만원, 4시간 초과 시 추가 수당 초과 1시간당 2만원(1일 최대 6시간 회의) 2) 안건검토비(공익위원 기준, 6만~34만): 안건 1건당 6만원, 1일 최대 안건 5건, 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쟁점사건 2만원 추가 3) 판단요지(0~12만): 판단요지 1건당 4만원, 1일 최대 3건

* 자료: 중앙노동위원회, 회의수당 및 안건검토비 등 집행지침 회의수당일람표

(3) 노동위원회정보화운영(정보화)(일반회계, 7039-502)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노동위원회정보화운영(정보화)' 사업(2002년~, 직접)은 노동위원회의 조정·심판업무의 정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임.

동 사업은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72억 7,600만원 중 46억 300만원을 집행하고, 디지털 노동위원회 1차 구축 계약 미완료로 인해 26억 4,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5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노동위원회정보화운영(정보화) 사업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B)	이·전용 등 (C)	예비비	예산 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 노동위원회정보화운영(정보화)	7,276	7,276	-	-	-	7,276	4,603	2,648	25	2,959
▪ 정보시스템운영 유지보수	539	539	-	-	-	539	537	-	2	665
▪ 원격영상심문회의 시스템구축	506	506	-	-	-	506	484	-	23	506
▪ 디지털노동위원회 구축	6,231	6,231	-	-	-	6,231	3,582	2,648	-	1,788

* 자료: 고용노동부

나. 영상회의 활용 실적 제고 방안 마련 필요

내역사업인 ‘원격영상심문회의시스템 구축’ 사업은 원거리 거주자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등을 가해자와 분리해 안전하게 조사할 수 있는 원격영상심문회의 개최를 위한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2025년에는 예산액 5억 600만원 중 4억 8,400만원을 집행하였음.

[2025회계연도 원격영상심문회의시스템 구축 사업 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원격영상심문회의 시스템 구축	506	484	22

* 자료: 중앙노동위원회

원격영상심문회의시스템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사건을 대상으로 하며, 초심을 담당한 지방노동위원회의 영상심판정과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을 영상으로 연결하여 심문회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사건 이해당사자는 관할 또는 인근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정 지방노동위원회에 마련된 영상회의실에 출석하여 참여할 수 있음. 「노동위원회규칙」상 원격영상회의는 노동위원회의 중계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218] 개인용 컴퓨터, 노트북, 휴대전화 등 인터넷 기반의 원격 참여는 허용되지 않고 있음.

218) 「노동위원회규칙」 제11조의2(원격영상회의) ① 원격영상회의는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에 출석하게 하고, 영상과 음향의 송수신에 의하여 심판위원회 위원,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이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이하 생략)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년 2건(중앙 2심판정, 경기), 2024년 3건(중앙 1심판정, 서울, 부산), 2025년 4건(중앙 3심판정, 전남, 강원, 제주)의 원격영상심문회의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2026년 4건(중앙 4심판정, 경남, 울산, 인천), 2027년 4건(충남, 충북, 전북, 경북)을 추가로 구축하여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총 17건을 완료할 계획임.

[연도별 원격영상심문회의시스템 구축 계획]

(단위 : 백만원)

년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예정)	2027년(예정)
구축예산	346	403	483	506	446
구축건수	2건 (중앙 2심판정, 경기)	3건 (중앙 1심판정, 서울, 부산)	4건 (중앙 3심판정, 전남, 강원, 제주)	4건 (중앙 4심판정, 경남, 울산, 인천)	4건 (충남, 충북, 전북, 경북)
누적구축율 (구축/전체)	11% (2/17)	29% (5/17)	52% (9/17)	76% (13/17)	100% (17/17)

* 주: 2026년 6월말 기준
* 자료: 중앙노동위원회

2026년 6월 현재 기준, 중앙노동위원회, 경기·부산·서울·전남·강원·제주지방노동위원회 등 총 7개 기관의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어 영상회의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중앙노동위원회(4심판정), 울산·경남·인천지방노동위원회 심판정에 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 중임.

[원격영상심문회의 운영 현황]

현황	설치기관	설치장소	비고
운영중 (7개소, 9식)	중앙노동위원회(3식)	1,2,3 심판정	'23.11.~'25.9. 구축완료 '25. 9. 이후 서비스 운영중
	경기지방노동위원회	3심판정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심판정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역 회의실 심판정, 화해의방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심판정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심판정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심판정	
신규구축 (4개소, 4식)	중앙노동위원회	4심판정	'26. 12. 구축예정 '27. 1. 이후 서비스 운영목표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심판정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심판정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심판정	

* 자료: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의 원격영상심문회의 시스템 활용 현황을 보면, 2024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총 185회의 영상심문회의가 개최되었으며, 2024년(7~12월) 18회, 2025년 67회, 2026년(1~6월) 100회 등으로 매년 시스템 활용 실적이 개선되고 있음.

[연도별 원격영상심문회의 운영 실적]

(단위 : 회)

회의월		합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회의 건수	2024년	18	-						2	2	1	3	4	6
	2025년	67	3	7	5	3	3	5	3	3	10	6	12	7
	2026년	100	12	14	23	19	16	16	-					
합계		185	-											

* 자료: 중앙노동위원회

그런데 각 지방노동위원회별 활용 실적을 보면, 전체 185회 중 서울이 175회(94.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경기 5회(2.7%), 부산 3회(1.6%), 제주 2회(1.1%) 순이며, 전남·강원은 활용 실적이 없음.

[지방노동위원회별 원격영상심문회의 활용 실적]

(단위 : 회)

구분	계	서울	부산	경기	전남	강원	제주
합계	185	175	3	5	0	0	2
'24.7월	2	-	-	2	미설치 기간		
8월	1	1	-	-			
9월	1	1	-	-			
10월	3	3	-	-			
11월	4	3	-	1			
12월	7	6	1	-			
'25.1월	2	2	-	-			
2월	5	4	1	-			
3월	3	3	-	-			
4월	2	2	-	-			
5월	2	1	1	-			
6월	3	3	-	-			
7월	2	-	-	2			
8월	0	-	-	-			
9월	7	7	-	-	-	-	-
10월	1	1	-	-	-	-	-
11월	9	9	-	-	-	-	-
12월	11	11	-	-	-	-	-
'26.1월	12	12	-	-	-	-	-
2월	14	14	-	-	-	-	-
3월	23	23	-	-	-	-	-
4월	19	17	-	-	-	-	2
5월	16	16	-	-	-	-	-
6월	16	16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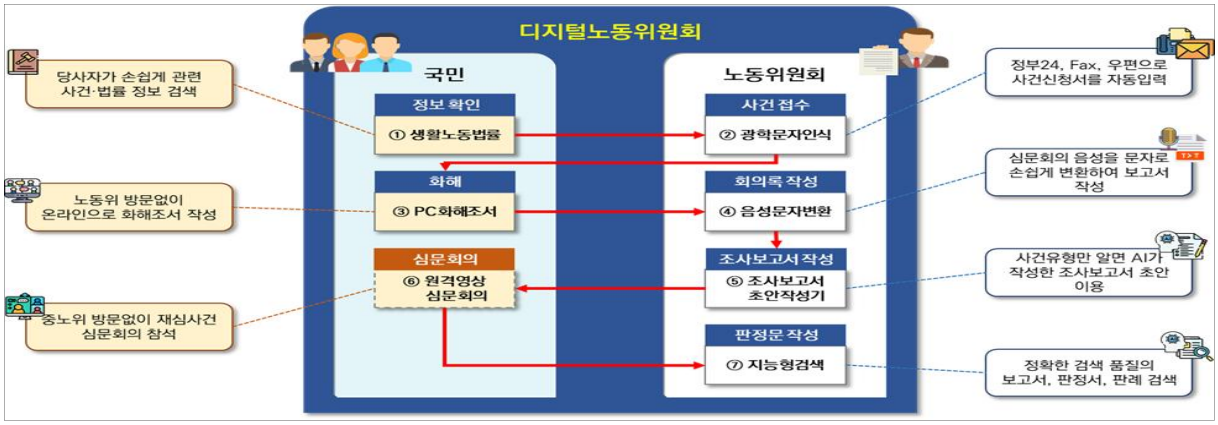
* 주: 2026년 6월말 기준
* 자료: 중앙노동위원회

이처럼 시스템 구축이 확대되고 있는 것에 비해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운영되고 있어 활용 수준이 제한적인 만큼, 중앙노동위원회는 향후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영상심문회의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 디지털노동위원회 구축 예산 이월 과다

내역사업인 ‘디지털노동위원회 구축’ 사업은 생성형 AI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하여 노동분쟁 조사·심판 업무를 지원하고 조사행정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노동위원회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임(2025~2027년).[219]

[AI 디지털노동위원회 서비스 흐름]



* 자료: 중앙노동위원회

동 사업은 2025년에 1차연도 예산액 62억 3,100만원 중 35억 8,200만원을 집행하고 26억 4,8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률이 57.5%에 그쳤음.

219) 【 연차별 구축 방안 】

1차 기반구축('25년)	2차 기능확장('26년)	3차 고도화('27년)
■ AI 등 디지털 신기술 활용한 업무혁신 * 조사보고서 초안 작성 등 ■ 조사행정 시스템 고도화 * 전자송달 활성화, 우편 연계 등 ■ 디지털플랫폼 전환 기반 마련 * 데이터·프레임워크 표준화 등	■ AI 기반 업무 구조화 * 판정서 검증, 조사계획서 작성 등 ■ 조사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 행정정보시스템 연계, 통계 강화 등 ■ 디지털플랫폼 기반 강화 * 신규 DB 구축, 서버 용량 확보 등	■ AI 활용 고도화 ■ 조사행정 시스템 고도화 ■ 데이터 개방

[2025회계연도 디지털노동위원회 구축 사업 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액(A)	집행액(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B/A)
디지털노동위원회 구축	6,231	3,582	2,648	-	57.5
- 일반연구비(260-01)	4,279	3,189	1,090	-	74.5
- 자산취득비(430-01)	1,952	393	1,558	-	20.1

* 자료: 중앙노동위원회

계약 건별 이월 현황을 보면, AI디지털노동위원회 구축 ①조사행정 시스템 고도화, ②지능형서비스 구축 및 ③감리·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은 각각 2025년 7월 또는 8월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 종료일을 2026년 7월 또는 8월로 설정하였고, 이에 따라 계약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잔금 총 13억 6,6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음. 또한, ④국정자원(국가정보자원관리원) HW 및 시스템 SW 위임발주 사업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으로 12억 8,100만원 전액이 이월된 것으로 나타남.

[AI 디지털노동위원회 관련 계약 체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계약 기간	예산 현액	공고 금액	계약 금액	집행 금액	이월 금액	이월 사유
①AI디지털노동위원회 (조사행정시스템고도화) 구축 1차	'25.7.4. ~ '26.7.4.		2,888	2,885	2,020	865	잔금 30%
② AI디지털노동위원회 (지능형서비스) 구축 1차	'25.7.7. ~ '26.7.7.		1,533	1,518	1,063	455	잔금 30%

구분	계약 기간	예산 현액	공고 금액	계약 금액	집행 금액	이월 금액	이월 사유
③ AI디지털노동위원회 구축 1차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25.8.13. ~ '26.8.13.	6,231	190	153	107	46	잔금 30%
④ 국정자원 H/W 및 시스템 S/W 위임발주	'25.9.24. ~ '26.6.11.		1,281	1,281	-	1,281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위임발주 계약기간(종료일) 변경('25.12.12. →'26.6.11.)
⑤ AI디지털노동위원회 구축 1차 사업 상용 SW 구매	'25.11.6. ~ '25.12.6.		228	228	228	-	-
⑥ AI디지털노동위원회 구축 1차 개발서버 구매	'25.7.14. ~ '25.8.13.		19	19	19	-	-
⑦ AI디지털노동위원회 구축 1차 사업 개발환경 라이선스 구매	'25.12.11 ~ '26.1.10.		-	145	145	-	-
합계			6,139	6,231	3,582	2,648	-

* 자료: 중앙노동위원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은 예측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으로 볼 수 있으나, 주요 구축사업의 계약이 회계연도 중반 이후에 체결되고 사업기간이 다음 회계연도까지 장기간 이어지도록 설계됨에 따라 상당한 규모의 이월이 계약 단계에서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임.

아울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매년 중앙부처에 필요한 정보자원의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중앙부처별 필요한 HW 및 시스템 SW를 위임발주하고 있음.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위임구매 사업이

상·하반기로 나누어 추진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하반기에 구매를 추진함에 따라 정보자원 확보 일정이 지연된 측면이 있어 보임.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업 낙찰차액(5,400만원) 및 집행잔액(9,1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당초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던 라이선스 구매에 1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음.

[AI 디지털노동위원회 구축 1차 개발환경 라이선스 구매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비목	금액	구매처	비고
전자문서 위·변조 방지	자산취득비(430-01)	26	보이스아이 주식회사	조달쇼핑몰 구매
PDF 스트리밍	자산취득비(430-01)	47	(주)이파피루스	조달쇼핑몰 구매
PDF 변환	자산취득비(430-01)	26	(주)이파피루스	조달쇼핑몰 구매
DB 암호화	자산취득비(430-01)	40	(주)케이사인	조달쇼핑몰 구매
NAS	자산취득비(430-01)	6	(주)비인텍	수의
합계		145		

* 자료: 중앙노동위원회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220]은 정보화사업의 낙찰차액을 원칙적으로 불용 처리하되, 정보시스템의 보안 강화, 개인정보 보호 강화, 감리비, 조달수수료, 디지털서비스 이용료 등 공공요금의 부족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발환경 라이선스 구매 품목 중 전자문서 위·변조 방지 및 DB 암

220)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25, p. 86

호화는 보안 강화 목적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사업 종료 단계에서 당초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던 개발환경 라이선스를 잔여 재원을 활용하여 추가 구매한 것은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필요한 개발 소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다년도 정보화 사업의 연차별 과업 범위와 소요기간을 보다 면밀히 계획하고, 사전절차 및 발주 일정을 조기에 추진하여 일정 지연으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 및 사업비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 경제사회노동위원회운영(일반회계, 7040-307)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경제사회노동위원회운영’ 사업(1998년~, 직접)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221]에 따라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주요 고용·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사회정책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통령 자문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25회계연도 예산액은 39억 500만원이며, 이 중 38억원이 집행되었고, 1억 500만원이 불용되었음.

221)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사용자 등 경제·사회 주체 및 정부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고용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사회 정책 등을 심의·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 요청에 응하기 위하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기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5회계연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운영 사업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B)	이·전용 등 (C)	예비비	예산 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 경제사회노동 위원회운영	3,905	3,905	-	-	-	3,905	3,800	-	105	4,670
▪ 회의체등운영	1,375	1,375	-	-	-	1,375	1,348	-	27	1,777
▪ 사무처운영	564	564	-	-	-	564	550	-	14	651
▪ 청사관리비	1,303	1,303	-	-	-	1,303	1,296	-	7	1,514
▪ 인건비	664	664	-	-	-	664	606	-	58	727

* 자료: 고용노동부

나. 공식 회의체 운영실적 저조에 따른 예산 집행의 적정성 미흡 재발 방지 필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위원회 소관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본위원회, 본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검토·조정 등 본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운영위원회, 주요 노동의제와 업종별[222] 현안과 관련한 의제별·업종별위원회, 청년·여성·비정규직 등 사회 각 계층과 관련한 계층별 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등의 각종 회의체로 구성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회의체 구성]



* 자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25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회의 개최실적을 보면, 당초 215회 개최를 계획하였으나 실제 개최 실적은 144회로, 목표달성율이 66.9%에 그쳤으며, 내역사업인 '회의체 등 운영' 사업에 반영된 회의 참석수당, 안건검토비, 원고료 등 회의 관련 예산 역시 예산액 5억 5,715만원 중

222) 해운, 버스운송, 금융, 공공, 자동차, 조선, 민간서비스, 보건의료, 건설, 전자, 제조 등

3억 8,118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68.4%로 나타났음.

[2025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회의 개최 및 관련 예산 집행 내역]

(단위 : 회, 천원)

회의명	회의 개최		예산 집행					
	계획	실적	2025 예산	2025결산				
				합계	참석수당	안건검토비	원고료	운영비
합계	215	144	557,150	381,176	153,720	4,900	30,095	192,461
의제개발조정위원회	15	3	14,250	1,933	1,300	0	0	633
이행점검위원회[223]	4	2	14,400	5,697	2,300	1,200	0	2,197
의제별위원회	48	23	138,000	31,337	18,240	900	2,280	9,917
특별위원회	15	4	37,500	9,552	4,000	0	240	5,312
경사노위 법률자문단	0	2	0	2,190	1,600	0	0	590
인공지능(AI)과 노동 연구회	12	22	18,200	53,317	38,450	1,600	6,525	6,742
노사정포럼, 워크샵, 토론회	3	88	24,800	277,150	87,830	1,200	21,050	167,070
본위원회	6	0	25,500	0	0	0	0	0
운영위원회	10	0	9,500	0	0	0	0	0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224]	12	0	35,000	0	0	0	0	0
업종별위원회	30	0	86,000	0	0	0	0	0
계층별위원회	60	0	154,000	0	0	0	0	0

* 자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회의체별로 살펴보면, 본위원회(계획 6회→실적 0회), 운영위원회(10회→0회),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12회→0회), 업종별위원회(30회→0회), 계층별위원회(60회→0회) 등 5개 위원회는 연중 단 한 차례도 개

223)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6조 및 운영세칙 제5조에 따라 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등을 위해 운영위원회 아래 설치·운영

22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설치·운영

최되지 않아 편성 예산 3억 1,000만원이 전액 집행되지 않았음. 특히 본위원회와 운영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임에도 회의 개최 실적이 전무하였음.

또한, 의제개발조정위원회(계획 15회→실적 3회, 20.0%), 특별위원회(계획 15회→실적 4회, 26.7%), 의제별위원회(계획 48회→실적 23회, 47.9%), 이행점검위원회(계획 4회→실적 2회, 50.0%) 역시 개최 실적이 계획에 미치지 못하였음.

반면, 인공지능(AI)과 노동 연구회는 계획 12회에서 22회로 확대 개최되어 예산 집행액(5,332만원)이 당초 예산(1,820만원)의 3배 수준에 달하였고, 워크샵·토론회·간담회 등의 경우에는 계획 3회에서 88회로 증가하면서 예산도 당초(2,480만원) 대비 1,117.5%(2억 7,715만원) 집행되었으며, 당초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법률자문단도 2회 개최되어 219만원이 집행되었음. 이들 세 항목의 초과집행 규모는 약 2억 8,966만원으로, 본위원회 등 미개최 위원회의 미집행 예산 규모와 상당 부분 대응됨.

이에 대하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중단을 선언하면서 본위원회 등 공식 회의체 운영이 불가한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AI 등 미래 사회적 대화 의제 발굴에 집중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225]

225) 아울러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복귀를 선언하고 새 정부가 출범한 2025년 6월 이후에는 노동자·사용자단체와 앞으로의 위원회 운영 방향 및 차기 본위원회 개최를 협의하는 동시에 사회 각층의 전문가, 현장·지역의 노·사단체 등을 지속적으로 만나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핵심 의제

다만,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공식 의사결정기구의 운영이 사실상 중단된 반면, 연구회와 포럼·토론회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당초 사업계획과 실제 집행 간 괴리가 크게 발생하였다는 점은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으로 보임.

「국가재정법」 제46조[226]는 전용 시 '사업 간 유사성·시급한 필요성·기관운영 필수경비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5조[227]는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 경비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동 사업의 집행은 법률에 따른 전용의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예산이 당초 편성된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법률의 기본 취지를 고려할 때, 사업 내용과 집행 규모 측면 모두 사업계획과 실제 집행간 차이가 상당 부분 발생하였다는 점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임. 따라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향후 사업 목적과 예산 편성 취지에 부합하도록 집행의 적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를 발굴하고 의제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2026년 3월 19일 제16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를 통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본격 재개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226)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27)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 회계연도 종료 직전 정부광고의 집행 편중 개선 필요

2025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대국민 광고 예산은 6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228] 정부광고 집행 내역을 보면, 사회적 대화 필요성 홍보, 토론회 및 국제컨퍼런스 개최 안내, 위원회 이미지 제고 등을 목적으로 신문·인터넷 매체를 통해 총 13건, 8,954만원을 집행하였음.

[2025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정부광고 집행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매체명	광고명	광고료	수수료	총계	광고 시작일	광고 종료일
인쇄	매일노동뉴스	노사관계 해법 대토론회 광고	1,100	110	1,210	2025 0324	2025 0324
인터넷	이데일리	의제 논의 촉진 광고	5,500	550	6,050	2025 0428	2025 0527
인쇄	매일노동뉴스	사회적 대화 필요성 광고	1,100	110	1,210	2025 0630	2025 0630
인쇄	참여와혁신	사회적 대화 필요성 광고	1,100	110	1,210	2025 0701	2025 0731
인쇄	한국일보	AI 전환과 노동의 미래 토론회 광고	8,800	880	9,680	2025 0715	2025 0715
인쇄	한국일보	복합전환의 시대 국제 컨퍼런스 광고	11,000	1,100	12,100	2025 1208	2025 1208
인쇄	한겨레	복합전환의 시대 국제 컨퍼런스 광고	11,000	1,100	12,100	2025 1208	2025 1208
인터넷	참여와혁신	2025 경사노위 이미지 광고	1,650	165	1,815	2025 1208	2025 1221
인터넷	매일노동뉴스	2025 경사노위 이미지 광고	1,650	165	1,815	2025 1208	2025 1221
인쇄	내일신문	2025 경사노위 이미지 광고	5,500	550	6,050	2025 1215	2025 1215
인쇄	문화일보	2025 경사노위 이미지 광고	11,000	1,100	12,100	2025 1215	2025 1215

228) 내역사업인 '회의체 등 운영' 사업 중
- 위원회 운영 대국민 광고 400만원(2건×2백만원),
- 디지털홍보 관련 200만원(4회×50만원) 등 총 600만원으로 편성

구분	매체명	광고명	광고료	수수료	총계	광고 시작일	광고 종료일
인쇄	중앙일보	2025 경사노위 이미지 광고	11,000	1,100	12,100	2025 1215	2025 1215
인쇄	경향신문	위원회 광고	11,000	1,100	12,100	2025 1224	2025 1224
계		13건	81,400	8,140	89,540		

* 자료: 정부광고 통합지원시스템

또한, 월별 집행 내역을 보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정부광고는 12월에 위원회 이미지 광고와 국제컨퍼런스 홍보를 중심으로 집행되어, 전체 13건 중 8건, 7,000만원(78.4%)이 집행되었음. 고용노동부의 12월 광고 집행 비중이 전체 253건 중 55건, 8억 3,200만원으로 연간 집행액의 23.2%인 것과 비교하더라도 연말에 광고 집행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남.

이에 대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사회적 대화가 전면 중단된 상황에서 당초 상반기에 계획된 광고를 연기할 수밖에 없었으며, 2025년 11월 현 위원장 취임 이후 사회적 대화의 향후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어 연말에 광고가 집중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또한, 광고내용은 위원회의 역할과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함.

[2025년 고용노동부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정부광고 월별 집행 내역]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건수	금액	비중	건수	금액	비중
1월	3	72	2.0	-	-	-
2월	4	85	2.4	-	-	-
3월	5	38	1.1	1	1	1.1
4월	15	155	4.3	1	6	6.8
5월	27	257	7.2	-	-	-
6월	21	330	9.2	1	1	1.1
7월	21	304	8.5	2	11	12.2
8월	9	81	2.3	-	-	-
9월	20	189	5.3	-	-	-
10월	33	425	11.9	-	-	-
11월	40	814	22.7	-	-	-
12월	55	832	23.2	8	70	78.4
합계	253	3,582	100.0	13	89	100.0

* 자료: 정부광고 통합지원시스템 자료 정리

다만,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정부광고는 연말에 집행이 집중되어 있고, 광고의 내용 또한 위원회 이미지 제고를 위한 광고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예산의 계획적 집행 및 한정된 홍보 예산의 우선순위 측면에서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따라서 향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주요 사업 추진 일정과 홍보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광고를 연중 계획적으로 집행하고, 정책 및 사업 홍보 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함으로써 홍보 효과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